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제 2 권

[농업·농촌구조개선편]

- | | |
|---------------|-----------------|
| 1. 인력육성 | 2. 생산기반조성 |
| 3. 영농규모화 | 4. 농업기계화 |
| 5. 기술개발 및 정보화 | 6. 소득원개발 및 소득지원 |
| 7. 생활환경개선 | |

농림부 도서실



000126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제 2 권

[농업·농촌구조개선편]

- | | |
|---------------|-----------------|
| 1. 인력육성 | 2. 생산기반조성 |
| 3. 영농규모화 | 4. 농업기계화 |
| 5. 기술개발 및 정보화 | 6. 소득원개발 및 소득지원 |
| 7. 생활환경개선 | |

농림수산부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61

등록일: 2004년 7월 29일

기증: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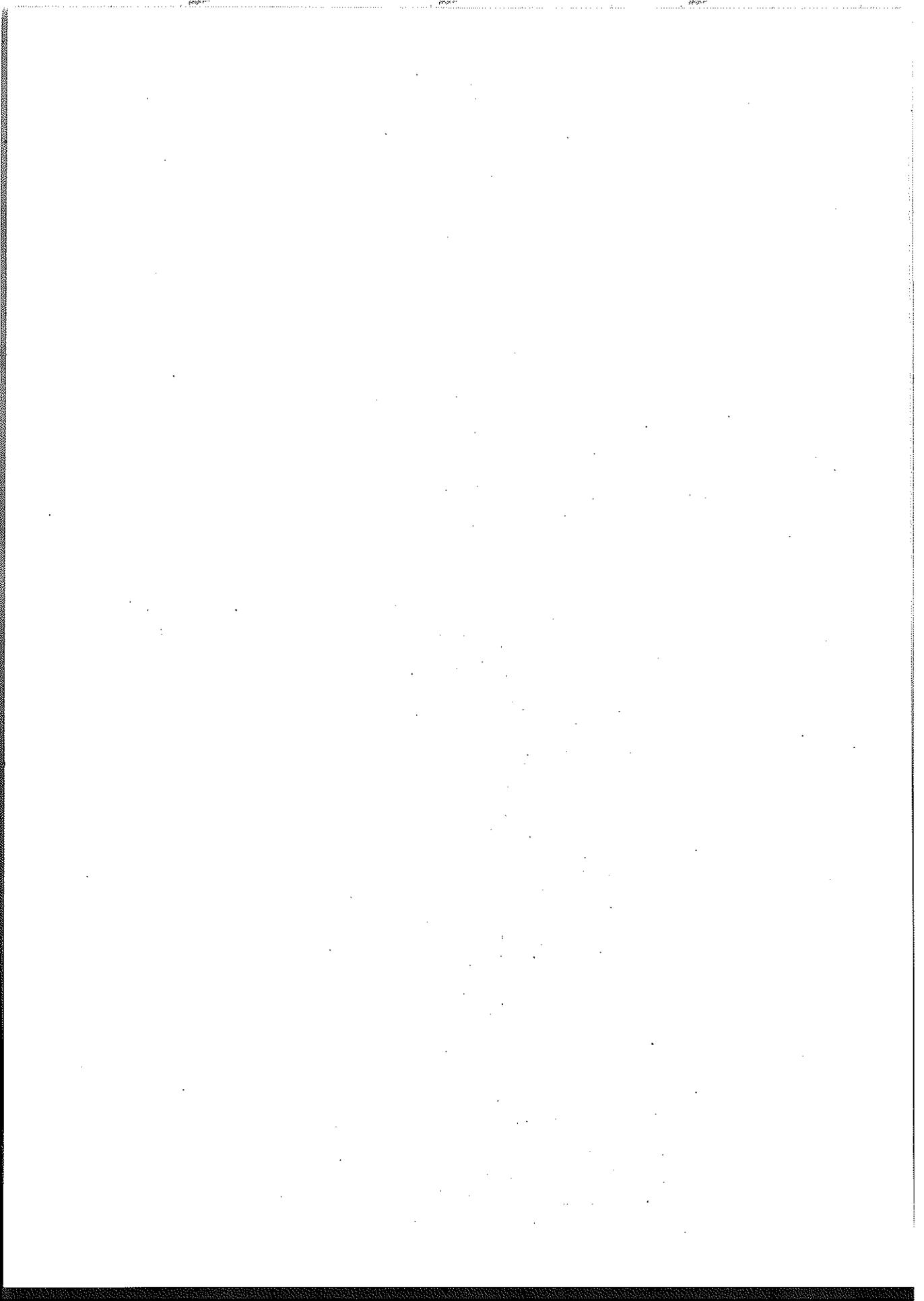
[농업·농촌구조개선편]

※ 표시예)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 **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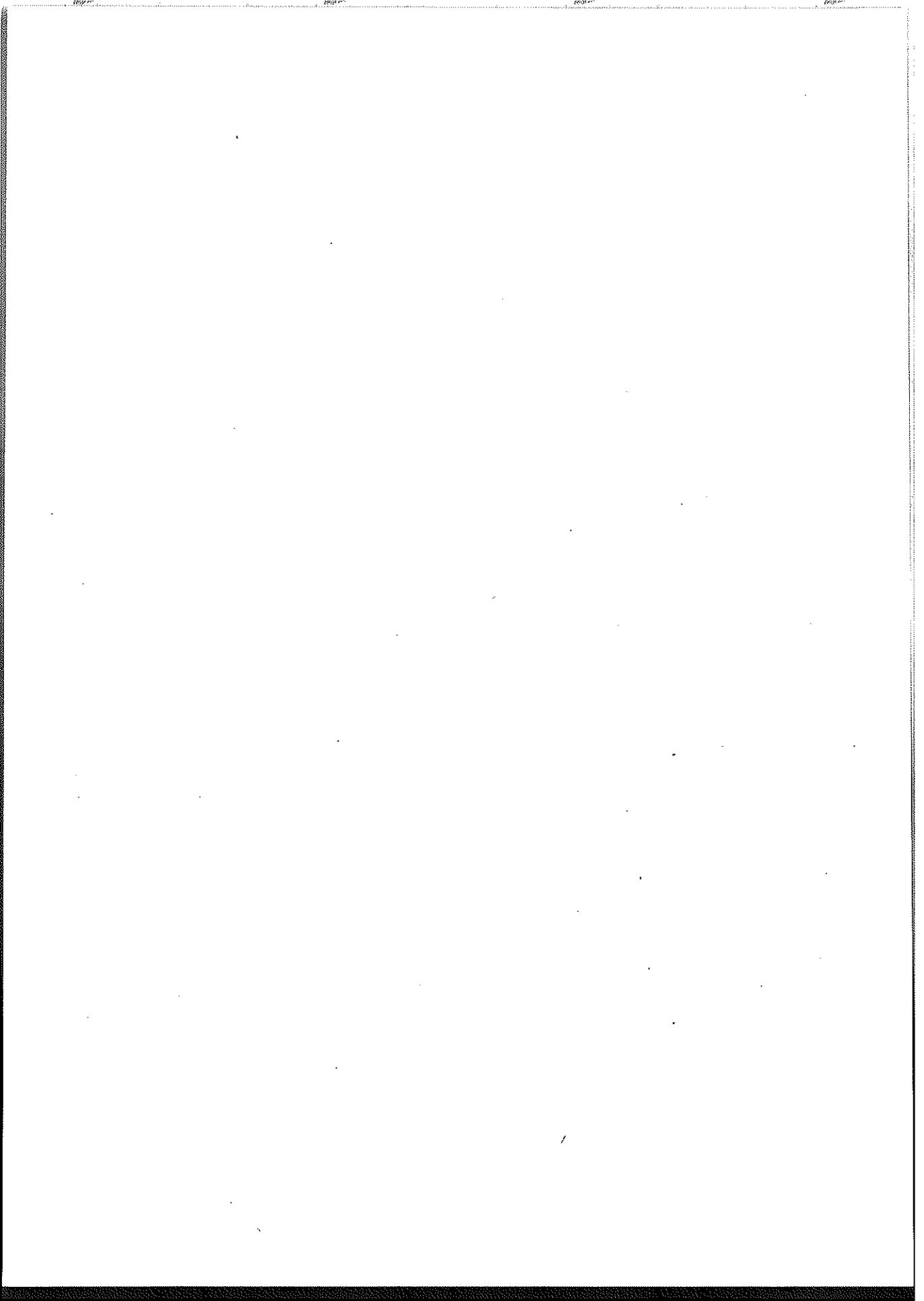
사 업 구 분	사 업 명	쪽
1. 인 력 육 성 (114)	1)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자율)	7
	2) 전업농육성(자율)	49
	3) 선도농업경영체육성(공공)	86
	4) 농민학습단체육성 및 품목별 농민전문교육(공공)	99
	5) 한국농업전문학교설립(공공)	110
2. 생 산 기 반 조 성 ()	1)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조사사업(공공)	115
	2) 대·중규모용수개발사업(공공)	121
	3)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공공)	145
	4)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공공)	152
	5) 지하수개발사업(공공)	158
	6)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174
	7) 방조제개보수사업(공공)	188
	8) 농조저수지준설사업(공공)	204
	9) 수해복구사업(공공)	214
	10) 배수개선사업(공공)	218
	11)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	247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	263
	13) 발기반정비사업(공공)	281
	14) 일반경지정리사업(공공)	296

사업구분	사업명	쪽
3. 영농규모화	15)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공공)	305
	1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공)	323
	1)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차출)	341
	2) 농지관리위원회운영(공공)	376
	3) 농지관리위원교육(공공)	378
4. 농업기계화	1)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차출)	383
	2)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지원(차출)	427
	3)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지원(차출)	448
	4) 농업기계사후관리지원(공공)	455
	5) 농업기자재생산시설 및 생산자금지원(공공)	476
5. 기술개발 및 정 보	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483
	가) 현장애로기술개발	483
	나) 첨단기술개발	489
	2) 농림수산정보화사업(공공)	494
	3) 농지전산화사업(공공)	497
	4) 농어촌개발시험연구사업(공공)	500
	5)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공공)	504
	6)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공공)	507
	7)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공공)	510
	8) 지역특화 및 새기술시범사업(공공)	514
9) 주요농작물원원종생산(공공)	520	
10)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공공)	522	

사업구분	사업명	쪽
6. 소득원 개발 및 소득지원	1)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차출)	529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533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560
	다) 농어촌민박마을조성사업	571
	2) 농어촌특산단지육성(차출)	580
	3)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공공)	607
	4)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612
7. 생활환경 개선	5) 농공단지조성(공공)	627
	6) 농업경영자금지원(공공)	638
	7)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공공)	642
	1)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차출)	657
	2)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공공)	664
	3) 문화마을조성사업(공공)	685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공공)	701
5)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공공)	719	



1. 인 력 육 성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자율)

1. 목 적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어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어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도모

2. 추진방향

- 정규 농수산계 학교출신자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조기 영농어정착 유도
- 품목별 균형있는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 농어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미혼여성의 농어촌 정착유도

3. 투용자 계획

가. 연차별 투용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77,918	10,476	10,000	10,000	10,000	60,000	178,394
사업비 (국고용자)	846,483	200,000	200,000	200,000	300,000	1,800,000	3,546,483

나. '96 지원계획

- 사업량 : 10,000명 수준
- 지원금액 : 2,000억원(국고용자)
- 시·도별 사업자금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	지원액	시·도	지원액
합계	200,000	강원	12,000
서울	160	충북	12,400
부산	820	충남	27,500
대구	1,300	전북	21,680
인천	1,640	전남	36,560
광주	980	경북	32,440
대전	920	경남	27,320
경기	20,260	제주	4,020

※ 시·도지사는 시·군 신청인원을 참고하여 시·군별 사업자금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배정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영농어기반 조성 및 규모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영농어기술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를 통해 지역농어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 육성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

- 영농어 정착의욕이 강한 자로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농어민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단,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지원자금은 영농어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료, 농약, 유류구입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내역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사업내역
경종농업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파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수산분야	어선어업, 축양어업, 양식어업, 종묘배양, 수산물가공등	어선건조, 어선구입, 어선개보수, 어구·종묘(패)구입, 양식자재,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선, 어장구입, 어업시설장비, 저장시설, 가공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수산기반시설

(3) 용자취급기관 및 조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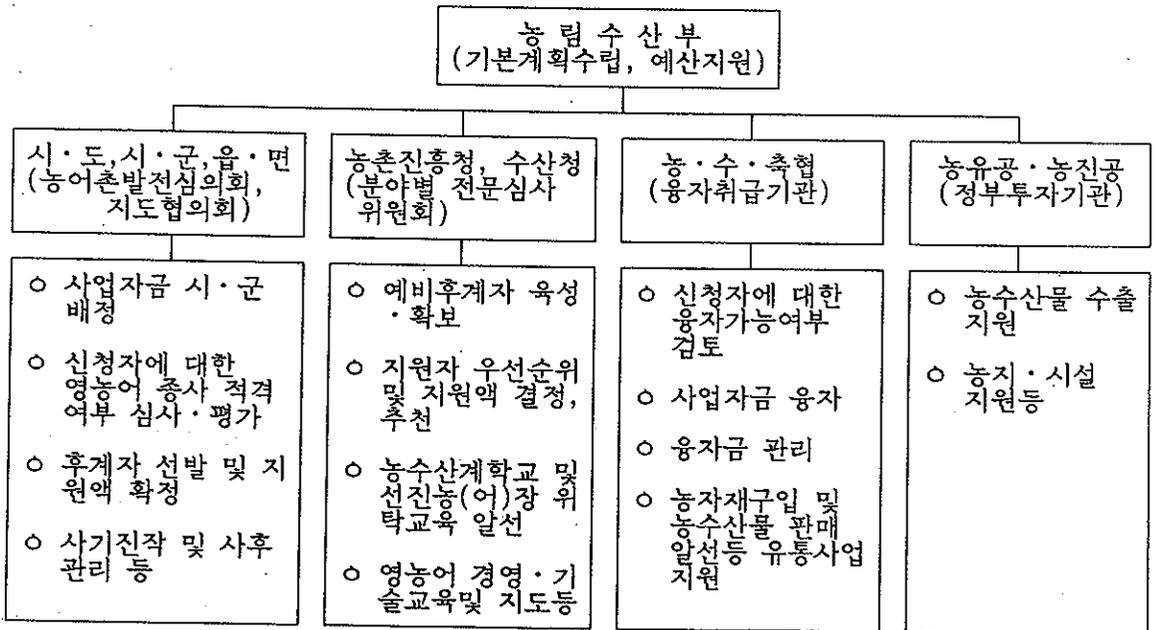
○ 용자 취급기관

- 경종 농업분야 : 농협중앙회, 축산분야 : 축협중앙회, 어업분야 : 수협중앙회
- ※ 용자취급기관의 중앙회장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읍·면 단위에 위치한 계통기관(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 1인당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어 설계에 따라 15~3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 금리 및 용자기간 : 국고용자 100%,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10년)
- ※ 농어민후계자가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년도 용자증결기한(매년 12.31) 내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후계자 자격이 상실됨.
- ※ 이자는 연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민 후계자가 분할 납부 또는 자금회전시기에 이자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조정 가능

(4) 사업시행체계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지역내 농어민후계자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 권한을 부여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공통사항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40세 미만이고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단 사업시행년도 1.1현재 30세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신청가능

○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농·어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한 자

※ 품목별 생산자단체란

- 농·어촌지도소 및 농·축·수협이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법인 또는 회사로 등록·등기한 단체, 기타 회원명부나 회칙등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단체로서 농·어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단체

○ 수산업의 경우 사업계획과 동일분야의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을 취득하여 어촌에 정착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40세 미만인 자

○ 영농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 1 현재 40세 미만인 자

< 병역미필자 >

- 사업시행년도에 입영자 및 징병검사 대상자중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농어민후계자) 편입 희망자
- ※ '98년도 부터는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농어민후계자)에 편입될 수 있음.
- 산업기능요원(농어민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복무일수가 2년이상 경과된 자('97년까지 유효)

(2)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사업시행전년도 1. 31일까지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과 농·어촌지도소
장으로부터 농어민후계자 사업자금 지원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
- * 시지역과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등에는 관할
농·어촌 지도소에 신청
- * 지원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있는 경우는 품목
별생산자단체에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 1호서식)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서식)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수산계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
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어 교육훈련증명서, 영농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가) 선정기준

- 아래사항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자를 선정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 방법 및 배 점	비 고
영농어 정착의욕(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도협의회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평가(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도협의회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현지 확인후 평가(필요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평가)
학력 및 영농어 교육훈련(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계 대학졸업자 : 100점 - 농수산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수산과*(자영농고, 농수고중 자영농과, 자영수산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및 농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영농어 정착의욕이 강한자에 대하여는 재학중인 자도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 인정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50점 - 3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 이상 : 20점 - 7일 이상 :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수산청, 각도, 농·축·수협 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 수산청 이 인정한 특농(어)가농(어)장 및 연수기관

구 분	평가 방법 및 배 점	비 고
영농어 경력 (100점)	<p>*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p> <p>○ 영농어 경력(영농 4-H 경력포함)(100점)</p> <p>-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1년미만은 10점) 하되, 4-H경력은 15점씩 가산</p> <p>- 직업군인은 군근무경력을 영농어 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5점씩 가산(1년미만은 5점)</p>	<p>-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수산계학교부설 영농어 훈련기관</p> <p>○ 농수산계학교(농수산계학과 포함) 졸업자 및 재학중인자는 재학기간을 영농어 경력으로 인정</p> <p>○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 전 영농어 종사경력도 인정</p> <p>○ 농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어 경력으로 인정</p>
영농어 기반 (150점)	<p>○ 영농어 기반(150점)</p> <p>- 2.0ha이상 : 150점</p> <p>- 1.5ha~2.0ha미만 : 125점</p> <p>- 1.0ha~1.5ha미만 : 100점</p> <p>- 0.5ha~1.0ha미만 : 75점</p> <p>*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어기반으로 인정</p> <p>*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어 기반으로 인정</p>	<p>○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2)</p> <p>○ 영농어기반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배점(15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p> <p>- 영농어기반 전부가 있는 경우 : 30점</p> <p>- 영농어기반의 50%이상 있는 경우 : 15점</p> <p>*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어기반으로도 인정</p>
영농어 사업 계획(150점)	<p>○ 영농어 사업계획(150점)</p> <p>- 상 : 150점(신청자의 15%)</p> <p>- 중 : 120점(신청자의 70%)</p> <p>- 하 : 90점(신청자의 15%)</p>	<p>○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p> <p>* 사업계획의 타당성·치밀성 및 발전가능성등을 평가</p>

구 분	평가 방법 및 배 점	비 고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농어업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중 영농어 사업계획과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기능요원(농어민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복무날자가 2년이 경과한 자, 여성에 대하여는 총점(7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5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1/2이내로 영농어기반 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나) 우선순위

- ①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자 순
- ②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농어민후계자)으로 편입자, 농림수산계 학교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

(2)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일반적인 경우 >

① 읍·면지도협의회

- 읍·면장은 읍·면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어 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어 교육훈련, 영농어경력, 영농어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용자 적격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한 후 적격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농·어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 읍·면 지도 협의회 > —————

-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 농·어촌 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읍·면담당 농·어촌지도공무원
- 농·수·축협등 관련 용자취급기관 임직원
- 선도농어가 3인등 총6인이내(읍·면 농어민후계자 대표 1인 이상포함)
- ※ 읍·면지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어민에 대하여는 어업관련기관과 어민이 참석하여 심의

② 농·어촌지도소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 농·어촌지도소장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장이 통보한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자료,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시지역의 농·어촌지도소장은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사항을 시의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토록함.

〈 농·어촌지도소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 〉

- 시·군 농·어촌지도소 전문지도사
- 농수산계 학교 교사 또는 교수
- 품목별 선도농어가 4인등 총 6인 이내
(관할구역내의 농어민후계자 대표 2인 이상 포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에 위임된 경우 〉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지역내 농어민후계자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 권한을 부여
 - 이경우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지역내 농어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홍보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품목별 전문심사위원회(6인이내)를 구성하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적격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농·어촌지도소장에게도 통보(별지 제2호서식 참조)
 - 이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심사위원회 〉

- 농·어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전문지도사
- 농·수·축협등 관련 용자취급기관 임직원
- 품목별 생산자단체 구성원중 품목별 선도농어가와 단체장이 지정하는 농어업인 4인등 총 6인이내

나)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지도소장과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어민후계자 선발에 있어 지역 농어업 여건과 품목별 전업농어가 육성대상자수·예비후계자수·농(어)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

- 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어촌지도소장은 시·군, 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 수준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농촌진흥청·수산청산하 농(어)업 전문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농수산대 및 농수산 전문대, 농수고 출신으로 충원(농수산계학교출신 우선 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흥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림고, 사천농고, 서귀농고, 대천수고, 원도수고, 포항수고(12개교)

-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된 자만 선정

- 농어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농어민후계자 추천

·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위탁영농회사등 농어업 관련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업 종사자로 봄)

다) 대상자 확정 및 결과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별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분된 예산범위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 구별 선정인원의 20%이상을 농수산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자순으로 즉시 대체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림수산업통합실시요령 총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년도 1. 15까지 확정된 사업대상자와 자금지원 금액을 신청자, 자금 취급기관, 농·어촌지도소 및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 시·도지사는 농어민후계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사업시행년도 2. 1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구별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

마.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1) 교육훈련

- 농·어촌지도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된 자에게 농어민후계자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행정절차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어 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교육	2 ~ 5일간	농·어촌지도기관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농어민후계자
영농어기술교육	1주이상	선도농어가, 농수산계학교, 농·어촌지도기관등	"

※ 영농어 기술교육기관은 현지여건, 농어민후계자의 희망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지도소장이 결정

- 다만 다음경우에 해당하는 농어민후계자는 영농어 기술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영농어 사업계획상의 분야와 관련된 농수산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등) 졸업자
 - 최근 2년이상 영농어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림수산부, 농진청, 수산청 계통기관이 인정하는 전문 영농어 교육기관에서 4주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1개월이상 독농어가(선도농어가, 시범농어장등) 입주훈련 이수자로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어사업 계획상의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단, 공통교육은 후계자로 인정된 자 전원이 이수토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기관에게 예비후계자·농어민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농·어촌지도소장은 영농어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영농어 기술교육 면제자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함.

(2) 해외연수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은 농어민후계자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농어민후계자 육성 업무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3) 교육훈련 계획 보고

- 농촌진흥청장과 수산청장은 농어민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예산 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농촌진흥청장은 농어민후계자등에 대한 해외연수 훈련계획(예산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이경우 해외연수 안내 업무를 수행할 여행사 지정등에 관련된 서류 첨부

바. 사업시행

(1) 사업자금 배정

-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 농·축·수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시·군, 구별, 분기별 사업자금지원계획을 수립
 -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위탁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축·수협중앙회장에게 대어
 - 농·축·수협중앙회장은 대어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 기관에 배정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용자취급 기관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용자취급 기관 변경 요청 가능

(2) 용자실시등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용지침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사업자금의 용자는 농어민후계자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용자할 수 있음.
 - 용자취급기관장은 농·어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영농어기술교육 이수자와 영농어 기술교육 편제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출토록 함.
- ※ 단 공통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자도 용자 가능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책임

시장·군수·구청장(농·어촌지도소장, 읍·면장, 용자취급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장의 보좌를 받아 실시)

(2) 사후관리 기간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용자조건상 용자개시 년도부터 상환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 다만 농어민후계자의 시·도, 시·군, 구청간 전출입등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육성기관이 위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계없이 동 사업실시요령에 따라 해당 시·도, 시·군, 구청에 통보

(3) 사후관리

○ 농·어촌지도소장은 예비후계자와 농어민후계자의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영농어 기술교육을 실시

< 조치사항 >

-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영농어 상담 및 영농어 기술교육등을 실시
-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

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취소

(1) 사업취소 사유

농어민후계자가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아래사항의 용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후관리기관(단체)장은 즉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 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본인의 농어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예 : 수도작 후계자가 정육점운영 등)중 농어민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등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형사 소추를 받은 자
- 어민후계자의 경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단 경고이하의 경미한 경우는 제외)
- 기타 시장·군수, 구청장과 농·어촌지도소장이 농어민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이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2) 지원자금회수 절차등

-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용자취급 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 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정상 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 말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의 변경

농어민후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업종(농업·어업)내에서 영농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농·어촌지도소에 제출하여 농·어촌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댐, 저수지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이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착수 후 3년이상 경과된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농·어촌지도소에 제출하여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 의견을 받아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장소 변경

- 농어민후계자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업지도는 주소지 관할 농·어촌지도소에서 담당(동사업실시요령 이전 사업장 관할 사후관리 사항은 동지침에 의거 주소지 인력육성기관으로 인계·인수)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전절차
시장·군수, 구청장은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어촌지도소,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및 보고
- 시·도별 이전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전후의 시·도지사와 농·어촌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 관 조 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용자취급 기관)
(단,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용자취급 기관에서 담당)

라. 농어민후계자의 교체 및 승계

(1) 농어민후계자 교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년도 11월 말까지 지원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교체
 - 이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어민후계자 교체결과를 관계기관(농·어촌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2) 농어민후계자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농어민후계자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결정(이 경우 형제·자매와 직계비속 승계시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승계일 기준 40세 미만으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야 하며, 남자배우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킬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에 의거 승계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계자는 반드시 농어민후계자 교육훈련 이수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액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등의 잔여액과 조건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어촌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 미혼인 여성후계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배우자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할 때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경우 위의 농어민후계자 승계절차에 따라야 함)

마.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강화등

- (1) 농어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발전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
- (2)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전국어민후계자협의회 포함) 활동지원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전국어민후계자협의회 포함)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농어민단체 육성 도모
- (3) 농수산물의 판매 지원
 - 농·수·축협중앙회장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
 - 농수산물 협동출하반에 적극 참여 유도
 - 규격포장, 운송, 판매등 알선 지원
 - 판매매장을 이용한 주말시장개설등 전시판매 지원
 - 농축수산물 유통정보와 간행물 배부, 운송자금의 지원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과 축협중앙회장은 농·축·수산물 수매비축시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를 알선
- (4) 농어촌인력육성업무 추진에 관련된 세부사항
 - 농촌진흥청장 및 수산청장은 농어업 후계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예비후계자를 육성·관리
 - 동사업실시요령 이외의 농어촌인력육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수산청장이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바. 보고

보고기관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고
○ 시·도지사	○ 농어민후계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2. 10까지	별지제 3호서식
○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	○ 농어민후계자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 농촌진흥청장	○ 농어민후계자등에 대한 해외연수 훈련계획	"	
○ 시·도지사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 까지	별지제 7호서식
○ 농·축·수협중앙회장	○ 용자실적	반기익월 30일 까지	별지제 9호서식
○ 농·축·수협중앙회장	○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 까지	별지제 10호서식
○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	○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매년 1.30까지	별지제 13호서식

사.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 농어촌인력과(TEL : 02-503-7216~7)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과등)
- 시·군·구 : 산업과, 농·어촌지도소

< 별표 1 >

예비후계자육성

가. 신청대상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현재 30세 이하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군 농·어촌지도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별지 제11호서식 참조)
- 신청받은 농·어촌지도소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비후계자 신청서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다. 교육·훈련

농·어촌지도소장은 등록된 예비후계자에 대하여 영농어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함.

- 전담지도사의 지도아래 영농 4-H 활동 혹은 독농(어)가, 농(어)장에서 영농어 기술 습득
- 예비후계자의 자질과 부모의 영농어기반등을 감안하여 작목선택에 대한 상담 실시
- 우수과제 이수자는 희망에 따라 농어민후계자로 우선 선발
-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예비후계자는 한국농(어)업전문학교등에 입학 추천

라. 예비후계자 정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예비후계자 등록을 취소함.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전업, 도시이주등으로 영농어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이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은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예비후계자 등록포기서 징구)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지 2년이상 경과한 자중 도시이주등으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자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40세이상 되는자

마. 예비후계자 신청현황 보고

시·군 농·어촌지도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 등록현황을 익년도 1. 20까지 계통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 및 수산청장은 이를 시·도별로 집계하여 익년도 1. 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표 2 >

영농규모 평가기준(지역규모)

구 분 품 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 는 농가	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노지채소	0.25	0.25~0.5	0.5~0.75	0.75~1.0	1.0
시설채소	0.1	0.1 ~0.2	0.2 ~0.3	0.3 ~0.4	0.4
사 과	0.15	0.15~0.3	0.3 ~0.45	0.45~0.6	0.6
배	0.11	0.11~0.22	0.22~0.33	0.33~0.44	0.44
포 도	0.25	0.25~0.5	0.5 ~0.75	0.75~1.0	1.0
감 귤	0.17	0.17~0.34	0.34~0.51	0.51~0.68	0.68
한 우	두 미만 3	두 미만 3~6	두 미만 6~10	두 미만 10~12	두 이상 12
낙 농	2	2~3	3~5	5~7	7
양돈(비육)	25	25~50	50~75	75~100	100
양돈(번식)	7	7~14	14~21	21~28	28
양계(산란)	수 미만 700	수 미만 700~1,400	수 미만 1,400~2,100	수 미만 2,100~2,800	수 이상 2,800
양계(육계)	1,000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
담 배	ha미만 0.25	ha미만 0.25~0.5	ha미만 0.5 ~0.75	ha미만 0.75~1.0	ha이상 1.0
인 삼	a미만 5	a미만 5~10	a미만 10 ~15	a미만 15~20	a이상 20
양 잡	ha미만 0.45	ha미만 0.45~0.9	ha미만 0.9 ~1.35	ha미만 1.35~1.8	ha이상 1.8
버 석 (느타리)	평미만 25	평미만 25~50	평미만 50~ 75	평미만 75~100	평이상 100

※ '93 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주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만 50% 인정

< 별표 3 >

영어규모 평가기준(차영규모)

구 분 품 목	0.5ha미만에 준하는 어가	0.5~1.0ha 미만에 준하 는 어가	1.0~1.5ha 미만에 준하 는 어가	1.5~2.0ha 미만에 준하 는 어가	2.0ha이상에 준하는 어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어선어업	2톤	2~3톤	3~5톤	5~7톤	7톤
○정치망	2ha	2~3ha	3~5ha	5~7ha	7ha
○추방염	0.1ha	0.1~0.3ha	0.3~0.4ha	0.4~0.5ha	0.5ha
○낭장망	0.3ha	0.3~0.5ha	0.5~0.7ha	0.7~1ha	1ha
양식어업					
○어류양식					
- 해면상	0.2ha	0.2~0.3ha	0.3~0.5ha	0.5~1ha	1ha
- 육상	30평	30~50평	50~70평	70~100평	100평
- 내수면					
○가두리	4조	4~5조	5~7조	7~10조	10조
○지수식	0.1ha	0.1~0.3ha	0.3~0.5ha	0.5~0.7ha	0.7ha
○수조식	30평	30~50평	50~70평	70~100평	100평
○패 류					
- 살포식	2ha	2~3ha	3~4ha	4~5ha	5ha
- 수하식 (굴)	1ha	1~1.5ha	1.5~2ha	2~3ha	3ha
- 수하식 (전복, 진주)	0.2ha	0.2~0.3ha	0.3~0.5ha	0.5~1ha	1ha
- 투석식	2ha	2~3ha	3~4ha	4~5ha	5ha
○해조류					
- 김	30책	30~50책	50~70책	70~100책	100책
- 미역, 다시마	2ha	2~3ha	3~5ha	5~7ha	7ha
- 툇	1ha	1~2ha	2~3ha	3~5ha	5ha
○우렁쉥이	1ha	1~2ha	2~3ha	3~5ha	5ha
종묘생산					
○육 상	50평	50~100평	100~150평	150~200평	200평
○해 상	2ha	2~3ha	3~4ha	4~5ha	5ha
수산물가공	50평	50~100평	100~150평	150~200평	200평

※ 양식어업은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관련있는 상기표의 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어업기반이 있을 경우 주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만 50% 인정

< 별지 제 1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농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시설현황 (평)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농어기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선박	방제기							기타
재배현황 (평)	벼	보리	사과	배	포도				계
가축보유현황 (두,수)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기타특기사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계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구입				←→
한우 입식		←→		
⋮				
⋮				

" 주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향후 영농어 계획등을 작성)

※ 사업계획서는 농업, 어업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적절히 변경 작성 가능

농어민후계자 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자금							
					영농 정착의욕	어 학력	교육 수련	영농경 험	영농어 업기반	사 계 업확	가 점	총점수								

<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민후계자 선정결과보고

1. 성별·년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결혼여부		년령					별	
		기혼	미혼	19세 이하	20 ~ 24	25 ~ 29	30 ~ 34	35 ~ 40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출	중출	고졸		전문대		대졸	
				소계	기타	소계	기타	소계	기타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함.

3.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경 증 능 업			축			산					어 업						
	합계	수도 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소계	어선 어업	어류 축양	해조류 양식	어패류 양식	기타
합계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경 증 능 업			축			산					어 업						
	합계	수도 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소계	어선 어업	어류 축양	해조류 양식	어패류 양식	기타
합계																		

※ 병역 미필자중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 신청남자와 여성후계자 신청자에 대하여는 위의 보고사항외에 1. 2. 3. 4 양식에 의거 별도 각각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농어민후계자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농지 구입								

위의 사업추진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업자금을 용자하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확인자 : 농·어촌지도소장 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 별지 제5호 서식 >

예비후계자·후계자 관리카드

사 진 (반명촬영)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④현주소	⑤정착사업장소	③연락처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④주사업(희망)작목: ⑦자금지원(희망)내역
	⑧최종학력: 학교	⑨파(출업, 제학)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⑩ 병역 및 예비후계자·후계자들의 경력

⑪ 영농어 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분	기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내	역	실시기관명
병역				
예비후계자				
후계자				
전업농어가				

기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			
.			
.			
.			

⑫ 포상경력·영농어 국가기술자격증 등

⑬ 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⑮ 영농(어) 기반 및 사업추진 실적

년	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구	분								
주요 사업작목(벼, 사과, 배, 오이, 배추, 한우, 인삼, 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m, 두, 수, 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 돈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저온냉장고, 스포팅쿨러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 어업:농업에 준하여 작성									
영농(어) 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영농(어) 외 소득								
정실(친원)	경영비(생산비) 증가액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영기술훈수준									
조사자 직·성명									

* ① 매년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읍면상담소장 또는 주사업작목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농어민회계자 1년차 2년차, ...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등으로 구분 기입

< 별지 제6호 서식 >

농어민후계자 사업취소 의뢰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혼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년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구 분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계																
농업																
어업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년도별로 작성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사 망	신 병	재혼전업	이 주	무단이탈	기 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수증인자	인 원 회 수 액 미회수액							

※ 농민·어민으로 구분 작성하되 어민은 ()로 표시

< 별지 제13호 서식 >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1. 성별·년령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성 별			직 업 별			년 령 별					
	계	남	여	농어업 종사	학생	기타	20세 이하	21~25	26~30	31~35	36~40세	
서울특별시 · · · 제주도 계												

2.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합 계	경 증 농 업					축 산					어 업							
		소 계	수도 작	복합 영양 양	원 예	과 수	특 작	소 계	한우 (우우)	낙 농	양 돈	양 계	기 타	소 계	어선어업	어류양식	해조 양식	패류 양식	기 타
서울특별시 · · · 제주도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예비후계자중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되 매년 12월말 기준 작성

3.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경 증 능 업						축 산						어 업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소계		어선어업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폐류양식	기타	
	합계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경 증 능 업						축 산						어 업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소계		어선어업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폐류양식	기타	
	합계																					

※ 병역 미필자중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 신청남자와 여성후계자 신청자에 대하여는 위의 보고사항외에 1. 2. 3. 4 양식에 의거 별도 각각 보고

전업농육성사업(자율)

1. 목 적

-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
- 타산업부문 중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2. 추진방향

- 21세기 우리 농어업 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
-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기술·정보·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지원
- 농가발전 수준등에 따라 차등 지원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3,340호	12,000	12,000	12,000	12,000	72,000	123,340
사 업	계	백만원 167,000	615,000	649,500	790,000	719,700	4,318,200	7,259,400
	<쌀> 국고보조		47,000	58,750	58,750	58,750	352,500	575,750
	지방비 보조		47,000	58,750	58,750	58,750	352,500	575,750
	국고융자 농협융자		47,000	37,600	37,600	37,600	225,600	385,400
	자부담		70,500	56,400	56,400	56,400	338,400	578,100
	농지관리 기금		23,500	23,500	23,500	23,500	141,000	235,000
			280,000	314,500	455,000	384,700	2,308,200	3,742,400
<기타> 국고융자	167,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1,167,000	

※ 축산 전업농은 축종별(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육성·지원

나. '96 지원계획

사업량	쌀	밭작물	채 소	과 수	화 획	특 작	어 업	계
	명 10,000	158	812	327	109	291	243	12,000
사업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백만원 58,750	58,750	508,500	23,500	649,500			

※ 시·도별 지원계획 : 별표 1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영농규모확대 및 시설·장비현대화 지원
- 영농어기술및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

-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전업농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확정된 자
- 지원자금은 영농어 기반을 조성하는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비료·농약·유류 구입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내역

분 야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쌀	농지구입·임차, 농기계구입
발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 기타농업 기반시설
어 업	어선건조, 어선구입, 어선개보수, 어구·종묘(패) 구입, 양식자재,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선, 어장 구입, 어업 시설장비, 저장시설, 가공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수산기반시설

주)- 쌀전업농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선정하며,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은 이 사업실시요령 후반부에 < 붙임 > 으로 수록된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요령에 따라 지원함.

- 축산전업농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실시요령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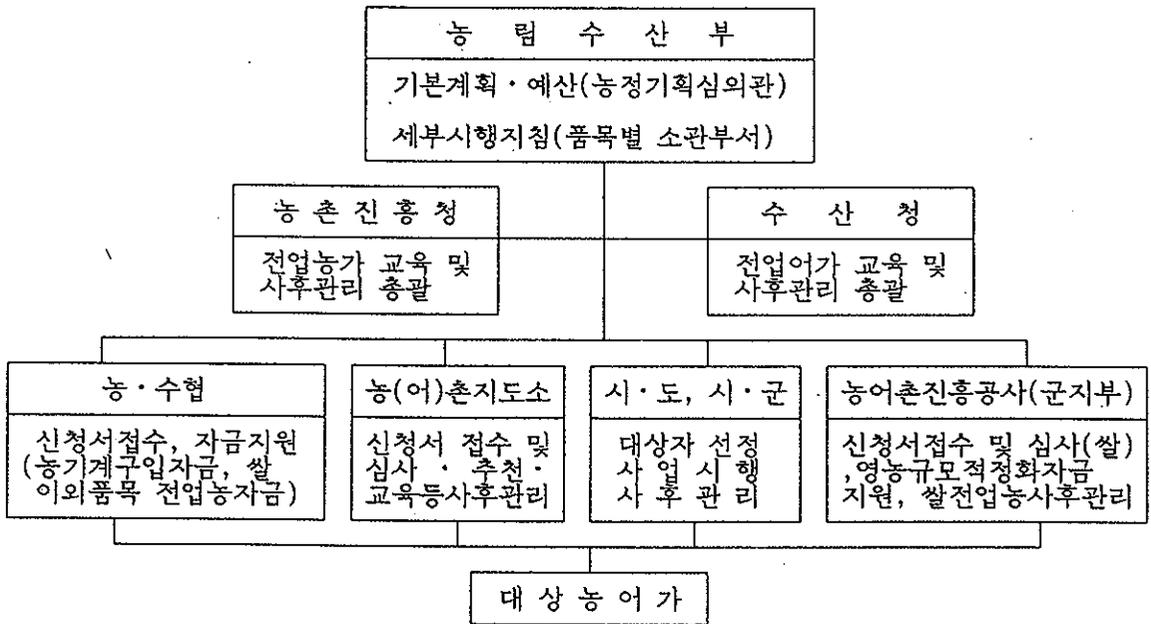
(3) 호당 평균 지원규모 및 조건

- 쌀전업농 (호당평균)
 - 농기계구입: 23.5백만원(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국고융자 16%, 농협융자 24%, 자부담 10%:연리5%)
 - 농지구입: 31.5백만원(영농규모적정화 자금융자 : 농지구입자금 연리 3%·20년균분상환, 임차료 선금금 무이자·3~10년 균분상환)

○ 기타 품목 전업농 : 평균 50백만원(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 품목과 농가 수준에 맞게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

(4) 사업시행 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가) 공통요건

-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어가
- ※ 농한기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어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
-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어가
 - 경영주가 56세 이상인 경우 그 영농어 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어민이
있는 농어가

< 후계 농어민 >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수산계학교에 재학중인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어경력에 제한은 없음)

※ 군복무등 불기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어를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후계 농어민으로 봄

- 가족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어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신청품목 경영규모가 아래 최소경영규모 ~ 전업농규모사이에 있는 농가

품목(전업농규모)	최 소 경 영 규 모
쌀 (10ha)	○ 자기소유의 논 1.0ha이상 경작
밭 작 물 (식량류 10ha)	○ 자기소유의 밭 1.0ha이상 경작
채 소 - 노지채소(2ha) - 시설채소(1200평)	○ 채소포장 경영규모 1.0ha이상 ○ 600평 이상 (일반시설 기준)
과 수 (2.5ha)	○ 0.5ha이상

품목(전업농규모)	최 소 경 영 규 모
<p>화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화류(시설1200평) ○ 시설 500평 이상 - 분화류(시설900평) ○ 시설 400평 이상 	
<p>특 용 작 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 (50평) ○ 150평 이상(일반시설 기준) - 약용작물 (3ha) ○ 1.0ha이상(약용작물 포장) 	
<p>어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업(5톤) ○ 2톤이상(동력어선 기준) - 어류양식(0.5ha) ○ 0.2ha이상(해면양식 기준) - 패류양식(우렁 쟁이포함, 3ha) ○ 1.0ha이상(굴수하식 기준) - 해조류양식(5ha) ○ 2.0ha이상(미역양식 기준) - 종묘생산(150평) ○ 50평이상(육상배양 기준) - 내수면 (0.5ha) ○ 0.1ha이상(지수식 기준) 	

2)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사업시행전년도 1. 31까지
- 접수기관 :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어)촌지도소, 농어촌
진흥공사 군지부, 농·수·축협
-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품목별 심사기관에 송부
- ※ 쌀전업농의 경우는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 한 농가가 두개 이상 품목의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3) 구비서류

- 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신청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필요시)
- ※ 쌀전업농 지원의 경우는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 단,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농기계 구입신청서(별지 제 4호서식)를 첨부함.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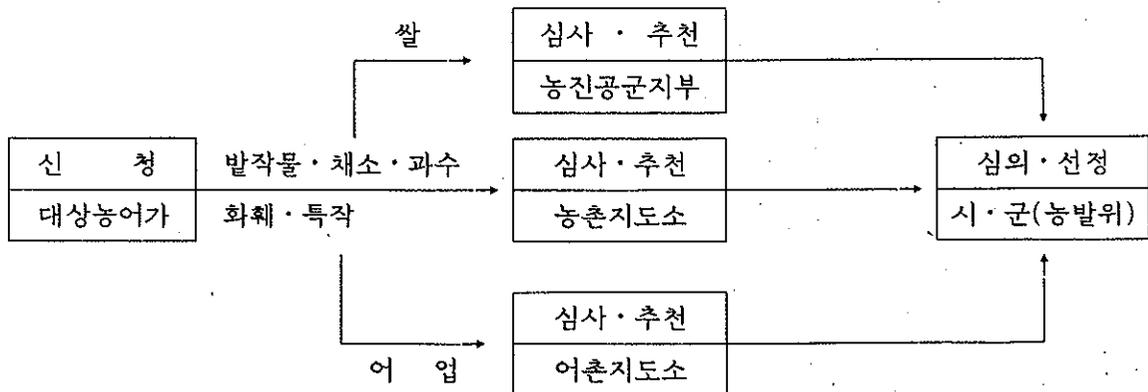
- 영농어경력, 농수산계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 및 시설수준이 우수한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점방법 : 별표2)

나) 우선순위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
- 경지가 "고도벼농사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자(쌀전업농)
- 신청분야 농어민후계자, 농수산계학교 졸업자(동점일 경우)

2) 선정절차

< 선정절차도 >



가) 쌀전업농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대상 쌀전업농 선정의 세부절차는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실시요령에 따르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 쌀전업농은 <붙임>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상의 절차에 따라 선정·지원함.

나) 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전업농

(1) 대상자 심사·추천

- 시·군 농(어)촌 지도소장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가능성 등을 조사·확인한 후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 농(어)촌지도소 전문지도사,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관계자
- 농과계학교 교수 또는 교사
- 농어민후계자 출신 1인이상을 포함한 그 분야의 선도농어가 2인
- 농·수·축협 임원, 농어민단체 대표등 총 7인 이내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 10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2)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시·군농어촌발전계획상의 전업농육성 목표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계획 작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포기자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한농가가 둘이상 품목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3)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총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년도 1. 20까지 사업대상자와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하는 즉시 신청자·
자금취급기관·농(어)촌지도소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 ※ 보고내용: 연령별, 학력별, 성별, 출신(농어민후계자 출신여부)별,
지원계획시기(분기)별 지원대상자수(보고서식:별지 제3호식)

마. 사업시행

(1) 쌀전업농

- 영농규모 적정화 자금지원(농어촌진흥공사)
 - 전업농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영농규모적정화
사업시행요령에 따라 지원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라 지원

(2) 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전업농

- 용자취급기관
 - 농업 분야 : 농협중앙회, 어업 분야 : 수협중앙회
- 사업자금배정
 - 농·수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전업농 육성
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사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 전업농 육성자금 위탁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수협중앙회장에게 대여
 - 농·수협중앙회장은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
기관에 배정

○ 용자방법 등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영지침등에 따름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 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어)촌지도 소장의 사업추진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인출토록 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쌀전업농

- 농지구입·임차자금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시행요령에 따름
- 농기계구입자금 :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름

(2) 발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전업농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 읍·면장
- 농·수협 지역조합장(용자취급기관장)

(3) 사업추진 상황등의 점검

○ 정기점검

- 점검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 소속 전담지도사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시장·군수는 필요시 사업추진상황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결과반영

-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어업 이탈등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

(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등은 제외)
- 본인의 농어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

- 농(어)촌지도소장, 읍·면장, 지역조합장(농·수협)·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 등 사후관리 보조자는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광역시는 농어촌지도소장)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금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다만 사망, 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용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용자시 용자 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지원자금의 회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자금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의 사업취소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자금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반기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반기익월 20일까지 보고(보고서식 : 별지 제8호서식)

(5) 농어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어)촌지도소장, 자금취급기관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어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조치

나. 경영기술교육 및 해외연수 등

○ 농(어)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수산청장의 지침에 따라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경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발전단계에 맞는 영농어기술과 경영지도 실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기관의 전업농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전업농 육성업무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다. 사업계획의 변경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 선정분야를 달리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장소의 변경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업지도는 사업장 관할 농(어)촌지도소에서 담당
 - 1)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2)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전절차
시장·군수는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어)촌지도소,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및 보고
- 시·도별 이전
 - 1) 시장·군수는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전 후의 시·도지사와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1) 이 관 조 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2)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용자취급기관)
 - 3)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 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라. 용자취급 및 지원계획, 용자실적 보고

- 농·수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자지원 및 자금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계통기관에 시달하고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용자취급기관은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20까지 유관기관과 계통기관에 통보 및 보고
- ※ 쌀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임차자금지원의 경우는 제외

마. 영농규모적정화사업실시요령의 적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영농규모적정화(농지매입·임차)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실시요령에 따름

바.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중 앙	도	시 · 군
총괄	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어촌인력과	농정국 농정과 (경기, 강원, 경북 : 농업경영과)	
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지관리과	농정국 농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발작물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산기술과	농정국 농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채소	원예특작국 채소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과수	" 과수화훼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유통특작과, 제주:감귤진흥과)	"
화훼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유통특작과, 제주:특작과)	"
특작	" 원예특작과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경북 : 유통특작과)	"
어업	수산청 어정국 어촌개발과	농정국 수산과 (전남 : 어업진흥과, 경남 : 어정과)	수산과, 어촌지도소

※ 쌀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임차자금지원의 경우는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 참고

< 붙임 >

【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 구입자금지원요령에서 정하는 농업기계
 - 기종별 용자금 지원조건은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름
- 시·도별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계획 : 별표 1과 같음.
- 농가당 지원액

(단위 : 천원)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부담	
23,500	5,875	5,875	9,400	2,350	
100%	25	25	40	10	

※ 농가당 사업비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농업기계는 보조 50%, 용자 40%, 자담 10%의 비율로 지원하고, 농가당 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군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농기계 구입비의 90%까지 보조금(지방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지원할 수 있음

2.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및 우선순위

- 1)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실시요령에 따른 농지 구입·임차실적이 있는 농가
- 2)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중 경영규모가 3.0ha이상인 농가
- 3)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실시요령에 따른 농지 구입·임차실적이 없는 농가
- 4) 쌀전업농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혹은 경영규모 3.0ha이상인 농가

※ 동일 그룹에 속하는 경우, 논 경영규모가 큰 농가순으로 지원

※ 단, 기계화 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3. 자금지원 절차

○ 쌀전업농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절차는 일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름

4.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동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액(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쌀전업농의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기계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여부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한다.

○ 농협장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시 농기계 구입 및 융자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매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 통지하고 농협 면세 유류관리대장 정리시에도 활용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및 영농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지원 실시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3년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등으로 사용이 어려워 신기종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른다.

5. 행정사항

○ 보고사항

	보고자	보고기한	서식
○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실적 보고(반기별)	시·도지사	'96. 7. 31 '97. 1. 31	별지 제7호 서식

시·도별 '96 전업농 지원계획

○ 쌀전업농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합 계	사 업 비						농지매입 임 차
			농 기 계			구 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농협용자	자 부 담	
계	10,000	549,500,000	235,000,000	58,750,000	58,750,000	37,600,000	56,400,000	23,500,000	314,500,000
서울	1	51,500	23,500	5,875	5,875	3,760	5,640	2,350	28,000
대구	31	1,209,500	728,500	182,125	182,125	116,560	174,840	72,850	481,000
인천	167	10,853,500	3,924,500	981,125	981,125	627,920	941,880	392,450	6,929,000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경기도	1,309	70,979,500	30,761,500	7,690,375	7,690,375	4,921,840	7,382,760	3,076,150	40,218,000
경북	1,482	26,526,000	11,327,000	2,831,750	2,831,750	1,812,320	2,718,480	1,132,700	15,199,000
충청	604	34,514,000	14,194,000	3,548,500	3,548,500	2,271,040	3,406,560	1,419,400	20,320,000
전남	1,578	81,318,000	37,083,000	9,270,750	9,270,750	5,933,280	8,899,920	3,708,300	44,235,000
전북	1,539	77,810,500	36,166,500	9,041,625	9,041,625	5,786,640	8,679,960	3,616,650	41,644,000
전라	1,796	97,582,000	42,206,000	10,551,500	10,551,500	6,752,960	10,129,440	4,220,600	55,376,000
경쟁	1,363	72,331,500	32,030,500	8,007,625	8,007,625	5,124,880	7,687,320	3,203,050	40,301,000
경제	1,130	63,324,000	26,555,000	6,638,750	6,638,750	4,248,800	6,373,200	2,655,500	36,769,000
미통지	-	13,000,000	-	-	-	-	-	-	13,000,000

1) 농지매입, 농지임차사업은 농가영농규모 적정화 사업비에서 지원

○ 발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어업전업농

(단위 : 농가)

	계	발작물 (식량작물)	채 소	과 수	화 훼	특 작	어 업
계	2,000	158	812	327	109	291	243
서울	4	-	1	-	3	-	-
부산	11	-	5	1	2	-	3
대구	6	-	5	-	1	-	-
인천	13	-	2	1	-	2	8
광주	5	1	1	-	3	-	-
대전	4	-	-	-	4	-	-
경기	191	-	85	30	34	38	4
강원	179	30	62	22	4	42	19
충북	142	12	54	36	4	30	6
충남	238	2	115	36	12	47	26
전북	194	25	93	25	12	24	15
전남	347	43	151	30	10	32	81
경북	327	18	133	98	4	59	15
경남	216	6	92	40	10	17	51
제주	63	21	13	8	6	-	15
기타 (중앙)	60	-	-	-	-	-	-

※ 농가당 지원기준 : 5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30~100백만원)

전업농어가 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쌀전업농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영능경력	100	○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3년 30점)
농업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대학졸업자 : 70점 - 농업계 전문대학졸업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63점 - 지역농과(지역농고·농고중 지역농과) : 56점 - 기타 : 42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30점 - 3개월이상 : 20점 - 1개월이상 : 10점 <p>※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도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p>
경영규모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쌀전업농규모×200 * 비재배경영규모에 한하며 전업농기준규모 이상은 200점
기계화수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에 필요한 기계보유상황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바인더 등을 모두 갖춘 농가: 100점 - 경운기, 이앙기, 탈곡기 등 기본적인 기계를 갖춘 농가: 50점 - 기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농가 : 0점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기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점 ○ 대형농기계 조작·정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점 ○ 경영여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 완료지역 : 20점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경작지간 거리가 500m이내로 집단화 : 40점 <p style="text-align: center;">< 가산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도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0점 - 기능사 : 10점 - 기사 : 20점 - 기술사 : 30점 ② 농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 실행 : 30점(최근 1년 이상의 장부가 있는자에 한함)
사업계획	100	○ 보통 40, 우수 70, 매우우수 100점
계	700	

○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 전업농

평가 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어 경력	100점	○ (신청품목경영경력-2) * 10점 (12년이상:100점)
농수산계학력 및 영농어 교육훈련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 : 100점 - 전문대학 졸업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수자 : 90점 - 지역농수산과(차영농고, 농수고 중 지역농과·지역수산과)졸업자 : 80점 - 고등학교 졸업자 : 70점 ○ 농수산계 이외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자 : 80점 - 전문대학졸업자 : 70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 50점 - 3개월 이상 : 40점 - 1개월 이상 : 30점 - 15일 이상 : 20점 - 7일 이상 : 10점 <p>※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p> <p>※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수산청, 각도, 농·축·수협 - 농촌진흥청, 수산청이 인정한 특농어가 농어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수산계학교 부설 영농어 훈련 기관
○ 경영규모(전업농 신청품목 경영 규모)	100점	○ (경영규모 / 전업농 규모) × 100점
○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기술수준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 ○ 대형농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 ○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경영여부: 보통 10, 적합 20, 최적 30 ○ 신청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없음 0, 기능사 20, 기사 40, 기술사60 <p>< 가산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 실행 : 30점 (최근 1년 이상 복식부기방법에 의한 장부기입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지난 1년이상 기간동안 경영성과 우수 : 20점 (장부기입결과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함)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계획 기계화 및 시설수준	100점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40, 우수 70, 매우우수 100점 ○ 완전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 ○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 ○ 기계 및 시설이 전혀 미비 : 0점 ※ 위 기준에 따라 적절히 평점
합계	700점	

< 별지 제1호서식 >

전업농 사업계획서
(쌀분야)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한자:)	주민등록번호	
쌀전업농신청여부	쌀전업농() 일반농가()		현재경영규모	평
자금지원 신청액	농지매매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임차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교환·분합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기계구입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어 기반

구 분	농 지 (평)			시 설		농 기 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평				
농 지 임 차	평				
농지교환·분합	평				

3. 앞으로 5년간 경영계획(발전업능 육성규모로의 발전계획)

연도별	경영규모 (평)	벼재배면적 (평)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 임차 : 계 :			
	○ 소유 : ○ 임차 : 계 :			
	○ 소유 : ○ 임차 : 계 :			
	○ 소유 : ○ 임차 : 계 :			
	○ 소유 : ○ 임차 : 계 :			

전업농 사업계획서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어업분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업농 신청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자금지원신청액	일반전업농자금: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농기계구입자금: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기반(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도별	규모	투자계획			비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앞으로 5년간의 경영계획(전업농 규모로의 발전계획)

< 별지 제2호서식 >

전업농어가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자 금 지 원(안)

- 첨부 : 1. 추천순위 결정근거
 2. 자금지원신청액 조정사유
 3. 추천 제외자 및 사유

1. 추천순위 결정근거

< (품목명) 전업농 >

추천 순위	성명	심 사 항 목 별 평 점						비 고	
		영농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재배기술 경영능력	경영규모	사업계획	기계화및 시설수준		평점합계

※ 비교란에는 대상자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해당사항,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기재

2. 자금지원 신청액 조정사유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신 청 액	조 정(안)	조 정 사 유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추 천 제 외 사 유

※ 전업농 신청자중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요건 미달(구체적 결격사유), 신청서 허위기재등 추천제외사유를 명시

< 별지 제3호서식 >

전업농어가 확정결과 보고

(시·군 19 년도 지원대상자)

1. 연령별

(단위 : 명)

전문품목	합 계	29세 이하	30~ 34	35~ 39	40~ 44	45~ 49	50~ 55	56세 이상
전 체								
(쌀)								
밭 작 물								
채 소								
- 노지채소								
- 시설채소								
과 수								
화 화								
특 작								
- 벼								
- 약용작물								
- 기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종묘배양								

※ 쌀전업농은 농지구입·임차자금 지원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내에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수준 기입

2. 성별 및 출신(농어민후계자 여부)별

전문품목	합 계			남 자			여 자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이외
전 체									
쌀									
발 작 물									
채 소									
- 노지채소									
- 시설채소									
과 수									
화 훼									
특 작									
- 버 섯									
- 약용작물									
- 기 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증묘배양									
- 기 타									

3. 학력별

전문품목	합 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농수산계	농수산계	농수산계	농수산계
전 체								
쌀								
발 작 물								
채 소								
- 노지채소								
- 시설채소								
과 수								
화 훼								
특 작								
- 버 섯								
- 약용작물								
- 기 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종묘배양								
- 기 타								

4. 분기별 지원대상인원

전문품목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 체					
쌀					
발 작 물					
채 소					
- 노지채소					
- 시설채소					
과 수					
화 췌					
특 작					
- 버 섯					
- 약용작물					
- 기 타					
어 업					
- 어선어업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종묘배양					
- 기 타					

< 별지 제5호서식 >

전업농어가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영농어사업계획(전품목 :)

세부사업	투 자 계 획			비 고
	지 원 자 금	자 부 담	계	

5. 지원자금 사업계획

세부사업	지 원 자 금 사 용. 계 획			비 고
	사 용 목 적	규 모	금 액	

위의 사업에 따른 용자금 사용계획을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농(어촌)지도소장 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대장
(농기계 구입 및 용자현황)

전 업 농 장	주 소	기증명	제 조 회 사	규 격 (형식)	농 기계 형식 표지 판의 제 조 번호	구 입 비 (천원)				구 년 월 일
						계	보조	용자	자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실적

1.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 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2. 사업비 지원

구 분	총사업비 (천원)	국 고	지 방 비 보 조			용 자	자 담
			계	도 비	시· 군비		
계 획(A) 예산확보 농기계 공급금액(B) 집행액(C) 미집행액 (B-C)							
비율	B/A	%					
	C/A						

※ 농기계 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 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주소	전문품목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원자금회수현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 ※ 1) 전업농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내에 명기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재촌전업, 도시이주, 무단이탈등으로 기재하고, 취소사유를 ()내에 기재

< 별지 제9호서식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평 사업내용 및 규모				
자 금 내 역	지 원 금 자 부 담 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군 농어촌지도소장 귀하

선도농업경영체 육성(공공)

1. 목 적

-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 일반농어가·법인 경영체의 발전 모델로 활용
- 일반 농어가와 농수산계 학생에 대해 현장감 있는 기술·경영교육 실시

2. 추진방향

- 개방화 속에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 경영를 통해 지역 농어업 발전을 선도해 온 농업경영체를 선발
- 「선도농업경영체」사업장을 발전 모델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 일반 농어가에 대한 견학실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모델을 효과적으로 전파
- 농수산계 학생에 대한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기회 제공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	70	80	100	100	600	950
사 업 비	계	-	3,500	8,000	10,000	10,000	60,000	91,500
	국고	-	-	3,200	4,000	4,000	24,000	35,200
	용자	-	3,150	3,200	4,000	4,000	24,000	38,350
	자담	-	350	1,600	2,000	2,000	12,000	17,950

나. '96 지원계획

○ 사업량 : 80개소

○ 사업비 : 1경영체당 80백만원(국고보조 40%, 국고용자 40%, 자담 20%)

○ 사업물량

- 경기 11, 강원 5, 충북 6, 충남 11, 전북 9, 전남 12, 경북 14, 경남 10,
제주 2

※ 품목별 선도농업경영체수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 결정하되,
수도작·수도작외 경종·시설작물·축산·어업 분야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발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예산

○ 시·도 : 대상자 선정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발전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 지원
-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 시설 지원

(2) 지원대상

- 가족 또는 법인경영체 중 생산기술·경영기법·시설장비·소득등에서 앞서가는 경영체로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 소 요 액 : 100백만원(경영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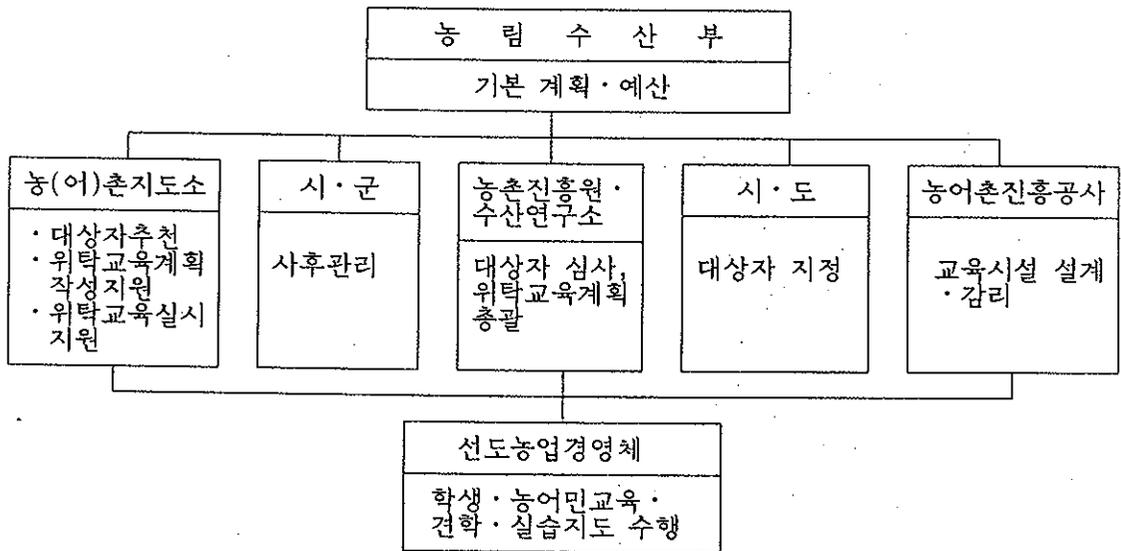
○ 재 원 : 국고보조 40%, 국고용자 40%(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기존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자금지원방법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은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에 의거 지원토록 할 것

(4) 사업시행 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가족경영체

- 당해 분야 영농(어)경력이 5년 이상이고, 경영규모·소득·시설장비·재배기술 및 경영능력등에 있어 전업농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어 가족경영체의 모델이 될 수 있고
- 경영주가 60세 이하로서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 농어가에 전파하려는 의욕과 실질적인 교육수행능력을 갖춘 경영체

<품목별 신청자격기준(예)>

- 농업소득 : 50백만원 이상
- 농업소득중 전문품목 소득의 비중 : 80%이상
- 경영규모, 기계·시설·장비, 재배기술

분 야	품 목	전문품목 경영규모	시설장비 및 재배기술
곡 물	쌀	10ha이상	일관기계화작업을 위한 대형농기계 보유, 조작가능
축 산	한 우	100두이상	축사시설자동화
	젖 소	50두이상	착유·사료급여자동화
	돼 지	1,000두이상	사료급여·분뇨처리자동화
	닭	40,000수이상	사료급여·급수·환경제어·집란·계분 처리 자동화
과 수		2ha이상	관배수시설 완비, 모노레일, 운반기, 저온 창고
채 소	노지채소	2ha이상	퇴비 사용, 기계화 작업
	시설채소	1,800평이상	자동화온실
화 훼	절 화 류	1,200평이상	자동화온실, 선별·포장·결속기, 저온저장고 (또는 저온처리실)
	분 화 류	900평이상	자동화온실, 운반차량
특 작	시설버섯	300평이상	자동화온실
	약용작물	2ha이상	저장·조제시설
어 업	어류양식	1ha이상	사료저장고, 어망부수시설, 어장관리동
	패류양식	3ha이상	어장관리선, 작업대
	해 조 류 양 식	5ha이상	어장관리선, 채취선, 가공처리시설

※ 자동화온실 : 온·습도, 환기, 관수등 환경자동제어 가능(비닐, 경질판, 유리온실)

※ 상기 신청자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으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도
농업경영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농업 소득 50백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장비를 파악, 자체기준 작성 사업 추진

○ 법인경영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기존의 위탁 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으로서 당해 분야 영농(어)경력이 3년 이상이며
- 경영(순이익)규모가 사원(조합원)수*품목별신청자격기준이상인 경영체
-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학생·농어민·다른 농업법인관련인에게 전파할 의욕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도능력을 보유한 사원 또는 직원이 있는 경영체

(2)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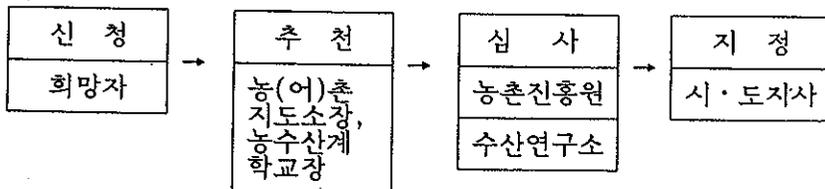
- 신청서 접수기관 : 대상자 추천기관(시·군농(어)촌지도소, 농수산계학교)
- 신청방법 : 시·군 농(어)촌지도소의 안내와 지원을 받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어민·학생교육계획)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전년도 8. 31까지 추천기관에 제출
 - ※ '96사업 : '96. 3. 15까지 신청서 접수, '96.6.15까지 대상자 '96사업대상자 확정 및 '97사업대상자 선정완료
- 구비서류 : 신청서(통합요령 제 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 1호서식),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농어업관련 기술 및 지도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국가기술 자격증 사본등)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경영규모·시설·장비·지도능력에 대한 종합평점결과가 높은자로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

(2) 선정절차



가)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장이 사업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전전년도 10.31까지 심사 기관장에게 제출

< 심사기관 >

- 농업분야 : 농촌진흥원
- 어업분야 : 수산연구소

나) 대상자 심사

- 심사기관장이 품목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지도국장(어업분야 : 수산연구소장)
- 위 원 : 품목별 주무과장, 소속 4~5급 공무원중 품목전문가, 농수산계 학교장등 5 ~ 10인

※ 필요시 품목주무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품목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 <별표 1>
- 심사기관장은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사업시행 전전년도 12.31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가 시·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선정완료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와 선도농업경영체에 의한 위탁교육계획을 사업시행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 보고양식 : 별지제 2호서식

라) 대상자 확정

- 시·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마. 사업시행

-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장비 구입확인서, 기숙사 혹은 교육장 건설계약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 (2)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설·장비구입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용자금관리자(농협 어업분야는 수협)에 통보
- (3)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설·장비를 교육목적외로 전용하거나 교육·견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용자금을 회수키로 하는 등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
- (4) 선도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수행
- (5) 시·도지사는 관내 선도농업경영체에서의 위탁교육계획을 총괄 조정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교육관리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장
- 점검
 - 점검자 : 시·군 농(어)촌지도소 소속 전담지도사
 - 점검시기 : 매월 1회 이상
 - 점검내용 : 교육수행상황, 시설관리상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 결과반영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교육기피 및 시설을 교육목적외로 전용시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 점검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분기별로 시·도지사에 보고
 - 시·도지사는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수산부에 보고

나. 보고사항

- 교육 수행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 사업익년도 1월 20일까지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인력과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원, 수산진흥원
- 시·군 : 산업과, 농(어)촌 지도소

< 별표 1 >

선도농어경영체 지원대상자 평가항목 및 평점방법

항 목	배 점	평 점 방 법	득 점
영 농 경 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단위로 5점씩 가산 - 20년 이상은 100점 ※ 당해 전문분야의 경력에 한함, 법인은 설립일 기준 경력산정 	
경 영 규 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신청자격기준규모)/신청자격기준규모 *70점 ※ 당해 전문분야의 경영규모에 한함 	
기 계 화 및 시 설 수 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 ○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 ※ 위 범위에서 적절히 평점 	
재 배 기 술 및 경 영 능 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 10점 ○ 대형농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일상적인 정비 가능 : 10점 ○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 10점 ○ 비용절약적인 생산기술 도입 : 10점 ○ 최근 3년간의 경영장부 기록실적 : 30점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기록한 장부에 의함) ○ 지난 3년간의 경영실적 : 30점 (복식부기방식으로 기록한 경영장부에 의해 증명가능한 실적에 한함) 	

항 목	배 점	평 점 방 법																							
교육 능력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력: 고졸 70, 전문대졸·최고농어업 경영자 과정이수 90, 대졸 100점 ○ 기타학력 : 전문대졸 50, 대졸 60 ○ 농장전학자 및 인근농가 교육훈련 실적 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등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교육의 강사경험등 최근 3년간 1회시마다 5점 (50점 만점) ○ 신청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사 20점, 기사 30점, 기술사 50점 																							
사업 및 교육 계획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546 803 889 909" rowspan="2">항 목</th> <th colspan="3" data-bbox="889 803 1130 852">배 점</th> </tr> <tr> <th data-bbox="889 852 971 909">상</th> <th data-bbox="971 852 1053 909">중</th> <th data-bbox="1053 852 1130 909">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46 909 889 977">1. 지역여건·사업간 연계</td> <td data-bbox="889 909 971 977">20</td> <td data-bbox="971 909 1053 977">15</td> <td data-bbox="1053 909 1130 977">10</td> </tr> <tr> <td data-bbox="546 977 889 1035">2. 자부담 비율</td> <td data-bbox="889 977 971 1035">20</td> <td data-bbox="971 977 1053 1035">15</td> <td data-bbox="1053 977 1130 1035">10</td> </tr> <tr> <td data-bbox="546 1035 889 1093">3. 사업계획의 적정성</td> <td data-bbox="889 1035 971 1093">30</td> <td data-bbox="971 1035 1053 1093">20</td> <td data-bbox="1053 1035 1130 1093">10</td> </tr> <tr> <td data-bbox="546 1093 889 1190">4. 5개년 교육계획의 정밀성</td> <td data-bbox="889 1093 971 1190">30</td> <td data-bbox="971 1093 1053 1190">20</td> <td data-bbox="1053 1093 1130 1190">10</td> </tr> </tbody> </table> <p data-bbox="546 1199 1130 1267">※ 사업장을 농수산계학생 실습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자에게는 30점의 가점 부여</p>	항 목	배 점			상	중	하	1. 지역여건·사업간 연계	20	15	10	2. 자부담 비율	20	15	10	3.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20	10	4. 5개년 교육계획의 정밀성	30	20	10
항 목	배 점																								
	상	중	하																						
1. 지역여건·사업간 연계	20	15	10																						
2. 자부담 비율	20	15	10																						
3.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20	10																						
4. 5개년 교육계획의 정밀성	30	20	10																						
계	700																								

< 별지제 1호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소		전 화 번 호	-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분야 및 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자금지원신청금액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기반(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 도 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앞으로 5년간 교육수행계획

※ 사업장을 농수산계 학생 실습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신청자는 추천학교와의
약정서 첨부

4.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 별지제 2호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및 위탁교육수행계획 보고(00도)

1.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및 위탁교육 실시 계획 (총괄)

분야 / 품목	지 정 수		위탁교육수행 실적·계획(연인원)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총 계				
분 야 별				
- 곡물				
쌀				
기타				
- 축산				
한우				
젖소				
돼지				
닭				
- 과수				
사과				
배				
감귤				
기타				
- 채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화훼				
- 특작				
- 어업				

2. 선도농업경영체별 현황 및 위탁교육 수행 계획

분야 / 품목	지 정 자	위탁교육수행계획
○○분야/ ○○품목	○ 성명(법인명) : ○ 전문품목 경영규모 : ○ 주소 : ○ 전화번호 : ○ 기술·경영기법등의 특징 (상세히 기록)	

농민학습단체육성 및 품목별 농민전문교육(공공)

1. 목 적

- 영농후계인력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농촌생활개선과 지역사회발전의 선도실천자 양성
- 지역 주산 성장작목 중심의 심층 기술교육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 경영진단 및 설계, 경영성과분석 등 농업경영 전문교육

2. 추진방향

- 농민학습단체 육성
 - 4-H회 : 영농 4-H 회원 중심 농촌후계인력 저변확대
 - 생활개선회 : 지도력 배양 및 지역사회활동 강화
 - 농촌지도사회 :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선도활동 강화
- 품목별 농민전문교육
 - 영농현장에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 농민애로기술 중점교육
 - 의식, 전문기술, 경영기법, 유통, 농정 등 단일 품목별 종합교육 실시
- 농업경영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연찬회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 농민학습단체육성 >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個會)	6,722	6,893	6,893	7,000	7,000	42,000	76,508
소 계	2,379	1,803	1,982	2,179	2,397	16,538	27,278
국 비	1,767	1,234	1,357	1,492	1,641	11,322	18,813
지 방 비	612	569	625	687	756	5,216	8,465

< 농민교육 >

(단위 : 천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천명)	-	-	941	1,000	1,105	1,768	4,814
소 계	-	-	9,669	10,635	11,698	14,565	46,567
국 비	-	-	2,311	2,542	2,796	4,773	12,422
지 방 비	-	-	7,358	8,093	8,902	9,792	34,145

< 농업경영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연찬회 >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개소)		191	173	170	170	170	1,020	1,894
사업비	소 계	228	128	126	164	214	3,552	4,412
	국비	114	64	63	82	107	1,776	2,206
	지방비	114	64	63	82	107	1,776	2,206

나. '96 지원계획

(1) 농민학습단체 육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부 담
계	207,832명	1,982	1,357	625	-	-
서울	3,205	12	8	4	-	-
부산	1,637	12	8	4	-	-
대구	1,317	12	8	4	-	-
인천	1,501	12	8	4	-	-
광주	1,047	12	8	4	-	-
대전	1,446	12	8	4	-	-
경기	27,415	281	193	88	-	-
강원	18,447	209	144	65	-	-
충북	13,252	137	94	43	-	-
충남	24,443	197	136	61	-	-
전북	18,155	185	127	58	-	-
전남	23,032	281	193	88	-	-
경북	37,848	281	193	88	-	-
경남	30,561	281	193	88	-	-
제주	4,526	58	36	22	-	-

(2) 품목별 농민전문교육 : 941천명 9,669백만원(국비 2,311, 지방비 7,358)

(3) 농업경영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연찬회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경 기	24	16,152	8,076	8,076	-	-
강 원	19	14,052	7,026	7,026	-	-
충 북	12	11,112	5,556	5,556	-	-
충 남	16	12,792	6,396	6,396	-	-
전 북	15	12,372	6,186	6,186	-	-
전 남	24	16,152	8,076	8,076	-	-
경 북	24	16,152	8,076	8,076	-	-
경 남	22	15,312	7,656	7,656	-	-
제 주	5	8,172	4,086	4,086	-	-
서 울	1	420	210	210	-	-
부 산	1	420	210	210	-	-
대 구	2	840	420	420	-	-
인 천	3	1,260	630	630	-	-
광 주	1	420	210	210	-	-
대 전	1	420	210	210	-	-
계	170	126,048	63,024	63,024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 농촌진흥청

나. 사업내용

(1) 농민학습단체육성

< 4-H 회 >

- 농심을 배울수 있는 과제 및 4-H 전통문화찾기 과제지도 : 1인 1과제
- 작목별 시범 4-H 증점 육성 : 272개소(생산활동 중심)
-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23천명

< 생활개선회 >

- 생활개선회 육성 : 171개회
- 생활개선 실천 강화 교육 : 10만명
- 도·농 농산물 교류 및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 개최 : 170회(시·군, 도)
- 지도력 함양을 위한 교육, 수련회 : 2,000명

< 농촌지도자회 >

- 농촌지도자 농장의 시범농장화로 후계세대의 교육강화 : 136개 농장
- 농촌지도자의 작목별 영농조직 육성 : 1,453개 조직(읍면당 1개소)
- 농산물품평회 및 수입개방대응 세미나 개최 : 10,000명(15개소)
-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찬회 개최 : 6개작목 300명

(2) 품목별 농민전문교육(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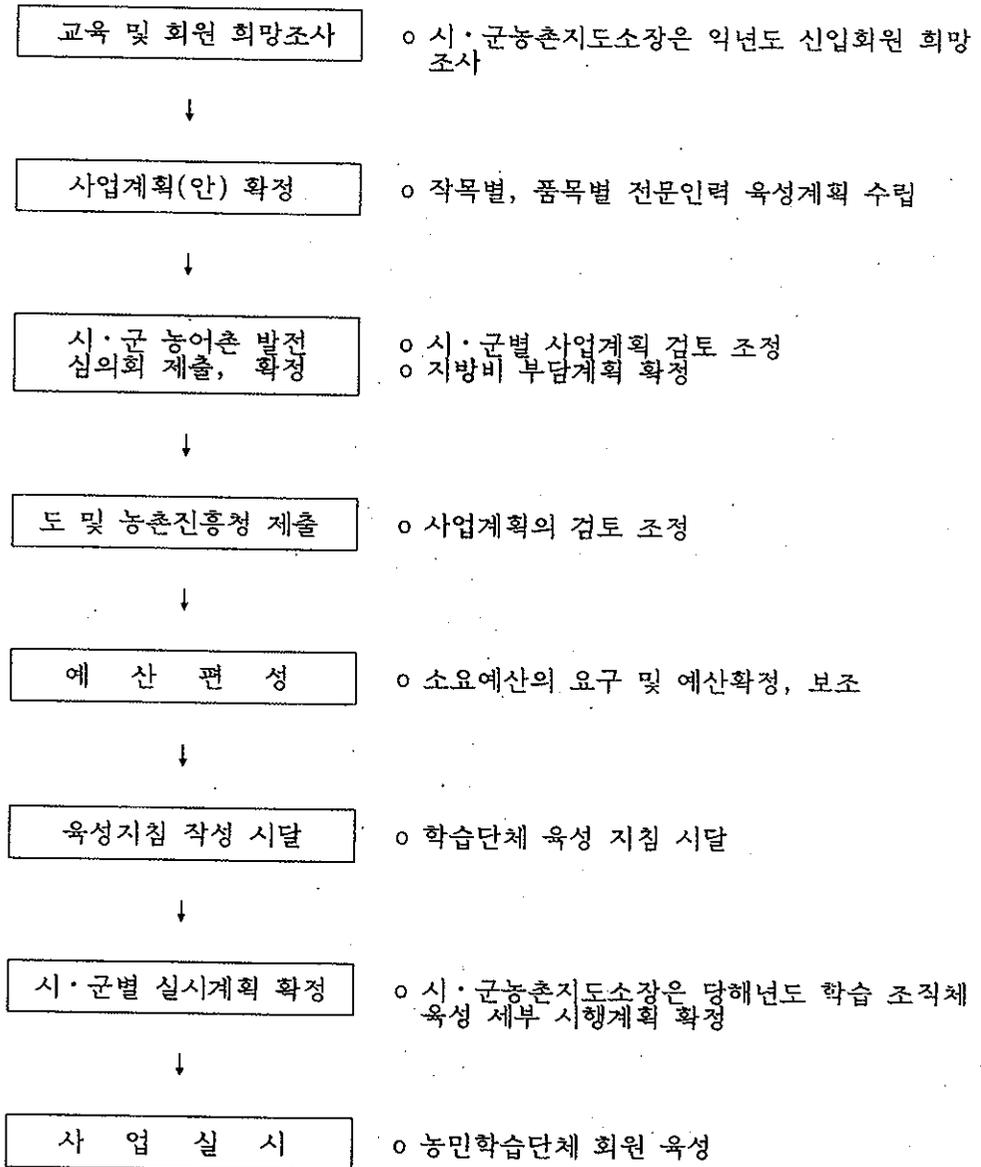
- 중앙(농촌진흥청) : 정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10천명)
 - 시책관련 교육 (1.4천명) : 전업농가, 선도개척농, 위탁영농회사요원
 - 실수요품목별교육 (3.6천명)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희망농가
 - 유관기관, 단체위탁 및 협력교육 (5천명) : 영농공개강좌, 농기계정비
기능사 보수교육
- 도(농촌진흥원) : 지역특화작목 전문교육 및 신기종 농기계교육 (20천명)
 - 시책관련 교육 (4천명) : 기계화영농사,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요원,
산업기능요원
 - 실수요품목별교육 (13천명) : 지역특화작목 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 (3천명) : 4-H시범농장교육, 선도지도자, 농촌여성
지도자교육
- 시·군(농촌지도소) : 현장애로기술 및 취약기술 실천과제 교육 (877천명)
 - 시책관련교육 (40천명) : 전업농가, 농기계실수요자, 농기계부녀자교육 등
 - 실수요품목별교육 (715천명) : 개방화대응기술 연중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등
 - 학습단체회원교육 (122천명) : 4-H회원과제교육, 4-H회원 진로지도교육 등

(3) 농업경영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연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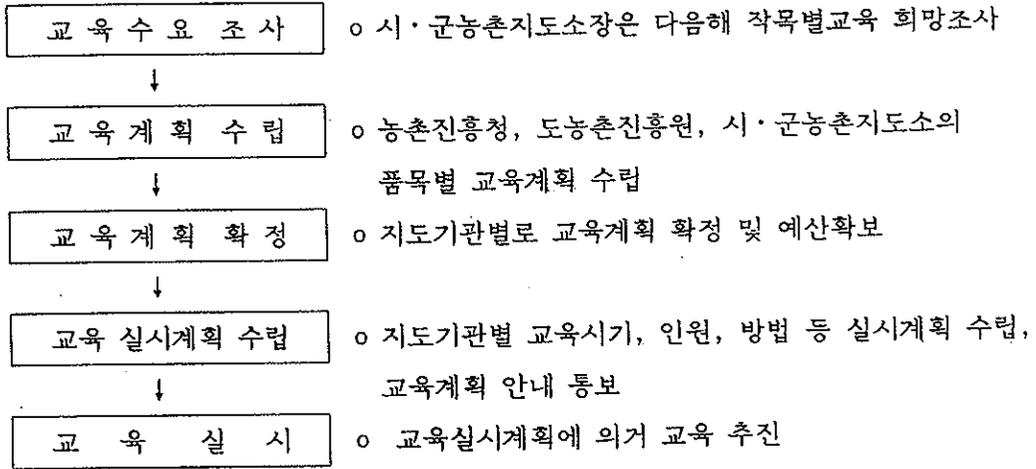
- 농업경영전문교육 : 161개소
- 농업경영연찬회 : 9개도

다.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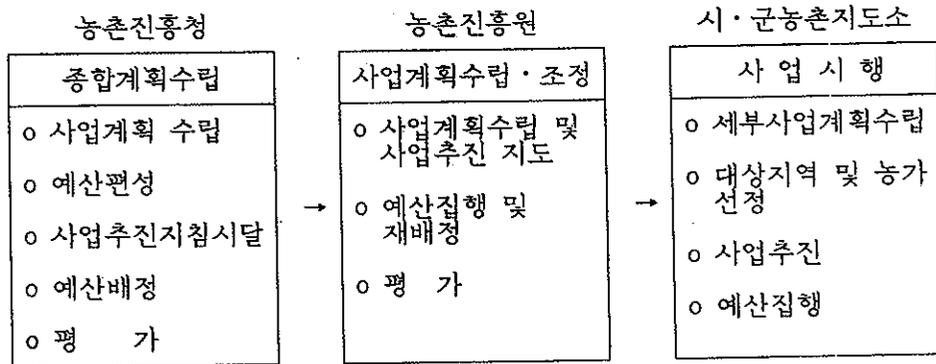
(1) 농민학습단체 육성



(2) 품목별 농민전문교육



(3) 농업경영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연찬회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촌진흥원장, 시·군농촌지도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사업평가회 실시
 - 교육 및 학습단체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 농민의 희망 및 개선사항을 익년도 사업에 반영

○ 보 고

- 농업경영전문교육 실적 : 사업시행년도 9월말까지
- 농업경영연찬회 결과 : 사업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업무 담당기관별 부서

○ 중 앙

- 농민학습단체 육성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지도기획과, 생활개선과
- 품목별 농민전문교육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기술연수과
- 농업경영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연찬회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시·도 : 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생활개선과, 시험국 경영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경영상담계

[별표 1]

품목별 농민 전문교육

교육기관별	과 정 별	시 기 (기간)	인원	· 교육 대 상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2~3월 (5일)	8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작목에 대한 영농경험이 있고 보다 새로운 기술 을 필요로 하는 자 ○ 시군농촌지도소에 서 교육희망수요 조사에 희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희망작목 수요조사결과정도 에 따라 과정보 설(배,포도 양봉,느타리 버섯 등) 	전일합숙교육 -주간: 강의,학 습견영환, -야간: 보교환, 청사각, 기타
"	전업농전 기술교 육	4~8월 (3일)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 육성자금 지원대상자중 채 소,발작물,과수, 화훼,특작분야에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선발분 야별전문과정 	"
"	선도개척 농교육	6~ 11월 (2개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 선도개척 농으로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분야별 전문교육 (경영종,축산,원 예) 	합숙교육, 신기술교육, 산교육, 유위탁교육 등
"	위탁영농 회사경 교육	3월 (3일)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영농회사대표 ○ 도단위 지도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영농회사 설립등기,회 계관리,채무,회 계정정시책 및 컴퓨터교육등 	전일합숙
"	농업기계 정비기능 사보수교 육	7월 (3일)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이전 농기계 정비기능사1급 자 취득자 및 갱신 자로서 등록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이후 신개 발농기계위주 교육 	비합숙 (경비자부담)
도농촌진흥 원 또는 시군농촌지 도소	산업기능 요원교육	3~ 11월 (3일)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산업안전기능 요원으로 편입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에서 후계자로서 배양 지도력교육,선 진지 견학 등 	비합숙 (강의+실습 +견학)

교육기관별	과 정 별	시 기 (기간)	인원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방법
도농촌진흥 원	개방화대 응선도지 도자교육	4~ 11월 (1일)	1500	○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등, 각급 농협단체 핵심 회원	○ 품목별 농민 조직	강의교육
도농촌진흥 원 또는 주산단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전문교육	3~ 12월 (1-2일)	도 자 확 정	○ 작목별주산단지 작원 및 농민 교육희망	○ 지역특화작목	지역별 실 정에 맞는 교육운영 방법선택운영 (핵심기술+ 경영설계)
각도농민교 육원	기계화영 농사교육	연중 (4주)	1000	○ 위탁영농회사요 원, 쌀전업농, 농민 ○ 농기계진흥지역의 영농농사자	○ 종합반편성 운영	합숙 (이론+실습 +평가)
각도농민교 육원	농업기계 이용요 요원	연중 (1주)	3000	○ 농업기계공동이용 조직기간요원 및 쌀전업농가	○ 트랙터, 이앙 기, 콤바인 등 단일기종반	합숙 (이론 +실기실습)
사군농촌지 도소	신규후계 자교육	4-10월 (2일)	1000	○ '96년도에 농민후 계자로 선정된 자	○ 정신교육 및 ○ 영농설계 및 진단요령	비 합 숙
"	경영기술 교육 연찬현	10-11월 (2일)	7500	○ 농민후계자중 경 영능력보강이 필요한 자	○ 품목별핵심기 술 교육 ○ WTO에 대응한 농정시책	"
"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한기 (2일)	1500	○ 농업기계공동이용 조직기간요원 ○ 신규농기계구입 실수요자 농가입 신청을 받은 전 농가	○ 신규농기계 기종	교육기종대상 자 운전조작, 점검기술 실기실습
"	농촌여성 특별교육	연중 (2-3일)	1000	○ 사군생활개선회 입원	○ 농촌건전가족 생활	집합식 강의 교육

교육기관별	과 정 별	시 기 (기간)	인원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시군농촌지 도소농부 락단위	농업기계 농부녀자 교육	농합기 (2일)	5000	○ 농기계 보유농가 부녀자 및 희망 부녀자	○ 점검요령, 기 초안전작업 및 기동 전선	실습위주교육
"	농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	3-11월 (1일)	2000	○ 주행성기종보유 농가 (트랙터, 경운기 등)	○ 도로교통법규 및 농기계 안전사용법	각종농기계 교육훈련시 병행 실시
지역별주산 지권역별 공공시설 주관: 시장, 군수	새해영농 설계교육	1~2월 (1일)	600 천명	○ 품목별 조직농민 ○ 주산단지농민 등 참여희망농민	○ 공통교과: 농 촌발전대 역농정 전문교과: 과 전정별전 교취, 약기 술애 기술 등	지역실정감안 실시
도별희망 주산지역	영농공개 강좌	3, 9월 (1일)	5000 명	○ 전문기술교육 참여 희망농민	○ 개방화대 응주산 성장 작목	이론강의병행 질의응답식 교육
대상부락, 오지부락	농기계순 회수리교 육	3-12월 (1일)	시군 자율	○ 주산지 취약지 부락 및 순 회교육 희망부락	○ 경운기, 이앙기 사용전 점검장 비 월동기 보관요령	수리요청농가 에게 고장 원인파 정비 수리 교육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	4-H회원 과제교육	연중 (1일)	1500	○ 핵심 4-H회원 및 영농후계 세대 회원	○ 과제 분야 별 교육	실기실습 위주교육
지역의학교 기업체, 농 공단지	4-H회원 진로지도 교육	연중	6000	○ 농업에 관심이 있는 4-H 회원	○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 관 확립	현장견학으로 체험교육
지역에서 선정된농장	4-H시범 농장교육	연중 (2-3일)	500	○ 영농정착의지가 있는 4-H 회원	○ 분야별 전문 과정	선진농장에서 실기실습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 (공공)

1. 목 적

- 영농정착 의욕과 사명감있는 후계인력에 대하여 실제영농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시킴으로써 농촌 선도핵심요원 양성
- 최신기술 실기실습 특별교육과정 운영으로 중견영농인에 대한 첨단기술 능력의 지속적 배양

2. 추진방향

- 순수 정예 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국형 전문대학 시범설치
- 기존시설의 적극활용과 첨단영농기술 배양
- 졸업후 영농종사 의무화, 농민후계자 및 병역특례자로 선발지원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04	합 계
계	12,720	9,887	5,588	5,923	43,795	77,913
시 설 비	11,529	5,486	-	-	-	17,015
장 비 비	962	2,665	-	-	-	3,627
교 육 비	229	1,736	5,588	5,923	43,795	57,271

나. '96지원계획 : 9,887백만원

- 실습시설보강 : 5,486
- 교육장비 및 기숙사 장비구입 : 2,665
- 교육비 등 : 1,736 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가) 설치학과 및 정원

- 학 과 : 6개과(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특용작물)
- 정 원 : 480명(40명 x 6개과 x 2년)
- 개교시기 : '96. 3월
- 위 치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1-1 (축산기술연구소 구내 초지)

(나) '96학년도 입학생선발

- 선발시기 : '96. 1~2월
- 선발대상
 - 고졸이상의 자로서 농촌지도소장 및 출신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방법
 - 필기시험,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종합실시

(다) 학사관리 및 졸업생 특전

- 학사관리
 - 입학금, 수업료 면제 및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 방학중 자가 및 지정된 농장에서 현장 실기실습 지도 등
- 졸업생 특전 및 의무사항
 - 졸업생 전문대학 학력 인정
 - 병역미필자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편입)에 의거 보충역 편입
 - 졸업생전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졸업후 4년간 영농종사 의무제 실시 등

(라) 특별과정 설치운영

- U-Turn 귀농자, 농민후계자, 전업농 등 장·단기 연수계획 수립 및 운용

(마) 교육시설

- 부 지 : 15,000평

- 시설규모 : 5,200평

- 본관 및 교육관 2,150 기숙사 2,300 후생관 등 750평

- '95년 설계 및 착공, '96년 완공

※ '96년 입학생 240명은 기존교육시설 이용

5.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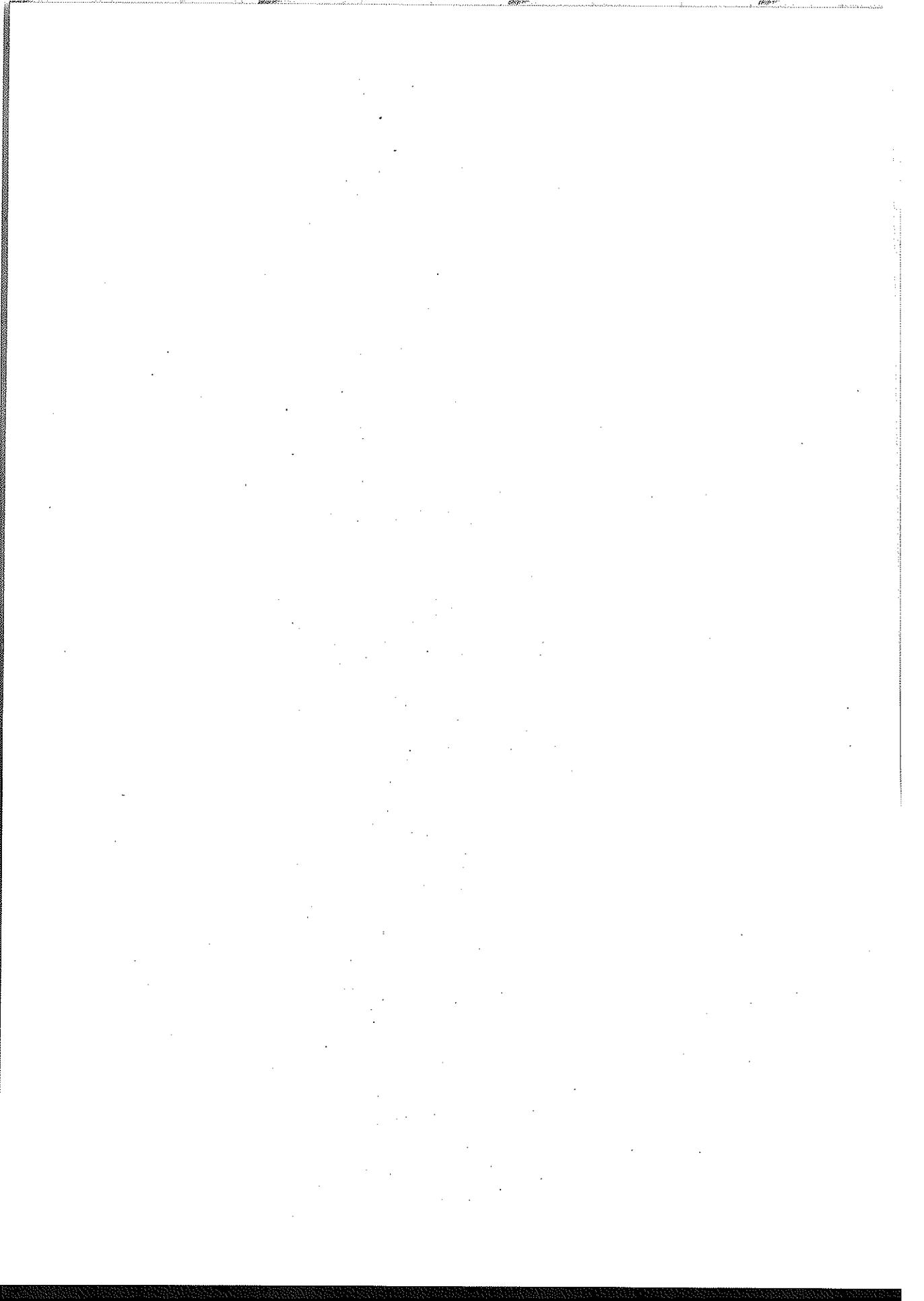
○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한국농업전문학교

- 도 : 농촌진흥원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2. 생 산 기 반 조 성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조사사업(공공)

1. 목 적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지역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별 영농유형 및 지역농민 의향등을 바탕으로 하는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맞는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이하 농지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조사대상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다만, 진흥지역밖이더라도 진흥지역과 일체적인 농지이용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대상지역으로 포함
- 농지정비계획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농어촌발전 기본방침 『농림수산부 구조27210-105('92.2.25)호』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세부지침 『농림수산 구조27210-179('92.4.1)호』의 우량농지 정비방향을 수용하여 수립
- 농지정비계획은 시·군단위 행정구역내의 진흥지역을 지형·수리 및 영농조건에 따라 몇개의 지구로 구분하고 지구별로 농지정비계획을 수립
- 농지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합 계
사 업 량		천ha 652	191	189	-	-	1,032
사 업 비	계	5,391	1,600	1,588	-	-	8,579
	- 국 고	5,391	1,600	1,588	-	-	8,579

나. '96 지원계획

- 조사대상 시·군 : 34개 시군
- 조사면적 : 189천ha
- 사업비 : 1,588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농어촌진흥공사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전국을 3,300개 영농권으로 구분 계획 수립
- 농지이용현황 및 이용방향 조사
- 생산기반현황, 농업시설, 생활환경시설등 관련시설 현황 및 정비방향 조사
- 지역농업발전방향에 대한 주민의향조사를 토대로 발전방향 설정과 농지이용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에 따른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 :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
 -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 : 경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농도정비, 수리시설개보수

(2) 지원대상 : 농어촌진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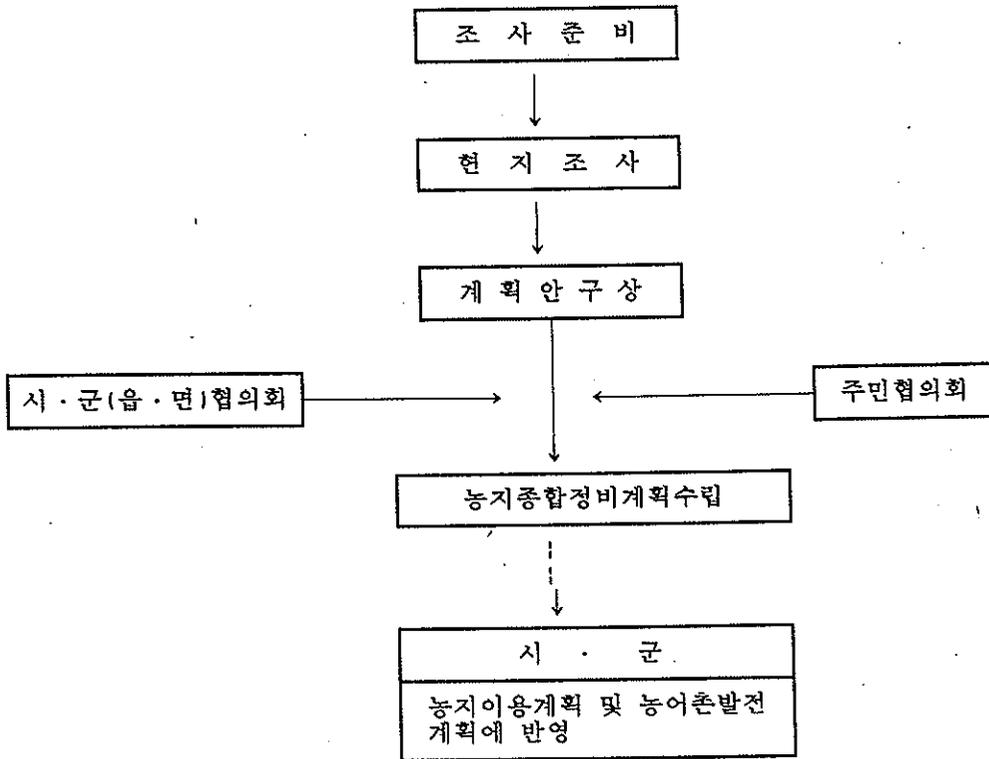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사비, 인건비, 경비, 관리비등 보조
- 지원조건 : 100 % 국고 보조

(4) 사업시행 체계

- 계획수립을 조사준비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시행

<계획수립 절차도>



5. 사업 대상지 선정

-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밖이라도 농업진흥지역과 일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6. 계획수립 방법

가. 조사준비

- 조사지역의 지형도 등 관련도면 및 자료수집
- 현지조사를 위한 예비도면 작성

나. 현지조사

- 농지이용현황조사
- 농가의향조사
- 생산기반현황조사
- 관련시설조사

다. 농지이용계획수립

- 토양특성, 경사도, 토양배수, 유효토심, 경지정리, 수리상태, 생산기반정비상태, 주민의향등을 토대로 수립
- 농지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수립
 - 경종농업지구 : 답작전용지, 전답겸용지, 전작전용지로 세분
 - 시설농업지구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시설 설치지역
 - 과수지구 : 과수, 유실수 등 집단지역
 - 축산지구 : 축산단지화가 필요한 지역
 - 취락지구 : 농가집단지화가 필요한 지역

라. 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어촌용수, 도로정비, 용배수로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각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 마을집단지화, 취락배수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실시요령 및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등을 근거로하여 수립

○ 부문별 계획수립

- 경지정리

- 신규 경지정리, 재정비(대구획, 일반) 및 경지정리등으로 구분 수립
- 구획의 형상, 면적, 주요도로 배치계획

- 배수개선

- 지표배수와 지하배수로 구분 수립

- 농어촌용수개발

- 농지이용계획에 따른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축산용수등이 부족하여 신규 및 보강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로정비

- 경지정리 신규 및 재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농도를 대상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노면이 불량한 도로

- 용배수로 정비

- 경지정리 신규 및 재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으로 물 손실이 많은 토 공용수로 또는 사면이 붕괴되기 쉬운 배수로

- 수리시설개보수

-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재해의 위험이 많은 시·군, 농조수리시설 및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 투자계획

-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사업별 표준 사업비 사용

- 농어촌구조개선대책 투자재원을 근거로 진흥지역의 지구(Code No)별 단위사업별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조사결과를 시·군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활용
 - 시·군별 농어촌발전계획의 생산기반정비 증장기계획으로 활용
 - 시·군별 농지이용계획 수립자료로 활용
 - 시·군단위의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기본자료로 활용
 - 지역별 투자우선 순위 결정 및 개별사업시 항시 활용

나. 보고서 제출

-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서
- 농지이용계획도(1:25,000)
-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도(1:25,000)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지관리과
- 농어촌진흥공사 : 농지이용사업처 진흥지역개발부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어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2) 지원조건

-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등 기타
- } 국고 100%

○ 개 답 : 국고 50%, 자부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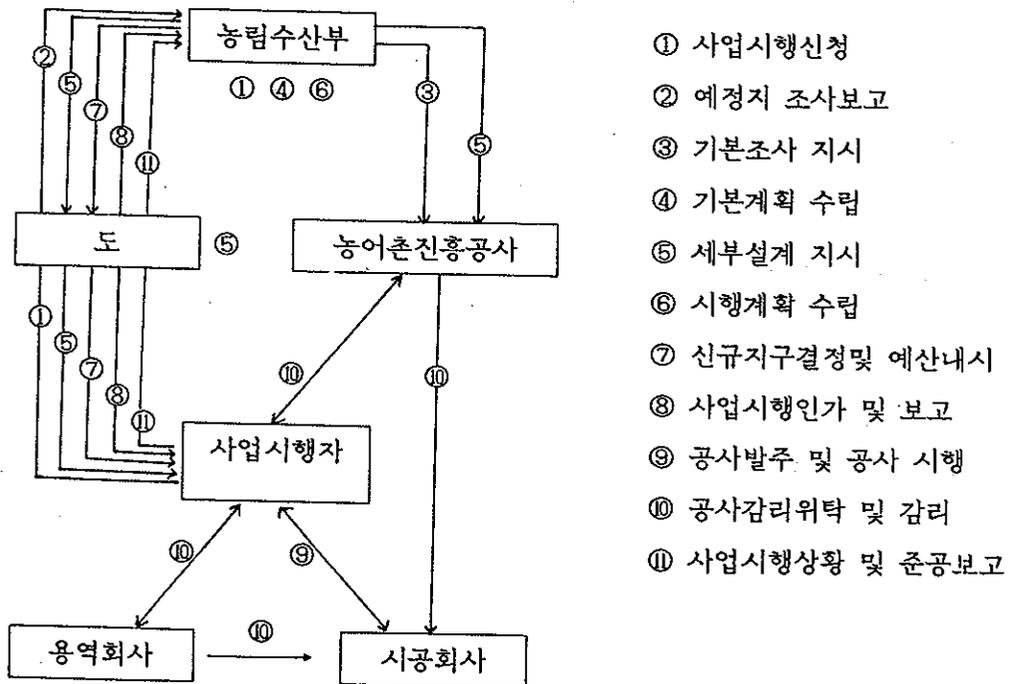
(단, '95이후 신규지구에 대하여는 자부담 100%)

5. 사업추진절차

가.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은 사업신청,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및 시공 순으로 함.

나. 사업시행체계도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사업대상지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고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는 지구
- (2)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 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하에 선정 (도시개발계획등에 포함되어 타용도로 전용될 지역은 제외함)
- (3) 농어촌용수자원 기초조사가 되어있는 지구 우선
- (4)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 우선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 (가) 저수지 위치 선정은 지역의 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검토 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 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파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함.

(2) 양수장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압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가능한한 계획에서 제외함.

(나) 소형수로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다. 예정지조사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3)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농업진흥지역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 (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등)

○ 지역주민 의견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 (매년 3월말 까지)
- (2)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3) 농어촌진흥공사장은 구체적인 기본조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 (4) 기본조사업무는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분석하고, 주요시설 계획에 대한 비교설계를 거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함.
- (5)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 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6)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7)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TC/TM에의한 집중물관리시스템(홍수에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등)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8)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 설계 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 효과
 - 사업지구 현황 (진흥지역 지정,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등)
 - 개발계획 내용과 주요공사

- 사업시행 여건 (지역주민, 시장, 군수, 농조장 의견, 연관사업, 제약사항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9)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계획내용을 보완토록 함.

(10) 농림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에정자에게 기본계획서를 송부함.

마.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1)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함.
다만,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업무는 다음과 같이 년도별로 시·도지사 책임으로 실시함.

- '96년도 : 수혜면적이 300ha 미만인 지구
- '97년도 : " 600ha 미만인 "
- '98년도 이후 : 전 사업 지구

(2) 시·도지사 책임으로 세부설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 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시도지사 및 농어촌진흥공사는 위임 및 위탁받은 세부설계에 대한 공정계획과 추진상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4)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사업계획상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함.

(5) 주요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시에는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의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용역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6) 구조물의 설계시에는 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등 설계방법을 명시함.
- (7)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 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부장관이 직접 설계기관을 지정한 지구의 세부설계는 장관이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도서를 송부함.)
- (8) 농림수산부장관은 중장기계획 및 예산확보상황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함.
- (9)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예산내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96년도는 수혜면적이 300ha 미만인 지구)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지구 선정

- (1)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숙원사업지구로서 소요사업비가 ha 당 60백만원 이하(생활용수 공급분을 제외)인 지구, 다만 지역개발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신규개발 면적 비율이 50 % 이상인 지구 (50 % 미만인 경우는 보강개발로 시행)
- (3)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이 가능한 지구 우선
- (4) 사업효율이 양호한 지구 우선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다.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선, 용수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함.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사업비가 부족한 지구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비 또는 타지구에 배분된 사업비에서 조정하여 년내 준공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증가에 대하여는 국고추가지원 또는 지구간 사업비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라. 시행계획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보완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 수혜면적이 10 %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나) 공사비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 %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가된 공사비를 국비이외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제외함)
 - (다)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라) 터널,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마)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바) 댐, 여수로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계획변경시에는 변경요인을 분석하여 불가변동 및 불가피한 여건변동등에 인한 계획변경 이외의 공사비 증가액이 당초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 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4) 시·도지사가 시행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마.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함.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물 보상 등을 할 수 있음.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물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물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하고 임대 경작케할 경우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함.

바.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6)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 일지를 기록하게 함
- (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함.

사. 자재 공급 및 관리

- (1) 자재의 관급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5.7.6)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2)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하여야 함.
- (3)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 (4) 구매공급하는 기자재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송되면 사업시행자는 품질 및 수량을 확인 검수하여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하고 보관창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 (5) 기자재 출고시에는 공사감리원의 출고요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출고수량을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한 다음 출고하여야 함.
- (6) 사업시행자는 지급자재의 구매공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분기말 일월 10일 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

아. 풍수해 사전대비

- (1)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2)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함.
- (3)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를 검토하여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함
- (4)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자. 검 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2) 사업시행자는 (1)항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공사감리 위탁기관 포함)을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차. 타법 관련사항

- (1)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 면허는 농어촌 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 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 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 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2)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소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절차에 의거 국 (관리청:농림수산부)으로 등기하여야 함.

8. 사업비지원

- (1)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3) 시·도지사가 예산을 배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5)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6)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 집행상황을 매분기 말 현재로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 (7)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8)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농지개량조합, 시·군등)에 대하여는 여타 농어촌용수관련사업비 및 유보예산지원시 확대지원방안을 강구함.

9. 행정사항

가. 예산신청

- (1)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예산확정 또는 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농림수산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농림수산부)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어촌용수과
- 도 :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 군 : 건설과, 산업과

라. 사후관리

-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시설물을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용수개발사업예산배정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요 시설명	주요 면적 (ha)	총사업비	년까지	년 계 획				비 고	
	군	리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계													

주) 비교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 지구별로 구분표시함 것.

[별지 제2호서식]

월중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도

년 월 일 (단위 : 천원)

농조명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도지급 수령액	농 조 자 금 집 행 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보상비	기 타	계	

용수개발사업추진상황

도

위시		사업시행지		지구명	구분	시점명	용리면적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망해년도예산			실행액	진도(%)		작공이후누계실행	비고 (부신시사유)
								개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계																				

단위: 천원, 년 월 일 현재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으로 구분
 2. 시점명 : 지수지, 양수정, 보, 진수업거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호서식]

용수개발사업보완계획승인보고 및 승인신청시 도지사가 첨부할 서류

1. 보완계획승인공한사본
2. 보완계획승인신청내용(장관에게 승인신청시에만 첨부) (별첨㉔서식)
3. 심사서(기술 및 관리)
4. 사업계획 개요
5. 사업비 수지에산포 및 수지에산 증감대비표
6. 보조금 산출내역
7. 보조금 재원별 내역
8.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등 사무비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증감사유 명기)
9.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10.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11. 지급자재조서
12. 공사수량 이동초서(별첨㉕서식)
13. 보완계획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에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14.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서식 ㉔]

보완계획승인신청내용

공 종	당 초 계 획	보 완 계 획	도지사 검토의견

※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만 기재한다.

[별지서식 ㉔]

공사수량이동조서

공정	규격	단위	공사수량		증감내역			사유
			당초	변경	수량	단가	금액	
소계	잡비기타 (%)							잡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계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능 조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 급	성 명		

주) :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자 재 수 불 부

건	개		년월일	종	범	규	수		인	출			부	
	적	당					입	회		금	회	호		수

중규모용수개발사업지급자재공급추진상황

도	조합지구명	소재명	중소요량 (A)	분기별 계획 (B)												비고 (부진시 사용)
				1/4		2/4		3/4		4/4		(B ÷ A) 누계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양 피 권 근 기계, 전기	대 농 조													

년 월 일 현재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공공)

1. 목 적

수혜면적 50 ha 미만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용수 등을 원활히 공급하고 안전, 편의영농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함.

2. 추진방향

- 가.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나.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다.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3. 투용자계획

가. 연차별 투용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계
○ 사업량 (준공)	ha 674	ha 394	ha 718	ha 800	ha 851	ha 3,437
○ 사업비	36,206	10,475	16,143	20,286	20,143	103,253
- 국 고	25,344	7,332	11,300	14,200	14,100	72,276
- 지방비	10,862	3,143	4,843	6,086	6,043	30,977

나. '96지원계획

- 착공년도가 오래된 지구에 우선 집중지원하여 사업 조기준공 도모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 농어촌용수와
시·도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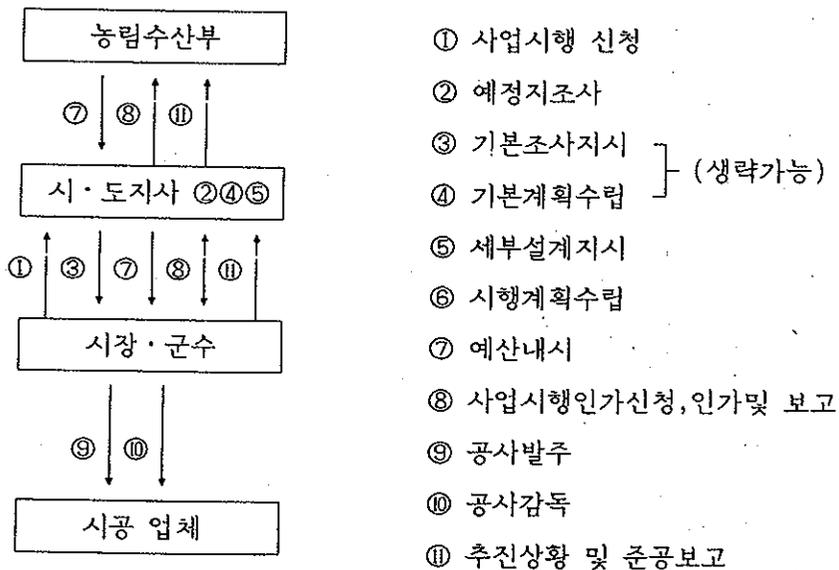
다. 사업내용 : 개발면적 50ha 미만 지구에 소류지, 양수장, 취입보등 설치

라. 지원조건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93이전 시행지구	100 %	70 %	30 %
'94이후 신규지구	100 %	-	100 %

5.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시행체계도



- ① 사업시행 신청
- ② 예정지조사
- ③ 기본조사지시
- ④ 기본계획수립 } (생략가능)
- ⑤ 세부설계지시
- ⑥ 시행계획수립
- ⑦ 예산내시
- ⑧ 사업시행인가신청, 인가및 보고
- ⑨ 공사발주
- ⑩ 공사감독
- ⑪ 추진상황 및 준공보고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효율 및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지역
- (2) 가뭄우심지역을 우선 선정

나.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 또는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다. 기본조사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이 시급하거나 세부설계시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세부설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하게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 시행

- (1) 신규사업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세부설계 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
- (2)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추진
- (3)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9호 서식)
- (4)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규사업 규모에 따라 여타 농어촌용수 관련 사업비를 확대 지원을 강구함.

나.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시행
-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 이전에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
- (7)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족 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증가된 사업비는 국고 또는 지방비를 추가지원하거나 기배정된 타지구에서 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 (8)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대중규모용수개발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다. 시행계획의 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보완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보완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3)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시 첨부할 서류는 대중규모용수개발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참조)

라.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 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용역업체에게 의뢰하여 시행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완공시까지 공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도의 기술진은 중요공사 시공시 반드시 입회 지도 감독하여야 함.
- (3) 시공시에는 무리한 공정계획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전, 공사중 및 완공후의 현장사진(전경, 근경 12×8cm 칼라)등 기록을 보존함.
- (5)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마. 용지매수및 보상, 자재공급 관리, 풍수해 사전대비, 타법관련사항등

- (1)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준함

바. 기술지원

-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시·군에서 예정지조사, 세부 설계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전문분야에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지원함.
- (3) 시·도지사는 기술지원비에 대하여 실비정산할 수 있음.

사.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8. 사업비 지원

- (1)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2) 시·도지사는 내시된 사업비를 지구별로 배정함. 지구별 사업비 배정은 준공위주로 우선 배정하고 계속지구는 사업효과 조기 거양 또는 공사중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예산배정함.
- (3) 시·도지사는 소요 지방비 전액을 확보지원 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지구별 사업비 배정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대중규모용수개발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5) 시·도지사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지확인, 지도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6)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여타 농어촌용수관련 사업비및 유보예산지원시 확대지원방안을 강구함.

9. 행정사항

가.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 : 사업시행인가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 예산배정 결과 보고 : 예산배정 또는 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 추진현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 시행계획변경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나. 사업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용수과
- 도 :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 군 : 건설과, 산업과

다. 사후관리

- 사업시행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일반용수개발사업계획인가결과보고

도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지구수	면적(ha)			중수량 (M/T)	총사업비	제원			지출내역					비고											
		계	신규개발	보충수			개담	국고	시도비	시군비	저당	순공사비	지급품비	용지배수 포상비		축설 공기비	관리비	기타								
계																										
지표수개발 (신규)																										
저수지																										
양수장																										
보																										
지표수개발 (보강)																										
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공공)

1. 목 적

기존 수리시설에 의한 급수답 중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보강 개발하여
용수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

2. 추진방향

- 가뭄 상습지로서 사업효과가 크고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지구 우선 시행
-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하여 준공 위주로 집중 투자

3. 투용자 계획

가. 연차별 투용자 계획

(사업량 : 천ha,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 ~2004	2005 이후	총 계획
사업량	5.7	1.8	1.6	6.4	11.4	38.8	60.0	125.7
사업비	52,601	16,906	21,429	84,480	149,502	512,706	777,894	1,615,518
- 국 고	36,821	11,834	15,000	59,136	104,652	358,894	544,526	1,130,863
- 지방비	15,780	5,072	6,429	25,344	44,850	153,812	233,368	484,655

나. '96 지원 계획

- 사업량 : 78 개소
- 사업비 : 21,429 백만원
 - ┌ 국 고 : 15,000 "
 - └ 지방비 : 6,429 "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관 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각 시·도 농정국 농정과 및 기반조성과

나. 사업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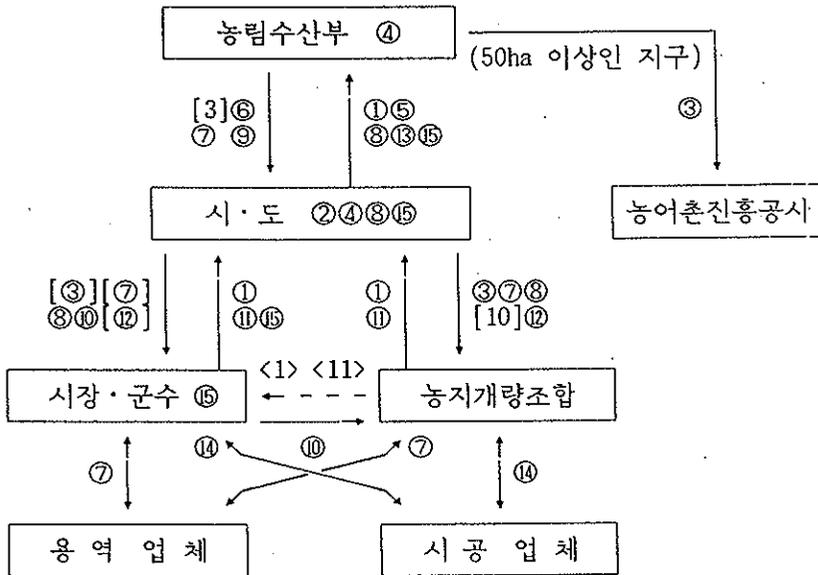
다. 사업 현황

- (1)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의 추가 설치, 저수지 제당 덧쌓기, 여수로 확장 및 덧쌓기, 양수장 규모확장, 취입보 덧쌓기 및 연장, 취수시설의 증설 또는 확장, 집수암거, 유공관 증설 등
- (2)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5.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시행은 사업시행 신청,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및 착공의 순으로 함
- (2) 사업시행체계도



- ① 사업시행 신청<협의>
- ② 예정지 조사
- ③ 기본조사 실시 지시[통보]
- ④ 기본계획 수립(50ha 이상은 장관)
- ⑤ 사업예정지구 협의신청(50ha미만)
- ⑥ 사업예정지구 협의 통보
- ⑦ 세부설계실시 지시[통보] 및 용역
- ⑧ 시행계획수립·승부·보고
- ⑨ 신규지구 선정 및 예산내시
- ⑩ 지구별 예산내시[통보]
- ⑪ 사업시행인가 신청<협의>
- ⑫ 사업시행인가[통보]
- ⑬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⑭ 공사 도급 계약
- ⑮ 년도말 검정 및 결과 보고

6. 사업계획의 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사업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효과 및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지구
- (2)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용수 부족 지역의 시설물 보강지구를 우선 선정
- (3) 기타 사항은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을 준용함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의 농업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댐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2) 양수장

-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 유심변동 등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중 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가능한한 수혜구역에서 제외
- (나) 소형 수로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

다.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과 신규시설의 설치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되, 기존시설의 보강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도록 하고, 신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함
- (2) 농림수산부장관은 수혜면적이 50 ha 이상인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함

- (3) 수혜면적이 50 ha 미만인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함
- (4) 기본조사 대상지구의 선정기준은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5) 기본조사는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고, 주요시설 계획에 대한 비교설계를 거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 (6) 기본계획서의 내용은 대중규모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지침을 준용함
- (7)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은 기본조사에 의거 사업예정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기본계획서를 송부함

라.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1) 농림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구는 세부설계에 착수할 지구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함
- (2)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구는 세부설계를 착수할 지구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3)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설계에 착수할 지구를 통보받거나, 협의 통보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 중에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 세부설계 실시를 위탁하고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세부설계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지구 선정

- (1) 신규개발 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지구 (50% 이상인 경우는 대중규모 용수개발로 시행)
- (2)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이 가능한 지구
- (3) 사업효율이 양호한 지구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다. 공정계획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라. 시행계획변경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마. 용지매수 및 보상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바. 공사감리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사. 자재 공급 및 관리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사. 풍수해 사전 대비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아. 검사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바. 기술지원

- (1)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정지 조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지원함
- (3) 시·도지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기술지원에 따른 발생경비에 대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음

8. 사업비지원 :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9. 행정사항

가. 보고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및 농정과 (시·군 : 건설과)
- 농지개량조합 : 관리과 또는 개발과

다. 관리비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등 기타 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는 일반관리비 요율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라. 사후 관리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마.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바. 사업평가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 평가 실시요령(농림수산부훈령 제825호)에 의거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지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음

지하수개발사업(공공)

1. 목 적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가뭄 우심지역에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

2. 추진방향

가. 일반지하수 및 수맥조사 : 농업진흥지역내 가뭄우심지역으로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나. 제주도지하수개발

(1) 지하수개발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단계적 사업추진

(2) 해수침투조사사업 : 관측정은 당해년도 개발공을 최대한 이용하고 필요시 신규 관측공을 설치하며, 관측용장비는 최신장비 설치를 원칙으로 함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사업량 : ha, 사업비 : 백만원)

사업별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계	사업비	140,587	13,562	11,611	35,980	36,765	226,416	464,921
일 반	사업량	26,614	500	500	1,200	1,200	8,500	37,814
	사업비	106,300	7,000	7,000	30,350	30,350	187,626	368,626
수 맥	사업량	59,338	7,400	4,700	5,000	5,000	32,562	114,000
	사업비	17,247	5,382	3,431	3,650	3,650	23,790	57,150
제주도	사업량	313공	12	12	20	28	158	543
	사업비	17,040	1,180	1,180	1,980	2,765	15,000	39,145
	-국고	9,242	640	640	1,080	1,505	8,690	21,357
지하수	-지방비	7,798	540	540	900	1,260	7,110	17,788

나. '96지원계획

- (1) 일반지하수 : 7,000 백만원 (대형관정 5,000, 집수정 2,000)
- (2) 수맥조사 : 3,431 백만원
- (3) 제주도지하수 : 640 백만원 (지하수개발 540, 해수침투조사 100)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시.도 기반정비과(농정과)

나. 사업시행자

- (1) 지하수개발사업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발조합장
- (2) 수맥조사사업 : 농어촌진흥공사
- (3) 해수침투조사사업 : 도지사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지하수개발

- 대형관정 : 수원공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시행
 - . 수원공시설 : 지구답사, 착정공사(그라우팅 포함), 우물자재설치, 양수시설 및 수질검사 등
 - . 이용시설 : 수중모타펌프, 전기시설, 양수장옥, 송.배수관, 물탱크, 정수시설 등

< 시 설 기 준 >

우물구경(mm)	150	200	250
착정구경(mm)	200	250	300
착정심도(m)	50 ~ 100 (제주도 100 ~ 250)		

※ 암반관정의 기준채수량(제주도지하수개발 제외) : 250톤/일/공,
단, 도서 및 해안지역, 산간오지로서 대체수원개발이 불가능한
특수지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50톤/일 까지 조정 시행가능

- 집수정

- . 심도 8m내외 구경 3,500mm, 채수량 4,000~7,000톤/일

○ 수맥조사사업

- 지하수 조사

- 답 사 : 현지여건 및 기존 조사자료 정리
- 지표지질조사 : 분포지질과 관련된 지하수 부존성 검토
- 기설관정조사 : 지하수 부존량 및 지하수위, 수질, 사용수량등 확인
- 선 구조 추출 : 위성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지질구조 파악
- 물 리 탐 사 : 대수층 심도 및 지하지질 구조조사 (전탐 또는 탄성파 탐사)
- 수위관측공설치 : 지구내 지하수유량 및 지하수위 확인
- 시 추 조 사 : 지하지질 및 지하수위 확인
- 착정 및 양수시험 : 대수층의 수리학적 특성과 지하수 이용가능량 확인
- 수문 및 토질조사 : 지표수와의 관계, 개발가능면적, 이용시설 설계

- 수리지질도(수맥도)작성

지하수조사 성과품은 조사보고서와 도면으로 발간하되 수리지질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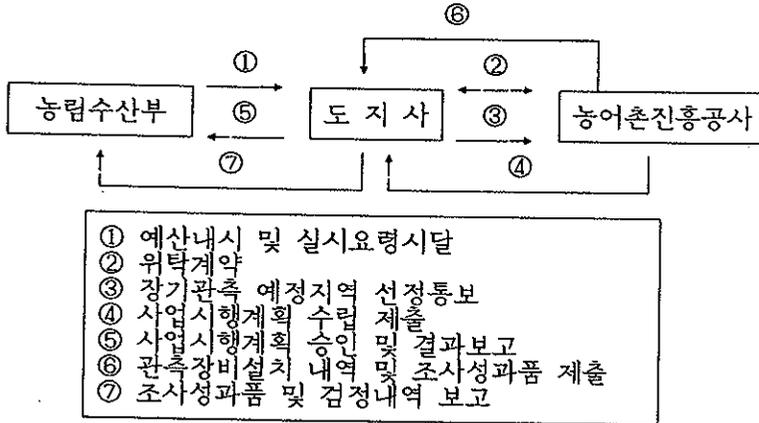
- 지형, 지하수위, 수질특성 및 기반암 추정 등고선
- 가능 채수량 분포도 및 지하수개발시설 지하수개발가능 지역
- 지질도, 지질단면도
- 시추 주상도 및 제 양수시험자료
- 조사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압별 전원거리
- 개발적지에 대한 공종별 추정사업비
- 제 조사지점의 위치 및 기타 지하수법 및 총리훈령(제304호)에규정된 사항등

○ 해수침투조사사업

- 지하수 관측정설치 및 개발.이용 보전에 필요한 해수침투 및 채수량감소 등의 관측조사

다. 해수침투조사 사업

- (1) 예산내시→위탁계약→지구선정→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조사시행→성과품 제출
- (2) 사업시행체계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공통사항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우심지역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원칙
- 수맥조사가 시행되었거나 개발년도에 수맥조사 시행가능 지역(지하수개발)
- 최근 2-3년간의 가뭄현황을 분석하여 특별히 가뭄우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순위 변경은 가능

(2) 집수정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자갈,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다량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지하수 함양원이 되는 넓은 유역이 있고 하상의 경사가 완만한 지역

(3) 해수침투조사사업

장기관측 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도지사가 위탁 시행기관과 협의 선정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1) 수맥조사가 시행되었거나 개발년도에 수맥조사 시행가능 지역 (지하수개발)
- (2) 안정지하수위 결정 및 이에 따른 수중모터.펌프와 스트레나 등 주요시설물의 위치 및 사양 결정 대하여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함 (지하수개발)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 지하수개발

- 수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㉔항에 의한 전문기관이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수준의 시행계획 수립)
- 착정후 양수시험 등 각종시험을 통하여 안정지하수위, 양수량 등을 확정하고 스트레나의 위치, 양정의 계산등에 따른 수중.모터펌프의 사양을 결정하는 등 상기항에 의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세부설계 (지하의 실여건을 반영한 세부설계)

(2) 조사사업

○ 수맥조사사업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내시된 예산 및 시.도별 일반지하수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사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구에 대한 조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

○ 해수침투조사사업

제주도지사가 장기관측 예정지역을 선정하여 조사사업 위탁시행자에게 통보하면 위탁시행자는 관측용 장비구입, 조사항목 및 조사량 등 세부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지구 선정 : 6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과 동일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인가

○ 지하수개발

- 시장·군수 시행사업 : 시장·군수
- 농지개량조합장 시행사업 : 시·도지사

○ 조사사업

- 수맥조사사업 : 농림수산부장관
- 해수침투조사 사업 : 제주도지사

(2)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

다. 공정계획

○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수립

라. 시행계획변경(집수정)

- (1) 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2) 시행계획 변경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지 여건상 부득이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 (3) 지하댐 및 집수정의 규모, 구조 및 공법변경등 주요 설계내역의 변경 및 당초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금액(계약체결이 있는 공사비는 제1차 계약시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 함.

마. 공사감리

- (1) 지하수개발 : 사업시행자 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 ③항에 의한 전문기관
- (2) 이용시설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

바. 사업시행

- (1) 수원공개발(착정)시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주민대표 등의 입회하에 오염방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보존한다
 - 착정공사는 지표면에서 암반층까지 굴착후 케이싱을 삽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 양생이 된다음 암반층을 굴착
 - 개발실패공에 대하여는 폐공관리대장에 기입하고 지하수개발 이용폐쇄모식도에 따른 폐공처리
- (2) 이용시설은 지하수시설 표준설계도, 지하수법령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 설계요령 및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설계 시행
- (3) 준공처리시 양수시험은 사업시행자, 봉리민대표 및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 (4)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채수량, 관개면적 등을 재확인하여 조정보완
- (5) 수맥조사시 시행하는 시추공중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수.인계하여 사용토록 하고 잔여 시추공에 대하여는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사. 검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음.
-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8.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1) 가뭄우심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 (2) 가뭄우심지역으로 지하수 외의 타 수원공개발 부적지로서 농조편입을 원하거나 농지개량계조직 운영이 양호한 지구
- (3) 지방비 또는 수혜자의 일부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

- (4) 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5) 가뭄대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수맥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예비비 또는 지방비 지원에 의한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지하수 기초조사(수맥조사)비를 개발비를 포함 지원할 수 있다.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관계 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원

9. 행정사항

가. 예산신청 : 다음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 (1) 수맥조사사업 (신청자:농어촌진흥공사장) : 예산항목 (구조 1533-211-411)
- (2) 지하수개발 (신청자: 제주도제의 시·도지사) : 예산항목(구조 1533-211-412)
- (3) 제주도지하수개발(신청자: 제주도지사) : 예산항목 (구조 1533-211-412)
- (4) 해수침투조사사업(신청자: 제주도지사) : 예산항목 (구조 1533-211-412)

나. 보 고

- (1)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별지 제1호서식(도지사 → 농림수산부)
- (2)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2호서식(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3) 사업추진상황보고 : 별지 제3호서식(매 분기말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 → 농림수산부))
- (4) 익년도 사업대상지 선정보고 : 별지 제4호서식(8.30 까지)

다.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요율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사업의 평가(사후관리)

- (1)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비치, 시설물관리등은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규정 적용(수리 51322-444('94.9.23))
- (2) 지하수법제15조, 동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보고를 철저히 함으로 지하수의 개발, 이용,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존관정에 관한 자료가 종합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상기 (1) 및 (2)항에 의한 지하수시설의 사후관리실태 와 사업평가를 농림수산사업 평가실시요령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준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사업 시행자에 사업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마.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바. 업무담당기관 및 부처

- (1)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 (2) 시·도 : 시(농정과), 도(기반조성과) ※ 제주도 : 개발국 시설관리과
- (3) 시·군 : 시(산업과), 군(건설과)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도

(금액 : 천원)

사업명	지구수 (공)	용수필용						금년에신				이후	비고					
		생필용수		관개용수 (ha)		축산		수신 공업용	축산 공업용	개지	총사업비			지방비				
		포수	인구	계	담	채소	과수							기타	계	국고	도비	시군비
계																		
○ 대양권정 ○ 원반대미 용수개발 - 소형관정 ○ 제주도지하수 개발																		

주) 1. 사업번호 적성, 2. 용수필용단의 축산, 수신, 공업용 기타는 해당단에 표, 3. 접수정은 중규모사업 공청개회 인가 보고 양식에 준하여 별도보고

(별지 제2호시식)

지하수개발사업 공정계획

(금액단위 : 천원)

과 목	송 인 액		○○년도까지		사업시행년월일 :		최종년월일 :				비 고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년도계획	사업비	년도이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 수 원 공												
○ 이 용 시 선												
- 양 수 장												
- 문 방 크												
- 송 배 수 관												
- 기 터												
○ 용 지 배 수 및 보 상 비												
○ 축 량 선 계 비												
○ 공 시 감 독 비												
○ 권 리 비												
○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 익년도 대상지 보고

○○○도

사업명	위 치			지구명	용수활용계획				수맥조사 실시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답작	전작	생활용수	기타		
					ha	ha	호(인)			

- 주) 1. 시설별(소형관정, 대형관정, 집수정, 제주도지하수개발, 해수침투조사)로 구분작성
2. 수맥조사 대상지 면적은 용수활용계획란에 답작, 전작을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치 : 도 군 면 리 번지, 관리자 :						
○ 공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 타			
○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전 : ha - 생활용수 : 호 (인) - 기타용수 :						
○ 주요시설 내용						
- 착 정 . 관정: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³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심 도	총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 이용시설 . 물탱크 : m ³ , 양수장 : 평 . 송.배수관 : m						
- 시공업체 :						
- (수중)모타펌프 . 구경()m/m, 설치심도 m . 마력()HP . 제품명 :						

0 오염방지 시설 조치 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 높이 : cm
케 이 싱	구 경 : cm, 심도 : c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O , X)
	유량계설치 (O , X)
	출수장치설치 (O , X)
	지하수위측정관 (O , X)
	상부보호경 반경 1m 내 경사도 : 도

0 수질검사 실시 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0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용 현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 록 자	측정일자	수위(EL. m)	측 정 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공)

1. 목 적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중 노후된 시설의 효율적인 개보수와 물 손실이 많은 흙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한 재해의 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

2. 추진방향

-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항구적으로 개보수하여 재해 예방
- 물 손실이 많은 불량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여 용수 절약
- 물 관리 시설의 현대화로 용수 절약과 유지관리비 절감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사업량 : 지구,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4,416	(70) 400	(90) 400	(300) 800	(531) 1,000	7,301	12,708
사업비 (국고)	244,098	62,389	88,789	136,711	198,000	1,325,072	2,055,059

※ () 내서 : 당해년도 준공 계획지구

나. '96 지원 계획

- 사업량 : 400 개소
- 사업비 : 88,789 백만원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관 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각 시·도 농정국 농정과 및 기반조성과

나. 사업시행자 : 당해 농지개량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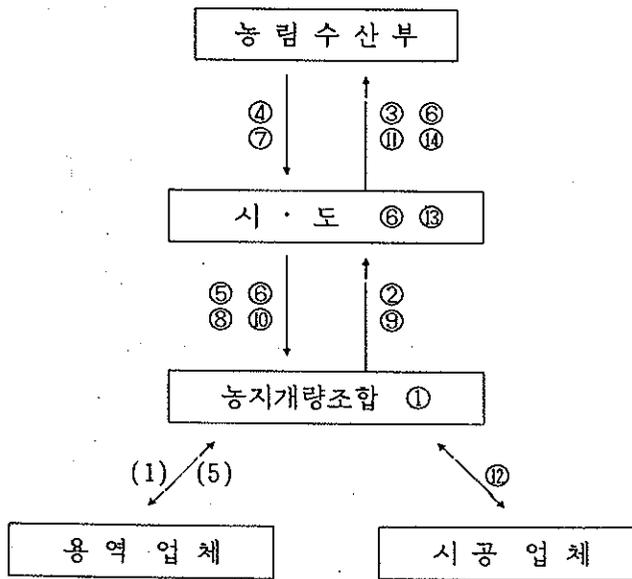
다. 사업 현황

- (1) 사업내용 : - 수원공, 평야부 수리시설의 개보수
 - 물 손실이 많은 흠수로의 구조물화
 - 물 관리 시설 현대화
- (2)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5.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시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세부설계 협의,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및 착공의 순으로 함
- (2) 사업시행체계도



-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 ② 개보수계획 수립·보고
- ③ 세부설계착수 협의 요청 ④ 세부설계 협의 통보
- ⑤ 세부설계 실시 지시(용역) ⑥ 시행계획수립·송부·보고
- ⑦ 신규지구선정 및 도별 예산내시 ⑧ 지구별 예산내시
- ⑨ 사업시행인가 신청 ⑩ 사업시행인가
- ⑪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⑫ 공사도급계약
- ⑬ 년도말검정 ⑭ 년도말검정 결과 보고

6. 사업계획의 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사업대상지는 농지개량조합구역내 수리시설 중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시설 및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함
- (2) 사업의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수리시설로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함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수원공

-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시설의 저수량 및 갈수량을 재검토하여 현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등), 여수토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
- 저수지, 취입보 및 양수장 수원의 수질오염 상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

(2) 평야부

- 현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단위용수량을 산정하여 수로단면을 결정하여야 함
- 용수로는 수리 현상 및 물 관리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인 개보수는 지양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 구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
- 토공수로를 구조물화 함에 따라 남는 부지는 경작도로등으로 활용
- 용수로개보수사업 시행구간에 오폐수 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오폐수가 용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설치등 별도 대책을 강구
- 토공수로의 개거 등 구조물은 가능한 농지개량사업표준설계(해설 및 도면) 조립식 구조물편을 참조하여 조립식 제품을 사용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3종시설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하는 구간에 한하여 개보수계획을 수립하되, 1종 및 2종 시설의 개보수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라.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시설관리자의 개보수계획 보고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세부설계 착수 협의를 요청함
- (2) 3중시설로서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공중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의 의견서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세부설계를 요청할 수 있음
- (3) 세부설계 전에 재해의 예방등을 위하여 시급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요청 할 수 있음
- (4) 세부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기술인력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신고)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함
- (5)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예산내시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지구 선정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지구를 신청함에 있어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순위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지구중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는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1) 세부설계가 완료된 재해위험지구
- (2) 세부설계가 완료된 물 관리가 어려운 지구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시·도지사가 사업신청한 우선 순위 적용)
- (3) 현지 확인결과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거나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지구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 함
- (3) 사업시행은 관개기 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다.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 (2)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수시로 현지 지도, 감독하여야 함

라. 시행계획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보완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 (나) 수원공 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신규 공종의 추가 및 지구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라)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3) 시행계획 변경시는 설계변경 요인을 분석하여 공사 착수후 불가인상 및 여건변동 등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외에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추가된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대안의 검토 등 당초설계에 증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자 또는 세부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조치하여야 함

마.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보상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바.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 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의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6)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 상황을 파악하여 현장 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사. 풍수해 사전대비

- (1)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하여야 함

- (2)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를 검토하여 사전 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3) 수원공 공사의 경우는 우기전에 재해위험 예상 공종을 마무리하는 등 사전 홍수 조절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함

아. 검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

8.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1)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2) 사업비는 재해 위험해소를 위한 공정에 우선 투자토록 함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 지급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3) 관리비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정 요율에 의거 시·도지사가 정하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지확인, 지도에 소요되는 여비 등은 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 사용토록 하고, 본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9. 행정사항

가. 보고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1)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당해년도 2월 말까지(별지 제2호, 2-1호 서식)
- (2)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 (3)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승인시(별지 제4호, 4-1호 서식)

나.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 시·도 : 농정국 농정과 및 기반조성과 (시·군 : 건설과)
- 농지개량조합 : 관리과 또는 개발과

다. 사후 관리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라. 사업의 평가

(1) 시·도지사는 사업 시행중 및 사업 완료후 아래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 평가 실시요령(농림수산부훈령 제825호)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신규지구 지정의 적정성 여부
-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주변 환경 유지 및 오염방지대책 수립 시행 여부
-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
-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적정 여부

(2) 사업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가 현저하게 미흡한 지구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 지원을 감액 내지 중단하는 등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사업 평가 결과는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기타

- (1)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본요령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함
-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00년 농조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시행인가 결과 보고

(단위 : 천원)

00시·도

사업 시행지 (농조)	위치		수해 면적 (ha)	총인가액 (A)	전년까지 투자액		금년까지 투자액		내년이후 사업비	작공 년도	개보수 공종 내역		
	시군	읍면			금액 (B)	B/A(%)	금액	B/A(%)			총계회	권역까지	금년계획
계													

* 지구별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심사서, 사업계획 도시,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서식 제2-1호) 사본 첨부

< 별지 제2-1호 서식 >

OO지구 사업비 수지예산서

가. 수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인가액	금회 인가액	투자실적 및 계획		
			전년도까지	금년도계획	내년도이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합 계					

나. 지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인가액	금회 인가액	투자실적 및 계획		
			전년도까지	금년도계획	내년도이후
순 공 사 비 지 급 자 재 대 용 지 매 수 보 상 비 측 량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 사 업 관 리 비 기 타					
합 계					

< 별지 제3호 서식 >

농조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추진상황보고 (00년 00월)

(단위 : 천원)

00시·도

사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주요공종	수해 면적 (ha)	총인가액	전년까지 부재액	금년예산 (A)	현재실적		완공 면적(ha)	내년이후 사업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시·군	읍·면						금액(B)	B/A(%)			
계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구체적으로 기술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공)

1. 목 적

노후된 방조제의 효율적인 개보수로 재해의 예방 및 간척농지의 보존 등 효과적인 시설 유지관리 도모

2. 추진 방향

- 가. 농업진흥지역 내 재해취약시설로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 순위지구 선 지원 원칙
- 나.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재해예방 조치가 긴급한 시설 우선지원
- 다. 완공 위주로 사업 추진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사업량 : 지구수, 금액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계획	'96	'97	'98	'99~2004	합 계
국가관리방조제							
○ 사업량	25	2	12	18	19	[60]	76
○ 사업비	111,767	15,120	17,800	19,080	20,160	194,413	377,340
- 국 고	111,767	15,120	17,800	19,080	20,160	194,413	377,340
지방관리방조제							
○ 사업량	215	29	26	36	37	1,137	1,479
○ 사업비	41,523	8,199	9,007	14,463	14,463	311,470	399,125
- 국 고	14,668	2,800	3,272	5,062	5,062	117,528	148,392
- 지방비	26,855	5,399	5,735	9,401	9,401	193,942	250,733

※ [] 재 개보수 계획

나. '96지원 계획 (국고 기준)

- 국가관리 방조제 : 17,800백만원
- 지방관리 방조제 : 3,272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 시·도 기반조성과

나.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또는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됨.

다. 사업 현황

(1) 사업내용 : 방조제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2) 지원조건

[지방관리	국가관리 : 국고 100 %
	[일반지구 : 국고 30 %, 지방비 70 % 특수지구 : 국고 50 %, 지방비 50 %

5. 사업추진절차

가. 사업추진절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예정지보고 → 예산내시 →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실시 및 확정 →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및 착공
→ 공사시행 → 준공

나. 사업시행체계도 (별표 1)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방조제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의한 방조제로서 농업진흥지역 내 재해취약지구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 순위지구 선 지원 원칙
- (2)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를 변경 지원할 수 있음.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1)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
- (2) 방조제의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

다.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 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이용하여 자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안전점검 결과를 활용) 단, 안전점검결과 수립한 대책을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볼 수 있음
- (2)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지구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와 사전협의

라.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1) 신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가 시행함을 원칙,
- (2)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단, 방조제 누수, 침하 등 주요시설물의 피해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세부설계 함을 원칙으로 함.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지구 선정

- (1) 사업시행 예정지구 우선순위 결정은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 중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시·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지원 대상지구 선정
- (2) 일상 및 정기안전점검, 자체예산에 의한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 관리실태 평가결과 및 농림수산사업 평가실시요령에 의한 방조제개보수 사업평가 결과 우수시설관리자의 재해위험시설은 특별히 선정 지원할 수 있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인가

○ 국가관리방조제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 시·도지사

○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 시장·군수

(2)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

다. 공정계획

(1)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수립

(2)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3)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시행계획 변경

(1)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 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2) 시행계획변경은 최대한 억제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승인을받아 시행하되,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변경 및 공법 변경등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금액(계약체결이 있는 공사비는 제1차 계약시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 함.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대.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편 준용

마.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2) 기타사항은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편 참조

사. 검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음.
-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8.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1)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2) 재해대비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 (3) 사업기간이 오래된지구를 우선지원한다.
- (4) 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5) 사업비중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한하여 현지확인,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및 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일반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9. 행정 사항

가. 예산신청 : 지방관리방조제 및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구분신청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 예산항목 (구조 1522-211-412)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 예산항목 (구조 1522-211-412)

나. 보고 (농림수산부 보고 사항)

- (1)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당해년도 2월 말까지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2) 국가관리방조제 공정계획 보고 : 당해년도 3월말까지 보고 (별지 제3호서식)
※ 지방관리방조제 공정계획보고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별지 제3호서식)
- (3)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4호서식)
- (4) 국가관리방조제 시행계획변경 승인결과 보고 : 승인후 즉시 결과보고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 (5) 지방관리방조제 시행계획변경 승인 결과보고 : 6월 및 9월말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7호서식)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 시·도 : 시(농정과), 도(기반조성과)
- 시·군 : 시(산업과), 군(건설과)

라. 사업의 평가(사후관리)

- (1)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평가 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 '95. 7. 6)에 의거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고 점검사항을 기록, 보존 하여 선량한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1)항에 의한 우수 사업시행자 및 (2)항에 따른 우수 시설물관리자에게 특별히 사업비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요율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바에 의함.

바.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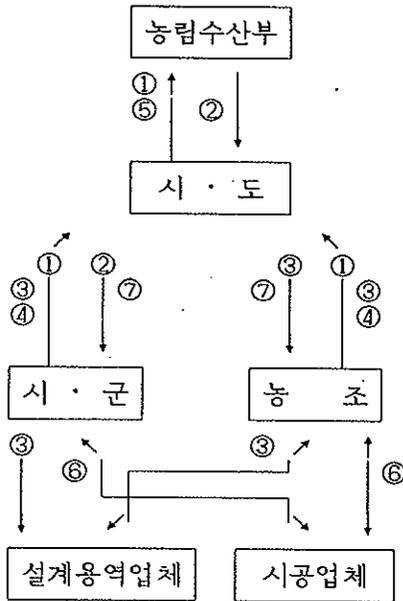
(1) 본 요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2) 도서 등 특수지역 지정내역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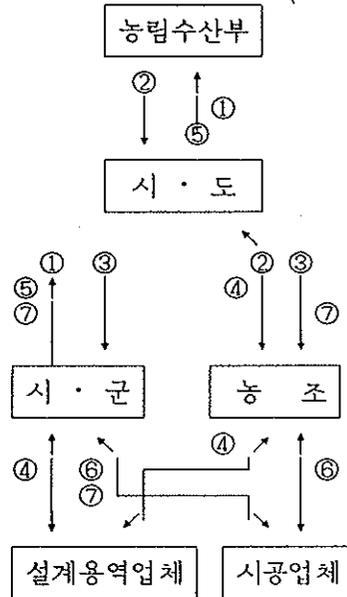
< 별표 1 >

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체제도

[국가관리]



[지방관리]



- ① 사업시행 예정지구 보고 ·
- ② 사업시행 지구 결정 및 예산 내시
- ③ 세부설계 실시 및 확정
- ④ 시행계획 승인 신청 및 사업시행 인가
- ⑤ 사업시행인가 보고
- ⑥ 공사 도급계약
- ⑦ 년도말 검정·정산 및 준공 검사

- ① 예산 내시
- ② 사업시행 예정지구 보고
- ③ 사업시행지구 결정 및 예산 내시
- ④ 세부설계 실시·확정 및 사업시행인가
- ⑤ 사업시행 인가 보고
- ⑥ 공사 도급계약
- ⑦ 년도말 검정·정산 및 준공 검사

[시·군관리방조제 → 시, 군
 농조관리 방조제 (농조가시행하는 시·군관리포함) → 시,도

< 별표 2 >

도서 등 특수지역 지정 내역

시도별	군명	특수지역
인천	강화 옹진	군청소재지 도서를 제외한 군 관내 도서 군 관내 도서
전남	고흥 완도 진도 신안	군 관내 도서 군청소재지 도서를 제외한 군 관내 도서 군청소재지 도서를 제외한 군 관내 도서 군 관내 도서
계	6개군	

(별지 제1호서식)

방조제개보수 사업 시행인가 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처	지구명	위 치		시설명	수해 면적 (ha)	총인가액 (A)	전년까지 투자액	금년에산 금액(B)	내년이후 사업비		확충 년도	개고수 공종 내역		
		시군	읍면						금액(B)	B/A(%)		사 업 비	총계회	전년까지
계														

- ※ 1. 사업시행인가서, 성서서, 사업계획 도시, 사업비 수지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시은 첨부
- 2. 국가 및 지방관리 구분하여 작성 (지방관리방조제의 "금년에산"란에는 계, 국고, 지방비로 구분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사업비 수지 예산서

가. 수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인가액	금회 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년도계획	내년도이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합 계					

나. 지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인가액	금회 인가액	년 도 별 내 역		
			전년도까지	금년도계획	내년도이후
순 공 사 비 지 급 자 재 대 용 지 매 수 보 상 비 측 량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 사 업 관 리 비 예 비 비 기 타					
합 계					

(밑지 제4호시적)

방조제개보수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 위 : 천 원)

사 업 시행처	지구명	위 치		주 요 공 종	수혜 면적 (ha)	총인가액	전년까지 부 서 액	금년예산 (A)	현 재 실 적		완 공		내년이후 시 입 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시 · 군 · 읍 · 면	시 · 군 · 읍 · 면						금액 (B)	B/A(%)	지구수	면적(ha)			
계															

- ※ 1.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구체적으로 기술
- 2. 방조제 개보수는 국가 및 지방관리 구분하여 작성 (지방관리방조제의 "금년예산"만은 계, 국고, 지방비로 구분 표기)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지구명 : _____ 위 치 : _____
 사업시행자 : _____ 시설명 : _____ 수혜면적 : _____ ha

가.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인가액	금회 인가액	증(△)감	보 완 사 유
국 고 지 방 비 기 타				
합 계				

나.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인가액	금회 인가액	증(△)감	보 완 사 유
순 공 사 비 지 급 자 재 대 용 지 매 수 보 상 비 측 량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 사 업 관 리 비 예 비 비 기 타				
합 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심사서, 사업비수지예산서, 사업시행계획변경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사본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변경내역

_____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혜택 면적 (ha)	기인가	금회인가	증(Δ)감	변 경 사 유
	군	면					

농조 저수지 준설사업 (공공)

1. 목 적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내 토사유입에 의한 퇴적물을 준설하여 계획저수량 확보등 저수지의 기능회복 및 수질오염 원인을 제거함으로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 및 물 관리 도모.

2. 추진 방향

농업진흥지역내 가뭄 우심지구 및 준설효과가 높은 대.중규모저수지 지구 우선 지원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준설량 : 백만m³, 사업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저수지수	568	146	299	300	300	576	2,189
준 설 량	27	7	15	15	15	44	123
사 업 비	54,996	15,000	30,341	30,000	30,000	236,311	396,648

나. '96지원 계획 : 30,341 백만원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각 시.도 농정국 농정과 및 기반조성과

나. 사업시행자 : 농지개량조합장

다.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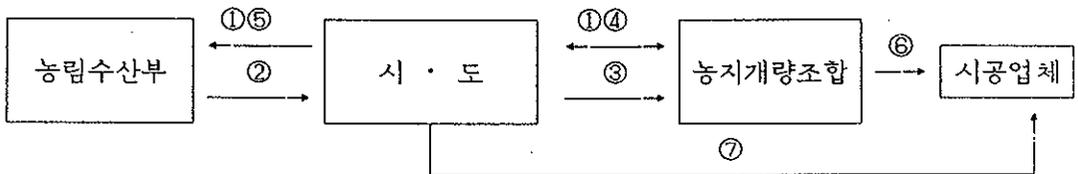
- (1) 사업내용 : 농지개량조합관리 저수지 내의 퇴적토사 준설 및 청소
- (2)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5.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추진 절차

예정지 보고(기본계획수립) → 예산내시(지구선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공사계약 및 착공 → 사업시행 → 준공

나. 사업시행체계도



- | | |
|---------------|------------------|
| ① 예정지조사보고 | ② 예산내시 |
| ③ 예산내시 및 지구선정 | ④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 ⑤ 시행계획인가 결과보고 | ⑥ 공사계약 및 착공 |
| ⑦ 준공 | |

6.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93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조관리 저수지에 대한 준설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된 지구 우선 선정.
- (2) 준설 여건이 양호하여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 효과가 높은지구 우선 선정
- (3) 사토를 이용하여 객토등 농지를 개량하거나 인근토지의 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지구 (사토를 이용한 경지정리 및 간척지 내부개답 공사의 복토 포함.)
- (4) 준설토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어 그 매각대금을 준설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지구
- (5) 제당 진입도로가 중장비 통행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구
- (6) 사토장 확보가 용이하고 사토장까지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1) 저수지 제당, 취수탑 및 복통등의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2) 유지관리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수혜면적의 변동 사항 및 저수지 유지관리와 관계되는 관리체계, 관리기록, 급수계획, 침수사항 등 준설에 관련된 제반 관리실태 검토
- (3) 저수지 당초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로 하여 퇴적부위별 퇴적 사항, 준설 가능량과 공법선정
- (4) 사토장의 위치는 준설토의 성질, 준설 공법, 운반거리, 농경지 객토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연계 검토
- (5) 홍수시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역 이외의 장소에 사토장을 선정하거나 토사유입 방지 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 (6) 준설시 활용 가치가 있는 골재는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시는 준설 사업비에 충당함.
- (7) 운반도로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93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조관리저수지에 대한 준설 타당성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 (2) 가뭄극복이 요구되는 저수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자료 및 답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 준설계획을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한 것으로 봄

라.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저수지준설계획 보고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설계 착수 협의를 요청함.
- (2) 세부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 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자기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7. 사업시행

가. 신규사업지구 선정 : 6 - 가 항 참조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
- (2) 공 사 발 주 : 사업시행자

다. 공정계획

- (1) 갈수기에 육상작업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공정계획 수립
- (2) 원칙적으로 준설공사 시행을 위해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시행계획 변경

- (1)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2) 현지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금액(계약체결이 있는 공사비는 제1차 계약시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 함.
- (3)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 상당 사업비 절감 반영.

마. 사토장 보상

○ 준설토는 토질성분을 분석하여 가능한한 복토용(기존 전,답의 경지정리 및 간척지 내부개답 등)으로 유용토목하여 사토비를 절감토록 함을 원칙

마. 시공 및 시공 감독

- (1) 시공은 관련시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2)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바. 검사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음.
-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 (3) 준설풀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 상당 사업비 절감 반영.

8.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1) 재해대비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 (2) 준설풀가 골재 또는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 (3) 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9. 행정 사항

가. 보고 (농림수산부 보고 사항 : 농조저수지 준설풀)

- (1)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당해년도 2월말 까지 보고 (별지 제1호서식)
- (2) 공정계획수립 보고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별지 제2호서식)
- (2)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3호서식)
- (3) 시행계획변경 승인결과 보고 : 6월 및 9월말 현황을 익월 10일 까지 보고 (별지 제4호서식)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1)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 (2) 시·도 : 시(농정과), 도(기반조성과)
- (3) 농지개량조합 : 관리과 또는 개발과

다.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요율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준함)

라. 사업의 평가 (사후 관리).

- (1)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평가 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 농조수리시설 개보수편에 의거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마. 기타

- (1)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시달하는 지시에 의함.
- (2) 시·군관리 저수지준설 사업은 본요령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 함

(밀지 제1호서식)

저수지준설 사업 시행인가 결과 보고

(연위 : 친린)

사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준설토량 (천m ³)	수혜 면적 (ha)	총인가액 (A)	전년까지 무 지 액	금년에산	금년까지 무지액		내년이후 시 업 비	확공 년도	개보수 공종 내역		
		시군	읍면						금액 (B)	B/A(%)			총계회	친년까지	금년계획
계															

- * 1. 사업시행인가서, 심사서, 사업계획 도서, 사업비 수지에신청서 사본 첨부
- 2. 국가 및 지방관리 구분하여 작성 (지방관리번호제외 "금년에산"탁에는 개, 죽고, 지방비로 구분 표기)

(별첨 제3호서식)

저수지준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 위 : 천원)

사 업 시행처	지구명	위 치		주 요 공 종	수혜 면적 (ha)	총인기역	진년까지 부 재 역	규모예진 (A)	현재 실적		원 공		내년이후 사 업 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시 · 군 · 면	지						규모 (B)	B/A(%)	지공수	면적(ha)		
계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4호서식)

농조관리 저수지 준설 사업 시행계획 변경내역

_____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혜택 면적 (ha)	기인가	금회인가	증(△)감	변 경 사 유
	군	면					

수해복구사업 (공공)

1. 목 적

풍수해 피해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조속한 재해 복구 추진

2. 추진방향

풍수해 피해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항구복구(원상 또는 개량복구) 시행

3. 사업의 대상

풍수해 피해 복구지원 대상 수리시설 및 농경지

4. 시설별 수해복구

가. 수리시설

(1) 사업시행

- 시·군관리 수리시설 : 시장·군수
- 농조관리 수리시설 : 농지개량조합장

(2) 사업시행 인가

- 시·군관리 수리시설 : 시장·군수
- 농조관리 수리시설 :
 - 시·도지사의 인가는 착공전 농조의 사업계획서 제출로 가름.
 - 단, 필요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음.

(3) 공사시행

토공 용·배수로 보수등 단순공종은 마을도급사업으로 시행하여 공사비 절감 및 지역 주민의 수익 증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 복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도급 시행.

(4) 공사감독

사업시행주체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의 난이도 시·군 및 농조의 기술 인력과 능력등을 감안하여 자체감독이 어려울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 개량조합연합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등 주요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 진흥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순회·감독하게 함.

(5) 실시 설계비 및 공사 감독비

시설복구 공사를 위한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비등 부대경비는 순공사비의 1.5% 한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단,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설계 및 공사감독비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 49조의 별표5)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6) 기술지원 협의회 운영

- 수리시설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도에 수해복구 기술 지원협의회를 편성 운영.
- 수해복구 기술지원협의회는 시·도지사가 필요시 학계, 도, 농진공, 농조연 및 농조의 전문기술진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수해복구 기술지원 협의회는 주요 수해시설 복구계획수립(설계)에 대한 협의 및 기술지원과 시공상황을 점검 확인 및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협의회의 주요임무)
 - 피해시설 복구대상 범위 및 공종협의
 - 피해시설 안전진단, 복구계획 협의 및 기술지원
 - 필요시 복구사업 시공상태 점검, 확인 및 지도
 - 기타 복구공사와 연계된 기술사항 지원

(7) 준공검사

- 시·군 관리 수리시설 : 시장·군수
- 농조관리 수리시설 : 시·도지사

(8) 기록관리

- 저수지 및 방조제가 월류하여 유실된 지구는 월류표고를 실측하여 지구별로 기록 보존.
- 공사감독일지, 공정계획표, 사업계획도서, 자재수불대장, 도급계약서, 시방서 등 제반서류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계획 당시부터 공사시공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 완벽한 설계, 하자없는 시공을 하고 기록 보존.
- 복구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 시달한 수해복구대장을 작성 비치.

나. 농 경 지

(1) 농경지의 복구는 대파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복구완료함.

(2) 피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농민들이 희망할 경우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수해복구공사의 착공전, 공사중및 완공후의 광경을 사진(전경, 근경3"x4"칼라) 촬영하여 기록보존용으로 비치하여야 함.

5. 관계규정의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준용함.

6. 보 고

시·도지사는 매월말 현재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일 엄수,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

수혜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

(원제)

구분	사업별	위치		지구별	시행자	수혜면적	복구물량	사업비				추진상황			진도		비고
		군	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실계	착공	인공	실형액	진도	
						ha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 ※ 1) 구분란에는 지원자력으로 구분 작성
- 2) 사업별은 농경지, 수리시설, 방조제로 구분
- 3) 추진상황은 해당란에 ○표
- 4) 비교란에는 시행방법(도급, 마을도급 등)을 기재

배수개선사업 (공공)

1. 목적

- 가. 지표배수개선 : 매년 홍수시 수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 나. 지하배수개선 : 발작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논에서도 발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기반조성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농어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답작.전작.시설농업등 지역별 유형별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나.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 : 2004년까지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 207천ha 완료
-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대상면적	'95까지	'96계획	'97이후	비 고
년 간	207	67	3	137	※ 준공면적 기준
누 계		67	70	207	
개선율		32%	34%	100%	

3. 투자계획

가. 년차별 투융자 계획

(면적 : 천ha, 금액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65	2	3	10	12	115	207
사 업 비 (국 고)	452,955	78,000	106,000	117,000	189,000	1,090,400	2,093,355

나. '96 지원계획 : 1,060억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시설관리과, 각도 기반조성과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지표배수개선 : 배수장, 배수로, 승수로 및 방수제를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 지하배수개선 : 저습한 논에서 수도작 이외의 고급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지하수위가 높아 농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흡수지 및 배수구등을 설치하여 토양수분을 작물의 생육에 알맞게 조절.

(2) 지원조건 : 국고 100%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한함.)

5. 사업추진절차 등

가. 사업시행은 사업 신청,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착공 및 완공의 순으로 함.

나. 사업추진체계도는 별표1 과 같음.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개발할 수 있다.
- 수해면적이 50ha미만인 경우는 가능한 시.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거나 자부담으로 함.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의 우선순위는
 -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제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 시행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 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20년간) 등을 포함함.

다. 예정지 조사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포함하여야 함.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거나 경지정리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기본 조사를 건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기본조사를 기술용역으로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2)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수립

(가)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예산형편, 시급성 등에 따라 실시하고,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기본조사자라 한다)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역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역이 상이한 지구를 1개지구로 구성하여 조사 할 수 있음.

(다)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라)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농지개량조합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마)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바) 기본조사자는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사)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하천의 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 정비계획
- 2)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
- 3)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아)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를 제출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자) 기본조사비는 지구별로 별도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차)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라.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1) 농림수산부장관은 350ha이상의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 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를 실시 하도록함.

다만, 350ha미만의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설계 지시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등이 불가피할때는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4) 세부설계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및 평년빈도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사)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하천의 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 정비계획
- 2)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
- 3)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아)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을 제출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자) 기본조사비는 지구별로 별도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차)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라.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1) 농림수산부장관은 350ha이상의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 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를 실시 하도록함.

다만, 350ha미만의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설계 지시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등이 불가피할때는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4) 세부설계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강우의 50%, 100%에 대한 시간별 추정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 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보완설계지시 또는 용역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6) 세부설계실시자는 설계가 완료되면 농림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설계도서(안)를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 이때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실시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7) 농림수산부장관은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행편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이 있는 350ha이상인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다만, 350ha 이하 지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예산 내시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함.
- (8) 농림수산부장관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송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고시 및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7.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 발주

-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고시와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나'항 공정계획의 보고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시행계획 수립시 또는 수시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및 검토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 시행계획 변경 제2항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지시조건의 보완은 사업 착수에 임박하여 보완하므로써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함.
- (5)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계약하면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FAX(02-507-3964)로 상황 보고 하여야 함.

나.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의 착공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시 기간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함.
-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월 30일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 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혜면적이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고시된 금액(계약체결이 있는 공사비는 제1차 계약시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 함.
- 연약지반상에 설치하는 배수장.배수갑문.주요 교량의 구조 변경

(2) 시·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 계획보완 개요 (1/25,000 ~ 1/50,000, 1/3,000 ~ 1/6,000 사업 계획 위치 평면도 포함)
- 심사서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서식>
- 농림수산부장관 지시사항 이행검토 내역
- 사업비 수지에산변경서 <별지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 서식>
-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별지 제6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감내역 <별지 제7-1호, 제7-2호, 제7-3호 서식>
- 설계자 의견(보완 전·후 설계자 의견) <별지 제8호 서식>
-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자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 기타 주요사항

(3) 시·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의하여 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결과 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마.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적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6)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8.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1)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2)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3) 배수장시설은 수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4)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함.
- (5)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부문은 가능한 국고를 지원함. 다만, 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시행할 수 있음.

배수개신사업 진도보고

단위 : 백만원, 년 원 일천세

도

지구명	위 치		면 적	구분	사업시행처	기정산역	총사업비	전사업비	당해년도 예산	실행액	진 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선 시 용
	시·군·읍·면	구분									계획	실적			
계			ha												

주 : (1) 매분기말 현재물 인원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율 추가한다.
 (3) 구분율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 별지 제3-1호 서식 >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확인자 :

작성자 :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사업 :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사업시행인가 년월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공사감독 :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할 것.

< 별지 제3-2호 서식 >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 입

(금액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도별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기 타									

나. 지 출

(금액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도별검정내역					비고
계									
순공사비 지급품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 별지 제3-3호 서식 >

4. 준공처리의견

< 별지 제5-1호 서식 >

설 사 서

1. 계 목 :
2. 지구명 :
3. 사업목적 :
4. 사업시행주 :
5. 면 적 : 구역면적 : ha 택면적 : ha
6.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7. 공사개요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별지 제5-2호 서식 >

9. 보완내용

구	본	보	완	내	용	및	보	완	내	용	심	사	의	견

< 별지 제5-3호 서식 >

10. 지시조건

11. 심사자 종합의견

심사자 : 년 월 일 인

< 별지 제5-4호 서식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입

(금액 : 천원)

과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도별내역			비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국고							
지방비							
용자							
계							

○ 지출

(금액 : 천원)

과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도별내역			비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및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계							

< 별지 제5-5호 서식 >

년도별 공사비 내역							
구분 공사명	분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고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제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별지 제8호 서식 >

설계자 의견	
전 설 계 자 의 건	금 회 설 계 자 의 건
	<p>진 설계 자 : 소속 금 회 설 계 자 : 소속</p> <p>인 인</p>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인 경우에만 작성

서남해안간척사업 (공공)

1. 목 적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사지와 유희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농업생산기반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음.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사업효과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농지의 대체 개발
- 담수호 조성에 따른 농업·산업용수 공급기반등 수자원개발

(2) 국토종합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

- 해안오지개발로 수산업 위주에서 복합영농구조로 변경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사업량	363	501	832	2,240	400	15,933	20,269
사업비	6,403	1,330	1,370	1,050	1,140	4,285	15,578

* 사업량은 당해년도 준공면적임.

나. '96지원계획

- (1) 부분준공을 포함한 조기 완공가능 지구 집중지원
- (2) 어업보상비 확정지구 우선지원
- (3) 외곽공사 시행지구의 유실 방지를 위한 조기 마무리 지원
- (4) 준설 등 연속시공이 요망되는 지구 계속 지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용수과, 각 시도 기반조성과

나. 사업시행자

- 사업여건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며,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곽시설, 내부개답, 배후지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 지방단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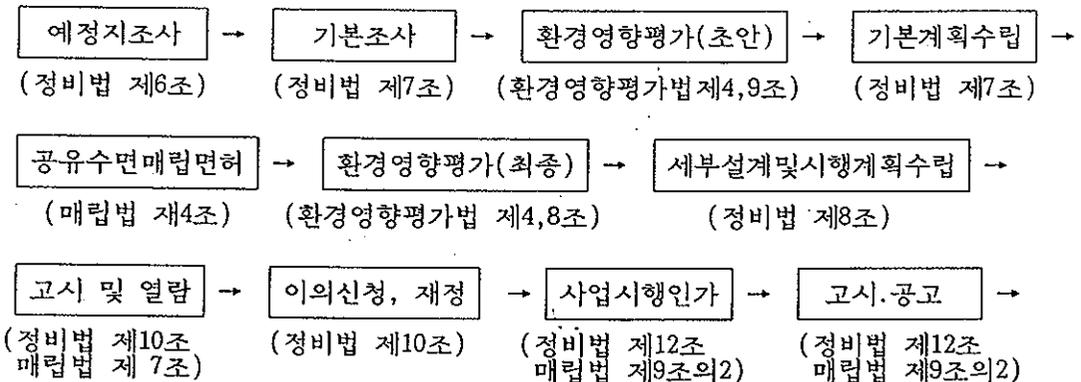
서남해안간척사업, 미완공간척사업, 유희지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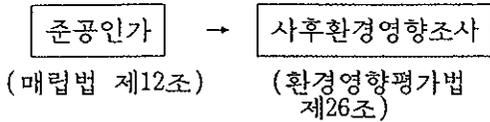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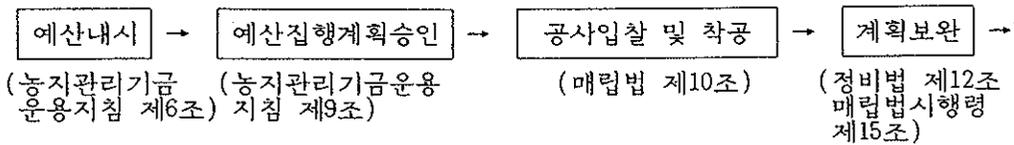
(2) 지원규모 및 조건

농지관리기금(조성계정) : 100%

5. 사업시행절차

○ 근거법 : 농어촌정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6.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항

가. 농어촌정비법제6조에 의한 예정지 조사

나. 농어촌정비법제7조에 의한 권한중 매립면적 50ha미만지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

- 50ha 이상지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다.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의한 권한중 매립면적 600ha미만지구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매립면적 600ha미만지구의 각종 인·허가는 시·도지사 명의로 시행

- 매립면적 600ha이상지구의 인·허가중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의한 면허, 동법제9조 2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동법제12조에 의한 준공인가, 동법제25조에 의한 면허실효 회복, 동법시행령제1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 동법시행령제16조에 의한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 동법시행령제29조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처분은 농림수산부장관 명의로 시행(처분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에 관인날인 요청)하고, 기타의 인·허가 처분은 시도지사 명의로 시행

- 다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라.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변경인가중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권한

7.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시행 대상지구 선정기준

- (1) 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2) 수산자원보전지역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3)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 (4)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 (5)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6) 주변지역개발 연관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나. 예정지조사

- (1)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제3조의4에 의해 결정된 매립기본계획(건교부) 지구 및 간척자원조사가 완료된 지구중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이하같음)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2)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결과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①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 ② 사업별 투자소요액
 - ③ 사업시행효과
 - ④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 ⑤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 ⑥ 기타 사업시행시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등

다.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 농림수산부장관은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 (2) 농림수산부장관은 매립면적 50ha이상 사업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
- (3) 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조사실시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당해 조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지구의 사업시행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 (5)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기본계획의 개요 (매립면적 포함)
 - ②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 ③ 사업비 수지에산서
 - ④ 사업비내역 (공사비포함)
 - ⑤ 사업효율분석결과 (B/C, IRR등)
 - ⑥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⑦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⑧ 피해영향조사서
 - ⑨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6)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과 기본계획서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7)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시·도지사는 매립면적이 50ha미만인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라.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조사

- (1) 기본조사실시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피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기본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함.
- (2)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의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4) 환경영향평가(최종)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요청하여야 함.
- (5)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부장관의 최종협의내용의 이행 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를 내용으로 함.
- (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7)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질, 생태계등 환경의 계절에 따른 변화를 조사해야 함으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8)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1) 농림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제97조 및 동법시행령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 실시함.

다만, 매립면적 600ha미만인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위탁실시

(2) 세부설계시에는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 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가 세부설계자를 위탁한 지구의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확정 결과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부설계비 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5)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에 따라 600ha이상 지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00ha 미만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6) 농림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고 시행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예산내시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8.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 (1)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2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인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3) 매립면허관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4)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 ①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 ② 시행계획의 개요 (매립면적포함)
 - ③ 세부설계도서
 - ④ 사업비 수지예산서
 - ⑤ 사업비 내역 명세서 (공사비 포함)
 - ⑥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⑦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5) 실시계획을 인가한 면허관청인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나. 공정계획

- (1)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계획)이 인가된 공종에 한함
- (2)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성질, 규모, 공사기간 및 사업비등을 고려하여 적영 또는 도급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입찰계약상황을 도지사 경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사업추진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제출)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예산집행계획(이하 당해년도 사업시행이라함)서에 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당해년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다만,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4)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당해년도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투자효율 제고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5)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6) 제(5)항의 공정계획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천재지변 또는 투자효과 제고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7) 시·도지사가 공정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승인된 공정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 (8) 시·도지사(농어촌진흥공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변경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변경은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시행계획의 변경(물량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3) 시·도지사는 현지어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형식·구조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등의 변경 및 수혜면적이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 지원에 의한 보강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4) 또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단가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5%초과 공사비를 지방비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6)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7)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마. 어업권보상

(1) 보상물건조사 실시

- (가)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나)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가)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나)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심의.
확정한 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바. 검 사

(1) 검정 및 정산

- (가) 사업시행자는 기성고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년도말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시달한 사업실행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행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인가권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정신청 즉시, 년도말 검정은 12월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행검정 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사업시행자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년도말에는 12월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함.
- (마)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등은 농지 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2) 준공인가

- (가)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면허관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처분안을 작성 농림수산부의 관인날인을 받아, 농림수산부장관 명의의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면허관청인 농림수산부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함.

사. 사후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매각준칙(이하 "매각준칙"이라함)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준칙의 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3)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등에 대하여는 매각준칙 관련규정을 적용함.

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 (1)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2)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등의 수령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농진공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3) 관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 구입을 최대 억제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기하여야 함.
- (4) 잡지출인 이전등기,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요율기준에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9. 사업비지원

○ 예산 및 자금(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 (2)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및 분기별 자금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 (4)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 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5)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6)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의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10. 행정사항

가. 보 고

- (1) 월별공정계획보고 (별지 제1호서식)
- (2) 월별사업추진현황 (별지 제2호서식)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서식5 준용)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1)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어촌용수과 (02-504-9406,9407)
- (2)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 (3) 시·군 : 건설과, 간척지원사업소
- (4) 농진공 : 대단위사업관리처, 사업소

다. 기타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대.중규모용수개발사업 세부사업지침, 농지관리기금운용지침,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준칙 및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함.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사업추진현황

(금액 : 백만원)

지구명	공종	○○○○도 >										부진사유											
		총 계획		○○년 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중													
		사업량	사업비 A	사업량	사업비 B	○○년도 계획		○○년까지누계		당해년도 진도 (%) E/C	누계 진도 % (B+E) / A												
						사업량	사업비 C	계획	실적				진도 % E/D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계																						
	· · · ·																						
○○○	계																						
	· · ·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

1. 목적

강이나 하천등 수계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어촌용수개발, 경지 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농어촌건설 촉진

2. 추진방향

- 가.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 나. 준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구 착수억제
- 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부분완료 위주로 사업시행
- 라. 시설물 인수예정농조를 조기에 지정하고, 부분완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철저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금액 :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8지구	8	8	7	7	6	8지구
사업비	계	8,644	2,076	2,745	3,848	3,638	30,179	51,130
	국 농지 고 지 기 금	7,306 1,338	1,536 540	2,120 625	3,848 -	3,638 -	30,179	48,627 2,503

나. '96예산지원계획

- 지구별 예산편성에 의하여 지원(예산지원계획 : 별표 1)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관기관

- (1)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 (2)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사장

- 다만, 새만금사업은 농림수산부장관
 - [
 - 보상대행 : 전라북도지사
 -]
 - 공사대행 : 농어촌진흥공사사장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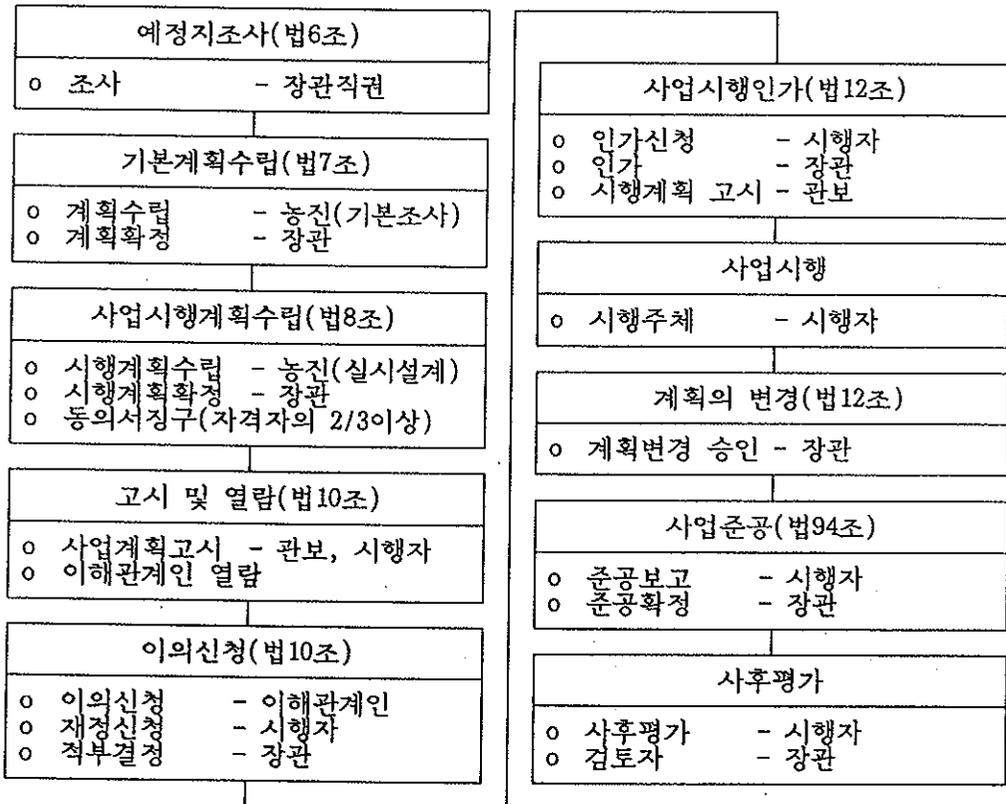
댐, 방조제 등을 축조하여 용수확보 및 농어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2) 지원조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을 대행사업비로 지원
 - 단,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5. 사업추진절차

가. 사업추진절차



6. 사업계획수립

가. 예정지조사

- (1) 사업예정지조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함.
- (2) 농어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개발, 농어촌정비 등을 종합개발할 수 있고 수혜면적이 3,000ha 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 (3) 예정지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 농림수산부장관은 예정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 (2) 기본조사시에는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로 비교하여 최적설계를 하여야 함.
- (3) 수문분석.경제분석.토질(지질)조사.토양조사.토취장조사.농업조사 등 기초조사는 기본조사시 완벽하게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1)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함.
- (2)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설계도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은 세부설계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3)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방대하여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 함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착공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미실시된 공구는 기본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라. 세부설계

- (1)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구단위로 세부설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확정함.
- (2)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설계가 되어야 하며,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수로구조물, 양.배수장, 터널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시행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 공구별로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할 수 있음.

마. 환경영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3)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7.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의 기본 방침

- (1)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 하천개수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조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하천개수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3)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사행이 요망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나. 사업시행인가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다. 년도별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년내에 실시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 (3)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최근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 |
|--------------------|-------------------|
| (가) 사업추진경위 | (나) 사업계획개요 |
| (다)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라)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
| (마)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 (바) 기타사항 |
- (4)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력개발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 (5) 년도초의 사업시행계획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 (6)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있은후 20일 이내에 월별세부공정계획서를 제출(별지서식 제2호)하여야 함.

(7)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는 대상지구(공구)의 발주시기, 발주방법 등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8) 다음 각 항을 종합하여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고 익년 3월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 (나)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 (다)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 (라) 사업별 추진상황
- (마) 기타 사항

라. 시행계획변경

(1)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내역의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서식 제3호)

(2) 계획변경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가) 수혜면적의 증감 : 사업시행인가시 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이상 변동

(나) 사업시행인가시에 정한 공사비(계약체결이 있는 공사비는 제1차 계약시 체결한 총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다) 주요시설의 구조 및 수량 변동

- ① 수원공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 ② 용수간선의 로선계획등 기본계획의 변경

(라)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특수한 변경

- ①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② 기초지반개량공법의 변경
- ③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 (3) 주요사업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구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4)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주요 고시내용(사업기간, 개발면적, 총사업비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5)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의 책임을 물음.

마.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 및 장애물보상

-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나)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 (다) 분할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이전등기 수속을 하여야 함.
- (라) 용지매수 및 보상비에 대한 확정액 중 수령자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대금은 즉시 공탁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2) 어업권보상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 ①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②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확인하여야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③ 평가용역은 작업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집행중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보상액의 산정

- ①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심의·확정한 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바. 공사감리

- (1)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2)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할 수 있음.
- (3)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5)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6)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기사급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 (7)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마다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 검사

(1) 기성고확인

사업시행자는 기성고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2) 년도말 검정

(가) 사업시행자는 년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농림수산부장관은 주요공종을 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함.

(3) 준공검사

(가) 공사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검사 1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농림수산부는 인수 예정 농조입회하에 주요공종을 발취. 확인함.

-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장관의 주요공종 발체확인이 끝난 경우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체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공사완공증명을 발급함.

(나) 사업준공

-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준공을 확정함.

아. 유지관리

- (1) 사업시행자는 기원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2) 유지관리사업비는 실비정산함.
- (3) 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지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책정된 예산을 유지관리비 이외 타사업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잡수입으로 충당하되 잡수입이 부족할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4) 유지관리비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 |
|----------------|------------------------|
| (가) 목적 | (나)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하여야할 사항 |
| (다) 유지관리비 부과정수 | (라) 유지관리요원관리 |
| (마) 유지관리사업내역 | (바) 시설물현황 |
| (사) 유지관리인원현황 | (아) 세부운영지침 |
| (자) 사업수지예산표 | (차) 지구별 예산내역서 |
| (카) 기타 필요한사항 | |

8. 사업비지원

가. 자금관리

- (1)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2)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 (3)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사항은 반드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비 국고의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은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9. 행정사항

가. 보고

-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별지 제4호서식)
-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5호서식)
-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용수과(02 - 500 - 2666, 2667)
- (2) 사업시행(대행) :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0343 - 20 - 3451)
- (3) 새만금사업 : 전라북도 새만금지원사업소(0652 - 82 - 8518)
새만금사업소(0653 - 842 - 0045)

다. 사후관리

- (1) 공사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해당 인수예정 농지개량조합에 인계·인수하여야 함.
- (2) 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본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표 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96예산(안)

(단위 : 백만원)

지구명	개발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 구역	사업기간 (년)	총사업비	'95 까지	'96 예산 (안)
합 계					3,625,690	1,447,670	(62,546) 211,948
영산강(Ⅱ)	20,700	농진공	전남	'76~ '98	330,000	296,124	(13,000) 2,000
대 호	7,700	농진공	충남	'80~ '96	185,630	181,053	(3,905) 672
금 강(Ⅱ)	43,000	농진공	충남 전북	'89~2004	415,815	48,555	21,000
미호천(Ⅱ)	4,430	농진공	충북	'89~ '99	118,861	35,135	15,000
홍 보	8,100	농진공	충남	'91~2001	218,400	44,912	24,000
영 산 강 (Ⅲ-1)	7,960	농진공	전남	'95~2003	328,000	3,100	(8,000) 1,000
영 산 강 (Ⅲ-2)	6,800	농진공	전남	'89~ '96	64,059	54,810	(7,641) 1,608
새 만 금	40,100	농림수산부	전북	'91~ '98	1,388,000	329,648	(30,000) 117,400
- 보상업무		전라북도			438,000	196,600	100,900
- 공사시행		농진공			950,000	133,048	(30,000) 16,500
채무상환		농진공			575,895	454,333	28,238
방조제유지 관 리		농진공			1,030		1,030

※ ()는 농지관리기금 외서

밭기반정비사업(공공)

1. 목 적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 농로, 용수이용시설; 밭 경지정리 등의 밭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가. 2007년까지 총 목표면적 110천ha개발 완료
- 나. 사업시행규모, 지형, 경사도, 토양 등 개발조건이 양호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밭을 우선으로 개발하되 농업진흥지역밖이라도 농리민이 희망하는 경우 한계농지와 논으로서 활용도가 낮은 인근의 논 등을 포함하여 개발
- 다. 채소, 과수, 화훼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경작형태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함
- 라. 논 경지정리, 농어촌마을정비, 시설농업(채소, 과수, 화훼, 특작생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개발 방식의 도입
- 마.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호응도가 높고,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들 대상으로 추진
- 바. 정지, 수원공, 용·배수시설, 도로, 공공이용시설부지조성 등의 공증을 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비, 주민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개발

3.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ha, 백만원)

구 분	합 계	94까지	95	96	97	98	99~2007
사 업 량	110,000	3,000	2,500	6,000	8,000	10,500	80,000
사 업 비	2,579,425	66,100	55,000	138,000	290,897	242,466	1,786,962
- 국 고	2,056,319	39,660	38,500	110,934	234,777	195,086	1,437,362
- 지방비	523,106	26,440	16,500	27,066	56,120	47,380	349,600

나. '96지원계획

(단위: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계	6,000	138,000	110,934	27,066	
사 업 비	6,000	135,330	108,264	27,066	
기본조사비	(6,000)	2,670	2,670	-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나. 사업 현황

(1) 사업 내용

(가) 도 로

- 진입로 : 국도, 지방도등 기간도로에서 부터 사업지구까지의 도로를 말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
- 간선농로 : 진입로에서 분기되어 사업지구내 중앙을 통과하여 지선농로의 연결되는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말하며, 진입로와 연계하여 확·포장할 수 있음.
- 지선농로 : 간선농로에서 분기되어 농지와 직접연결되는 농로를 말하며, 우기에 통행이 곤란한 토질에는 자갈을 부설할 수 있음. 원예, 시설농업 지원사업으로 모노레일 등의 설치(급경사 파수원등)계획이 있는 지구는 가능한 한 연계되도록 계획

(나) 수 원 공

- 기설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등)을 가능하면 활용하고, 수량부족 또는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대형관정은 가능한 한 공당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공수를 적게하므로써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심층지하수 부존심도까지 측정하되 암반관정의 심도는 200m내외를 한도로 함.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지역(해안 및 도서지역, 유역이 적은 지역등)은 대수층 분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취수량과 심도를 정함.
-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94.11.12)에 의거 암반관정개발시는 지하수부존량에 대한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등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상의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함. 다만, 해당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추조사공은 소구경으로 하되 개발(계획) 1공당 2배수로 필요심도까지 조사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재배 용수등은 수질이 중요하므로 수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함.

(다) 용 수 로

- 용수로는 송수관로(送水管路 : 관정에서 저수조까지의 Pipe Line)와 급수관로(給水管路 : 저수조에서 분수공까지의 Pipe Line)로 구분하며 송수관로는 도복장 강관류, 급수관로는 PE관 등으로 계획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민이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살수관개(Splinkler)나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등 수압이 필요한 관개를 지역농민이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수공에서 이에 필요한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

(라) 배수로 (排水路)

- 사업지구 전체의 지형이 표고나 경사도등으로는 배수상태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는 경우 기준사업비 내에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복토나 지하배수로 처리할 수 있음.
- 지구내 유입수를 안전하게 지구외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로는 조립식개거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타설식개거로 계획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준 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마) 밭 경지정리

- 토지소유자가 희망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되 지구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무리한 정지계획으로 토양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는 않됨. 다만, 토지소유자가 토양보존과 관계없이 시설농업등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있어 특별히 정지를 원할 때는 지원할 수 있음.
- 정지방법은 지구여건에 따라, 정지를 하지않고 구획만을 정리하는 구획정리, 경사지에 원지형을 살려 정지하는 경사정지, 평탄지 또는 시설농업을 위한 수평정지 등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어느경우도 토량이동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계획

(2)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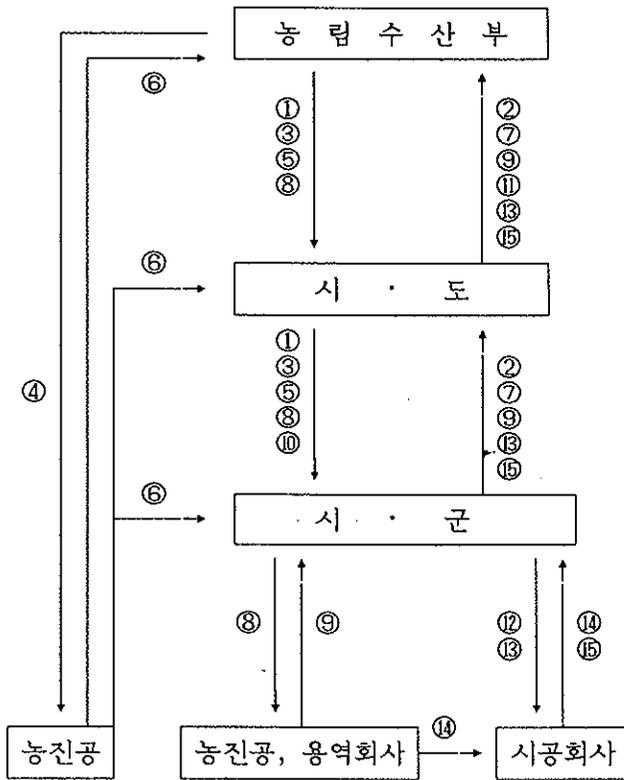
발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3) 사업비 재원

당해년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단가의 80%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에서 부담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4) 사업시행체계



- ① 예정지조사 지시
- ② 예정지조사 결과보고
- ③ 사업량 및 예산내시
- ④ 기본조사 지시
- ⑤ 기본조사 지시내용 통보
- ⑥ 기본조사 보고서 제출
- ⑦ 기본조사결과 검토보고
- ⑧ 세부설계 지시
- ⑨ 세부설계 원료 및 결과보고
- ⑩ 사업시행인가
- ⑪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⑫ 공사발주
- ⑬ 계획보완 및 결과보고
- ⑭ 공사감독
- ⑮ 공사준공 보고

(5) 동의서 징구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 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 모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의 조치로 참여자격자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5.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1) 일반 기준

- 예정지선정은 지목보다는 실경작을 기준으로 채소, 과수, 화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이중투자의 문제가 없고 현재 논으로 활용되지 않는 등 논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논과 주변의 한계농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음

- 농어촌정주권개발 집단마을 조성사업 지역
- 시설농업예정지역과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지역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중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민의 사업 희망도가 높은 지역
- 경지의 집단화가 용이하고 경사, 토양, 토심등 개발조건 및 영농조건이 양호한지역
- 국도, 지방도등 기존 포장도로와 거리가 가까운지역

○ 아래와 같은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마을도로를 위주로 개발되는 지구
- 지구 전체가 일 개인의 소유로 된 지구
- 용지매수등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합의가 안된지구
- 주택단지.공단 등 타목적으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 또는 개발제한지역

(2) 형태 및 규모별 기준

○ 작목별 경사도 기준

- 과수 20° (36%)이하
- 특작, 화훼, 채소, 복합단지 : 15° (27%)이하
- 밭 경지정리 : 7° (12%)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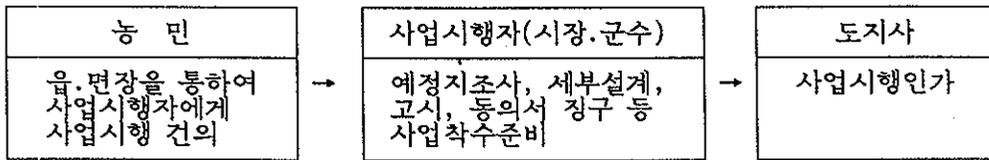
○ 작목별 최소개발 규모

- 특작, 화훼단지 : 3 ha (1.5ha) 이상
- 채소단지 : 5 " (3ha) 이상
- 과수단지 : 10 " (5ha) "
- 복합단지 : 15 " (10ha) "
- 밭경지정리지구 : 15 " (10ha) " ※ () : 실 물리면적

나. 지원 우선순위

- | | |
|-------------------|-------------------|
| ○ 1순위 : 100ha 이상 | ○ 2순위 : 50 - 99ha |
| ○ 3순위 : 30 - 49ha | ○ 4순위 : 10- 29ha |
| ○ 5순위 : 3 - 9ha | ○ 6순위 : 3ha 미만 |

다. 선정 절차



6.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계획수립

- 농림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농진공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각시도에 그 내용을 알림
- 기본조사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계획내용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감안하고 발기반 정비사업이 초창기임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인 농진공이 시행토록하고 기본조사비는 농림수산부에서 직접보조
- 농진공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시도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도와 사업시행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도내 지구별 우선순위와 세부설계의 필요성, 농민호응도, 지방비부담능력, 타법 및 타사업과 관련성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을 표기하여 제출

나. 세부설계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출한 지구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사설계토록 지시한 지구에 대하여 암반관정 등 수원공, 농로, 저수조, 송수관로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가 세부설계를 추진할 때 사업규모가 30ha이상 되는 지구와 발경지정리 지구에 대하여는 향후 본사업이 정착될때까지 토목.지질.기계.전기.건축.영농.경제.토양 등 종합적인 전문직종을 보유한 농진공 등 전문기관에 의뢰.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시도지사가 세부설계를 추진할 때는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에 의거 지하수법상의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조사 및 개발부터 최우선적으로 실시

- 시도지사로 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 착수지시를 받은 지하수개발 담당자는 지구별로 개발완료 되는대로 개발공위치, 채수량, 안정수위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내용을 시·군별로 취합하여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 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 담당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받는대로 즉시 세부설계를 착수

7.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도별사업량 가내시	장 관	전년10.15	세부설계지구확정및 지하수개발착수지시	도지사	3.30
예정지구선정	시 장 군 수	전년11.15	지하수개발완료	농진공등	6.30
도별사업량보고	도지사	전년11.30	세부설계완료	농진공등	8.31
사업량 및 예산내시	장 관	1.10	사업계획확정	도지사	9.15
기본조사지시	농진공	1.15	공사발주 및 준공	시 장 군 수	12.15
기본조사완료	농진공	3.15	공사완료보고	도지사	12.31

※ 현재 보고중인 발기반정비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조정

나.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결과를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공정계획

- 발작물 재배시기가 연중계속되는 지역이 많고 시공시기와 일치되어 휴경보상 문제가 야기되며 관정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배수로, 정지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이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암반관정 등 용수원개발을 최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독원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라. 계획변경

-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 진입로 및 간선농로의 토폭을 확장하거나 총길이를 대폭 연장하는등 기본사항을 하는 경우
 - 관정수를 늘리는 경우
 - 용.배수로의 총길이를 대폭 연장하는등 기본사항을 변경 경우
 - 발경지정리를 추가하는 경우
 - 농업시설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

마. 용지매수 및 보상

- 발경지정리로 감보처리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
- 용지매수는 도로중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배전함부지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회사 및 주민부담 등 지구내 농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으로 하며
 - 주민협의불가 등으로 용지매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매수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바. 공사감독

- 공사감독은 시·군자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토목·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감리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
- 기타사항은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사.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 9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등의 준공검사를 시행.
-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일괄 보고

아.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독 및 관리비 집행

- 세부설계 및 공사감독비와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설계·공사감독·사업관리 요율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집행
- 기본조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사업비정산도 같은 절차를 밟아 정산

자. 사업비 집행

- 사업비집행은 동 지침 4 - 나 - (3)(사업비재원)에 의하여 집행하되 소요지방비를 지방자치단체의 '96본예산에 계상하여 부담. 다만, 사업시행중 추가소요되는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
- 기타사항은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

차. 환지업무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의 "7-마"항을 준용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의 개발공에 대한 완공 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시공전, 중 및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별지제7호서식)

- 시장.군수는 이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혜농가들에 의한 관리조직을 만들어 관정등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시설물의 점검정비는 1차적으로 수혜농민에 의한 관리조직에서 책임관리하고, 자체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군수가 인력 및 장비와 예산을 지원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지도.관리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료를 자체부담토록 해야 함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수유입 방지 그라우팅, 폐공처리, 수위측정관, 적산유량계, 수질검사용 출수장치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함
- 기타사항은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

나. 보 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예정지조사 결과보고	1	완료즉시	(일괄보고)
○ 기본조사 결과보고	2	"	
○ 세부설계및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3	"	
○ 공정계획 승인결과보고 서식	4	"	
○ 사업추진상황 보고	5	익월10일	매월말실적
○ 준공결과보고	6	준공즉시	

※ 수시보고: 사업추진에 있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여야 함.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증 양 : 농림수산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02-500-2645)
- 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 직할시 : 지역경제국 농정과
 - 충청도 : 농정국 농지개발과
 - 제주도 : 농어촌개발국 건설과
- 군 : 건설과(시는 농업진흥과)

[별지 제 1호 서식]

'96반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 결과보고

○○도

우선 순위	지구명	위치		면적	소요 사업비		지역 구분		필요 시설				토지 소유자 명	경사도 %	주민 호응도	비고
		군	면리		총사업비	ha당	전통	비전통	전입로	경작로	관정	용수로				
				ha			ha	ha	□	□	□	□	ha			

※ 1) 기검지된 시설은 필요시설만 상단에 () 표시. 2) 주민호응도: 양호(80% 이상), 보통(67%이상-80%미만)으로 구분

[별지 제 2호 서식]

반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결과보고

○○도

우선 순위	지구명	위치		면적	소요 사업비		지역 구분		필요 시설				토지 소유자 명	지방비 부담액	
		군	면리		총사업비	ha당	전통	비전통	전입로	단지내도로	관정	용수로			배수로
				ha			ha	ha	□	□	□	□	ha		

지방비 부담액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도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조사 시계	비고
	관련기관	예산확보여부	예산확보의향	의여부				

※ 작성요령

- 단지구분: 채소(토마토 등), 파수(사파 등)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액: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
- 예산확보여부: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률 기입하고, 반기반정비가 끝난후 빈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호응도: 양호(8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6%이하 동의)으로 기입
- 조사시계여부: 세부시계 대상지구는 ○표, 세부시계 제외지구는 x표로 표시

[별지 제 3호 서식]
○○도
반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거 곁파보고

우선 순위	지구명	위치		면적	소요 사업비		단지 구분	필요 시설			토지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총사업비		ha당	진흥	비진흥			진입로	경작로
					ha			ha	ba	ba	ba	ba	ha	

[별지 제 4호 서식]
○○년도 사업계획

지구명	위치	면적	주요 공사항	사업비		'96 분기 계획				비고	
				총액	'95까지	'96계획	'97이후	1/4	2/4		3/4
		ba		백만원							

* 분기계획안에는 예산집행계획 및 주요공종 물량용 기입

[별지 제 5호 서식]
○○도
반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 공종				진도 (%)			비고
				진입로	경작로	관장	용수로	배수로	정지	평간	
		ha	백만원	ba	ba	ba	ba	ba	ha		

[별지 제 6호 서식]
○○도
반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보고

지구명	위치	면적	지역구분			제배작목			사업비			사업 내 용					
			진흥	비진흥	채소	화훼	과수	특작	계	국고	지방비	관장	진입로	경작로	총합수관	배수로	정지
계		ha	ha	ha			백만원										

* 면적 = 지역구분 면적 = 제배작목 면적

[별지 제 7호 서식]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관리자: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0 auto;">사 진</div>							
<p>○ 공사기간 : '95. . -</p> <p>○ 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p>							
<p>○ 주요공사내용 : 경 작 로 km</p> <p style="padding-left: 20px;">.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p> <p style="padding-left: 20px;">. 간선농로 : 조 m(노폭 m, 포장 m)</p> <p style="padding-left: 20px;">. 지선농로 : 조 m(노폭 m)</p> <p>관 정 : 공(구경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m³/일)</p> <p>용 수 로 : 조 m (송수관로 m, 급수관로 m)</p> <p>배 수 로 : 조 m</p> <p>정지공사 : ha</p> <p>○ 기타 특기사항</p>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정시설재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6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³ /일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연 수위	m						
안정 수위	m						
수중모타펌프	HP						
"	m						
제 품 명							
설치 심도	m						
양 수 장	m'						
저 수 조	m'						
송 수 관	m						

일반경지정리사업 (공공)

1. 목 적

불규칙하고 정리되지 않은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 등을 정비하여 관배수 계획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와 공동영농에 알맞도록 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생활환경개선을 도모

2. 추진방향

- 2004년까지 총논면적 1,267천ha의 71%인 902천ha 추진목표
-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중심으로 우선추진
 - '98년까지 미정리된 농업진흥지역 136천ha, '99-2004기간중 농업진흥지역밖 105천ha 추진
- 소요사업비, 주민호응도, 경사도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추진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논면적	총 계 획	'94까지	'95	'96	'97-2004
사업량	1,267	902	661	28	30	183
- 진흥지역	735	735	599	28	30	78
- 진흥지역밖	532	167	62	-	-	105
사업비		72,275	28,188	5,161	5,781	33,145
- 국 고		54,837	19,568	4,129	4,625	26,515
- 지방비		14,727	5,909	1,032	1,156	6,630
- 자부담		2,711	2,711	-	-	-

(3) 지원조건

- 국 고 : 예산단가의 80%의 해당액을 정액으로 지원
- 지방비 : 예산단가의 20% 해당액과 초과하는 사업비 전액
- ※ 예산단가('96가을착수기준) : 19,270천원/ha
-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4)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절 차	시행자 및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예정지 조사 (법 제6조)</div>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기본조사 (법 제7조)</div>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장관 - 용수원과 입지적, 기술적, 경제적조건 등 사업의 적부판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시행계획수립 (법 제8조)</div>	○ 사업시행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고시 (법 제10조)</div>	- 세부설계 · 소요사업비 조달방안 · 설계내용의 기술적타당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동의서장구 (법 제10조)</div>	- 참여자격자 또는 수혜면적의 2/3이상 동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이의신청 (법 제10조)</div>	- 고시일로부터 30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신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사업시행인가 (법 제12조)</div>	○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고시 (법 제12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사업착수</div>	○ 사업시행자 - 입찰 등 발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시행계획변경 (법 제12조)</div>	○ 사업시행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준공 (법 제94조)</div>	○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환지 (법 제43조)</div>	○ 사업시행자 - 가환지, 본환지, 확정측량, 등기 등

나. '96지원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봄 마 무 리		가 을 착 수	
		사업량	국 고	사업량	국 고
계	487,356		343,356		144,000
○ 사업비	467,736	30천ha	323,736	30천ha	144,000
○ 환지비	9,150	"	9,150	-	-
○ 조사비	10,470	"	10,470		

※ '96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자

- 농조구역 : 당해 농지개량조합장
- 비농조구역 : 당해 시장, 군수
- 농조 비농조병합구역 : 큰면적을 관리하는자를 사업시행자로 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할시는 농림수산부와 사전협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격화 및 규모화
- 논두렁을 이용한 급.배수의 수로체계를 용.배수로에서 직접 급.배수 하도록 용.배수로 정비
- 좁고, 남의 논을 거쳐 자기소유논에 출입하던것을 농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농로정비
- 토양 및 토층을 개량하여 작물생산량 증대 및 미질의 고급화
-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의 집단화

(2) 지원대상

-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5) 동의서 징구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의 조치로 참여자격자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5. 사업대상지 선정

가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써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구
 - 주민호응도가 높고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업용수가 개발중이거나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
 - 일정규모 이상(10ha)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며, 경사도(1/50미만)가 완만한 지구
 - 예산단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를 우선 선정
- 단, 소요사업비가 예산단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지방비로 추가부담이 가능한 지구는 추진가능
-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경지정리계획으로 포함된 지역
-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타사업과 병행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는 지구

나 선정절차

-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세부설계 과정을 거쳐 "가.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시도지사)가 선정

6.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조사

별도시달하는 기본조사요령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 등으로 위탁받은 조사기관에서 수립

나. 세부설계

별도시달하는 세부설계요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 등으로 위탁을 받은 설계기관에서 수립

7. 사업시행

가. 공정계획

- 가을착수사업은 조기착공하여 당해년도말까지 전체계획공정의 40%이상 달성하고, 봄마무리사업은 직파 및 이앙작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완료
 - 가을착수에정지는 최대한 수확을 앞당겨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비
 - 못자리는 용수의 낭비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에 농민들로 하여금 직파재배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등을 받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농민들이 직파재배를 원하는 지역은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정밀시공을 위하여 레이저빔 장착장비 활용과 물정지를 조기에 완료토록 공사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직파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완료 (예, 4월중 직파가능하도록 공사추진)

나. 계획변경 및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다.

다.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

-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업무의 위탁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개선방안에 의하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

구 분			시 행 자
측량설계	기본조사	100ha미만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100ha이상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세부설계	농조구역	-100ha미만	('96년)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100ha이상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시군구역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 다만, 농조구역의 세부설계는 년차별 개방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위탁자를 선정
 - . '97년은 150ha미만까지 개방(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선정)
 - . '98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사업시행자가 책임하에 선정)
- 대중규모농업용수, 배수개선, 집단마을조성사업 등과 병행시행되는 지구와 시행중인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를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의 위탁기관에 위탁할수 있음
- 50ha미만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실시함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의 추진요령 및 유의사항, 공사감독업무의 세부추진지침 등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추진시 별도 시달

- 조사설계는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대구획(논)경지정리설계요령(조성51306: '93.2.13) 등에 의거 추진하고, 토양조사시 현장조사.실내분석시험.보고서 확인요령 등은 경지정리사업 토양조사철저(조성51306-66: '93.2.19)토록 지시한 공문에 의함

라. 환지업무

- 대구획경지재정리 시행지침 환지업무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5항(사업비의 재원)에 의하되, 노임.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포함한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여 완료
 - 지구별 집행단가가 예산단가이내일 경우에는 집행단가의 80%해당액을 국고에서 지원
- 관리비는 사업시행자(시도지사 포함)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현지확인.지도 등에 소요되는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소정요율과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집행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범위내에서 집행
-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

바.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별도로 시달하는 사업비 검정 및 결산요령에 의한다.

사. 사업비 절감

- 지구 여건상 사업비가 높은 지역은 사업수준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비를 절감토록하고 사업포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ha당 사업비를 최우선 검토기준으로 정함

아. 기타

- 동요령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예산신청

- 다음년도 예산을 신청할시는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소요액을 구분하여 신청

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사업시행자, 공사감리자)는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
-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입구에 공사개요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내용 홍보, 감리자, 시공자의 책임성 있는 공사시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

다. 보 고

서식번호	행 정 사 항	보고기일
1	경지정리 조사측량설계 및 기설계지구 보완결과	6월말
2	가을착수 대상지 선정보고	7월말
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결과	8월말
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9월말
5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보고(월보)	익월5일
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보고	익년2월말
7	환지업무 납품실적보고	가환지 5.31 본환지 12.10
8	확정측량결과보고	9. 30
9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현황보고	분기익월 15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 (02-500-2644.5)
- 시.도 : 각시도 농정국 기반조성과 (충북 : 농지개량과, 인천 : 농정과)
- 시.군 : 해당시군 건설과 (시 농업진흥과)
- 농 조 : 해당농조 개발과 (일부농조 : 경지정리과)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공공)

1. 목 적

- 기히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구획 경지재정리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대형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 제고
 - 경사도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필지의 대구획화
-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공동영농 활성화
 -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설치 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부지 조성
 -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영농조직 연계육성
- 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변의 취락과 밭, 영농체계 등을 연계하여 종합개발
 -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조성, 도로사업 등과 병행 및 종합개발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 '94- 2004년까지 200천ha 추진
 - '98까지 80천ha, '99-2004기간중 120천ha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 (5)	5 (25)	25 (25)	25(25)	25(20)	120 (100)	200
사 업 비	계	31,965	293,089	587,779	620,750	583,505	2,182,912	4,300,000
	국 고	25,572	234,989	475,886	496,600	466,804	1,740,149	3,440,000
	지방교부금	6,393	58,100	111,893	124,150	116,701	442,763	860,000

※ 1) 사업량의 ()는 착수면적임.

2) 적용단가 : '95마무리까지 21,500천원/ha

'95착수('96마무리) 23,650천원/ha

나. '96지원계획(안)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교부금
계	ha	천원/ha	백만원 308,565	250,515	58,050
○ 사업비			290,250	232,200	58,050
- 봄마무리	15,000	21,500	161,250	129,000	32,250
- 가을착수	20,000	21,500	129,000	103,200	25,800
○ 환지비			6,100	6,100	-
○ 조사비			12,215	12,215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자

- 농조구역 : 당해 농지개량조합장
- 비농조구역 : 당해 시장. 군수
- 농조.비농조구역 병합구역 : 큰면적을 관리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할시는 농림수산부와 사전협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필지의 대구획화
 - 필지규모는 경사도 등 지형여건에 따라 대.중구획으로 하되, 포구단위로 동일포고 또는 2-3개내외의 포고로 정지후 가변능두령을 설치하여 필지 규모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계획 (향후 공동영농 또는 규모화 영농에 대처)
- 용수로와 배수로의 분리.정비 및 시설현대화(콘크리트 구조물 등)
- 농로의 확장.정비
- 농촌지역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이용시설부지 조성
- 집단환지 등을 통한 농업경영조건개선 및 영농규모화의 확대.촉진 등

(2) 지원대상

-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3) 재원별 부담

- 예산서상에 계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전액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하되, 80%는 국고(농림수산부)로, 20%는 지방교부금(내무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4)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절 차	시행자 및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예정지 조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6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기본계획 수립</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7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장관 - 용수원과 입지적, 기술적, 경제조건 등 사업의 적부판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시행계획수립 (세부설계 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8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 사업비 조달방안, 설계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margin-left: 40px;">고 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0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가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margin-left: 40px;">동의서징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0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이상 동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margin-left: 40px;">이의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0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일로부터 30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신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사업시행인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2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margin-left: 40px;">고 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2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업 착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5) 동의서 징구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의 조치로 참여자격자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5. 사업대상지 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대상지역

- '76년이전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중 농토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규모가 작아 물관리 및 대형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으로써 경사도가 완만(1/200 이하)하고 집단화된 지역
-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 및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하천개수 및 집단마을정비·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 병행추진하는 경우 병행사업의 공정계획상 동시 추진이 불가피하고, 사업비절감 등 사업효과의 제고와 병행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지구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2) 우선순위

- 사업시행여건·농민호응도 등 사업효과가 높은 순으로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구별 우선순위 결정
 - 행정기관별 또는 지역안배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례 방지
 -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를 우선 선정

나. 선정절차

착수대상지구 선정.보고

사업시행자(시.군,농조) ⇒ 시.도 ⇒ 농림수산부

- 세부설계결과, 주민호응도,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착수계획 시달

농림수산부 ⇒ 시.도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보고내역과 예산편성결과 등을 감안하여 착수계획 시달

6. 사업계획 수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의 '96년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

구 분		시 행 자
기본조사	100ha 미만	사업행자가 선정
	100ha 이상	농조연, 농진공
세부설계	○ 농조구역	
	- 100ha 미만	사업시행자가 선정
	- 100ha 이상	농조연, 농진공
	○ 비농조구역	사업시행자가 선정

-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지구의 경우 동 입찰방식에 따라 추진
- 농업용수, 배수개선, 집단마을조성사업 등과 병행시행되는 지구와 시행중인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를 농진공이 담당
- 50ha미만은 기본조사와 세부설계를 동시에 추진가능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의 세부추진요령 및 유의사항, 검토기준 등은 별도 시달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는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대구획경지정리설계요령(조성51306-54:'93.2.13), 기본조사.세부설계시 지시된 내용 등에 의거 추진하고, 토양조사시 현장조사.실내분석시험.보고서 확인요령 등은 경지정리사업 토양조사철저(조성51306-66:'93.2.19)로 지시한 공한에 의함.

※ '95신규제정중인 경지정리사업 설계기준이 완료되면 동 기준에 의함.

7.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일정

구 분	기 간				처 리 기 관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① 기본조사, 세부설계 완료 및 착수지구 선정	7←→8				사업시행자(시.군, 농조) 시.도, 농림수산부
②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		8↔9			사업시행자, 시.도
③ 시공 및 준공		9←→4-6			사업시행자
④ 일시이용지 지정		12↔ 4			사업시행자, 농조연
⑤ 확정측량			6↔9		사업시행자, 지적공사
⑥ 본환지			9↔3		사업시행자, 시.도, 농조연
⑦ 등 기				4↔11	사업시행자, 등기소

나. 공정계획

- 공사기간이 추수후에 시작하여 익년도 모내기 이전으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표준이앙기, 기상, 인력, 장비, 자재 확보, 영농방식(직파)등을 고려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추진
 - 공정계획서 작성, 제출 및 승인 등은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법규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조사설계기간과 착수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착수토록 함.
 - 농민들이 직파 재배를 원하는 지구는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정밀시공을 할 수 있도록 레이저빔이 장착된 장비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며, 물정지 등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불도저 등을 최대한 투입, 공사완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직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예 : 4월중 직파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

- 가을착수사업은 조기착공하여 당해년도말까지 전체계획공정의 50%이상 달성하고, 봄마무리사업은 이양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완료
-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못자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못자리 용수의 낭비 및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별 못자리설치 및 이양적기 >

지역별	구분	못자리 설치			이 양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0 북 부 (한강이북)	중 모	4.15-30			5.15-30		
	어린모	5. 5-15			5.15-25		
0 중 부 (수원)	중 모	4.10-5.5	4.10-30	4.10-25	5.10-6.5	5.10-30	5.10-25
	어린모	5. 1-20	5. 1-15	5. 1-10	5.10-30	5.10-25	5.10-20
0 중 남 부 (대전)	중 모	4.10-5.10	4.10-5.5	4.10-30	5.10-6.10	5.10-6.5	5.10-30
	어린모	5. 1-25	5. 1-20	5. 1-15	5.10-6.5	5.10-30	5.10-25
0 남 부 (이리대구)	중 모	4. 5-5.15	4. 5-5.10	4. 5-5. 5	5.5-6.15	5.5-6.10	5.5-6.5
	어린모	4.25-6. 1	4.25-5.25	4.25-5.20	5.5-6.10	5.5-6. 5	5.5-30
0 극 남 부 (광주진주)	중 모	4. 1-5.20	4. 1-5.15	4. 1-5.10	5.1-6.20	5.1-6.15	5.1-6.10
	어린모	4.20-6. 5	4.20-6. 1	4.20-5.25	5.1-6.15	5.1-6.10	5.1-6. 5

※ 자료 : 농촌진흥청 ('95농업기술지도사업추진지침)

나. 계획변경

- 노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관련법규에 의함.
- 다만, 노임·물가변동 및 계획물량의 조정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증액된 사업비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당해 시·도내 사업지구별로 자체조정 하거나 지방비로 확보·추진

다. 공사감리

-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해당분야 공사감독원을 공사규모에 맞게 적정인원으로 고정배치하여 현장주재 감독토록 조치하고 공정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철저
- 일상행정업무에 바쁜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공사계약전에 공사감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준비 및 시공측량등의 착수초기에 공사감리업무가 소홀함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된 자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도에서는 공사감리원의 적정배치와 현장 주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 공사감리기관은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된 자가 시공중에 인사 조치되어 공사감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

라.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4-나-(3) 사업비 재원"에 의하여 집행
- 측량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집행
-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는 경지재정리 사업의 인가.보완.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현지확인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소정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 지원

마. 환지업무

- 환지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한 환지업무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 등을 위한 집단환지, 농업경영합리화 및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창설환지제도 활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 창설환지계획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대한지적공사,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 . 창설환지계획수립, 증.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홍보, 공사착수신고

- 공사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지 지정 (가환지)	. 도서인계	사업시행자→농조연	착수년도 12.10
	.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제출	농조연→사업시행자	3.31-4.30
	. 일시이용지지정도서 납품	농조연→사업시행자	5.10
	.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안)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수혜자	즉 시
확 정 측 량	. 확정측량계약	사업시행자→대한지적공사	6.30
	. 확정측량도서납품	대한지적공사→사업시행자	8.31
	. 확정측량도서인계	사업시행자→농조연	9.10
	. 리동정리신청	사업시행자→관할지적관서	9.15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환지계획(본환지)	· 도서인계	사업시행자→농조연	9.10
	·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신청	사업시행자→시.도 지사	10.20
	· 행정구역변경신청	사업시행자→관할 지방자치단체	10.20
	· 환지도서납품	농조연→사업시행자	11.20
	· 환지계획인가신청	사업시행자→시.도 지사	2.10
	·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	시·도지사	3.10
환지청산금정산	·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업시행자→수혜자	환지계획 인가일부 90일 이내
등 기	· 변경 및 대위등기 촉탁	사업시행자→등기소	6.20
	· 환지등기촉탁	사업시행자→등기소	8.1
	· 환지등기	등기소→사업시행자	8.30

8. 행정사항

가. 예산신청

- 다음년도 예산을 신청할시는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소요액을 구분하여 신청

나. 사후관리

- 사업시행 전후의 작부체계 및 경운.이앙.물관리.수확 등 영농형태 등의 변화, 노동시간 절약 및 영농환경 변화, 주민 소득증대 효과, 주민호응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하는 등 향후 경지재정리사업 시책개선에 반영함.
-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된 사례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토록 하여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함.
-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감리자 등은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사업지구내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조사설계자, 사업시행자, 시공업체, 공사감독자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조사설계와 시공의식 고취토록 함.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앙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되지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독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다.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비 고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3 말	
○ 경지정리 조사측량설계 및 기설계지구 보완결과	6.30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결과	승인후 즉시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입찰후 즉시	
○ 환지사업지구 내역	1. 10	
○ 환지업무 납품실적	가환지 5.31 분환지 12.10	
○ 확정측량 계약보고	7. 10	
○ 확정측량 결과보고	10. 10	
○ 환지청산금정수 및 교부현황보고	분기익월 15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 (02-500-2645)
- 시.도 : 각시.도 농정국 기반조성과
- 다만, 충북은 농지개량과, 인천은 농정과
- 시.군 : 해당시.군 건설과 (시는 농업진흥과)
- 농 조 : 해당농조 개발과 (일부 농조 : 경지정리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도

코드	위 치		지구명	면적	사업시행자	면 적		면적조정 사유	ha당사업비		기승인사업비		조정사업비		증 △ 감			
	군	면				기승인	조정		증감	기승인	조정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계					①	②	③ = ②-①				④		⑤			⑥ = ⑤-①	

(단위 단축 : ha, 금액 : 천원)

전년도요액	금년도요액		금년도예산액		금년도부족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⑦	⑧		⑨		⑩ = ⑧-⑨		

※ 1) 대구광역시제정하는 통시적으로 별도작성

2) 기승인사업비, 조정사업비, 전년도집행액은 전년도집행 기본조사비들 < > 외서하고, 전년도 이전집행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포함)는 << >>외서 표기

3) 환지비는 ()외서 표기

4)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사업비가 지원되는 지구는 비교란에 해당금액을 외서 표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 선정보고

도

순위	구분	Code No.	지구명	위치		면적			농업진흥지역		간보율	실제금액		조정금액		조정 사유	사업시행처
				시간	음력	계	비농조 구역	농조 구역	진흥지역 내	진흥지역 밖		종액	ha당	종액	ha당		
계						ha			ha			백만원	백만원	천원			

경사도	토양처리대상		용수 확보율	용수로		배수로		주목	심사	섬계기관	병행사업		도시·공민회 등 타공도도 진용가능여부	기타 특기사항
	객·복토	습지		총연장	토공	구간	총연장				토공	구공		
1/000	ha		%	km		km			년도			%		

[별지 제 6호 서식]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보고

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사업시행처	총사업비 (A)	계 획			실 형			진 도 (%)		비 고	
	군	면				계(D=B+C)	가용작수(B)	총면적수(C)	계(G=E+F)	가용작수(B)	총면적수(F)	G/D	E/A		

[별지 제 7호 서식]

환지업무납품실적보고

도별	지구명	위 치		시행자	업 무 량(ha)			납품일자	비 고
		시·군	읍·면		승인	납품	증△감		

[별지 제 8호 서식]

확정측량계약현황보고

지 구 명	위 치		시 행 자	면 적 (ha)	계약일자	완료예정일	비 고
	시·군	읍·면					
계	지구						

[별지 제 9호 서식]

확정 측정 결과 보고

지구명	위 치		시행자	면 적 (ha)			착수일자	납품일자	추량비 정산액
	시·군	읍·면		계약	확정	증△감			
개 지구									

[별지 제 10호 서식]

경지정리사업 한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상환 보고(연보)

시행형	지구명	인 원	확정액	징수액	미 징수액		교부액	미 교부액		자연사유 및 대체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공)

1. 목 적

-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거나 앞으로 추진할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의 주요간지선 농로를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작지와 가공,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시켜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2.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역을 들녘 단위로 우선 추진
 - 생산성이 높은 대구획 경지재정리 시행지구 우선추진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 2010년까지 주요간지선 농로 22,000Km 확포장

구 분	총계획	'95	'96	'97-2004	2005-2010
사업량(Km)	22,000	200	1,000	10,800	10,000
사업비(억원)	28,650	187	1,308	14,040	13,115
- 국 고	22,941	151	1,048	11,232	10,510
- 지방비	5,709	36	260	2,808	2,605

※ 1) 42조원 투자계획상 추진계획, 적용단가 : 130백만원/Km

2) 국회의 예산확정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 예정

나. '96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계		126,180	101,064	25,116	
○ 확.포장사업	1,380Km	125,580	100,464	25,116	
○ 기본조사사업	2,000Km	600	600	-	

※ '96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자

- 농조구역 : 해당 농지개량조합장
- 시군구역 : 해당 시장, 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포 장 : 비포장 농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로 포장
- 확 장 : 농로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장하여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
- 용.배수로 개거화 : 농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농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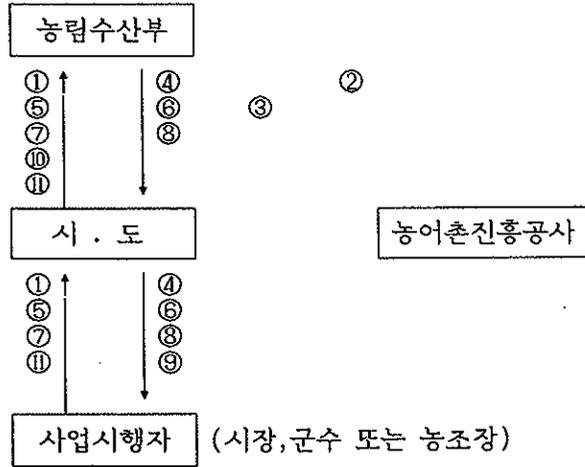
(2) 지원대상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3)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4) 사업시행절차



- ① 예정지조사보고(기본조사대상지구)
- ② 기본조사지시
- ③ 기본조사결과보고(사업시행자, 시도와 협의 조사)
- ④ 기본계획수립 통보
- ⑤ 세부설계대상지구 선정보고
- ⑥ 세부설계대상지구 확정시달
- ⑦ 세부설계결과 및 사업시행대상지구 보고
- ⑧ 사업대상지구 확정시달 및 예산배정
- ⑨ 사업시행인가
- ⑩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
- ⑪ 입찰현황, 계획변경, 사업준공보고

5. 사업대상지 선정

가. 선정기준

-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하고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시행 완료지구
- 발기반정비, 정주권개발 등 농어촌소득사업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지구
- 주변 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지구
- 도시, 공단 계획등 타법.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 종횡단구조물(교량, 암거 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으로 확보되어 종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선정절차

-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세부설계 절차를 거쳐 "가"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우선순위를 우리부에 보고하고 예산등을 감안 선정기준에 따라 우리부에서 선정

6. 사업계획수립

가. 기본조사

- 각시도지사가 개발예정지(기본조사대상지)로 보고한 지구를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시달하는 기본조사지침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실시
- 기본조사 완료후 타사업으로 확포장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우리부에 별도보고

나. 세부설계

- 세부설계는 기정51370-163('95.5.24)호로 이미 시달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설계 및시공요령" 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

구 분	세 부 설 계 기 관
○ 시군구역	○ 해당 시장, 군수
○ 농조구역	○ 해당 농지개량조합장

7. 사업시행

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 기본조사 완료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년차별계획에 따라 지구별로 실시
하되 노선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수립
 - 상위도로, 타관련사업 등과 연계개발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시 기본조사내용을 파악하여 세부설계에 반영
 - 농로의 특성을 고려
- 포장 등 설계방법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설계 및 시공요령에 의하되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내무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등을 적용
- 사업시행자는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시행
- 포장대상노선의 중형단구조물중 노후, 파손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
은 별도 예산을 확보, 병행시행하여 관.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 사업시행계획은 세부설계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
 - 사업시행자가 농조장일 경우에는 당해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나. 사업비 집행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공사감리, 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
정비법제97조(측량, 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의
대상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관리 위탁요율범위내에서 실비로 사용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등에 사용한 실비용은 사업비와 함께 정산
-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게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를 직접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의 대행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할 경우의 실비용
지급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대행비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부담

다.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지방비 및 병행사업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

라. 사업시행요령

- 지구별 완공위주로 사업시행하되 대중규모 평야지구는 노선별로 완공하여 년차적으로 시행
- 매년 지원되는 km당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상의 사업물량을 시행
 - 포장 폭은 3m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3m이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과 관련한 시설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계획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기본조사시 부터 사업시행자가 시설부지의 용지매수보상비를 별도 자체 부담으로 계획하여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

마. 공정계획

-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조정시행

바. 계획변경

-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현지어건변동으로 인한 사업시행대상 지구내에서 노선의 변경
 - 단, 시행지구의 변경은 우리부와 협의
 - 현지어건변동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업량 축소 제외)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변경시행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계획변경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확보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우리부에 보고

사. 기술지원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어촌 진흥공사에게 요청
- 공사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함을 원칙
- 공사감독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
- 공사감독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전후 개발상황이 바로 비교될 수 있도록 비치

아. 준공검사,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한때에는 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결산은 별도로달하는 지침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도로 포장 파손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재원으로 확보

나. 보 고

서식번호	행 정 사 항	보고기한
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정지(기본조사대상) 조사보고	10월말
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대상지 선정보고	"
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배정결과보고	1월말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설계결과 및 사업 대상지 선정보고	2월말
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결과보고	3월말
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찰상황보고	4월말
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보고	익월10일까지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준공결과보고	11월말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증 양 : 농림수산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 (02-500-2644-5)
- 시.도 : 각시도 기반조성과
- 시.군 : 각시군 건설과 (시 농업진흥과)
- 농 조 : 각농지개량조합 개발과

[별지 제 1호 서식]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정지(기본조사대상)조사보고

구분	우선 순위	들넉 명	지구명	노선 번호	위 치		면적	총 농로길이	포장대상 (기본조사물량)	사 업 시행자	관련 사업
					군	면					

※ 대중규모 평야지구, 일반지구로 구분작성하되, 우선순위는 상기 열거된 도 전체 우선순위로 작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대상지 선정보고

(단)

(단위 : 천원)

순위	분류명	구분	지구명	노선번호	위치		면적(ha)	사업시행자	중		○○까지		○○제한		이후		관련사업	비고	
					군	면			사업량	사업비	TYPE	사업량	사업비	TYPE	사업량	사업비			
		계							km			km		km					

- 1) 지구번호 작성하되, 사업시행자가 농조장일 경우는 해당 시·군에 포함하여 시·군별계로 작성
- 2) 구분명은 대구회경지체정리, 대중규모 평야지구, 병행지구, '95사업시행지구, 일반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에대로 작성
- 3) 노선명은 해당년도 사업시행대상지를 기준으로 작성
- 4) 면적은 지구별로 기재
- 5) 사업फल 연장은 소숫점 1자리까지 표시, 종연장은 해당지구의 기본조사의 종연장과 일치
- 6) A, B TYPE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으로 병행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배정된 예산과 구분 되도록 ()의서로 작성
- 7) TYPE은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시행가능 형태로 기입
- 8) 비고란은 '95기본조사완료 유무를 표시

'95기계회경지도획·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지구명	노선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사 업 량			중 사 업 비		○○까지		○○계획		○○이후		관 련 사 업	
		면적 (ha)	지 번		총연장 Km	○까지 Km	○계획 Km	○이후 Km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계																	

- 1) 지구별로 작성하되, 사업시행처가 농조장일 경우는 해당 시·군에 포함하여 시·군별계로 작성
- 2) 사업물량은 소숫점 1자리까지 표시, 총연장은 해당지구의 기본조사의 총연장, ○○계획 사업량은 해당년도 물량
- 3) 노선명은 해당년도 사업대상지물 기준으로 작성, 면적은 지구별로 기재
- 4) A, B TYPE 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으로 병행사업이 가능한 지구물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계회경작로 파·포장사업으로
배정된 예산과 구분 되도록 ()외서로 작성
- 5) 기준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지방비는 ()내서로 기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설계결과 및 사업대상지선정보고

(단 위 : 권 리)

지구 명	노선 명	위 치		면적 (ha)	사업 시행 자	사업 기간	총 연장	○ 계획			○ 이후	총 사업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관련 사업	
		시간	음면					재료	TYPE	물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계																				

※ 작성대상 : 세부설계결과 사업시행대상지인 보고, 세부설계결과 지방비부담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지구는 제외

- 1) 지구별로 작성하되, 시군별, 사업시행차별도 합계하되, 농조장일경우는 해당시군에 포함
- 2) TYPE은 A,B,C로 구분하되, 한개노선에 A,B,C TYPE이 중복된 경우 A : 00m, B : 00m, C:00m로 구분기재
- 3) 노선명은 해당사업시행물량을 기준, 편락은 지구별로 기재
- 4) A,B TYPE은 수리시계개·보수사업등으로 병행사업이 가능한 지구들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배정된 예산과 구분 되도록 ()와서로 작성
- 5) 사업기간은 해당년도 사업시행기간,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구분
- 6) ○○년 계획 사업비는 : 설계금액, ○○년 계획물량은 실시설계물량
- 7) 국고 : 예산단가의 80%, 기준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지방비는 () 내서로 작성

기계화경작모형·포장사업 인가결과보고

(단위 : 원원)

지구명	노선명	위지		사업시행면적 (ha)	사업시행기간	중연장	○까지		○계획		○이후	총사업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관련사업	
		시군	읍면				체표	TYPE	통항	체표		TYPE	물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계																				

- 1) 지구번호 적성하되, 시군번호, 사업시행자번호 합계하되, 농조장일경우는 해당시군에 포함
- 2) TYPE은 A,B,C로 구분하되, 한개노선에 A,B,C TYPE이 중복될 경우 A : 00m, B : 00m, C:00m로 구분기재
- 3) 노선명은 해당사업시행물량을 기준, 편차는 지구별로 기재
- 4) A,B TYPE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으로 병행사업이 가능한 지구들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계화경작로 화·포장사업으로 배정된 예산과 구분 되도록 ()외서로 작성
- 5) 사업기간은 해당년도 사업시행기간,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구분
- 6) ○○년 계획 사업비는 : 설계금액, ○○년 계획물량은 실시설계물량
- 7) 국고 : 예산단가의 80%, 기준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지방비는 () 내서로 작성

[별저 제 6호 서식]

기계회경적모 학 · 포강사업 입찰상황

(도)

지구 명	노진 명	위 치		사업 시행 연장 (km)	시행정 시행정	중 사업비 (천원)	실계 가격 (A)	예정 가격 (B)	낙찰 가격 (C)	낙찰율(%)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유찰사 회사 수	낙 찰 자			계 약 상 황			공 시 관 공 관	비고		
		C/A	C/B							C/B	소 제 기	회 사 명				대 표 자	계 약 입 자	확 약 입 자	중 입 자						

1) 지구별로 작성하되, 사업시행차별로 작성, 단, 노진별 분리입찰시는 노진별로 작성

[별지 제 7호 서식]

기계화경적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 (. 현재)

지구명	노선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 ○년계획(A)		○ 원계획(B)		○ 원집려(C)		진 도		부진사유 및 대책방안	비 고
		면	군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계					K₩	천원	K₩	천원	K₩	천원	%	%		

- 1) 지구별로 작성하되, 사업시행자별로 합계 (농조장은 시군에 포함 작성)
- 2) 사업물량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 3) 진도는 사업비 기준
- 4) 부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 8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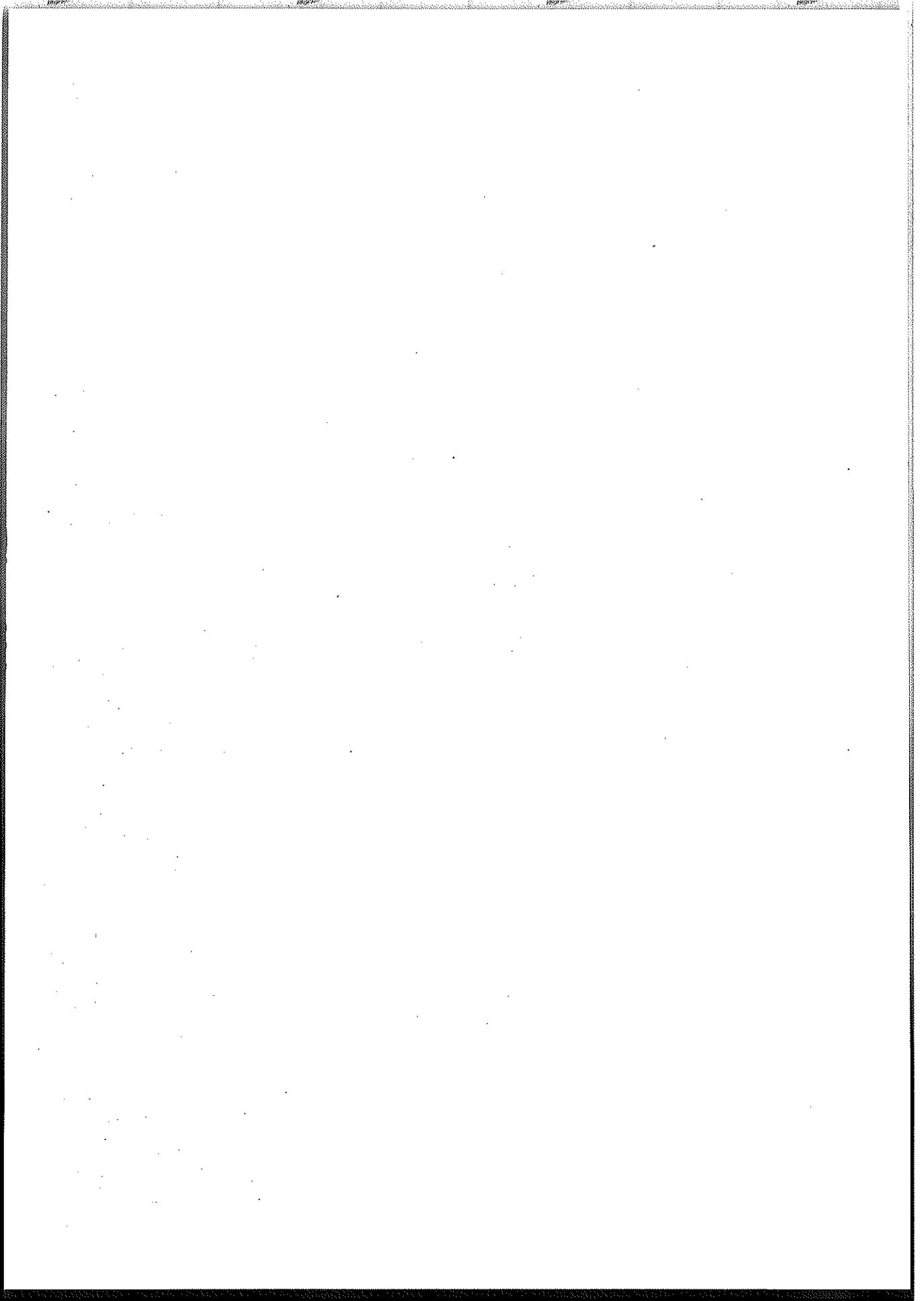
기계화경장로 확·포장사업 준공결과보고

(단위 : 원천)

지구명	노선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행처	사 업 기간	포장 재료	인 가 및 변 경 승 인 (A)			준 공 (B)			중 간 (B-A)			관 련 사 업	
		시 간	읍 면					TYPE	품 명	계	국 고	지 방 비	TYPE	품 명	계	국 고		지 방 비
계																		

- 1) 당해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 2) 지구별로 작성하되, 시군별, 사업시행자별로 합계하되, 농조장일경우는 해당시군에 포함
- 3) TYPE은 A,B,C로 구분하되, 한개노선에 A,B,C TYPE이 중복될 경우 A : 00m, B : 00m, C:00m로 구분기재
- 4) 노선명은 해당년도 사업시행분 기준, 먼저는 지구별로 기재
- 5) A,B TYPE 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으로 병행사업이 가능한 지구별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계화경장로 확·포장사업으로 배정된 예산과 구분 되도록 ()외서로 작성
- 6)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구분
- 7) 기준사업비율 초과하여 지원되는 지방비는 ()내서로 작성
- 8) 중감사항은 사유를 별도 첨부

3. 영 농 규 모 화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1. 목적

- 농지매매 및 농지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교환·분합 촉진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된 쌀전업농등 육성

2. 추진방향

- 규모화된 쌀전업농가의 증점 육성
-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소유 억제로 경자유전의 실현
-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의 능률성 제고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轉業)농가의 자립여건조성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ha,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계
사 업 량		58,990	7,280	10,576	21,131	26,376	124,353
사 업 비	계	1,942,914	280,000	336,540	465,454	399,389	3,424,297
	국 고	-	-	-	-	-	-
	지 방 비	-	-	-	-	-	-
	농지관리 기금 융자 자담	1,942,914	280,000	336,540	465,454	399,389	3,424,297
		-	-	-	-	-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A+B+C)			농 지 매 매			농 지 대 차 (B) [쌀전업농 (2)]	농지교 환분합 (C)
	쌀전업농 (1+2)	기 타	소 계	쌀전업농 (1)	기 타	소 계 (A)		
계	301,500	35,040	336,540	236,500	30,000	266,500	65,000	2) 5,040
서울	-	-	-	-	-	-	-	-
부산	28	9	37	21	-	21	7	9
대구	481	12	493	279	-	279	202	12
인천	6,929	47	6,976	5,843	-	5,843	1,086	47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경기	40,218	469	40,687	31,710	-	31,710	8,508	469
강원	15,199	287	15,486	12,066	-	12,066	3,133	287
충북	20,320	330	20,650	16,394	-	16,394	3,926	330
충남	44,235	971	45,206	33,978	-	33,978	10,257	971
전북	41,644	575	42,219	31,641	-	31,641	10,003	575
전남	55,376	842	56,218	43,702	-	43,702	11,674	842
경북	40,301	799	41,100	31,442	-	31,442	8,859	799
경남	36,769	652	37,421	29,424	-	29,424	7,345	652
제주	-	47	47	-	-	-	-	47
농진공	-	30,000	30,000	-	30,000	30,000	-	-

주) 1) 부동산실명제 실시관련 농지매매지원등 30,000백만원

2)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자금 및 집단환지청산금 지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1) 쌀전업농지원 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 :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공사 시·군지부장

(2) 쌀전업농지원 이외 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 * 집단환지청산금 및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매매지원 대상지구는 시장·군수가 선정
- 사업비 지원 및 사후관리 : 공사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 농지매매사업	○ 비농가, 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매도함으로써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로 농업경쟁력 제고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장기임대차간척·개간농지의 매매지원 ○ 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 농지교환·분합사업	○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차액 지원 및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2) 지원대상

○ 사업별 지원대상자

사 업 명	지 원 대 상
○ 농지매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장기임차간척·개간농지 매매지원의 경우에는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 복귀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 복귀자
○ 농지교환·분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교환·분합을 희망하는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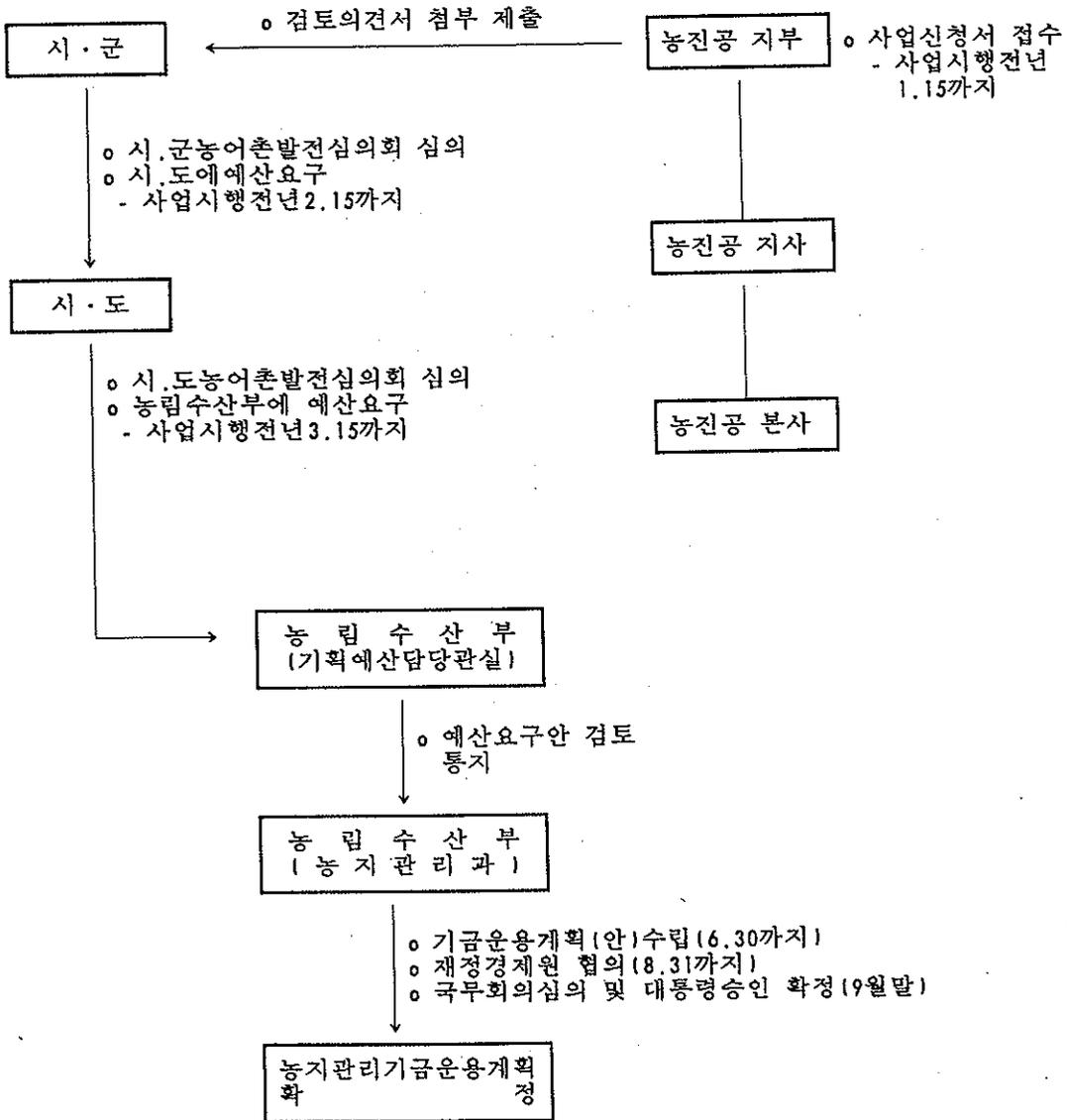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농지매매사업비 지원단가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공시지가 평당 25,000원이하
- 쌀전업농지원(농지매입,임차,교환·분합)자금은 당해년도 쌀전업농으로 선정된자를 우선지원 하되, 여유자금이 있을경우 기선정된 쌀전업농에게도 계속지원

(3) 지원 규모 및 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융 자 금 리	상 환 기 간
○ 농지매매자금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는 제한을 두지 않 음	연 3 %	2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자금	-	-	3~10년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자금	교환·분합하는 농지 가격 차액 및 청산 금 납부해당액	연 3 %	5~10년 균분상환

(4)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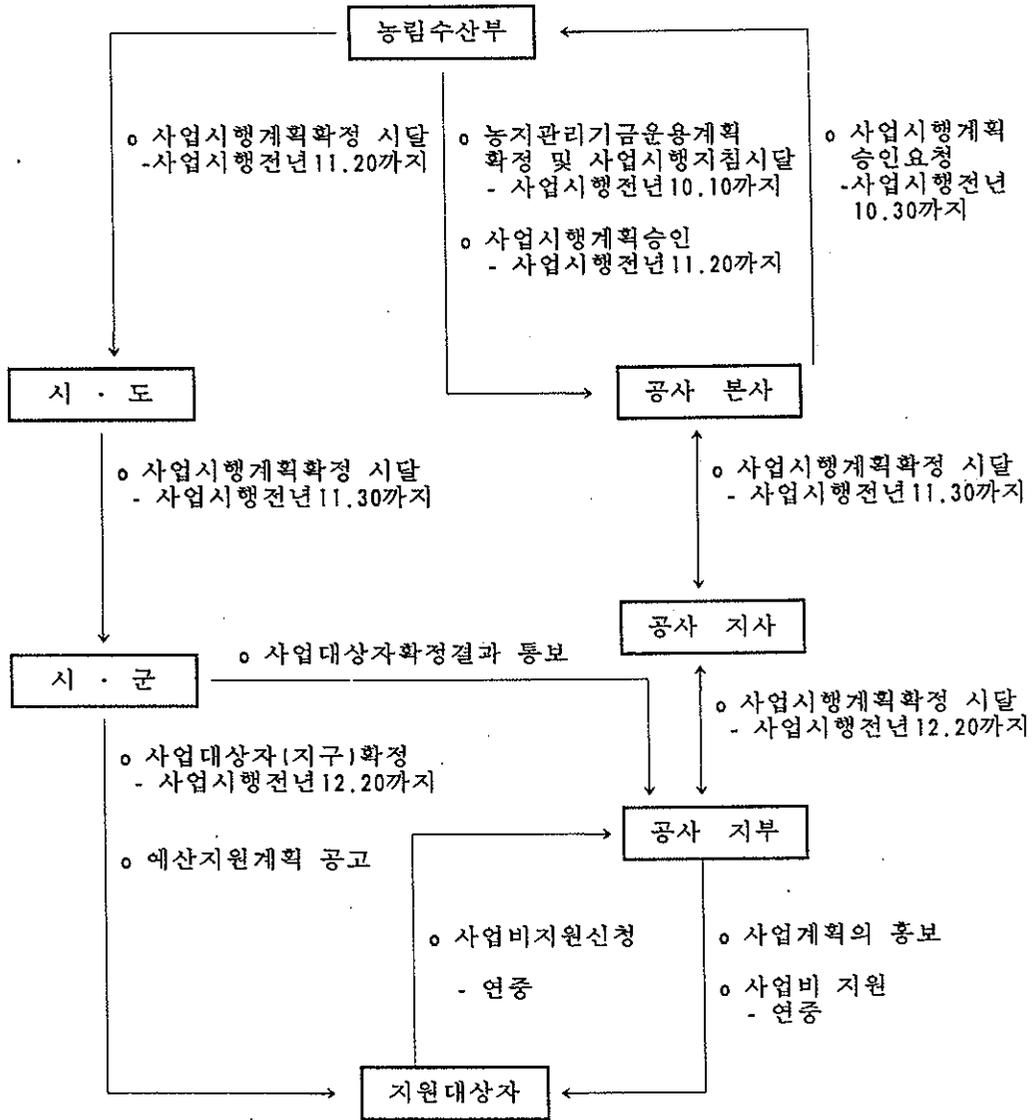
(가) 예산편성 절차



(나) 사업자금 지원절차

- 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매년 10월10일 까지 기금운용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공사는 다음연도의 시·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0.30까지 농림 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 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중 시·군별 예산은 시·군 및 시·도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시·군별 예산은 시·도지사와의 협의)
- 농림수산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다음연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매년 11.20일까지 공사 및 시·도에 시달
-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는 배분된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 년도 지원대상자(장기임차간척농지매매지원 및 집단환지청산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상지구)를 12.20일까지 확정하고 공사 지부는 확정된 대상자(또는 대상지구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원
-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 지원대상자 조정(쌀전업농 지원사업)
 - 시·도별 지원대상자 조정 : 농림수산부 장관
 - 시·군별 지원대상자 조정 : 시·도지사
 - 사업비 및 지원계획면적 조정
 - 시·도, 시·군별 사업비 및 지원계획면적 조정(동일사업 범위내) : 농어촌진흥공사사장(시·군별 조정시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
 - * 조정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에 통보

< 사업자금 지원 절차도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가) 농지매매사업

- 쌀전업농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 쌀전업농 신청자격은 전업농육성사업 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름
- 쌀을 주작목으로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자격
 - 경작하고 있는 법인 소유논이 5ha이상(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으로 쌀 경영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법인
- 20년이상 장기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1976.12.31이전 준공)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복귀자
 - 자격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자로서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나) 농지임대차사업

- 쌀전업농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 쌀을 주작목으로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
 - 자격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자

(다) 농지교환·분합사업

〈 공사가 교환·분합 시행시 〉

- 농지소유자 2인이상이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구역내의 교환·분합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

〈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

- 교환·분합을 희망하는 자경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집단환지(교환·분합)청산금 지원시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경우로서
 -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청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한곳에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 원지환지를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2)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 : 사업시행년도의 전년 1.31까지
- 접수기관 : 공사 지부
 - * 읍·면사무소 및 농(어)촌지도소에서 접수할 경우에는 공사 지부로 이송
- 신청방법
 - 쌀전업농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사 지부에 제출
 -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사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부에 제출
 - 장기임차간척농지매매지원사업, 집단환지청산금지원사업 : 공사 지부에서 지원 소요를 별도로 조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임의서식)
-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공사 지부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 사업별 지원대상자 자격 구비여부
- 사업별 지원규모제한 저촉여부
- 농지가격·임차료등 지원신청금액의 적정여부

〈 우선순위 〉

- 사업별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의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
 - ① 공사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자
 - ② "고도 벼농사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농가(쌀전업농의 경우)
 - ③ 자력에 의한 농지매입, 임차등 규모확대 실적이 많은 농가
 - ④ 경중부문 농업인후계자,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자
- ※ 우선순위는 쌀전업농지원의 경우만 해당

(2) 선정 절차

- 공사지부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후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실천가능성등을 농촌지도소장에게 조사·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사지부장과 농촌지도소장은 각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공사지부장은 『영농규모적정화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사업 시행년도의 전년 2.10까지 별지제3호서식(기타 사업은 임의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추천
- ※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별도로 추천(임의서식)

□ 영농규모적정화심사위원회 구성(총 10인 이내)

- 농촌지도소 관계자
- 농과계 대학교수 또는 고등학교교사
- 공사 지부 관계자
- 농지관리위원
- 농업인후계자 출신 1인이상을 포함한 선도농어가 2인
- 농지개량조합 관계자
- 농업인단체 대표등

※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 별표 1(쌀전업농지원사업의 경우만 해당)

- 시장·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장기임차간척농지매매 및 집단환지청산금 지원의 경우는 대상지구)를 선정한 후 시·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군 홍보지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공사(지부)에 통보

※ 장기임차간척농지매매지원사업, 집단관지청산금지원사업, 농업인상호간의 교환·분합사업은 사업대상자(지구)선정결과를 별도의 임의서식으로 공사 지부에 통보

〈 사업대상자의 확정 및 예비대상자 선정 〉

○ 예산 확정으로 시·군별로 사업비 배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공사 지부등 유관기관에 통보

※ 쌀전업농의 경우는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계통보고(전업농육성사업 실시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예산요구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대상자 확정시 탈락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사업포기나 결격사유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 요청 수요가 적어 예비대상자까지 지원하여도 사업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아니라도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을 갖춘자에게는 지원 가능

마.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관할 시·군·읍·면 및 공사 지부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나) 사업정산

○ 공사는 당해년도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정산서를 익년도 1월3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손비처리

(다) 기타

○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농지매매자금·농지임대차자금과 농지의 재매입·매도시 필요한 자금은 쌀전업농 지원사업비에서 지원

12) 농지매매사업

(가) 사업개요

비농가,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매도

(나) 농지매입(공사가 농지를 매입할 경우)

1)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다음의 순위로 매입
 - 비농가의 농지 및 법인소유의 농지
 - 전업(轉業)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 겸업농가의 농지등 기타의 농지
-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 명의신탁한 농지중 실명전환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단, '96.1.1부터 '96.6.30까지 한정하여 매입)

2) 매도신청(농지를 공사에 팔 경우)

-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거 공사 지부에 신청

3) 매입가격의 결정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가격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

4) 매매계약의 체결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 계약 체결

5) 매입대금의 지급

- 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다) 농지매도 (공사 → 농업인)

1) 매도대상자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장기임대차되고 있는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영농복귀자중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자
- 명의신탁한 농지를 매입한 경우의 매도대상자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매도함을 원칙으로 함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매도가 가능할 경우에만 농지를 매입)
 - 단,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농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이외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는 매도 가능
 - 55세이하(단, 18세이상의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는 65세까지)로서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
 -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소유규모가 1ha이상으로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민. 다만, 농지 소유규모가 1ha미만인 경우에도 임차농지를 포함한 경영규모가 2ha이상이거나 경영이양을 전제로 부모 소유농지를 1ha이상 경작하고 있는 40세이하의 농업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만,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로 선발·편입된자는 포함

* 제외자

- 공사에서부터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매매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중 보유농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영농규모확대 또는 교환·분합등으로 농지를 매도한 자는 매도대상에 포함
- 농지매입신청자가 당해농지의 매도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만, 농지매도인이 전업·은퇴하고자하는 농가이거나 비농업인이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로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매도대상에 포함
- o 매도한도 :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제한 없이 지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과 같음)
- o 매입하고자하는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져 있는 농가는 제외

2) 매입신청(농업인이 공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o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거 공사 지부에 신청

3) 매도가격의 결정

- o 공사는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농지가격을 결정하되 매입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취득 1년 경과후 매도시에는 실제 거래가격의 범위안에서 결정
- o 농진공은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전매, 임대, 대리경작 및 담보제공 제한을 위한 "특약등기"를 하므로서 전매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농지매입자가 부담

4) 매매계약의 체결

- o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5) 매도대금의 수납

- 일 시 불 : 농지매입능가가 원할시 일시불로 수납
- 분할상환 : 금 리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3%

다만, 금리변동시 별도 통보된 금리에 의함

상환기간 : 20년간 균등분할상환 (년단위 후환)

(3)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가) 사업개요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등으로부터 장기임차한 농지와 공사 소유 농지를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장기임대하므로써 영농규모 확대 지원

(나) 임대차 대상농가

- 임차대상농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전업(轉業) 및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1.0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겸업농가의 농지
 -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자경하고 있는 농지와 연결된 비농가의 농지
 -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 임대대상농가(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쌀을 주작목으로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중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 임차하고자 하는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져 있는 농가는 제외

(다) 임대차 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다만,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중 공사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농지는 제외

(라) 임대차 기간

- 임대차기간 : 3 ~ 10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마) 임대차 신청

- 별지 제 6 호 및 제 7 호서식에 의거 공사 지부에 신청

(바)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군 조례로 정한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안에서 당해지역의 관행 임차료수준등을 감안하여 결정

(사)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권 설정등기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아) 임차료의 지급 및 수납

○ 임차료 지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때에 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

○ 임차료 수납

- 임차인이 2년이상 농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총금액을 매년 균등 분할하여 공사에 납부
-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 시·군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임차료 상한선의 하향조정으로 임차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기금운용관리자에 손비처리를 요청

(자)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천재·지변·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재해등으로 당해년도의 수확량이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수확량보다 30%이상 감소하거나 수확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은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의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전에 감소비율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수확후에 청구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감 수 비 율	임차료 감면율
30 % 미만	0 %
30 % ~ 40 % 미만	45 %
40 % ~ 50 % 미만	55 %
50 % ~ 60 % 미만	70 %
60 % ~ 70 % 미만	80 %
70 % ~ 80 % 미만	95 %
80 % 이상	100 %

(차) 공과금등의 부담

○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부과하는 경비중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노임, 종묘, 비료, 농약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4)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매매사업

(가) 사업개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

(나) 매입대상농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준공되어 20년이상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
농지

(다) 지원대상자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라) 매매가격의 결정

공사와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업인과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함

(마) 매매협의 조정

- 공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
요청

(바)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본 요령중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

(5)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가) 사업개요

농지의 교환·분합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기하므로써 영농의 능률화 및 생산성향상 도모

(나) 농어촌진흥공사의 교환·분합시행

1) 사업시행

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이상이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구역내의 교환·분합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

2) 교환·분합계획의 수립 및 인가

공사는 신청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교환·분합계획의 고시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함.

4) 청산금의 징수·교부

- 공사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금을 징수·교부하여야 하며 징수대상자가 청산금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소요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5~10년 균등분할상환
다만, 금리변동시 별도 통보된 금리에 의함.

5) 교환·분합등기 촉탁

공사는 인가된 교환·분합계획에 의거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

6) 준용사항

- 공사가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 요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정비법의 교환·분합에 관한 규정 준용
- 공사가 농지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지업무(분환지업무) 대행비 단가를 적용

(다)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1) 지원대상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교환·분합을 희망하는 자경농업인

2) 지원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 대상농지일 경우는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의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
다만, 금리변동시 별도 통보된 금리에 의함.

상환기간 : 5 ~ 10년 균등분할상환

4) 교환·분합지원신청서 제출

- 별지 제 8호서식에 의거 공사지부에 신청

5)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금을 융자

(라)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

1) 지원 대상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가 시행·알선하는 경우로서
 -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청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한곳에 집단화한 농업인
 - 원지환지를 받지 않는 농민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한 농업인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
- 지원조건 : 금리 연리 3%, 상환기간 5~10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협조 요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는 환지계획(교환·분합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공사 지부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농지교환·분합 또는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당해지구 확정도 및 증전도 각 1부

4) 지원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

- 공사 지부장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지원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집단환지여부등을 심사하여 해당자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

5) 지원신청, 약정체결 및 소요자금 지원

-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6) 채권확보

- 지원액 500만원 미만 : 동일지구내에서 환지를 받은 자경농민 중 1인의 연대보증인 설정
- 지원액 500만원 이상 : 환지등기 완료시까지 연대보증인 1인 설정,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일반사항

- 공사는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사항등 농가영농규모적정화 사업내용을 사업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 용자취급금융기관은 매월 용자금 지급 및 회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에 통보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때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
- 시·구·읍·면의 농지관리위원장은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민원사항을 확인 처리하여야 함

확 인 사 항	용 도	확 인 자
재촌지주확인신청서	농지매도	농지관리위원장
임차영농사실확인신청서	농지매입 및 임대	"

(2) 지원농지의 관리

(가) 영농관리상황 조사

- 농진공은 농지의 매매, 구입자금지원 및 임대차사업으로 당해년도 6월말까지 지원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과 같이 영농관리상황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후계농업인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 지원농지의 전매, 임대, 대리경작, 담보제공, 전대여부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상실 여부

- 영농관리상황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매도농지 : 용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 구입자금지원농지 : 용자금 회수
 -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나) 회수농지의 가격결정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진공이 회수하는 농지의 가격은 실제거래가격범위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의 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다) 전매·임대등의 동의

- 농진공은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당해농지의 전매, 임대, 대리경작 또는 담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각종 선거에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농진공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거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당해농지에 대한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농진공으로부터 전매동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외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가주택등 농업용이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면적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함
 다만,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보고

- 공사의 군지부장은 매분기마다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지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장에게 보고
- 공사는 매분기마다 군별·사업별 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공사는 매도 및 구입자금지원농지와 임대농지에 대한 전매, 임대 및 전대 등 위반여부를 조사한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지관리과(전화 : 02-503-7264,5
02-500-2635)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규모화사업처(전화 : 0343-20-3352,7
0343-20-3360)

(2) 시·도

-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사(도)

(3) 시·군

-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부(군)

< 별표 1 >

심사항목및평점방법

항 목	배 점 (만점)	평 점 방 법
영농경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3년 30점)
농업계학력및 영농교육훈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대학졸업자 : 70점 - 농업계 전문대학졸업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 : 63점 -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 56점 - 농업계 고등학교졸업자 : 49점 - 기타 : 42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30점 - 3개월이상 : 20점 - 1개월이상 : 10점 <p>※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각도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경영규모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쌀전업농기준규모×200 * 비재배경영규모에 한하며 전업농기준규모 이상은 200점 * 전업농 기준규모는 신청자격 요건 중 발전가능성에 대한 규정된 규모임
기계화수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에 필요한 기계보유상황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바인더등을 모두 갖춘 농가 : 100점 - 경운기, 이앙기, 탈곡기등 기본적인 기계를 갖춘 농가 : 50점 - 기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농가 : 0 점
재배기술및 경영능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기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점 ○ 대형농기계 조작·정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점 ○ 경영여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 완료지역 : 20점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경작지간 거리가 500m이내로 집 단화 : 40점 <p>< 가산점 ></p> <p>① 수산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0 점 - 기능사 : 10점 - 기사 : 20점 - 기술사 : 30점 <p>② 농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 실행 : 30점(최근 1년 이상의 장부가 있는자에 한함)</p>
사업계획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40, 우수 70, 매우우수 100점
계	700	

< 별지 제 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살전업농신청여부		살전업농()	일반농가()	현재경영규모
지 원 신청금액	농지매매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임차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교환·분합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기계구입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어 기반

구 분	농 지 (평)			시 설		농 기 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대 수
소 유							
임 차							
계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단위:천원)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평				
농 지 임 차	평				
농지교환·분합	평				

3. 앞으로 5년간 경영계획(쌀전업농 육성규모로의 발전계획)

* 쌀전업농의 경우만 작성

연도별	경영규모 (ha)	비재배면적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평 ◦ 소유 : ◦ 임차 : 계 :			
	평 ◦ 소유 : ◦ 임차 : 계 :			
	평 ◦ 소유 : ◦ 임차 : 계 :			
	평 ◦ 소유 : ◦ 임차 : 계 :			
	평 ◦ 소유 : ◦ 임차 : 계 :			

< 별지 제 3호 서식 >

쌀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 쌀전업농 >

(단위: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자금지원 (안)	
				농지매 매금	농지임 차금

- 첨부 1. 추천순위 결정근거
2. 자금지원신청액 조정사유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1. 추천순위 결정근거

추천 순위	성명	심 사 항 목 및 평 점							비 고
		영농어 경력	경 규 영 모	기 계 화 수	화 준 재 배	기 술 경 영	사 업 혁	평 점 합 계	

※ 비고란에는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해당사항

2. 자금지원 신청액 조정사유

(단위:천원)

추천 순위	성명	신 청 액		조 정 (안)		조 정 사 유
		농지매 매자금	농지임 차자금	농지매 매자금	농지임 차자금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추천 제외사유

※ 신청자중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요건 미달(구체적 결격사유), 신청서 허위 기재 등 추천제외사유를 명시

<별지 제5호서식>

농 지 매 입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매 입 농 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매입 희망 가격	비 고
	읍면	이동					
영 농 여 건	년		매입대금납부방법		1. 일시불 2. 분할상환		
영농전문성	1. 자영농고 및 자영농과 졸업 2. 농업계고교, 농과계대학 · 대학원졸업						
영 농 규 모	계	m ²	소유농지	m ²	임차농지	m ²	
농지집단화	경작농지와 1. 인접 2. 50m미만 3. 50m이상 100m미만 4. 100m이상 500m미만 5. 500m이상						
통 작 거 리	거주지로부터 1. 1km미만 2. 1km~5km미만 3. 5km~10km미만 4. 10km ~ 20km미만						
영농기술개발	1.유 2.무	병역관계		1. 병역필 2. 병역면제 3. 기타			
후계농민유무	가족중 18세이상의 후계농민			1.유 2.무			
<p>위와 같이 귀공사 소유농지를 매입하고자 신청하오니 본인에게 매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400px;">19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300px;">신 청 인</p> <p style="margin-left: 600px;">(인)</p> <p style="margin-left: 100px; font-size: 1.2em;">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

1. 목 적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 촉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농지임대차, 농지거래, 농지의전용 및 이용제도의 정책과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행정 추진 도모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합 계
사 업 량		개소 1,548	1,549	1,550	(계	속 사 업)	
사 업 비	계	6,200	1,859	1,860	(계	속 사 업)	
	- 국 고	3,100	929	930			
	- 지방비	3,100	929	930			

나. '96 지원계획

- 농지관리위원회 수 : 1,550개
- 지원기준 : 위원회당 년 120만원
 - 국고보조 50%
 - 지방비 50%
- 국고 지원액 : 930 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시·구·읍·면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원

- 설치근거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농지법 제46조)

- 설치현황 : 1,550개 (시·구·읍·면당 1개)

- 구성

○ 위원회당 10~40인으로 구성

○ 위원수 : 39,668명

- 주요기능

○ 농지임대차관련 심의

○ 농지매매의 확인

○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확인

○ 농업구조개선촉진 관련 사업 심사등

(2) 지원대상 : 농지관리위원회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위원회당 연 120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위원회당 연 60만원)

5. 사업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에서 위원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목적의 농업구조개선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기여

6. 행정사항

각 시·도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집행후 익년도(5-6월)에 집행실적 정산보고

농지관리위원 교육(공공)

1. 목 적

- 농지관리위원중 농민대표위원을 대상으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농지정책 및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처리요령등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교육인원 : 연 2,200 ~ 2,600명
- 교육대상 :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선도적인 농지관리위원 1~2명씩 선발 교육
- 교육내용 : 주요 농정시책, 농지정책,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처리요령등
- 교육기간 : 3일(합숙)
- 교육참석 농지관리위원에 대하여 여비,참석비등 지급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합 계
사 업 량		5,911 명	2,200	2,400	(계 속 사 업)		
사 업 비		1,296	410	493	(계 속 사 업)		
	- 농지관리기금	1,296	410	493			

나. '96지원계획

- 교육 대상인원 : 2,400명
- 교육비 : 493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농어촌진흥공사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농지관리위원 업무처리요령 교육(매년 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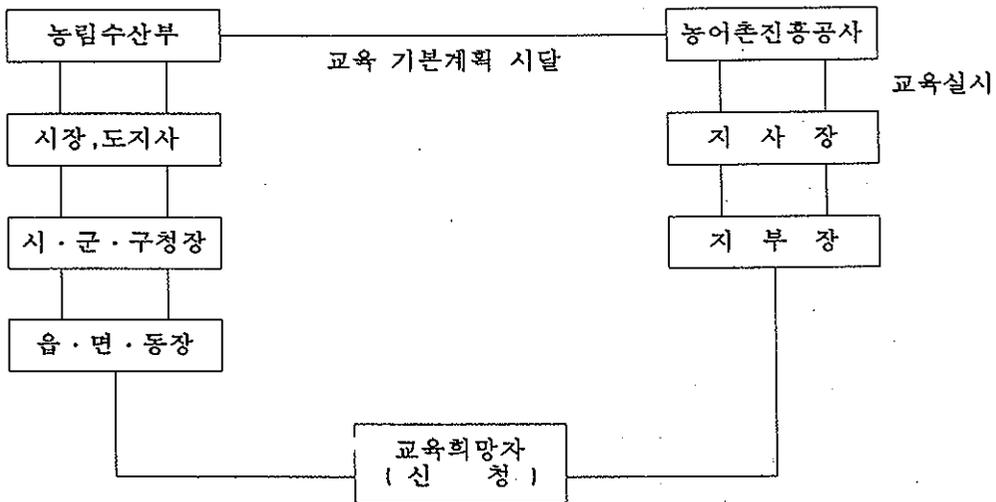
(2) 지원대상

농어촌진흥공사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교육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여비등 보조
- 지원조건 : 농지관리기금 보조(보조율 100%)

(4)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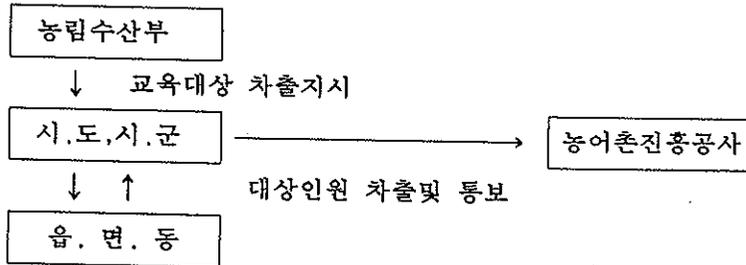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선도적인 농지관리위원을 매년 1~2명씩 선발

나.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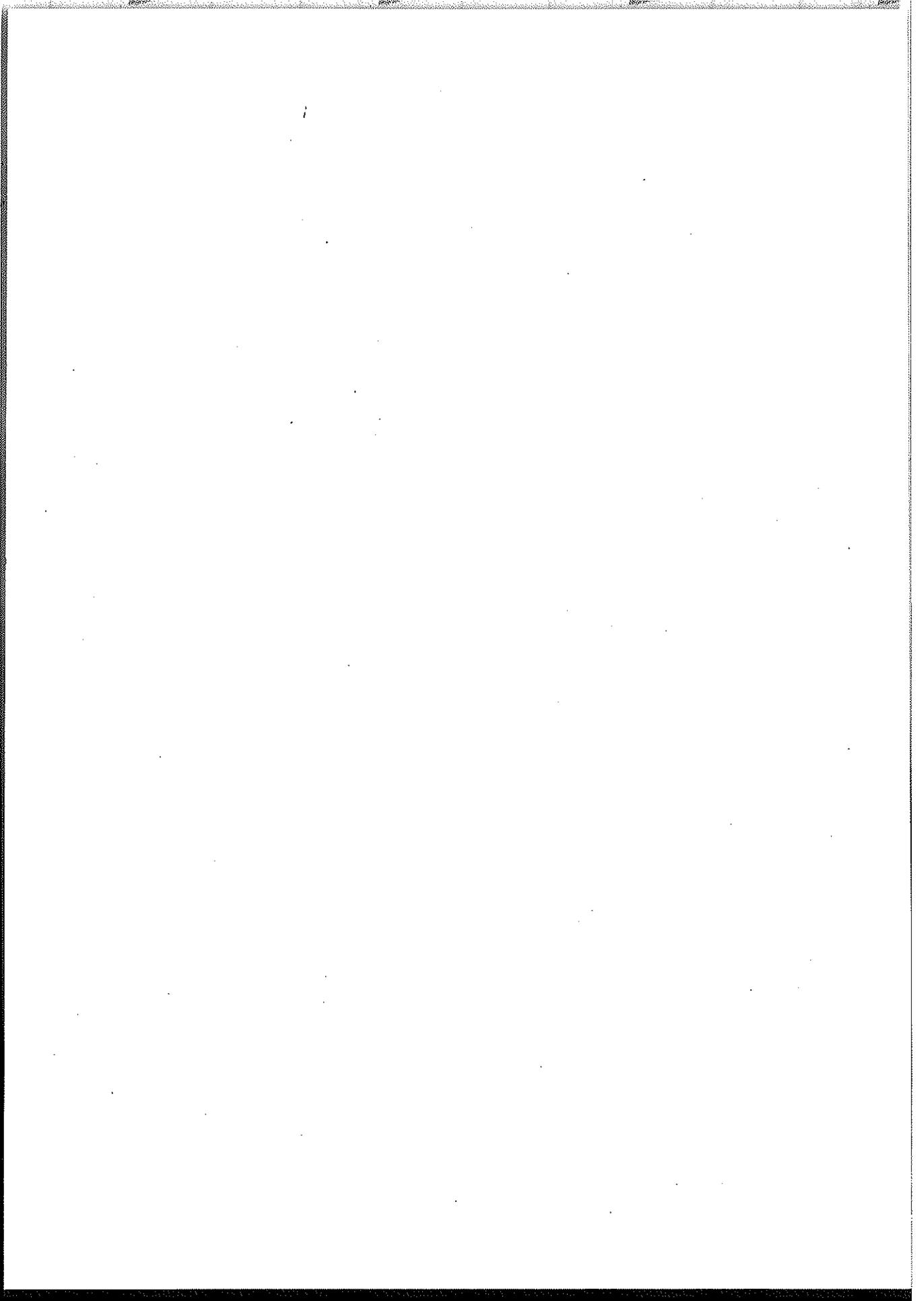
6. 사업계획 수립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매년 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7. 행정사항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교육 종료후 교육결과를 분석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농 업 기 계 화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자율)

자
율

1. 목 적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등 농업경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추진방향

-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과 용자지원 병행 실시
- 대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 촉진
- 지역실정에 맞는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적정수량의 공급과 사후관리 강화로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임.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 위 : 백 만 원)

		'94 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천대)		336	213	228	253.4	300	1,500	2,849
사 업 비	계	1,398,590	980,820	1,037,700	1,145,650	1,962,000	9,810,000	16,334,760
	국 고	168,000	90,000	99,000	111,700	-	-	468,700
	지 방 비	168,000	90,000	99,000	111,700	-	-	468,700
	국고용자	257,250	202,600	211,356	231,422	549,360	2,746,800	4,198,788
	비농협용자	385,800	303,900	317,034	347,133	824,040	4,120,200	6,298,107
	자 답	419,540	294,320	311,310	343,695	588,600	2,943,000	4,900,465

나. '96 지원계획

(1) 사업량 및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국고+농협)
보조지원농기계	198천대	589,050	99,000	99,000	391,050
융자지원농기계	30	137,340	-	-	137,340
합계	228	726,390	99,000	99,000	528,390

(2) 기종별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리 5%
- 기종별 지원율 및 상환기간

기종명	지원조건		기종명	지원조건	
	지원기준	융자금상환기간		지원기준	융자금상환기간
1. 보조 지원 농기계	상당	1년거치7년 균분상환	콤바인(자탈형)	상당 90%	1년거치6년 균분상환
농업용트랙터	90%		콤바인(보통형)	90 "	1 " 6 "
농업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90 "		곡물건조기	90 "	1 " 6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65 "		관리기 및 그 부속 작업기	90 "	1 " 5 "
동력이앙기	90 "		농업용동력운반차	90 "	1 " 5 "
동력이앙기용부속 작업기	90 "		농업용톱밥제조기	90 "	1 " 5 "
벼직파기(전용형)	90 "		다목적관리작업차	90 "	1 " 5 "
바인더	90 "		동력절정기(전용형 및 부착기)	90 "	1 " 5 "

기종명	지원조건		기종명	지원조건	
	지원기준	용자금상환기간		지원기준	용자금상환기간
	상당			상당	
과수인공교배기	90%	1년거치5년 균분상환	육묘용파종기	90%	1년거치5년 균분상환
화훼결속기	90 "	1 " 5 "	동력연무기	90 "	1 " 5 "
은실용살수기	90 "	1 " 5 "	2. 용자지원농기계		
농산물세척기	90 "	1 " 5 "	1의 보조지원 농기계		(1과 같음)
채소수확기	90 "	1 " 5 "	은실용동력개폐기	80 "	1년거치5년 균분상환
탄산가스발생기	90 "	1 " 5 "	농용로우더(전용형)	80 "	1 " 5 "
탈망기	90 "	1 " 5 "	농용굴삭기(전용형)	80 "	1 " 5 "
이식기	90 "	1 " 5 "	농용혼합기	80 "	1 " 5 "
농산물건조기	90 "	1 " 6 "	농용잔가지파쇄기	80 "	1 " 5 "
농업용은풍난방기	90 "	1 " 5 "	농용환풍기	80 "	1 " 5 "
스피드스프레이어	90 "	1 " 6 "	농용톱밥제조기 (전용형)	80 "	1 " 5 "
과일선별기	90 "	1 " 5 "	농사용 작업차	80 "	1 " 5 "
예도형동력예취기	90 "	1 " 5 "	중고농기계(본문참고)		
동력분무기 (주행형 및 원격 조종형)	90 "	1 " 5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된 농업기계는 농업기계가격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보조지원 농기계 : 시장·군수(읍·면장)
- 용자지원 농기계 :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나. 사업현황

(1)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대상 농기계는 동력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국정검사에 합격한 농기계(동력경운기 및 관리기의 부속작업기와 신규 보급되는 특수농기계는 제외)를 우선으로 하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 1]과 같음.
- 개별 기대의 품질과 사후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농업용 온풍난방기, 온실용 동력개폐기는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농민 판매가격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 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매년 반기별(1.1기준, 7.1기준)로 농업기계 가격생산업자, 공급자 및 보조와 용자지원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함.

(2)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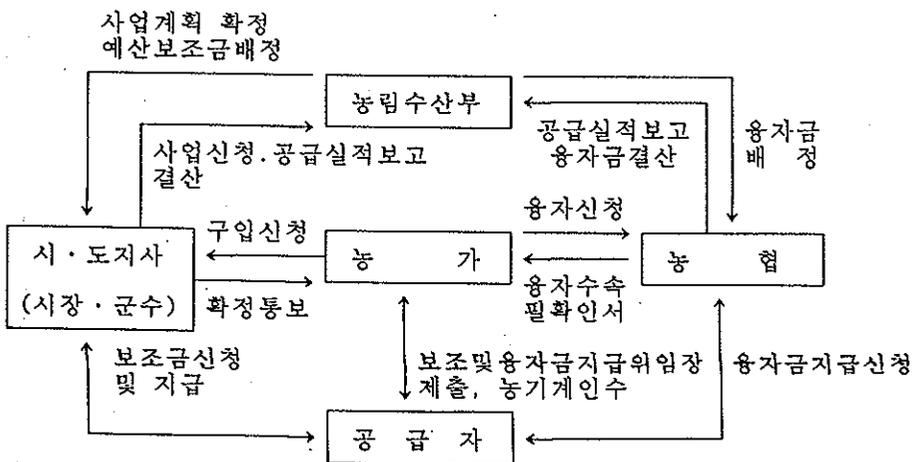
○ 보조지원 농기계

- 일반농가의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한도액은 2백만원으로 하며,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별표 2]의 「기종별 지원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지원
- 보조지원 대상 한도액 2백만원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는 일반농가는 1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기종별 지원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지원
- 보조지원 소요액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50으로 분담
- 일반농가 보조지원농기계 공급은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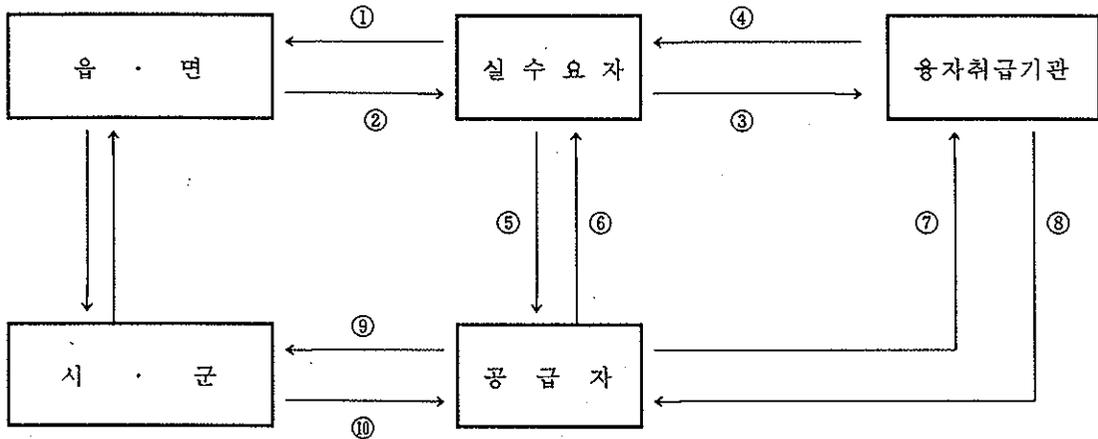
○ 용자지원 농기계

- 보조 지원없이 용자지원만으로 농가 및 농기계 이용조직이 농기계를 구입할때는 「기종별지원한도액」까지 용자 지원
- 중고 농기계 구입 지원액은 중고 농기계 구입가격의 80% 까지 용자 지원
- 농업용 은풍난방기 및 은실용 동력개폐기 구입설치의 경우에는 농가당 대수를 제한하지 않고 시설규모에 맞는 대수를 용자 지원

(3) 사업시행체계



(4)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체계도



보조지원농기계

용자지원농기계

- ①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제출
- ②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
- ③ ②의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 제출
- ④ 용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용자수속필확인서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보조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자부담금납부
- ⑥ 기대인계
- ⑦ 용자실행 신청
- ⑧ 용자실행신청 접수증 발급
- ⑨ 보조금 지급신청(보조금교부신청서)
- ⑩ 보조금 지급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일반용자 농기계 구입신청서와 용자신청서류 제출
- ④ 용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용자수속필확인서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자부담금납부
- ⑥ 기대인계
- ⑦ 용자실행 신청
- ⑧ 용자실행신청 접수증 발급
- ⑨ 생략
- ⑩ 생략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보조지원 농기계

(가) 선정대상

-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용
년수동안 보조 지원하지 않음.

다만, 수해등 재해로 인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읍·면장이 인정
하는 경우와 용자지원으로 농업용 온풍난방기 또는 온실용 동력개폐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인 것은 제외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기존 사용폐농기계의 조치
계획이 확실한 농가를 우선 지원
- 기계화영농사, 선도농가,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
농가순으로 함. 다만, 벼직파기 및 트랙터작업기등 부속작업기 구입
희망농가는 우선 지원
-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을 한번 받은 농가는 신규 신청농가보다 차순위를
적용
다만, 대형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스피드스프레어)를 구입하는 경우
에는 차순위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 정부지원 농업기계화사업 중복 참여 제한

-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회사)의 사원은
다른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의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동이용조직(기계화영농단등) 참여농가가 다른 농업기계화사업의 보조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공동이용조직을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영농규모, 작부형태등을 감안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동일기종 구입, 동일년도 중복지원은 불가

(라) 선정절차

- 읍·면장은 농기계 공급 계획과 수요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가의 신청서 및 사업비(농기계 가격)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산정한 후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함.

(2) 용자지원 농기계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지원만 받고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용자지원 농기계구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용자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용자수속필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함.

라. 사업시행

- (1) '96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한 사업량은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급

합 계	경 운 기	대·중·소형
198,000 대	70,000	128,000

(2) 공급계획량 배정

- 시·도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지원계획은 [별표 3]과 같음.
- 시·도지사는 주요 농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고시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고시 제1992-16호: '92.4.2)과 지역별 주요농기계 확보지침(별표 4)에 따라 지역별 공급목표를 세워 적정수량의 농기계 공급이 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읍·면별 농기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확정후 읍·면별로 시달하고 농협시·군지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함.

(3) 공급자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봉사업자의 자격 및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은 농협 사후봉사업자(이하 "공급농협" 이라 한다)와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로서 농업기계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한 자로 함.

(4) 농기계 구입신청 및 인수

(가) 보조지원 농기계

- 보조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농가는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보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읍·면으로부터 발급받아 동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
- 용자취급기관장은 위항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지원한도액내의 용자금 지원 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기대를 인수함.

(나) 용자지원 농기계

- 용자금만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용자 지원 농기계 구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의 확인을 받아 동 신청서와 용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위항의 용자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함.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대를 인수함.

(다)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지원

-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 1]과 같음
-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중고농업기계는 미상환액을 승계함.
- 용자금 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업기계는 다음과 같이 용자 지원함.
 - 용자지원액 : 중고농기계 구입가격의 80%이내
 - 용자기간 : 잔여 내용연수(내용년수 - 사용년수)이내
 - 용자금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분상환
 - 거래확인 : 중고농업기계 대리점,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지정대리점, 공급농협 또는 지정수리점에 한함)또는 영농회장이 확인한 구매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징구

마. 공급자의 보조금과 용자금 신청 및 지급

(1)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업기계 공급자는 매월 2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농기계 구입자금)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되 공급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으며, 농기계 생산업체가 시군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와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시군농기계 사후봉사업자가 부도등으로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공급업무가 어려울때는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후 신청자에게 매월 2회 이상 지급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함.
-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만이라도 우선 지급

(2)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 부터 받은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신청접수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농기계 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범위내에서 월2회 이상 용자실행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자가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나)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다)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금 지급후 당해년도내에 보조지원 공급된 농기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및 선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며, 용자취급기관장의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부당행위 통보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회수함.
※ 선공급된 농기계란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제3호서식) 발급이전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농기계를 말한다.
- (라)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보조금 관리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함.

(마) 사망, 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때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 전환할 수 있음.

(바)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아) 공급자가 부당공급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사후봉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함.

(2)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 및 용자금 사후관리

(가)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에, 농기구공업협동조합은 농기계 생산업체와 농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과정에서 부적합한 용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①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농협사후봉사업자

○ 농업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용자지원 대상기종이 아닌 기종(본체)을 공급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농기계사후봉사업자 지정취소 및 고발

○ 용자지원 농기계의 기종 또는 규격이 다르거나, 작업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농기계 사후봉사업자 지정취소 및 고발

② 농업기계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용자액(용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용자취급기관의 농업기계 인수 확인자 문책

④ 농업기계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생산 비축자금 및 부품확보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지원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다) 농협은 용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용자금 관리기간동안 1회이상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시 용자금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용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용자실행 신청의 부당지연등 불공정한 판매행위를 하는등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농업기계 공급농협을 지정취소하여야 함.

(3) 대형 농업기계의 이용기술지도

(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관할농협에서 기술지도 대상 농업기계(50마력 이상 트랙터, 승용이앙기, 4조이상 콤바인)의 용자실행자 명단을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관할시·군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함.

(나) 농촌지도소장은 농협에서 통보된 기대구입 농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기대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대형농업기계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1년간 경제적인 이용방안등을 지도하여야 함. 구입기대가 없거나 규격 또는 기종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과 용자취급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경우 시·군·구청장은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4) 농업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의 공급자(농업기계제조업자·판매업자·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가 책임을 짐.

(나)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부품 목록을 제공함.

(다) 시장·군수는 공급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등 사후봉사의 실행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지역에 공급되는 해당기종을 지원 공급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농업기계 공급자와 생산업체는 농기계 공급시 당해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를 회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기 타

(가) 시·도지사는 농업기계 보유 및 공급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보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농촌진흥청장은 본 요령에 의한 대형 농업기계의 이용기술지도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경제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 및 농기구서비스센터가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급농협, 시·군·구 단위 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의 사후봉사이행계약 및 사후봉사지역등과 해약, 대표자·소재지·사후봉사지역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월별로 익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용자실행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마)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를 하는 등으로 용자 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후봉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업소에 대하여 시·군 회보에 게재하는 등으로 농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보 고

	보 고 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업기계 생산 출하실적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	월 보	익월 7일	별지제11호서식
농업기계 용자 지원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장	"	"	별지제12호서식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실적	"	"	"	별지제13호서식
농업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	"	"	별지제14호서식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시·도지사	"	익월 20일	별지제15호서식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도 : 농정국 농산과, 농협도지역본부 자재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농협시군지부,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 읍·면 :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별 표 1]

지 원 대 상 농 기 계

1. 보조지원 농기계

- 농업용 트랙터
- 농업용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파종기, 로우더, 비료살포기, 휴립피복기, 심토파쇄기, 결속기, 감자파종기, 스피드스프레어, 굴삭기, 땅속작물수확기, 벼직파기, 서류굴취기, 뽕솜스프레어, 모우어, 반전집초기, 옥수수수확기, 퇴비살포기, 중경제초기, 복조수확기, 발근기, 발근파쇄기, 사료배합기, 그레플, 심경로타리, 휴립복토기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 동력이앙기
-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 축조시비기, 벼직파기
- 벼직파기(전용형)
- 바인더
- 콤팩트 바인더(자탈형 및 보통형)
- 곡물건조기
-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이식기
- 농산물건조기
- 농업용은풍난방기
- 스피드스프레어
- 과일선별기
- 예도형동력예취기
- 동력분무기(주행형 및 원격조종형)
- 옥묘용파종기
- 동력연무기
- 농업용동력운반차
- 농업용뮘밭제조기(경운기 및 트랙터 부착형)
- 다목적관리작업차
- 동력전정기(전용형 및 부착기)
- 과수인공교배기
- 화훼결속기
- 온실용살수기
- 농산물세척기
- 채소수확기
- 탄산가스발생기
- 탈망기

2. 용자지원 농기계

- 보조지원농기계(1과 같음)
- 온실용 동력개폐기
- 농용 굴삭기 및 로우더(전용형)
- 농용 혼합기
- 농용잔가지파쇄기(부착형 및 전용형)
- 농용환풍기
- 농업용뮘밭제조기(전용형)
- 농사용작업차
- 중고농기계

[별표 2]

기 종 별 자 원 한 도 액

기 종 명	규 격	지원한도액	비 고
농업용트랙터 본 체		천원	
	○ 20마력미만	4,600	
	○ 20마력이상 25마력 미만	5,700	
	○ 25마력이상 30마력미만	7,200	
	○ 35마력이상 40마력미만	9,000	
	○ 40마력이상 45마력미만	11,300	
	○ 45마력이상 50마력미만	13,400	
	○ 50마력이상 60마력미만	16,100	
	○ 60마력이상 70마력미만	21,100	
	○ 70마력이상 100마력미만	23,900	
	○ 100마력이상	28,800	
	※ 안전캡 부착 구입시	1,000추가	
농업용트랙터용 플라우	○ 자동양용 2련	400	
	○ 자동양용 3련이상	700	
	○ 단용 3련이상	1,200	
	○ 회전 2련이상	3,300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2,800	
	○ 원판구동 10련이상	3,400	
	○ 이랑쟁기		
	- 3-4련	600	
- 6련이상	1,1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업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 로타리축길이 130cm미만	600	
	○ " [130cm이상 170cm미만	900	
	○ " [170cm이상 190cm미만	1,100	
	○ " [190cm이상 200cm미만	1,700	
	○ " 200cm이상	2,000	
농업용트랙터용 트레일러	○ 적재정량 1.0톤이하	500	
	○ 적재정량 [1.1톤이상 2.0톤미만	900	
	○ 적재정량 [2.0톤이상 3.0톤미만	1,400	
	○ 적재정량 3.0톤이상	1,700	
농업용트랙터용 무늬정지기	○ 경폭 2m미만	1,300	
	○ 경폭 2m이상 3m미만	1,500	
	○ 경폭 3m이상	1,800	
농업용트랙터용 파종기	○ 전규격	2,000	
농업용트랙터용 토우더	○ 버킷산적용량 0.50m ³ 미만	1,400	
	○ 버킷산적용량 0.50m ³ 이상	3,100	
농업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 전규격	1,000	
농업용트랙터용 휴립피복기	○ 1두독식	1,300	
	○ 2두독식	1,7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업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 1조식	3,800	
	○ 2조식	5,900	
농업용트랙터용 결속기	○ 드럼폭 80cm미만	4,700	
	○ 드럼폭 80cm이상	8,800	
농업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 이어	○ 전규격	2,900	
농업용트랙터용 굴삭기	○ 버킷산적용량 0.05m ³ 미만	3,400	
	○ 버킷산적용량 0.05m ³ 이상	3,800	
농업용트랙터용 벼직파기	○ 로타베이터포함 구입시		
	[6조이하	2,000	
	[8조이상	2,500	
	○ 파종장치만 구입시	900	
농업용트랙터용 심경로타리	○ 전규격	1,400	
농업용트랙터용 휴립복토기	○ 전규격	1,300	
농업용트랙터용 구굴기	○ 전규격	1,500	
동력경운기 및 그부속작업기	○ 6마력		
	- 본체만 구입시	8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1,200	
	○ 8마력이상		
- 본체만 구입시	9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1,3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동력이앙기	○ 보행형 2조	1,400	
	○ 보행형 4조	1,600	
	○ 승용형 4조	4,000	
	○ 승용형 6조(크랭크식)	4,300	
	○ 승용형 6조(로타리식)	7,500	
동력이앙기용 축조시비기	○ 전규격	800	
동력이앙기용 벼직파기	○ 보행형	600	
	○ 승용형	600	
벼직파기 (전용형)	○ 보행6조식	1,400	
	○ 승용6조식	4,400	
	○ 승용8조식	6,200	
바인더	○ 전규격	1,400	
콤바인 (자탈형)	○ 2조	5,600	
	○ 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8,000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13,200	
	○ 4조이상	19,000	
콤바인 (보물형)	○ 전규격	53,000	
곡물건조기	○ 30석미만	3,000	
	○ 30석이상 50석미만	3,300	
	○ 50석이상	4,500	
	※ 수분측정기 부착 구입시	700추가	전규격 부착 가능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관리기 및 그부속작업기	○ 3마력미만		
	- 본체만 구입시	4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800이내 (구입가격의 90%)	
	○ 3마력이상 5마력미만		
	- 본체만 구입시	8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1,500이내 (구입가격의 90%)	
	○ 5마력이상		
	- 본체만 구입시	1,000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2,000이내 (구입가격의 90%)	
이식기 농산물건조기	○ 전규격	2,300	
	○ 2형	1,400	
	○ 3형 ~ 6형		
	- 선반식 또는 겸용식	2,000	
	- 선반순환식	4,000	
	○ 7형 ~ 11형	2,400	
	○ 15형 이상	4,100	
농업용 온풍난방기	○ 20,000kcal미만	700	
	○ 20,000kcal이상 30,000kcal미만	1,000	
	○ 30,000kcal이상 40,000kcal이하	1,300	
	○ 60,000kcal이상 80,000kcal이하	2,000	
	○ 100,000kcal이상 120,000kcal이하	2,700	
	○ 140,000kcal이상 180,000kcal이하	3,400	
	○ 200,000kcal이상	4,4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스피드 스프레이어	○ 자주형		
	- 약액탱크용량 450ℓ 미만	7,300	
	- 약액탱크용량 [450ℓ 이상 550ℓ 미만	10,100	
	- 약액탱크용량 [550ℓ 이상 1,000ℓ 미만	10,700	
	○ 운반작업 겸용형	11,300	
과일선별기	※ 안전캡 부착 구입시	1,000추가	
	○ 중량식(기계식 선별)		
	- 수동공급식(7단)	1,400	
	- 수동공급식(10단)	1,700	
	- 자동공급식(6, 7, 8, 10단)	2,200	
	○ 중량식(전자식 선별)	3,500	
	- 8단 이상		
○ 형상식	1,700		
- 수동공급식(6단)			
예도형 동력예취기	○ 전규격	1,100	
동력분무기 (추행형)	○ 트랙터 탑재식	1,600	
	○ " 견인식	2,000	
육묘용파종기	○ 전동산파식	1,5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동력연무기	○ 연무량 40ℓ/시간	500	
	○ 연무량 50ℓ 이상 90ℓ/시간 미만	600	
	○ 연무량 90ℓ/시간 이상		
	- 약액통 용량 30ℓ 미만	800	
	- 약액통 용량 30ℓ 이상	1,800	
농업용 동력운반차	○ 보행형		
	- 적재정량 200kg미만	500	
	- 적재정량 400kg이상	1,400	
	○ 승용형		
	- 2륜 구동식	2,600	
	- 4륜 구동식	3,300	
	- 작업대 겸용형	5,500	
농업용 톱밥제조기	○ 경운기 부착형	2,200	
동력전정기	○ 전규격	1,100	
탈 망 기	○ 전규격	400	
은실용 동력개폐기	○ 전규격	800	
농용굴삭기 (전용형)	○ 버킷 산적용량 0.016m³미만	6,600	
	○ " 0.016m³이상	9,6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용로우더	○ 전용형		
	- 버킷 산적용량 0.014m ³ 미만	5,000	
	- 버킷 산적용량 0.014m ³ 이상	6,600	
농용 잔가지파쇄기	○ 경운기부착형	2,200	
	○ 경운기부착형	800	
	○ 트랙터 부착형	2,600	
	○ 전용형	1,200	

[별표 3]

시·도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 업 량			사업비(보조금)		
	계	경운기	대·중·소형	계	국 고	지방비
계	198,000	70,000	128,000	198,000	99,000	99,000
서울	240	30	210	240	120	120
부산	1,360	380	980	1,360	680	680
대구	1,300	550	750	1,300	650	650
인천	1,850	550	1,300	1,850	925	925
광주	1,200	350	850	1,200	600	600
대전	820	250	570	820	410	410
경기	15,960	4,260	11,700	15,960	7,980	7,980
강원	10,240	3,960	6,280	10,240	5,120	5,120
충북	13,140	4,350	8,790	13,140	6,570	6,570
충남	25,010	8,030	16,980	25,010	12,505	12,505
전북	17,390	6,170	11,220	17,390	8,695	8,695
전남	34,550	12,230	22,320	34,550	17,275	17,275
경북	38,920	14,980	23,940	38,920	19,460	19,460
경남	31,910	12,300	19,610	31,910	15,955	15,955
제주	4,110	1,610	2,500	4,110	2,055	2,055

지역별 주요 농업기계 확보지침

1. 목 적

지역(지구)별로 주요농업기계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동 확보목표 범위에서 신규 농업기계를 보급하여 파잉 공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

2. 지역별 농업기계화 계획 수립

-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2-16호('92. 4. 2)로 고시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현대화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
-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벼농사, 과수, 노지채소 및 특작, 시설농업, 양잠, 축산등의 기계화와 수확후의 기계화를 말하며 작목별로 규모화 하여 농작업이 일관기계화 되도록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수립

3. 벼농사의 주요 농업기계 확보 목표 설정

-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농기계 이용조직과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작업별로 주요농기계의 기종별 확보목표 대수를 설정
- 벼농사의 기계화 대상목표 면적은 경지정리 대상면적(전국 1,000천ha)으로 하고 '96까지 완전기계화 되도록 함.

4. 신규 농기계 보급대수 결정

- 기종별 확보 목표대수에서 보유대수(폐기대수 제외)를 제외한 대수를 신규 보급 대수로 하고 연차별 폐기대수를 감안하여 연도별 신규 보급대수를 산출함

[별지제1호서식]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2. 농가보유 폐농기계 처리계획

- 기종명 및 구입년도 : (예: 경운기 86년도, 관리기 87년도)
- 처리방법 : 공급자에게 인계(), 본인책임하에 처리()

3. 공급자 확인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에 책임 사후관리 하겠습니까.

공급자 : ○○○ 대리점 또는 공급농협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읍·면·구청장) 귀하

절 취 선

발급번호 :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공급 예정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19 년 월 일

(시·읍·면·구청장) (인)

※ 용자지원을 병행하여 구입시는 위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갖추고 용자취급 기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 예 시 >

(이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1.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절 ----- 취 ----- 선 -----

< 예 시 >

(이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1.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제3호서식]

용자수속필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		
기종명 (규격)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절-----취-----선-----

용자수속필확인서

1. 발급번호 :
2. 건 명 : 농업기계 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용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용자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형식명)	수량	기대금액				비고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대					

귀하의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1) 본 확인서는 용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용자금은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확인서 또는 일반용자 농기계구입신청서"에 의거 산출하였음.
-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청자) 귀하

[별지제5호서식]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기 대 금 액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작업기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1.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농기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대리점 :

대 표 : (인)

공급 농협 :

조합장 : (인)

19 년 월 일

시 장 · 군 수 귀 하

[별지제6-1호서식]

읍면별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

구분 읍·면	기종명	수량	기 대 금 액			
			계	보 조 금	용 자 금	자 부 담
○○ 읍	○○○	대				
	○○○					
	○○○					
○○ 면	○○○					
	○○○					
	○○○					

[별지제6의2호서식]

보조금 지급 대상자 현황

기종명	대 상 자		수량	기 대 금 액			
	주 소	성 명		계	보 조 금	용 자 금	자 부 담
			대				

[별지 제 7호서식]

용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성명	기대제조회사명		
기종명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대				
계					

-----절-----취-----선-----

용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용자실행 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형식 명	수량 (대)	기대금액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 작업기								
계		-	-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 귀하")

[별지 제 8 호 서식]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

점번호	수호	접일자	차 (성명, 주소)	융자신청기종		구입금액액				처리		
				기종명 (수량)	업체명 (공급자명)	계	용자	보조	자부담	일자	내용	

[별지 제 9호 서식]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상

발급 번호	성 명	주 소	기종명	규격 (형식명)	제조업체	구입처	기대대금(천원)			구 입 비 고
							계	보 조	용자 및 자부담금	

[별지제10호서식]

대형 농업기계 관리대장

	주 소	기종 명	제 조 회 사	규 격 (형 식 명)	농 기계 형 식 표 지 판 의 제 조 번 호	구 입 일 자	이 용 방 안 지 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가 ○ 농업회사인 ○ 공동이용조직 ○ 쌀전업농 							

※ 제조번호란에는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를 기입하며,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를 기재

※ 이용조직의 경우 전기종을 등록 관리하여야 함.

[별지제11호서식]

농업기계 출하실적

1. 총괄

(단위 : 대)

기종	형식명	계획 (A)	생 산		출 하		전년동기		대 비				
			당월	누계 (B)	당월	누계 (C)	생산 (D)	출하 (E)	B/A	C/A	B/D	C/E	
계													

2. 시도별 출하실적

(단위 : 대)

기종	형식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별지제12호서식]

농업기계 용자지원 공급상황
(199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1. 총 괄

(단위 : 대)

기종별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 율	
		전월까지	당 월	누계(B)		B/A	B/C

※ ()는 순수용자지원분 별도내서

2. 시·도별 농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분 시·도별	기 종 명	공 급 실 적		
		계	농 협 분	대리점분

3.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분 업체별	기 종 별	공 급 실 적		
		계	농 협 분	대리점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1. 재원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농특회계자금 차관회전자금 농협자금 등 . . . 계						

2. 용도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용도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용 부품확보 지원 - 수리장비 지원 - 농기계보관장고시설 지원 - 폐농기계 수집처리 지원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 자금 계 						

3.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종별	금 차 지원					지원 누 계				
	계	수량	보조	용자	자담	계	수량	보조	용자	자담

※ 용자란중 ()는 순수용자 지원분 별도내서

4.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별	금 차 지원				지원 누 계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별지제14호서식]

농업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단위 : 대)

업체별	농업용은풍난방기	은실용동력개폐기	기	타	계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1. 공급실적

< 총괄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별로 별지 작성 >

(단위 : 대)

기종명	공급계획 (A)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누계(B)	전월까지	금월		B/A	B/C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							
기타							

2. 보조금 집행실적

< 총괄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별로 별지 작성 >

(단위 : 대, 백만원)

기종명	공급계획		집행			
			금회		누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						
기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 (자율)

1. 목 적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음.

2. 육성방향

- 농기계이용조직은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 육성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육성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백만원)

		'94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309	796	1,318	1,000	1,000	5,000	9,423
사 업 비	계	31,373	79,600	87,800	60,000	60,000	300,000	618,773
	국 고	7,347	19,900	21,950	15,000	15,000	75,000	154,197
	지 방 비	7,347	19,900	21,950	15,000	15,000	75,000	154,197
	용 협 용 자	5,215	12,736	14,048	9,600	9,600	48,000	99,199
	자 부 담	7,823	19,104	21,072	14,400	14,400	72,000	148,799
		3,641	7,960	8,780	6,000	6,000	30,000	62,381

나. '96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	자부담
농업회사법인	개소 218	21,800	5,450	5,450	8,720	2,180
공동이용조직	1,100	66,000	16,500	16,500	26,400	6,600
계	1,318	87,800	21,950	21,950	35,120	8,780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영농작업 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이용조직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10-30ha이상 영농작업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2)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농업회사법인		100	25	25	40	10
공동이용조직	대 규모	60	15	15	24	6
	소 규모	20	5	5	8	2
지 원 율		100%	25	25	40	10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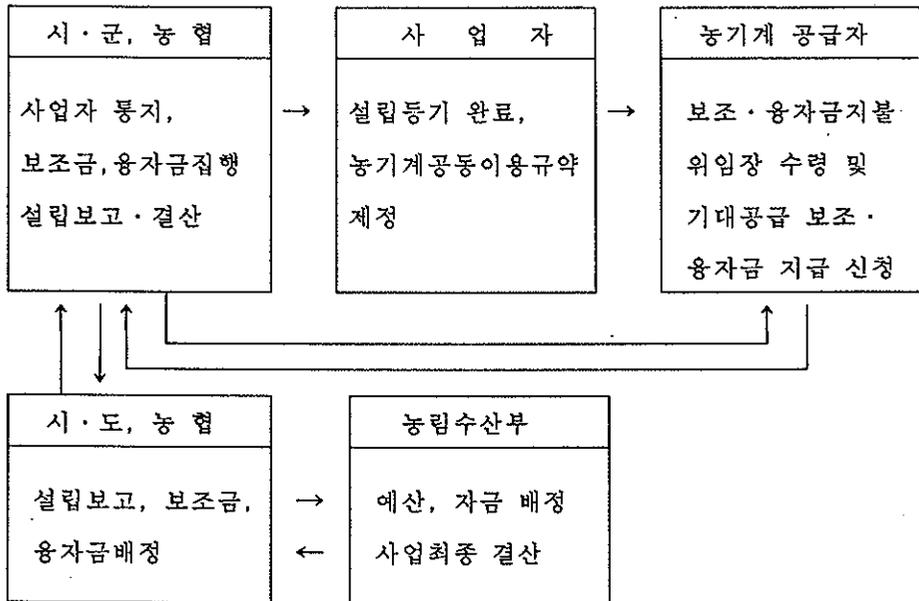
- 개소당사업비 범위내에서는 보조 50%, 용자 40%, 자담 10%의 비율로 지원하고, 개소당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비의 90% 범위내에서 보조금(지방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이용조직은 시·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실정 및 신청량을 감안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하여 육성
- 기종별 용자금 지원조건은 '96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대상 농기계 : '96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요령에서 정한 기종

(3) 사업시행체계

○ 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 농발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

○ 사업실행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가) 농업회사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시·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영농작업 규모,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영농작업규모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 영농인력 : 5명이상, 그중 농기계 운전자 2명이상, 정비기술자 1명이상
- 영농장비 :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 10대이상 확보
- 시설 :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60평 이상

- 농기계 운전자 및 정비기술자는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이어야 함.
- 장비 및 시설은 지원신청 당시의 시설장비와 회사설립후 확보할 시설장비를 구분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설립후 확보할 장비는 1년 이내, 시설은 2년 이내에 모두 구입(설치)하여야 함.

(나) 공동이용조직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음의 공동작업 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 농기계 공동작업 자격요건 >

	대규모공동이용조직	소규모공동이용조직
토지이용형작물의 경우 영농작업규모	30ha이상	10ha이상
인 력	○ 농기계운전능력자3인이상	○ 농기계운전능력자2인이상
농기계공동이용규약	제정운영	제정운영

- 농기계 운전능력자는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또는 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이어야 함.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농업회사법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을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자격구비요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읍·면장)에게 선정을 신청함. 다만, 작목반은 관할 종합농협장이 신청할 수 있음.

라. 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가) 농업회사법인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인 회사법인
- ②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농협
- ③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기존 농업회사법인
- ④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설립하는 회사법인등
- ⑤ 일반농업회사법인

(나) 공동이용조직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의 생산자조직
- ②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생산자조직
- ③ 기계화영농사, 선도농어가, 선도개척농, 전업농,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등

(2) 선정절차

- 시장·군수(읍·면장)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구비요건, 지역여건, 사업성, 수지전망 등을 검토한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농협장은 동 선정 심의회시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설립통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영농규모, 인력, 장비 및 부지 확보 여부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의 상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지시하고, 보완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사업시행

(1) 농업회사법인의 시설설치자금 및 경영비 용자지원

(가) 지원계획

구 분	용자지원액	지 원 조 건		
		개 소 당 지원한도	상환기간	금 리
○ 시설설치 자금 -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백만원 6,619.2	백만원 33.6	3년거치 7년상환	5 %
○ 경 영 비(농업경영자금)		20	1 년	5 %

○ 시설설치 자금은 시설설치소요액의 90%이내로 지원함.

< 도별 농업회사법인 시설설치 자금 지원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 주
사업량	197	13	7	6	36	23	27	41	43	1
사업비	6,619.2	436.8	235.2	201.6	1,209.6	772.8	907.2	1,377.6	1,444.8	33.6

(나)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은 부지확보 내역, 규모, 시설설치내역, 소요액등을 명시한 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등 시설설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농협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시설설치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내 완공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등 행정사항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다) 용자대출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용자대출은 법인 명의로 하고, 작목반은 작목반장을 포함 2인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연대차주 명의로 용자하여야 함.

(2) 위탁작업료 결정 협의회

- 시장·군수는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업단체 및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작업료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

(3) 공동이용규약 제정 운영

- 공동이용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지정, 농기계공동이용 방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기계 공동이용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4) 보조금의 교부

-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후봉사업소(농협, 대리점)등이 명확히 기록된 농업기계 구입확인서[별지서식 제1호]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기계 구입확인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등을 확인한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농협장에게 통보함.
- 지방비 확보 지연등으로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될 경우, 우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용자실행 및 자부담금의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의 농업기계 구입현황[별지 서식 제2호]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등(12월말 기준)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농협장은 농기계 구입지원자금 용자시 농업기계 구입 현황[별지서식 제2호]을 매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 통지하고 농협 면세유류 관리대장 정리에도 활용토록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비 지원(지방비)으로 보유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이농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요령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추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96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 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농업회사법인

(가) 농촌진흥청

- 경영평가
- 영농기술지도 및 소득사업 개발지원
-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

(나) 행정기관

- 법령에 정한 업무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행 상황보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등 보조금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의 업무
-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지도 감독
 - 회사설립에 따른 회사설립 발기, 정관작성, 설립등기등의 설립절차에 대한 지도
- 농업회사법인 세무지도
 - 사업년도 세무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작성, 원천징수, 결산관련세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등에 관한사항등 지도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병역특례
 - 적격대상자 선발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복무토록 함.
- 기타 행정지도 사항
 -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 사항, 정책자금 용자, 의료보험 관련업무등에 관한 지도

[별표]

시·도별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218	1,100	87,800	21,950	21,950	35,120	8,780
부산	-	12	720	180	180	288	72
대구	-	5	300	75	75	120	30
인천	1	15	1,000	250	250	400	100
광주	3	22	1,620	405	405	648	162
대전	-	2	120	30	30	48	12
경기	13	51	4,360	1,090	1,090	1,744	436
강원	7	67	4,720	1,180	1,180	1,888	472
충북	6	122	7,920	1,980	1,980	3,168	792
충남	32	145	11,900	2,975	2,975	4,760	1,190
전북	40	211	16,660	4,165	4,165	6,664	1,666
전남	27	252	17,820	4,455	4,455	7,128	1,782
경북	41	131	11,960	2,990	2,990	4,784	1,196
경남	47	65	8,600	2,150	2,150	3,440	860
제주	1	-	100	25	25	40	10

※ 공동이용조직은 시·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실정 및 신청량을 감안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하여 육성

[별지제2호서식]

농업기계구입현황

명 칭	소재지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모델명)	농기계 형식표지 판의 제조번호	구입비				구입 년월일
						계	보조 금	용자 금	자부 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재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실적 보고

I. 농업회사법인

1.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 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2. 부대시설 설치

구 분	계	격납고	건조장	정비장	육묘장	기 타
계획(A)	평/동					
실적(B)						
비율(B/A)	%					

3.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공급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획 (A)					
농기계공급 금액 (B)					
집행액 (C)					
미집행액 (B-C)					
비율	B/A	%			
	C/B				

※ 농기계 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 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 부대시설 및 경영비 용자지원

(단위 : 개사, 천원)

구 분	부대시설비		경 영 비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계획 (A)				
실적 (B)				
비율(B/A)				

II. 공동이용조직

1. 사업현황

구 분	조 직 수	영농규모	참여회원	주작목	비 고
계	개소	ha	명	개소	개소
대 규모					
소 규모					

- ※ 1. 주작목란은 수도작, 전작, 과수, 특작등으로 주작목별 조직수를 기재
 2. 비고란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 조직수를 기재

2.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 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3.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획 (A)					
농기계공급 금액 (B)					
집행액 (C)					
미집행액 (B-C)					
비율	B/A	%			
	C/B				

- ※ 농기계 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 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별지제4호서식]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운영실적

1. 위탁영농실적

○ 농기계 활용

	경운·정지		이앙	수확		건조		방제		기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주행식분무기	동력분무기	
활용대수	대									
작업량	ha									
대당작업량	ha									

○ 위탁영농형태별

	완전위탁	부 분 위 탁							
		경운·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육묘+이앙	수확+건조
위탁농가수	호								
위탁면적	ha								
위탁작업료	천원/ha								

2. 운영수지(개소당)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지출		손익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위탁작업	계				
	소작업료		인건비 유류수 감운	건류리 가상관리 비각비	
기타소득사	소계 (.)		(.)		

공동이용조직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1. 작목반(영농조합법인)명 (주작목 :)

2. 작목반(영농조합법인) 현황

가. 일반현황

농가수 (호)	참여농가 (호)	전체경지면적(ha)			참여면적(ha)			비율(%)		비고
		논	밭	계	논	밭	계	농가	면적	

나. 시설 및 농기계 보유현황

○ 시설보유현황

시 설 명	농 기계 보관장고	공 동 육묘장	공 동 퇴비장	유리온실	저 온 저장고	수송차량	기타
동						대	
평							

○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대)

구 분	트랙 터	경운 기	콤바 인	이앙 기	관리 기	·	·	·	기타	비고
보 조 농 기 계										
자담구입농기계										
계										

주) 농기계 보유현황은 주작목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은 순서로 작성

3. 운영실적 평가

가. 영농실적

○ 농기계 활용

(단위: 대)

영농과정 구분	경운·정지		이앙	수확		건조		방제		-	기 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주식분무기	동력분무기	-	
활용대수(대)											
작업량(ha)											
대당작업량(ha)											

주) 농기계 활용은 작목에 따른 주요영농 과정별로 작성

○ 영농작업 유형별 실적

구분	영농작업형태									
	경운·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육묘+이앙	수확+건조	-	기타
참여농가수(호)										
작업면적(ha)										

주) 영농작업형태는 작목에 따른 주요작업과정 순으로 작성

나. 운영평가

○ 공동작업 실적

작업내용	작업면적(ha)	참여인원	효과	비고

주) 작업내용은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자구입, 못자리설치, 모내기, 방제작업, 수확, 건조, 공동출하 등 작업명과 구체적 실시사항 기재

○ 공동출하실적(누계)

(단위: 톤, 천원)

출하물량	출하금액	비고

○ 공동기금 조성(누계):

천원

다. 작목반(영농조합법인) 운영 효과

○ 농기계 이용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

(단위: 톤, 천원)

농기계명	주변 비작목반 지역	작목반	비고

○ 생산 및 소득제고 효과

< 생산 >

(단위: 톤/년)

주변 비작목반 지역	작목반	비고

< 소득 >

(단위: 천원)

주변 비작목반 지역	작목반	비고

4. 문제점

5. 개선방안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자율)

1. 목 적

농업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 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확대 설치로 창고이용율을 증대하고 보관창고 설치비를 절약함.

3. 투융자계획

가. 년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04	합 계
○ 사업량	-	100	800	1,000	1,000	6,000	8,900
계		5,500	46,400	60,000	60,000	360,000	531,900
○ 국고보조		2,200	18,560	24,000	24,000	144,000	212,760
○ 지방비보조		2,200	18,560	24,000	24,000	144,000	212,760
○ 자부담		1,100	9,280	12,000	12,000	72,000	106,380

나. '96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800 개소	46,400	18,560	18,560	9,280

※ 사업비는 농기계보관창고 1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임.

4.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2)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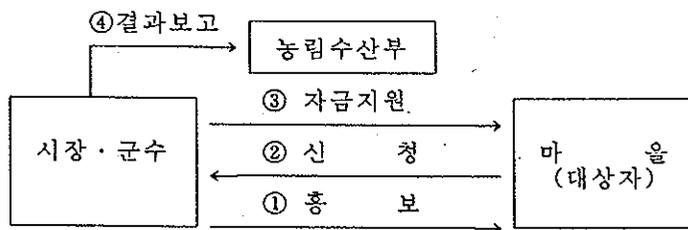
(가) 사업내용 :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나) 지원대상 : 7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신규 조성되는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창고설치는 40~100평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알맞게 설치
- 사업비지원은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으로 함.
- 사업비는 설치규모에 따라 지원하며, 총소요액의 80% 한도내에서 지원
- 시·도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라) 사업시행체계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거주자,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원

(나) 신청절차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설치 및 공동이용계획서, 부지확보계획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함

(다) 구비서류 : 1.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공동이용약정서 1부.

(4)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기계화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 기계화영농사,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는 지역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기계화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나) 선정절차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신청서, 공동
이용약정서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에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5)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기보급한
농기계 보관창고표준설계도(건설부 공고 제1992-188호: '92.12.22)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기에
착공·완료토록 지도하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동이용실태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는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는등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등 공동보관창고의 운영 부실을 방지
- 건축된 공동보관창고는 부락명의 또는 7인 이상의 참여농가명의로 공동등기(건축물)
- 공동참여농가는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을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제2호서식)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 시·도 : 농산(농정, 산업)과
- 시·군 : 농산(농정, 산업)과

[별표]

시·도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단위: 개소,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800	46,400,000	18,560,000	18,560,000	9,280,000
부 산	18	1,044,000	417,600	417,600	208,800
대 구	2	116,000	46,400	46,400	23,200
인 천	15	870,000	348,000	348,000	174,000
광 주	6	348,000	139,200	139,200	69,600
대 전	15	870,000	348,000	348,000	174,000
경 기	80	4,640,000	1,856,000	1,856,000	928,000
강 원	80	4,640,000	1,856,000	1,856,000	928,000
충 북	100	5,800,000	2,320,000	2,320,000	1,160,000
충 남	100	5,800,000	2,320,000	2,320,000	1,160,000
전 북	80	4,640,000	1,856,000	1,856,000	928,000
전 남	80	4,640,000	1,856,000	1,856,000	928,000
경 북	100	5,800,000	2,320,000	2,320,000	1,160,000
경 남	120	6,960,000	2,784,000	2,784,000	1,392,000
제 주	4	232,000	92,800	92,800	46,400

(별지제2호서식)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보고

1. 사업현황

○ 총괄

개 소 수	설치규모	참여농가수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개소	평/동	호	천원			

○ 규모별 설치현황

계	40평형	50평형	60평형	70평형	80평형~ 100평형
동					

2. 설치추진상황

계 획	미착수	착 공	설치중	완 공
평/동				

※ 부진사유는 별도 기재

3. 사업비 지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부 담
계 획(A)	평/동	천원			
집행액(B)					
비율(B/A)					

농업기계 사후관리 지원(공공)

1. 목 적

농업기계의 사후봉사 강화와 관리의 철저로 고장을 줄여 농업기계의 이용율을 높이고자 함.

2. 추진방향

- 수리용 부품 및 장비 확보자금지원으로 사후봉사기능 강화
-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지원으로 대형 정밀농기계 수리 촉진
-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지원으로 자원재활용 촉진 및 농촌환경 오염방지

3. 투융자계획

가. 년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계	26,800	27,000	21,078	32,100	32,400	156,000	295,378
○ 국 고 용 자	26,800	27,000	21,078	32,100	32,400	156,000	295,378
○ 수리용부품확보지원							
- 사 업 량	500	500	186	250	250	1,500	3,186
- 국 고 용 자	25,000	25,000	15,310	25,000	25,000	150,000	265,310
○ 수리장비 지원							
- 사 업 량	28	18	23	25	25	150	269
- 국 고 용 자	1,000	1,000	1,368	1,000	1,000	6,000	11,368

구 분	'94	'95	'96	'97	'98	'99~04	합 계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지원							
- 사업량	-	-	4	4	4		12
- 국고용자			3,200	4,000	4,000		11,200
○ 폐농기계처리장설치 지원							
- 사업량	4	5	4	7	8		28
- 국고용자	800	1,000	1,200	2,100	2,400		7,500

나. '96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개소	21,078	21,078	
○ 수리용부품확보지원	186	15,310	15,310	
○ 수리장비 지원	23	1,368	1,368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지원	4	3,200	3,200	
○ 폐농기계처리장설치 지원	4	1,200	1,200	

4. 사업추진계획

가. 수리용부품 확보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 : 부품센터 및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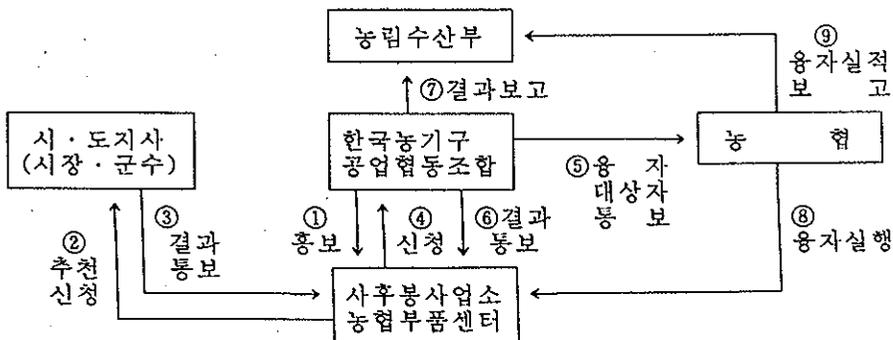
(다)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도 단 위		시·군·구단위		읍·면·동위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
	농 협	업 체	사후봉사업소		사후 봉사 업 소	농협 사후 봉사 업소
	부품센터	종합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포함)	갑 류 및 을 류	병류		
개 소 당 지원한도	백만원 1,200~ 2,500	1,000	200	100	40	40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및 농협 농기구서비스센터중 시설기준이 시·군·구 단위 "을"류 이상인 경우는 2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용자조건 : 년리 3%,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액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기간 : '96. 1. ~ 12.
- 자금용도 : 부품확보자금등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부품센터는 도지사)
- 지원대상자 확정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라) 사업시행체계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부품센터 및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나) 신청절차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 신청함.
다만, 부품센터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함.

(다) 구비서류 :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추천서 1부(별지제1호서식)

(4)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부품센터 및 사후봉사업소, 신규지정 사후봉사업소

(나) 선정절차 : 시장·군수(시·도지사)가 추천한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대상자를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업기계화추진업무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원 대상자 추천기관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5)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품확보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용자 취급기관에 용자지원 신청

※ 수리용부품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부품확보자금을 지원받은 사후봉사업소는 영농기(3~6월, 9~10월)에는 지원액의 120% 이상 해당하는 부품보유
- 2)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공급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공급하여야 하며 도단위 부품센터는 수입 및 구형 기종 농기계 부품을 중점 확보하고 배달차량운영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추진

○ 수리용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 종합사후봉사업소 : 모든부품(내구품, 준소모품, 소모품)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업소 : 소모품

(나) 보 고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선정한 후 10일이내에,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의 경우는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제2호서식)

나. 수리장비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종합사후봉사업소 : 수리·정비용 건축비,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구입비등
- 사후봉사업소 :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통신장비, 공구구입비등

(나) 지원대상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다)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대상	도 단 위	시·군·구단위	읍·면·동단위
	종합사후봉사업소	사후봉사업소	사후봉사업소
개 소 당 지원한도	200 백만원	50	30

- 용자조건 : 년리 8%,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지 원 액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기간 : '96. 1 ~ 12
- 지원대상자 추천: 시장·군수(종합사후봉사업소는 도지사)
- 지원대상자 확정: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나) 신청절차 : 농업기계 수리장비 구입자금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 신청함.
다만, 종합사후봉사업소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함.

(다) 구비서류 : 농업기계 사후봉사시설 및 수리장비 용자지원추천서 1부
(별지제3호서식).

(4)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사후봉사
업소, 신규지정 사후봉사업소

(나) 선정절차 : 시장·군수(시·도지사)가 추천한 수리장비 확보자금 지원
대상자를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업기계화추진
업무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원대상자 추천기관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용자
취급기관에 통보

(5) 사업시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수리장비 확보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용자취급기관에
용자지원 신청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년 1회이상 시설과 기술
인력 확보현황 및 사후봉사실태등을 확인점검지도

(나) 보고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선정한 후
10일이내에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별지제4호서식)

다.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대형정밀농업기계의 점검·정비 및 수리를 위한 건축비,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 구입비등

(나) 지원대상 : 농업기계 제조업체,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설설치기준 >

구 분	기 준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과 배수가 용이하며 농업기계 종합수리에 적합한 지역
부 지 면 적	5,000 제곱미터 이상
정비공장, 부품창고 보관창고, 사무실등	1,500 제곱미터 이상
장 비	농용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정밀농업기계의 점검·정비 및 수리에 필요한 장비
부 품 확 보	농용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정밀 농업기계 사후봉사용 부품

○ 용자조건 : 년리 5%,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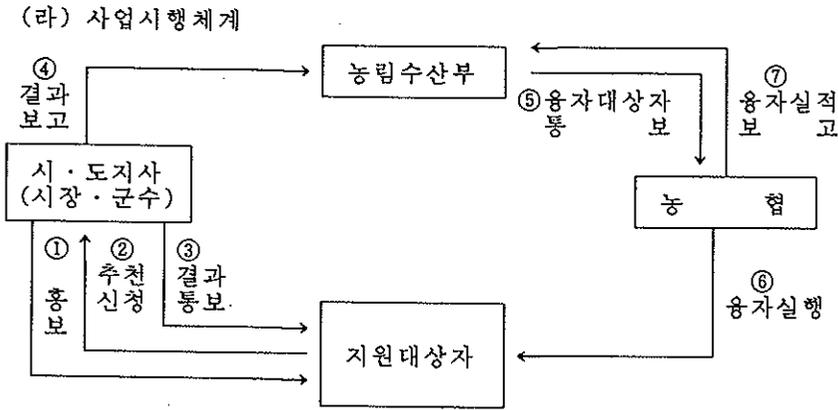
○ 지원액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기간 : '96. 1. - 12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라) 설치지역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마)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농업기계 제조업체,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등

(나) 신청절차 :

- 광역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96.3.31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다) 구비서류 : 광역농기계수리센터설치사업 지원신청서 1부(별지제5호서식).

(4)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대형정밀기종 제조업체,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등

(5) 사업시행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자금소요액과 대출농협을 명시하여 '96.4.2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도지사는 년1회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및 사후봉사실태등을 확인 점검지도

(나) 보고 : 도지사는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을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제6호서식)

라. 폐농기계처리장 설치지원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폐농기계 운반, 상·하차, 해체, 분류, 압축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장비구입비 지원등

(나) 지원대상 : 농업기계 제조업체,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농업회사법인
기타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설설치기준 >

구 분	기 준		
사업장의위치	대형차량의 출입과 배수가 용이하며 폐농기계 처리에 적합한 지역		
부 지 면 적	3,000제곱미터 이상(단, 작업장, 사무실의 총면적은 670제곱미터이상)		
장 비	폐농기계의 운반, 상·하차, 해체, 분류, 압축등에 필요한 장비		
환경관련시설	폐유수집 탱크	2,000리터이상의 것	1식이상
	폐유·폐수 처리시설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포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수집하고 정화하여 배출할 수 있는 설비	1식이상

※ 폐유·폐수의 정화 배출시설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 설치지역 : 강원, 충남, 전북, 전남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용자조건 : 년리 5%,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액 :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기간 : '96. 1. - 12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폐농기계처리장에 대한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환경 관계법령 준수여부와 폐농기계처리장의 시설확보상황 및 운영실태등을 년 1회이상 점검지도
- 시·도지사는 폐농기계 방치 실태를 반기별로 파악하여 해당농가로 하여금 조기에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고 해당농가에서 폐농기계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농기계처리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업기계 생산업체 및 농업기계공급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종의 판매시 대체되는 구형기종을 최대한 수집하여 폐농기계처리장에 인계토록 조치

(나) 보고 : 도지사는 폐농기계처리장 설치 추진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 폐농기계 수집처리 실적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 시·도 : 농산(농정, 산업)과
- 시·군 : 농산(농정, 산업)과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추천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소 재 지		부품확보자금상환 잔액(지원받은경우)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소의 자격 및 시설		" 예 " : 대리점 율류	

2. 부품확보 용자금 신청

금회용자신청금	천원	자금 사용 시기	19 년 월
부품확보총소요자금	천원	현재고부품금액	천원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인

○ ○ 시·도지사

○ ○ 시장·군수 귀하

(뒷면)

부품 확보 계획서

기 종 명	현 재 고		신규 확보계획	
	종 수	금 액	종 수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소 명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비 고
		수입 부품	수입 부품	수입 부품	수입 부품	수입 부품	수입 부품	

※ 농기조합 : 생산업체별 공장 및 부품센터의 부품현황

농 협 : 부품센터 및 서비스센터의 부품 현황

(별지제3호서식)

농업기계 사후봉사 시설 및 수리장비 지원 추천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총 자 산	백만원
부품현보유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2. 용자금 신청

자금용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용자신청액	자 답
		천원			

위와 같이 농업기계 사후봉사시설 및 수리장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용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시·도지사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종합사후봉사업소 시설설치계획 및 수리장비 구입내역 1부.

(별지제4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 자금 지원대상 선정

(단위 : 백만원)

업 소 명	계 획		/ 분 기		누 계		비율	비고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 액	개소수	금액(B)	(B/A)%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확보 자금 - 부품센터 (농협) - 부품센터 (업체) - 시·군·구 단위사후봉사사업소 - 읍·면·동 단위사후봉사사업소 -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 ○ 종합사후봉사사업소 								

(별지제6호서식)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

1. 대 상 자

- 사업소재지 (상호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2.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비율 (%)
			계	용자 금	자부 담	계	용자 금	자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정비공장, 부품창고, 보관창고, 사무실등 ○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이스트 - 견인차 - 지게차 - 화물차 - 기타장비 및 공구 ○ 부 품 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용트랙터, 부품바인등 대형 정밀 농업기계 사후봉사용부품 	<p>5,000m² 이상</p> <p>1,500m² 이상</p>								

(별지제8호서식)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 추진실적

1. 대 상 자

- 사업소재지 (상호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2.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비율 (%)
			계	용자 금	자부 담	계	용자 금	자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지 면 적 ○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차량 - 지 게 차 - 압 축 기 - 절 단 기 - 기타장비 및 공구 ○ 환경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유수집탱크 - 폐유·폐수시설 	<p>3,000㎡ 이상 (작업장, 사무실 670㎡ 이상)</p> <p>2,000ℓ 이상</p> <p>자가설치 (위탁처리)</p>								

(별지제9호서식)

폐농기계 수집처리 실적

1. 수집지역 : 개시군

2. 수집기간 : ~

3. 기종별 수집실적

(단위 : 대)

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방제기류	수확기류	기 타

4. 수집방법

○ 순회수집 : 대

○ 위탁수집 : 대

농업기자재 생산시설 및 생산자금 지원(공공)

1. 목 적

- 농업기계 생산시설 및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국산화를 촉진하고 농기계의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첨단농업기자재의 개발 및 국산화 촉진
- 저렴한 우량농업기계의 적기 생산공급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99~04	합 계
○ 농기계생산시설	3,500	3,500	3,500	5,000	5,000	30,000	55,496
○ 농기계 생산	45,000	30,000	40,000	50,000	50,000	250,000	6,061,000
합 계	48,500	33,500	43,500	55,000	55,000	280,000	6,116,496

나. '96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	자부담
○ 농기계 생산시설	7개사	3,500	-	-	3,500	-
○ 농기계 생산	20	40,000	-	-	40,000	-
합 계	27	43,500	-	-	43,500	-

4. 사업추진계획

가. 농업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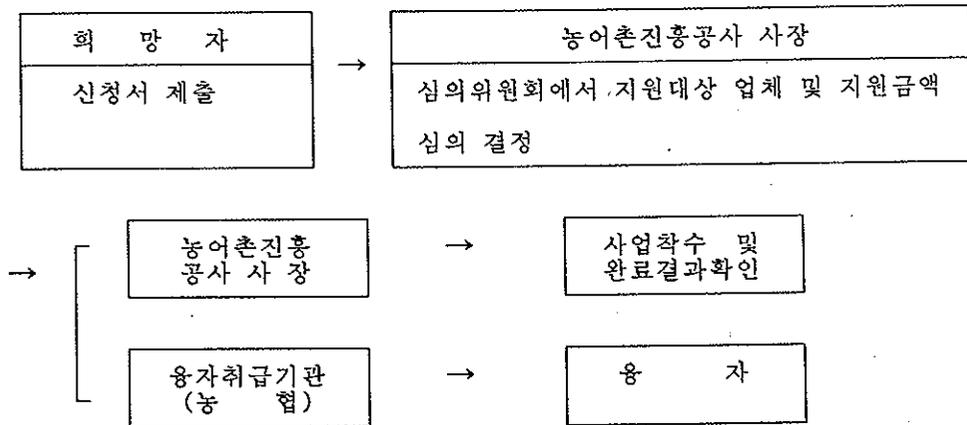
농림용기계, 장비와 시설기자재의 생산시설 및 건축비 지원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나) 지원대상 : 농림용 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라) 사업시행 체계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농림용 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나) 신청절차 : 농업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

(4)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등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 및 지원대상업체 선정

(5) 사업시행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지원대상업체, 업체별 지원액 및 용자 희망사무소를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용자 지원

(6) 행정사항

(가) 보고사항 및 사후관리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비구입등 사업착수 및 완료결과를 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설치 완료시까지 반기별료,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자금 용자 실적을 반기별료 농림수산부장관 및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통보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용자금을 회수하는 등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 농어촌진흥공사 : 시설영농처

나.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농기계 생산비축을 통하여 수요집중기에 공급함으로써 영농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농기계 개발등 우수 농기계 생산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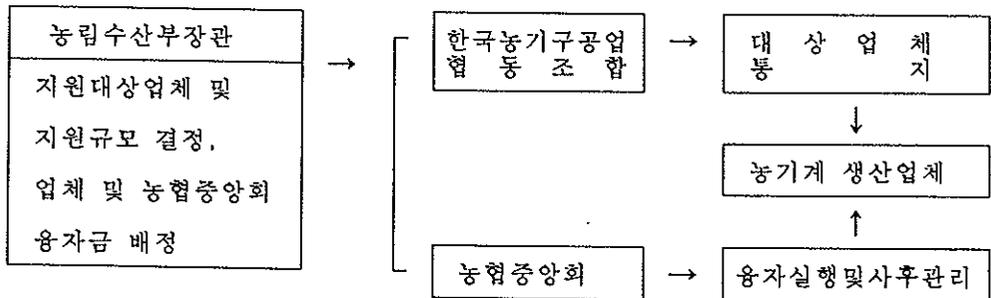
(나) 지원대상

- 농업기계화사업 자금으로 지원공급되는 농기계 생산업체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 소요자금의 일부를 용자지원
- 지원조건 : 년리 5%,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라) 사업시행 체계



(3) 선정기준 및 절차

- 농업기계 생산회사에 대한 농기계 생산비축실적, 국산화율, 농기계개발보급 상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등을 감안하여 대상업체 및 지원규모 결정
(단, 불량농기계 보급, 사후봉사 소홀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 행위 업체는 감액조정)

(4) 사업시행

-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하여 지원규모를 통지하고 용자금은 농협중앙회로 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용자 지원하고, 사후관리

(5)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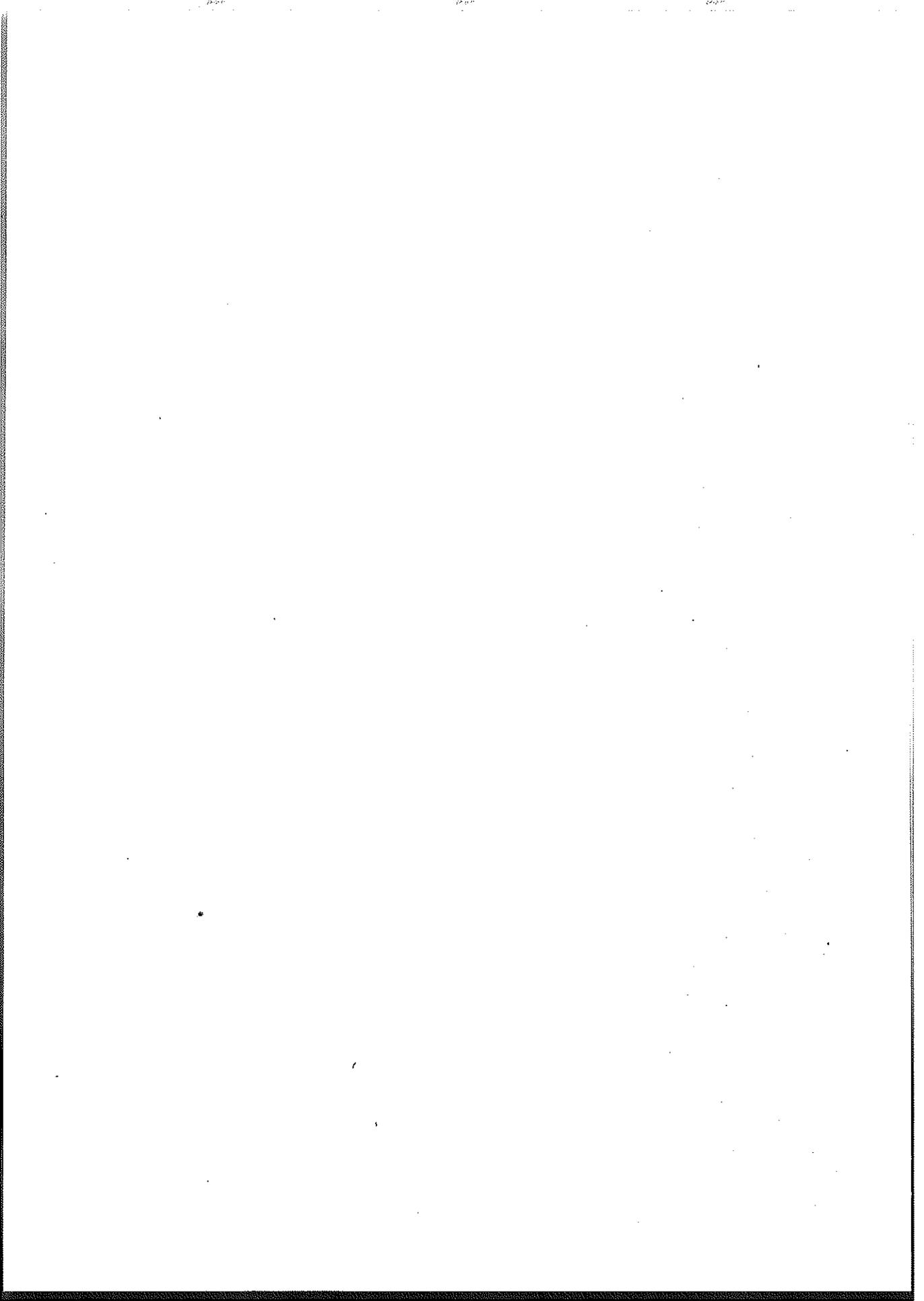
(가) 보고사항 및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용자지원 실적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용자금을 회수하는등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5. 기술개발및정보화



농림수산물기술개발 (공공)

1. 현장애로 기술개발

가. 목 적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

나. 추진방향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투 자 계 획					비 고
총 사업비	'94	'95	'96	'97 이후	
1,690	190	300	250	950	재원 : 농특세

라. 사업추진 계획

-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기술관리센터)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분야 : 8개 분야의 영농어 현장의 애로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가공·유통, 생산기반·기계화, 생활·환경, 임업, 수산업)
- 지역시험장의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영농현장의 문제기술등 지역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에 의한 기술개발
- 산·학·관·연 및 임업 경영자 공동추진으로 현장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농산촌 소득증대 기술의 개발
- 학계, 연구기관, 어촌지도소, 업계 공동으로 어민들이 영어활동 또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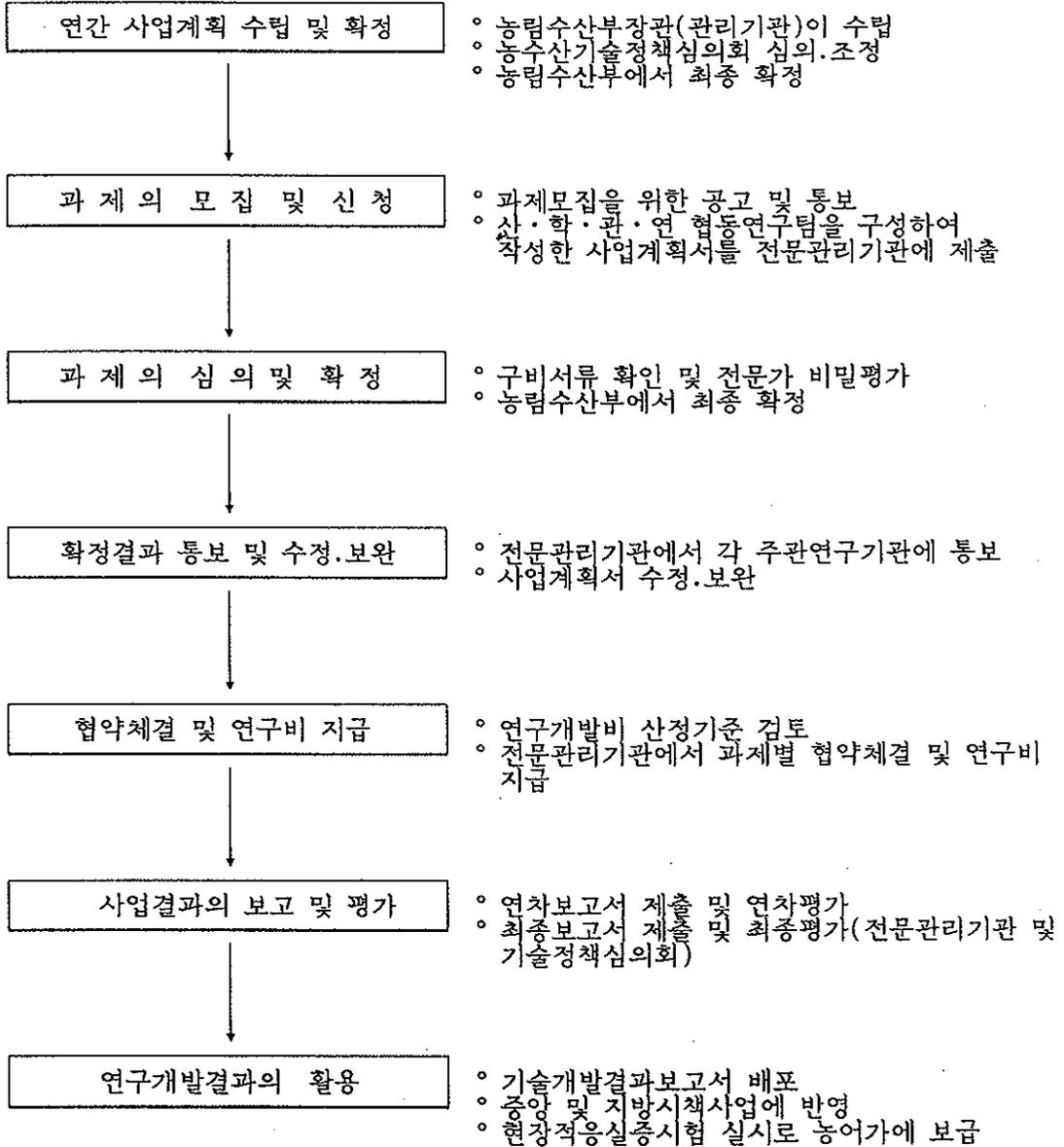
(나) 지원대상

- 대학교 및 전문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농어민(단체)등 산·학·관·연의 협동연구팀

(다)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전액 국고보조
- 기업 참여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 중소기업 : 80%

(라) 사업추진 체계도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지도소, 산업체 등이 농어민(단체)의 영농어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나) 신청방법

- 농림수산기술개발실시요령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시 신청기간내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 제출

(다) 구비서류

- 농림수산 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 3부 및 요약서 20부.
- 기업 참여시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대표의 확인서 1부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 기술개발연구의 필요성
 -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농어민의 기술개발수요가 높은 과제
- 기술개발연구 목표의 타당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창의성, 구체성, 명확성, 실천성 여부
 - 과제연구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타당성 여부 등
- 기술개발연구계획의 적정성
 - 기술개발내용,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연구기간의 적정성 여부
 - 기술개발 연구원의 능력, 경험, 유기적 참여도 등

○ 현장보급 및 이용가능성

- 애로해결을 위한 시의.적절성 여부
- 실용화.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어 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여부

○ 중복, 유사성 검토

-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중인 과제 또는 유사과제는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우선순위

- 영농어현장, 농어촌생활, 농수축산물 수출의 애로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어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학술적인 성격의 과제이거나 기초연구과제는 제외하되, 정책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개발, 특정사업부문의 표준화, 조사사업등의 과제는 부분적으로 수용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서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상황 관리 :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 기술개발 성과보급 및 활용 : 농림수산부 및 3청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2)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기술과 (전화 (02) 503 - 7282~3)
농촌경제연구원내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02) 963 - 7311)
농촌진흥청 : 원예축산과 (전화 : (0331) 292 - 4295)
산 립 청 : 기술지원과 (전화 : (02) 961 - 2374~5)
수 산 청 : 연근해과 (전화 : (02) 753 - 7995)

- 시.도 : 농정과 기술개발 담당

2. 첨단기술개발

가. 목적

-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정보 분야등 다름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수산 부문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향

- 농어업분야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94년부터 10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유통·가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첨단기술을 농림수산기술혁신에 접합시킬 수 있도록 연관분야별로 산·학·관·연의 협동연구팀 구축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95	'96	'97	'98	'99 - '04	합계
313	300	300	300	1,787	3,000

라.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주관기관: 농림수산부 장관

(2)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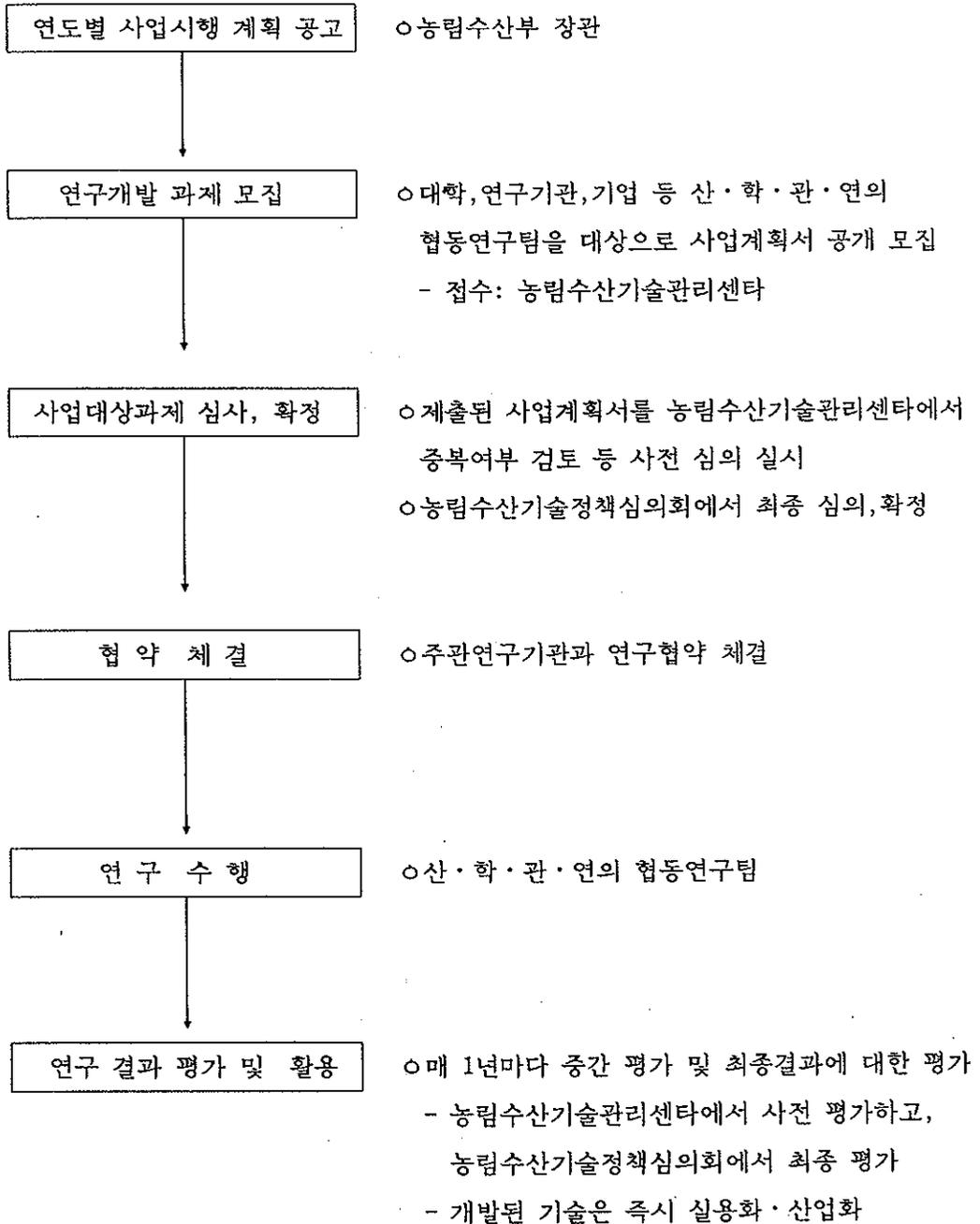
(가) 사업내용

-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 첨단농림어업 기술개발 사업
- 이미 개발된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산업기술을 농림어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사업
- 환경보전형 농림어업 기술 연구 개발 사업
- 첨단산업 기술을 농림수산업의 유통·저장·가공기술에 적용하는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

(나)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 다만 기업의 참여시 사업비의 일부 지원
 - 대기업 : 총사업의 50/100, 중소기업:80/100

(다) 사업 추진체계도



(3)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산, 학, 파, 연의 협동연구팀

(나) 신청 방법

- 과제모집공고: 농림수산부 장관
- 연구개발참여자: 농림수산기술개발연구계획서 제출
 - 접수: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다) 구비서류

- 농림수산기술개발연구계획서

(4) 사업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사업 대상을 다음의 7개 분야로 분류하여 과제를 공개모집
 - 유용자원 탐색 및 복제생산을 위한 생명공학기술 개발
 - 첨단가공기술 개발
 - 기능성 물질 및 고기능성 제품 생산 기술 개발
 - 농림수산물식품의 첨단 저장, 유통 시스템 개발
 - 환경조화형 농림수산물기술개발
 - 농림수산물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 첨단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검토 및 심의 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첨단성·복합성 및 기반성, 기술적, 경제·사회적 효과 등

(나) 우선 순위

- 대학, 연구기관, 기업, 산업체 등 산, 학, 과, 연이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자

(다) 선정방법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타에서 사전 심의후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

(4) 사업시행

- 주관연구기관과 농림수산기술관리센타와의 연구협약 체결
- 총괄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개발 수행
- 연구개발사업비는 농림수산기술관리센타를 통해 지급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타에서 연구관리, 평가 담당
 - 평가 : 연차별 평가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사전 평가
-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평가
- 우수결과에 대해서는 산업화, 실용화 우선

(2)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농림수산부: 농산기술과 ☎ 503-7281~3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타 ☎ 962-7311
- 시·도: 농정과
- 시·군: 농정과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공공)

1. 목적

- 농림수산물사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키 위해 농림수산물관련 정책·생산·유통 등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민자율방식의 농어촌 구고개선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본·기술집약적인 농림수산물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코자 함.

2. 추진방향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통신망(VAN) 구축
 - '97년까지 농림수산물부를 비롯한 농림수산물관련 주요기관·단체 및 농어촌지역 마을을 연결하는 농림수산물 부가가치통신망(VAN)을 구축함으로써
 - 농어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농림수산물관련 정보이용환경 조성
 - 농림수산물관련 기관·단체간 원활한 정보이용 교환을 통한 정보공유체제 확립
- 농어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발·보급
 - 농어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
 - 신기술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보
 - 농어민 복지와 직접관련되는 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정보의 개발·보급
- 농어촌지역의 정보이용기반의 조기구축
 - 농어촌지역의 정보수요확충 및 농어민의 정보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 농림수산물관련 PC용 소프트웨어 개발
 - 농어민대상의 지속적 정보통신 이용교육
 - 농어민의 운영하는 전산게시판(BBS) 구축
 - 정보수요조사, PC이용실태조사 등 조사·연구활동 추진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
사 업 량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사 업 비	계	4,514	2,500	3,404	14,584	12,327	14,698
	국 고	4,514	2,500	3,404	14,584	12,327	14,698
	자 담	-	-	-	-	-	-

나. '96 지원계획

-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 정보서비스장비도입 : 통신용 주전산기 1조 및 S/W, 주변기기 등
 - 부가가치통신망 운영 및 IP접속 25개소
 - D/B 개발보급 : 20개
- 농어업용 S/W 개발보급 : 10종
- 정보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농어민 교육실시 : 1,500명
- 시범사업실시 : 품목별 정보방 5개조직 운영
- 정보이용환경조성 : 그림통계집 3종, 시연회 및 세미나 3회 실시
- 전문인력확보 :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29명 확보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1단계('93년 ~ '95년) : 정보화사업 기반구축

-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VAN) 개설
 - 정보공유·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추진
- 공공정보DB구축
 - 수익정보다는 통계·정책 등 공공성이 있는 정보 DB를 시급히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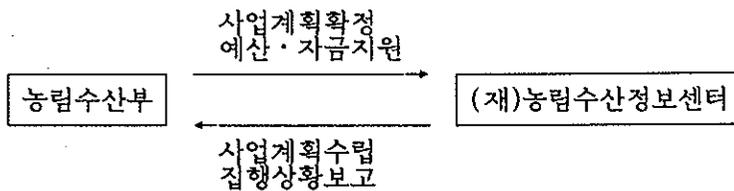
2단계('96년 ~ '98년) : 정보이용활성화

- 농림수산 종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행정·통계·기술·유통 등을 망라하는 종합 DB 구축
 - 부가가치가 높고 상품성 있는 전문 정보 DB 구축
- 국내외금융·무역 등 타 정보망 및 해외농업정보망과 연계
- 정보이용교육·농어업용 S/W개발·보급
 - 정보마인드 확산 S/W개발·보급을 통해 정보화영농실현 유도
- 사업시설확보
 -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보이용교육시설 등 사업시설 확보

3단계('99년 ~ '2001년) : 농어촌지역 고도정보이용실현

- 2000년대에는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고도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도 농림수산정보 이용의 보편화 실현

- (2) 정보제공대상 : 농어민 및 농림수산관련단체
- (3) 지원조건 : 국고보조(정액)
- (4) 사업시행체계



5. 행정사항

-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실 정보처리담당관실
 - 관련기관 :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농림수산정보이용문의 : 02-589-2043)

농지전산화 사업(공공)

1. 목 적

- 전국에 분산된 농지원부의 종합적 전산관리로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농지정책 입안에 필요한 농지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공간통계분석기법등을 통한 지역분석자료 생산으로 농수산관련 자료의 활용도 제고

2. 추진방향

- 전국 1,573개 시·구·읍·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관리하여 민원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도모
 -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농지정보를 신속, 정확, 적기제공
 - 농어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관리정보 제공
 - 농어촌구조개선 및 영농규모적정화 사업수행의 효율적 활용
- 농어촌관련 각종자료의 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농업정책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촌발전대책등 개발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자료 제공
- 농지전산시스템과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IGIS)을 연계 운용하여 농지관련 정보 활용의 효율성 제고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이후	합 계
사 업 량						
사업비	계	6,791	2,145	2,000	2,929	13,865
	- 농지관리기	6,791	2,145	2,000	2,929	13,865

나. '96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계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2,000	1,576	424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나. 사업현황

- 농지원부 전산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D/B구축
 - 전국의 농지원부를 전산 입력하여 농지원부 D/B구축
 - PC용 농지원부 D/B를 개발하여 시·구·읍·면 설치 및 운영지원
 - 농지원부 D/B의 주기적인 갱신·보완
- 농어촌지형정보체계(RGIS)구축
 - 농지 및 농지관련 공간정보를 전산입력하여 농어촌지형정보 D/B구축
 - 공간자료 활용을 위한 분석·운영 프로그램 개발

다. 기대효과

- 농지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농지원부, 농지매매, 농가 및 경작자 확인, 농지임대차 확인, 자경여부 확인, 농업진흥지역 편입 확인등
- 농지관련 공간정보 제공
 - 경지정리, 농업용수, 토양성분, 지하수맥, 도로·기상현황
 - 시·군농어촌발전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 농지이용계획 수립 지원

4.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구 : 산업과장
- 읍·면·동 : 읍·면·동장
- 농어촌진흥공사 : 전산실장, 군지부장
- 농림수산부 : 농지관리과

나. 자료관리 담당자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다.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 농지전산업무 처리요령(농지51310-190, '94.3.14)에 의함

농어촌개발시험연구사업(공공)

1. 목 적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구조개선 및 정주생활권개발 등 농어촌종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연구

2. 추진방향

-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연구 시행
-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술발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준정비
- 다. 복지농어촌건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배분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술개발연구

3.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
- 나.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사업시행자가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교등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다. 사업내용
 - (1)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 (2) 계획기준정립으로 농어촌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시공능력 향상
 - (3)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농정의 효율적추진
 - (4) 농어촌개발분야 기술업무 수행능력 향상
 - (5) 최신의 국내외 선진기술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 라. 지원규모 : 국고 100% (실비지원)
- 마. '96지원계획 : 529백만원

4. 사업추진절차

가. 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시행예정자는 다음년도에 연구할 과제에 대하여 매년 2월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 (2)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종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신청된 연구과제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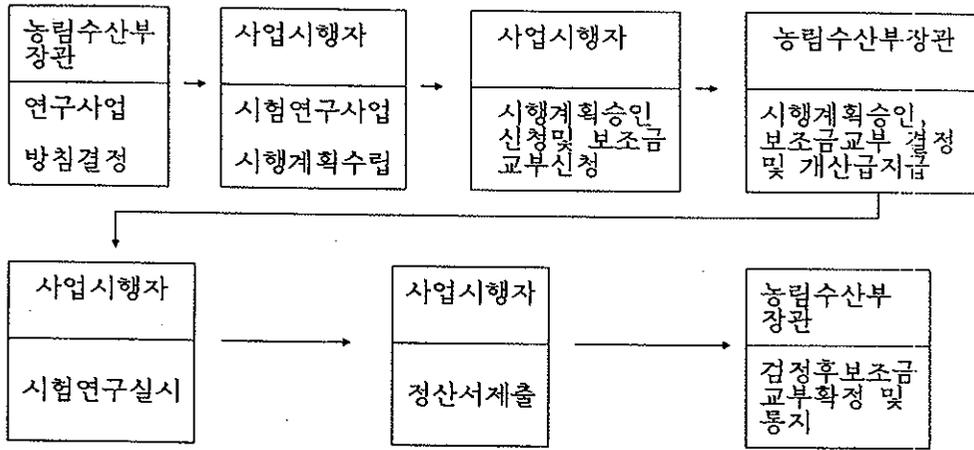
나. 시험연구실시

- (1) 사업시행자는 국고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별 종합계획(전체계획)과 당해년도에 시행할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시행계획 및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2)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및 보조금교부결정 승인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시행계획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승인하며, 과제별 지도감독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 (3) 사업시행자는 연도중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완료후 1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 (4)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년도말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5) 국고지원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로 정산함.

다. 과제의 평가 및 연구결과의 활용

- (1) 사업시행자는 시험 및 연구과제별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완료 다음년도에 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실용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구완료후 실용화 추진실적을 매년 9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체계도



5.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 (02-504-9402~3)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구조연구소 (0343-20-3540)

조사(시험연구)사업추진상황보고

(년 월 일 현재)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년중계획		추진상황			부진시 사유 및 대책	비고
		사업비	사업내용	계획	실적	비율		
				A	B	(A/B)%	%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공공)

1. 목 적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을 지역별로 특화하고 농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수요에 적극 대처
- 지역특산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기관 설립 지원
-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농산물 저장가공 연구시설 및 증식시설 보강
-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및 지역특산작목 관련 첨단연구를 위한 연구기자재 확보

3.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	15	14	18	14	10	54	125
사 계	15,440	14,910	19,640	11,200	12,800	36,720	110,710
업 국 고	7,720	7,455	9,820	5,600	6,400	18,360	55,355
비 지방비	7,720	7,455	9,820	5,600	6,400	18,360	55,355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부 담
계	19,640	9,820	9,820	-	-
경 기	1,794	897	897	-	-
강 원	3,002	1,501	1,501	-	-
충 북	2,458	1,229	1,229	-	-
충 남	-	-	-	-	-
전 북	2,122	1,061	1,061	-	-
전 남	3,922	1,961	1,961	-	-
경 북	3,974	1,987	1,987	-	-
경 남	1,368	684	684	-	-
제 주	1,000	500	500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 주관기관 : 각도지사 (농촌진흥원)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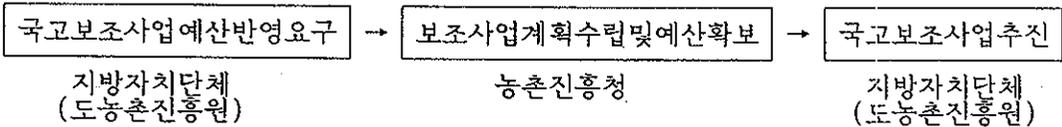
-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 : 8개도 32개소
- 농업연구관련 시설
 - 농산물 저장가공시설 및 우량종묘 대량증식시설 : 9개도
 - 첨단유리온실 및 도농촌진흥원 시험연구시설 : 9개도
- 농업연구용 시험연구기자재 구입
 - 환경평가용 시험연구기자재 : 도별 12종 18대

○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구 분	'95	'96	'97	'98	'99
특화작목시험장 설치	7개도 (12개소)	7개도 (11개소)	전남	-	-
농산물 저장가공시설	경남	전북, 경북, 제주	경기, 강원, 전남	충북	-
우량종묘증식시설	전남	-	경기, 경남, 강원, 제주	충북, 경북	충남, 전북
환경평가용 연구기자 재 구입	-	경기, 강원, 전남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경남, 제주	-
첨단유리온실시설	-	-	강원, 제주, 충남	경기, 전남, 전북	충북, 경북, 경남
도농촌진흥원이전	-	충북	-	충남	-

(2) 지원규모 및 조건 : 사업별 소요예산의 50% 국고보조

(3) 사업시행체계



다. 대상기관 선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연구기반조성관련 국고보조사업 요구내역을 농촌진흥청이 보조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국고보조사업 추진 수시점검 (농촌진흥청)

나. 보 고

○ 국고보조사업 추진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지방자치단체)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 도 : 도지사 (농촌진흥원)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 (공공)

1. 목 적

- 첨단응용기술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체제 구축으로 종합적 기술을 개발코자 함

2. 추진방향

- WTO체제 대응 농업기술 취약 또는 발전가능분야 집중투자
 - 산·학·연 공동연구로 기술개발이 시급한 연구과제
 - 단편적인것 보다는 총화형 연구결과를 요하는 종합적 연구과제
 - 중단기(2~5년)내에 문제점 해결이나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과제
 -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 우리청 단일연구기관의 인력으로 추진이 어려운 기술개발 과제

3.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과제)		341	106	106	110	110	650	1,423
사 업 비	계 국 교	12,337	4,030	4,030	5,000	5,500	45,000	75,897

나.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연 구 비
계	106	4,030
계 속 과 제	70	2,628
신 규 과 제	36	1,402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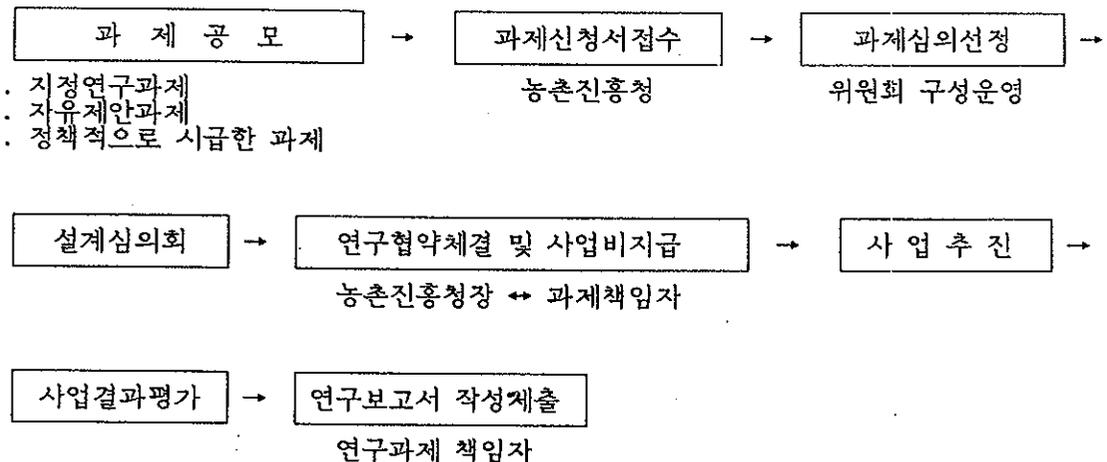
(1) 사업내용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 토지이용형 농업의 저코스트화를 위한 자동화, 규격화 기술개발
-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개발 및 산업화 연구
- 작물재배, 수확, 저장, 가공에 응용될 수 있는 농업용 신소재 개발
- 기계·전기공학을 이용한 고능률화 및 인간공학적 기능성 향상기술
- 농업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 농촌생활 문화의 향상과 농업의 최적 경영모델 개발

(2) 지원대상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농업관련단체 및 기업체 등
- 특수분야전공자, 첨단기술보유자, 우수연구경력자 등

(3)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농축산물 무역개방화 대응 국제경쟁력 및 농가소득 향상 농업기술 연구개발이 가능한 교수, 연구원 등

(2) 신청절차

- 사업과제 공모양식에 의거 소속기관 및 단체장 등 경유 신청접수

(3)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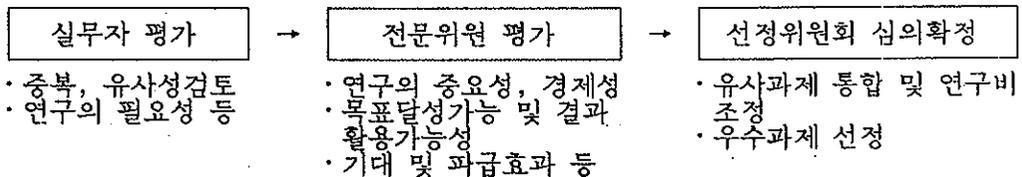
-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 제안과제 연구계획서 10부
- 산업체 참여시 기업체 참여확인서 등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촌진흥청 공모과제와의 부합성 검토
- 공모되는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비교평가
 -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 연구환경(관리능력, 연구기자재, 시설 등)의 적정성 검토

(2) 선정절차



마. 사업시행

-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기획수립후 시행(11~2월)

5. 행정사항

가. 보 고 : 연구종료시 연구보고서작성 제출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공공)

1. 목 적

- 농촌지도소에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 농민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민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생산기술중심의 지도에서 기술, 경영, 유통 등을 포괄하는 종합지도로 전환
- 농촌지도과정에 농업연구를 결합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고소득 농업기술실현
- 농민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진단·분석하여 농민만족형 지도사업 전개
- 전산기술을 이용한 과학적인 영농상담 및 정보제공센터로 활용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계
사업량		9	9	35	83	18	90	244
사업비	계	9,112	10,782	16,094	27,326	2,700	13,500	79,514
	국비	4,556	5,391	8,047	13,663	1,350	6,750	39,757
	지방비	4,556	5,391	8,047	13,663	1,350	6,750	39,757

나.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새기술실증시범포	농기계공작실	우량종묘생산시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실습실	지도시설장비	경영상담실
계	16,094	7,636	954	3,078	240	110	2,748	1,328
국비	8,047	3,818	477	1,539	120	55	1,374	664
지방비	8,047	3,818	477	1,539	120	55	1,374	664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과학영농진단분석시설 설치 : 4종 68개소
 - 가축질병진단실 : 질병 조기진단 처방, 기생충 검사
 - 농기계 공작실 : 시설신축, 농기계제조작·정비교육, 수리센터 운영
 - 생활과학실습실 : 식품가공, 농촌생활기술 실습교육
 - 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 : 씨감자, 딸기, 마늘 등 종자 종묘 증식
-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 35개소 (개소당 3,490평)
 - 자동화온실(비닐, PET, 유리) : 시설재배 기술정립
 - 개량축사 : 자동화 돈사, 개량우사, 희귀가축사육
 - 채소, 과수시범포 : 관배수시설, 비닐터널, 비가림재배, 저온저장고 등
 - 유망작목 시범포 : 관배수시설, 품종·재배법 비교전시, 작형조절
- 지도시설증개축 : 10개소(농촌지도소 청사)
- 지도장비 : 428대 (이륜차, 차량등)
-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 PC, 프린터, FAX

(2)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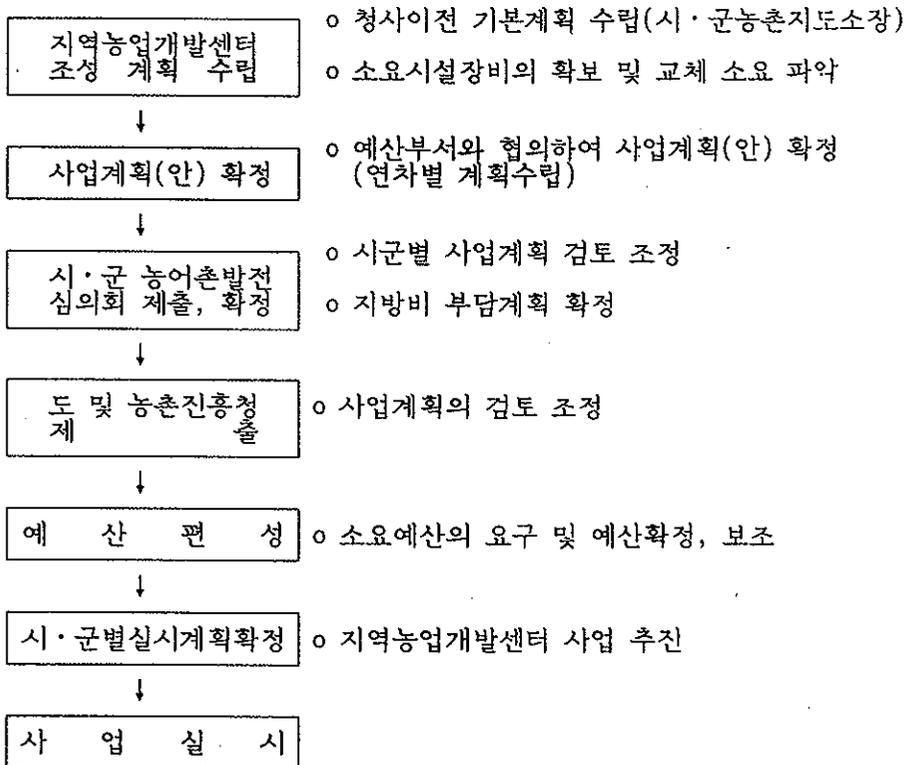
(단위 : 천원)

시 설 명	규모(평)	단 가	사 업 내 용
○ 과학영농시설	179		
- 가축질병진단실	20	20,000	무균상, 현미경 등
- 농기계공작실	50	36,700	공작실 신축
- 생활과학실습실	30	1,800	작업대, 가공기기, 재봉틀 등
- 우량종묘생산	79	85,500	조직배양실, 증식망실 등
○ 새기술실증시범포	3,490	148,300	온실시설, 종합제어기 등
○ 지도시설	85	93,448	사무실, 농민상담실 등
○ 지도장비	428대	448,872	이륜차, 차량 등

(3) 시설별 지원기준

- 새기술실증시험포 : 지방자체로 포장을 기확보 또는 가능한 시군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인력 확보, 무병종묘보급이 절실한 시군
- 농기계공작실 등 4종 : 미확보 군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시군 우선지원
- 지도시설 :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한 시군
- 지도장비 : 지도장비의 노후화 및 최신교육기자재 필요한 시군

(4) 사업시행체계



(5) 주요운영 내용

- 새기술실증시범포 : 새기술 현장교육장화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운영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
- 농기계공작실 등 4종 :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해결
- 지도시설 : 농민교육상설 운영 및 한자리 종합상담, 농민실증교육장 활용
- 지도장비 : 전산장비 및 시청각 교육기자재 보강으로 기술·정보의 신속제공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농촌지도소장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증 양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지도기획과, 농업경영관실
- 도 : 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시험국 경영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 기술보급과 경영상담계

지역특화 및 새기술 시범사업(공공)

1. 목 적

-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새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력화 기술과 소득작물의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 및 환경조화형 농업기술 보급시범

2. 추진방향

- 첨단 기술농업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지도
- 협업경영,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시범
-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 새로 개발된 우량품종의 시범재배로 우량신품종의 조기 확대 재배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04	합 계
계	계	26,904	50,778	70,938	94,552	58,518	301,690
	국비	7,002	12,339	17,269	22,526	29,259	88,395
	지방비	7,002	12,439	17,369	22,626	29,259	88,695
	융자	8,600	17,300	24,200	32,900	-	83,000
	자부담	4,300	8,700	12,100	16,500	-	41,600
지역특화 시범사업	소 계	21,500	43,300	60,600	82,300	-	207,700
	국비	4,300	8,600	12,100	16,400	-	41,400
	지방비	4,300	8,700	12,200	16,500	-	41,700
	융자	8,600	17,300	24,200	32,900	-	83,000
	자부담	4,300	8,700	12,100	16,500	-	41,600
새 기술 시범 사업	소 계	5,404	7,478	10,338	12,252	58,518	93,990
	국비	2,702	3,739	5,169	6,126	29,259	46,995
	지방비	2,702	3,739	5,169	6,126	29,259	46,995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1,091	50,778	12,339	12,439	17,300	8,700
지역특화시범사업	354	43,300	8,600	8,700	17,300	8,700
새기술 시범 사업	737	7,478	3,739	3,739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지역특화 시범사업 >

- 과수원예분야 : 인공배지(培地) 수경재배시범,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 능가보급형 유리온실시범, 저비용 고품질과실 생산시범 등
- 특용작물분야 :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 발작물 용도별 고품질 생산시범, 고품질 약초생산 가공시범 등
- 축 산 분 야 : 한우고급육 협업 생산시범, 우량 농축산물 생산시범, 낙농협업 단지 육성시범, 육계 협업단지 육성시범 등

< 새기술 시범사업 >

- 식량작물분야 : 식량작물품종 비교시험,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실증시험, 밭 생력기계화 종합시험
- 원예작물분야 : 채소 신기술 시험, 우량꽃 생력생산시험, 구근류 종구생산 시험, 과수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시험
- 축산분야 :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험,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시험, 가축분 발효처리 시험
- 기타 : 양잠전업농가 육성시험, 농촌여성 일감맞기 시험

(2) 지원대상

- 시범사업 기준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선발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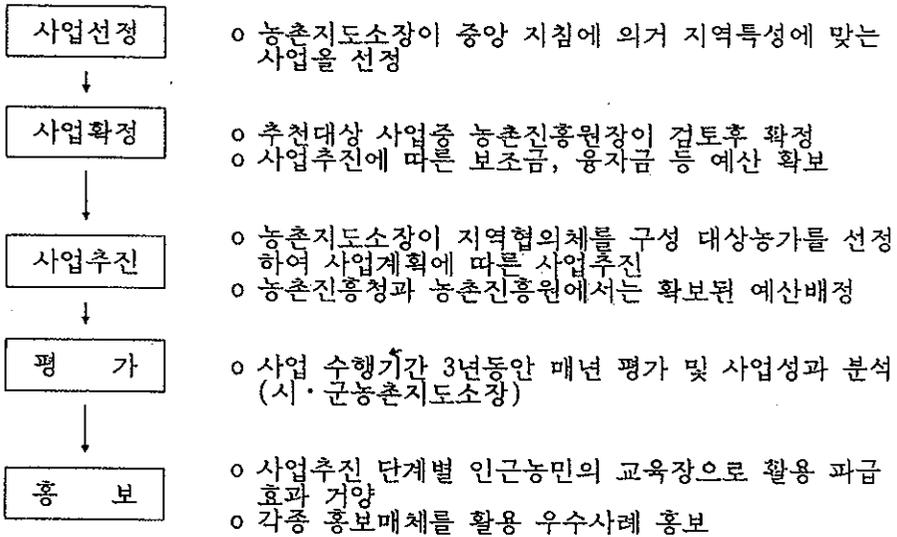
- 지역특화시험 : 50,000~400,000천원
- 새기술시험 : 550~50,000천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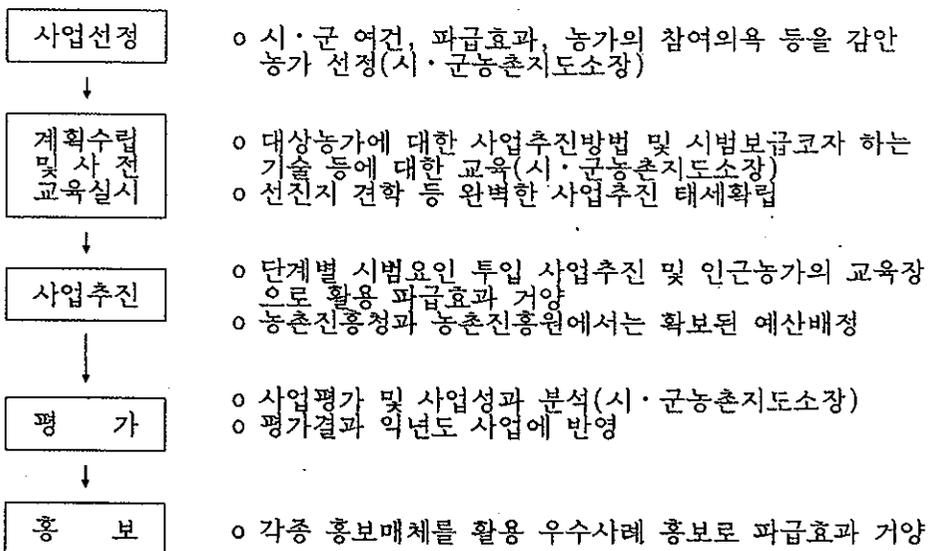
- 지역특화시험 : 보조 40%, 용자 40%, 자부담 20%
- 새기술 시험 : 전액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4) 사업시행 체계

< 지역특화 시범사업 >



< 새기술시범사업 >



다.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지역특화시범사업 >

- 자부담 능력과 용자금 담보능력이 있으며 기술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자

< 새기술시범사업 >

- 시범효과가 높은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원 또는 독농가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역특화시범사업 >

-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 및 농가소득증대가 필요한 지역
- 기술낙후지역으로 기술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 개발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

< 새기술시범사업 >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 재배지역
- 많은 농민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곳
- 기술수준이 높은 재배농가 및 독농가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 지역특화 시범사업 >

- 시·군농촌지도소장이 대상지역 협의체와 협의 추천 검토후 결정

< 새기술시범사업 >

-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추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마. 사업시행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민의 의사가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농촌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입식작목의 품목,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가공 판매, 수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 지역실정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상농가에 맞는 사업 추진협의를 임의작성 활용
- 대상사업에 의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을 검토수립
- 자금 집행계획은 지원규모와 참여농가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립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역특화시범사업
 - 사업시행기간은 3년간으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소득성과 분석
- 새기술시범사업
 - 재배기술협약, 농기계 및 자재구입 등을 협의회에서 결정
 - 생육증기 및 수확기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기술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나. 보 고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지침에 준함

다.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식량작물과, 원예축산과
- 도 : 농촌진흥원 지도국 작물지도과, 소득지도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주요농작물 원원종생산 (공공)

1. 목 적

○ 주요농작물에 대하여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차하급단계 생산용 종자공급

2. 추진방향

- 주요농작물 종자생산 경종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거 무병건전 종자생산
-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원원종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3.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ha)		17	15	15	15	15	90	167
사업비	국비 (100%)	122	122	122	134	147	1,252	1,899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업량 (a)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부 담
계	1,532	122	122	-	-	-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제주도	99	7	7	-	-	-
	94	18	18	-	-	-
	114	8	8	-	-	-
	121	9	9	-	-	-
	132	10	10	-	-	-
	463	33	33	-	-	-
	169	12	12	-	-	-
	238	17	17	-	-	-
102	8	8	-	-	-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원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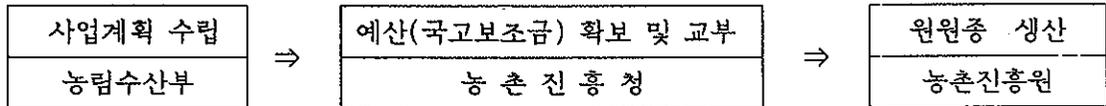
○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

- 대상작물 : 벼,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땅콩, 들깨, 백류

- 생산기관 : 농촌진흥원

(2) 사업예산 : 국고보조금(100%)

(3) 사업시행체계도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원원종 종자생산포장검사 및 합동진단실시

- 포장검사 : 감자 3회, 옥수수 2회, 벼·백류 등은 1회

- 합동진단 : 감자·옥수수 2회, 벼·콩은 1회

나. 보 고

○ 원원종 종자파종 및 생산실적 보고(농림수산부)

- 하계작물 : 6월, 11월

- 동계작물 : 11월, 7월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 도 : 농촌진흥원

농산물 포장개선기술 시범사업(공공)

1. 목 적

- 농산물 규격 출하의 조기 정착
- 규격포장, 포장재질 및 외부표시사항의 개선
- 지역특산품의 상표화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재의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2. 추진방향

- 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 우선 지원 → 시범 지역 육성
-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지역 및 작목 집중지원
- 포장개선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포장재는 표준출하규격으로 제작
- 기술지도를 병행한 시범사업추진으로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있는 지도 사업전개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48	48	48	48	48	288	528
사 업 비	계	28	128	130	170	222	3,670	4,348
	국 고	14	64	65	85	111	1,835	2,174
	지방비	14	64	65	85	111	1,835	2,174

나. '96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부 담
계	48개소	129,600	64,800	64,800	-	-
경 기	5	13,500	6,750	6,750	-	-
강 원	5	13,500	6,750	6,750	-	-
충 북	5	13,500	6,750	6,750	-	-
충 남	5	13,500	6,750	6,750	-	-
전 북	5	13,500	6,750	6,750	-	-
전 남	5	13,500	6,750	6,750	-	-
경 북	5	13,500	6,750	6,750	-	-
경 남	5	13,500	6,750	6,750	-	-
제 주	2	5,400	2,700	2,700	-	-
서 울	1	2,700	1,350	1,350	-	-
부 산	1	2,700	1,350	1,350	-	-
대 구	1	2,700	1,350	1,350	-	-
인 천	1	2,700	1,350	1,350	-	-
광 주	1	2,700	1,350	1,350	-	-
대 전	1	2,700	1,350	1,350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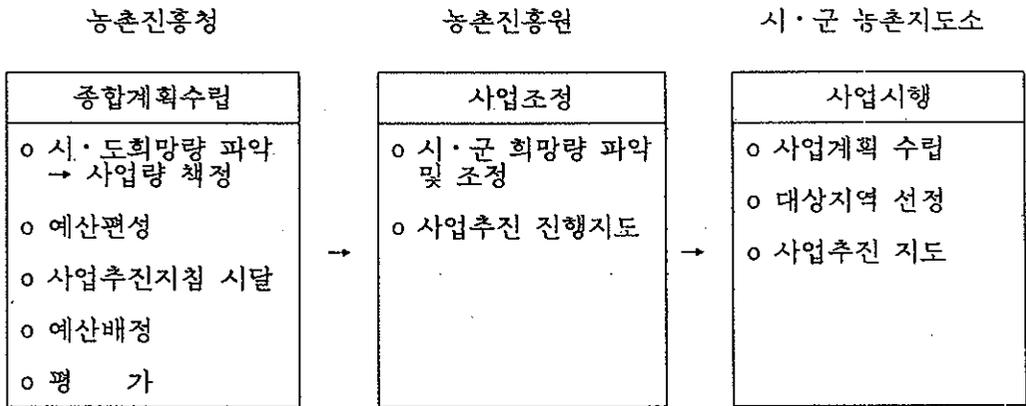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규격포장재, 소포장재, 스티카, 속포장재 제작 지원

(2) 지원규모 : 개소당 270만원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방법 :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포장재를 제작하여 선정된 생산자조직이나 시범농가에 지원

(4) 사업시행체계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해당 시군별 사업추진의 자체효과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생산자조직 또는 동일작목 재배농가 5호이상인 지역

(2) 선정절차

- 선정권자 : 시·군농촌지도소장
- 선정절차
 - 규격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로부터 신청접수
 - 농촌지도소장이 신청농가중 해당시군의 특산품 또는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포장재질개선, 포장크기, 외부표시내용, 소포장 등 규격출하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

(3)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시·군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규격출하 보조금 수혜자 제외
- 중·대포장재 시범은 단량과 치수규격을 표준출하규격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단지 및 농가선정
- 소포장재시범은 출하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선행단지와 농가를 우선선정
- 가급적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과 농가를 선정

라. 사업효과

- 농산물 규격 출하의 조기 정착유도
-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
- 외부표시사항의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재의 개발 보급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나.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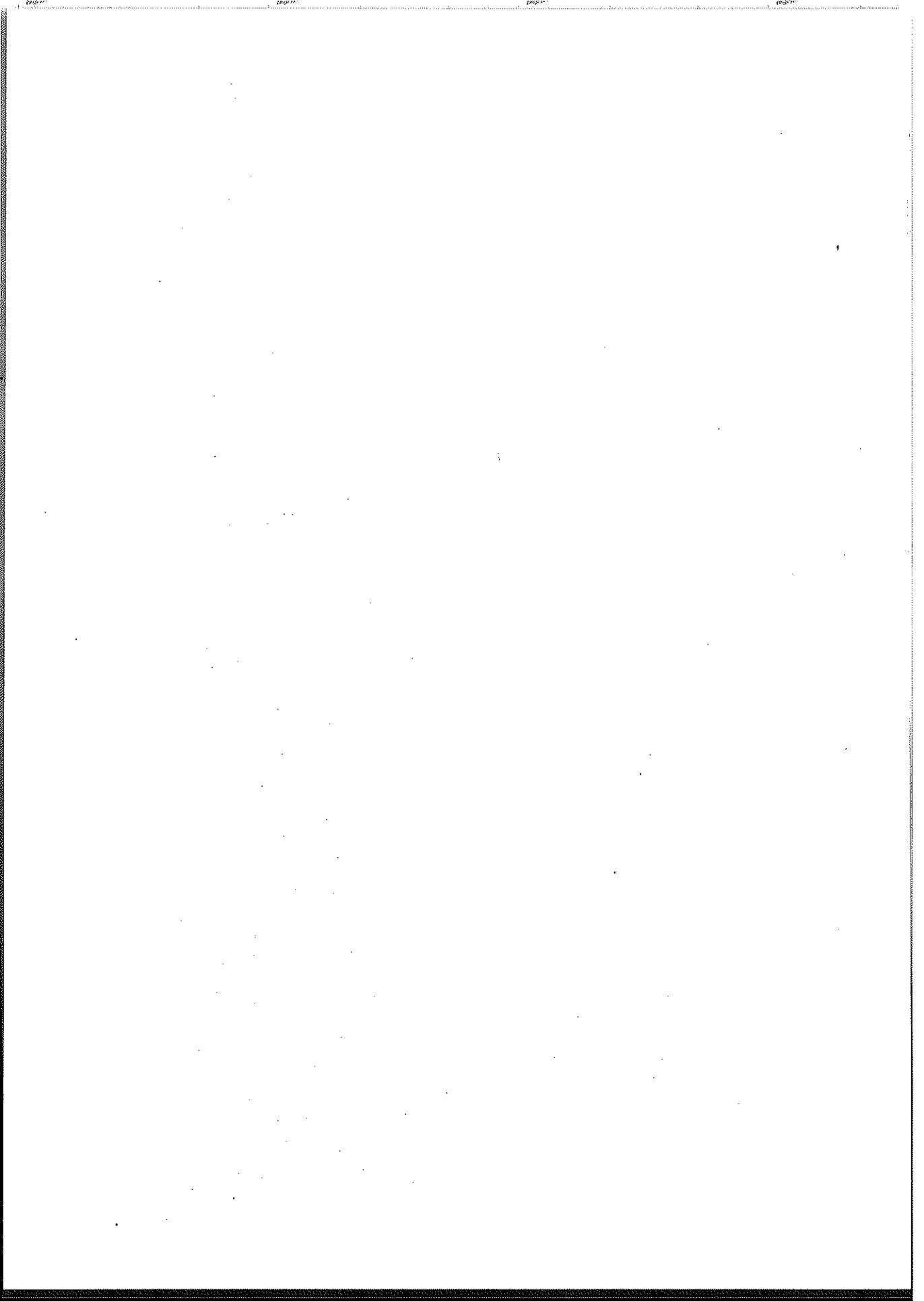
- 사업선정 : 사업시행연도 3월말까지
- 사업결과 : 사업시행연도 익년 1. 15일까지

다.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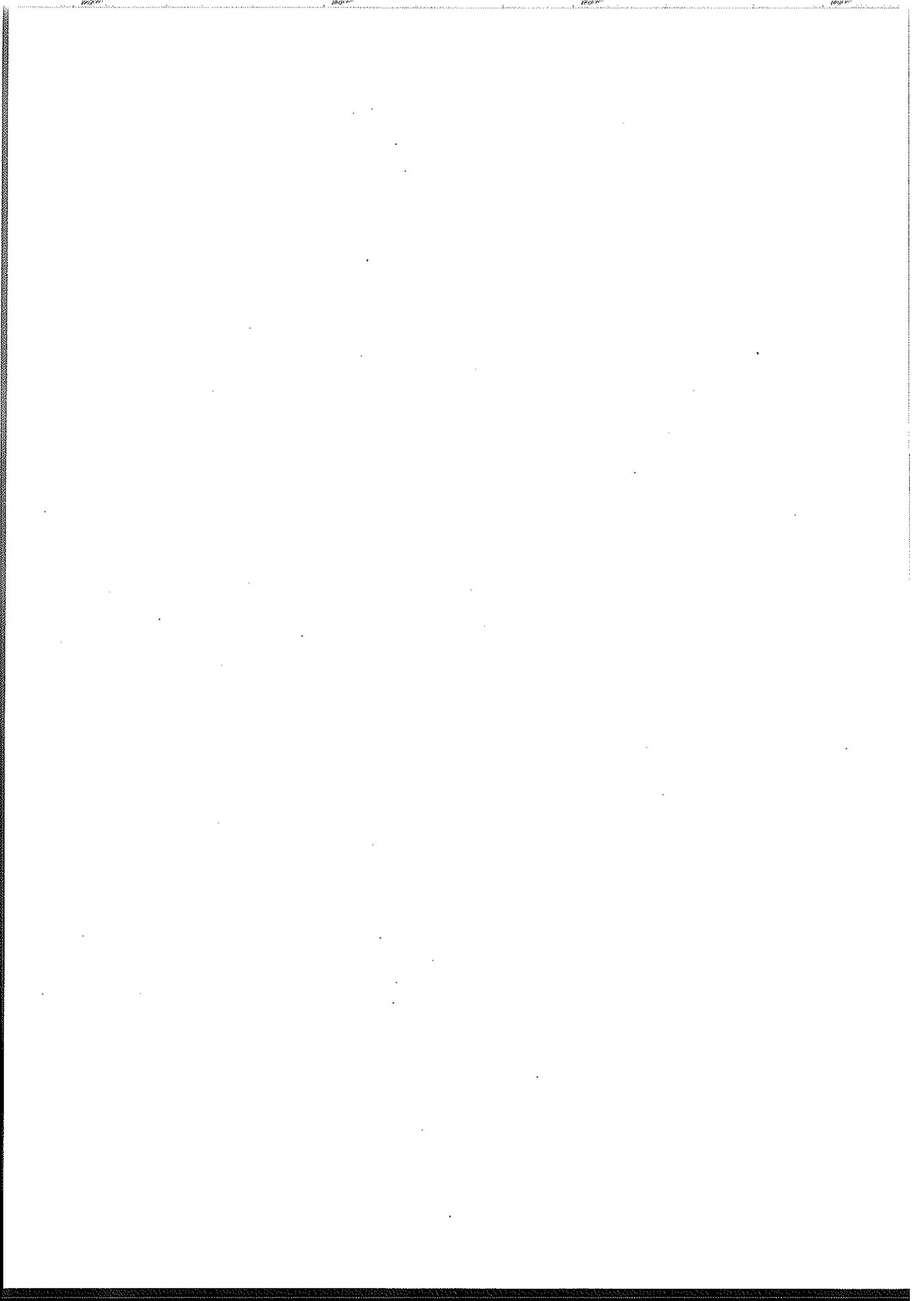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 농가 시행여부 확인
- 시범사업 전·후비교 평가후 우수사례는 인근농가에 홍보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도 : 농촌진흥원 시험국 경영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경영상담계



6. 소득원개발및소득지원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자율)

I. 총 칙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어촌소득증대

2. 추진방향

○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지 선정 개발

○ 농어민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3.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4까지	'95	'96
관광농원	사업량	234	64	55
	사업비	46,108	19,690	18,190
휴양단지	사업량	10	1	1
	사업비	11,100	1,500	1,500
민박마을	사업량	85	29	45
	사업비	4,540	2,410	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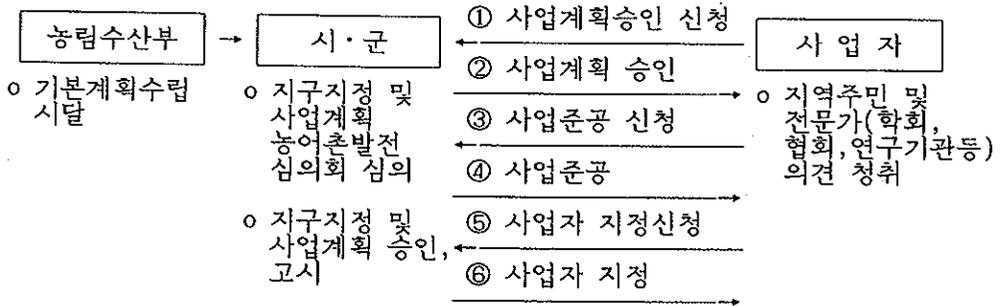
※ 사업비는 국고융자액임.

(3)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지원한도액	신규200, 기지정250	2,000	200(농가당 10)
용자조건	년5%, 5년거치5년상환	년3%, 3년거치5년상환	년5%, 2년거치3년상환

(4) 사업시행체계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70조, 제94조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관광농원 : 시장·군수, 농림어업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수·임협
- 농림어업인은 1년이상 현지거주자로서 관광농원개발 토지소유자
- 휴양단지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수·임협, 농지개량조합
- 주말농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농림어업인,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 민박마을 : 농림어업인

(2) 신청절차 : 해당 시·군에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이 농어촌휴양지로 적합한 지역이고, 사업규모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며 사업계획이 농어촌지역개발 및 농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지 여부
- 우선순위 : 농림어업인일 경우 공동출자사업 우선선정 및 지원

(2) 선정절차

- 사업자 시장·군수에게 사업승인 신청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점검자 및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 점검시기 : 도는 연 1회 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해 사업추진, 운영하는지 여부

(2) 점검결과 반영

-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 공사중지등의 조치
-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등의 조치

나. 보 고

- 시장·군수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 점검결과를 다음해 1.15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II. 관광농원개발사업

1. 목 적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음

2. 추진방향

-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도모
- 관광농원은 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적지를 선정 개발
- 농원운영의 주체는 농림어업인으로 하며, 농림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이 되도록 하며, 모든 시설물은 자연지형 및 경제적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개발
- 농원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다수농림어업인 참여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5인이상 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의 공동출자 개발 권장 및 우선 지원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사업량		234	64	55	65	65	217	700
사업비	계	46,108	19,690	18,190	19,500	19,500	55,620	178,608
	국고용자	46,108	19,690	18,190	19,500	19,500	55,620	178,608

주 : '94까지의 관광농원개소수는 '94년말 현재 정부지원으로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지구수 기준임.

※ 추진목표('84~2004) : 읍.면당 1개소씩 1,435개소 조성(지원 700개소)

나. '96 지원계획 : 18,190백만원 (신규 55, 기지정 52개소)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가) 관광농원의 유형

○ 기능에 의한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 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 +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어촌휴양형	기본시설 +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기타

※ 기본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목장, 특수작물 재배지등) 농산물 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 운영형태에 의한 유형

- 농산물 채취형 :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함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 등)
- 생산수단대여형 : 포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제공하여 농산물 생산의 보람을 느끼게 함
(임대농원, 임대과수원 등)
- 장소제공형 : 농장, 과수원, 화원 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 시설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함

(나) 세부사업내용

○ 개발내용

- 사업지구내에서는 농원으로써 특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농림어업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을 조성
- 부대.편의시설은 농원규모, 예상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농업용 부대시설을 우선설치한 후 농원운영 및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 목 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수원지,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축사, 조류·가축사육장에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물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여관, 농원여관, 여인숙, 민박, 야영장
	휴양, 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 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등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및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을 원칙으로 하고, 여관·여인숙은 억제
-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의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2) 지원대상 :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기준

- 신규지구 : 농림수산부의 '96.자금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지구지정을 한 신규관광농원

- 기지정지구 : 기지정된 관광농원중 각도별 관광농원사업 자금지원액 범위내에서 농림어업을 위한 농장이 규정된 면적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단, 관광농원 개발계획기간(2.3차년도)에 해당되는 관광농원에 우선지원

○ 재원 : 농특회계

○ 용자지원한도액 : 농원당 450백만원 이내

- 신규지구 : 농원당 200백만원이내(1차년도)

- 기지정지구 : 농원당 250백만원이내(1차년도 이후)

○ 지원대상사업 : 지정된 관광농원내에의 과수, 가축 등 다년생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설치 및 기반조성사업

○ 용자대상 :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 공동참여자

○ 용자조건 : 년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 70% 이내

○ 용자요령

- 용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또는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 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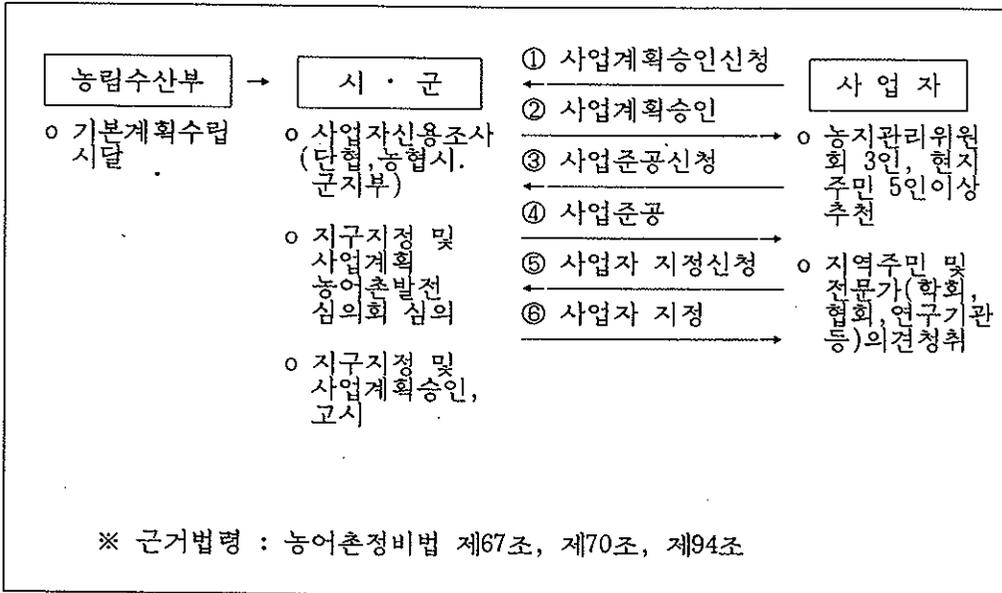
(시설물이 수반되는 경우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으로서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자
- 5인 이상 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도 농어민과 공동참여 가능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도 참여 가능

<참여방법>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농원조성·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편의 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등의 판매, 현물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

(2) 신청절차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수립시달
- 사업자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회(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3) 구비서류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 관광농원의 관리·운영계획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 관광농원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 추천서 및 각서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가) 선정기준

○ 지구지정 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기타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어민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관광농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관광농원은 반드시 지구지정예정지에 지구지정 예정면적의 40%이상 농림어업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 (과수원, 목장, 특수작목 재배지 등)이 기초성되어 있는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대표자 또는 참여농가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지구를 지정

○ 농원 및 시설규모

- 농원규모 : 50,000㎡ 미만

- 시설규모

- 농장면적 : 작목입식 면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조성
- 시설물면적 : 농장을 제외한 시설(도로, 조경면적 포함)면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60% 이내 조성

※ 관광농원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등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6년이후 신규지정 관광농원의 숙박·식당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숙박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10% 이내
- 식당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5% 이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등 관계법령의 기준 적용)

(나) 우선순위

- 5인이상 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이 공동출자하여 개발하는 지역 우선
-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2) 선정절차

-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과 사업계획내용 입지 여건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용지취급 기관(단위농협 또는 농협군지부)에 송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접수전 신용조사 우선실시 가능
 - 용지취급기관은 신용조사결과 (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 인.허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할때는 개별 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류를 사업대표자로 하여금 제출받아 관련 기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함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에 교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고시

마. 사업시행

(1) 사업추진

-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지정년도 부터 익년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하며, 부득이한 구체적인
사유는 시장.군수에게 서면 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준공검사 신청(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준공이 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신청(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준공검사와 사업자 지정 동시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사업자 지정을 한 경우 사업자지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계획변경

- 지구지정면적변경은 50,000㎡(변경후 지구지정 총면적)까지 가능
-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후 가능
- 변경후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농장조성 여부 확인후 사업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 농장면적 확대 및 내실화 위주로 유도하고, 숙박.요식.위락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 승인하고, 숙박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시설을 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항의 숙박.식당시설 면적기준을 적용)
- 관광농원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후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설물등을 설치. 단, 작목입식변경중 작목종류 일부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신고후 실시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단,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중 지구지정면적 변경 및 사업자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지정면적 변경등 중요변경사항을 고시

(3) 사업효과

○ 직접효과

- 관광농원사업 참여농어가의 농외소득증대

○ 간접효과

-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으로 농림어업인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용이
- 관광농원에 현지 농림어업인들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4) 평 가

○ 평가방법

- 도지사는 년1회 전지구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 추진 실적보고시 함께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관광농원지구에 대한 자체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2월말 기준 전지구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평가결과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
- 도지사는 도단위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장·군수로 부터 제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해결방안을 건의

(4) 기타사항

○ 관광농원자부담개발사업

- 참여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 거주 농어업인중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소유 농지 등을 활용 자체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자
-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 지원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을 그대로 적용
- '96년의 경우 사업추진지구수는 군별 1개소 범위내에서 승인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2)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 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관광농원내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을 계획대로 조성.운영 하는지 여부 확인

(3) 점검결과 반영

○ 사업시행단계(조성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운영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때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때
-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때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용자금은 농협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용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관광농원사업을 목적으로 득한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등 관련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취소여부등을 검토하여 행정조치를 하여야함.

(4) 기 타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자가 노령화,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관광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자는 양수일현재 현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 단협장 및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나. 보 고

- 시장.군수는 매년 12월말 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 10-1호 서식)를 다음해 1.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 관광농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 10-1호 서식)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 지구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군 : 사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관광농원개발사업 지원계획 신청(신규지구)	사업자 → 시.군	매년 1.31	별지 제1호서식
	시.군 → 도	2.28	
	도 → 농림수산부	3.31	
2. 관광농원개발사업 지원계획 (기 지정지구)	도 → 농림수산부	3.31	별지 제2-1호 서식
3. 자부담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 계획보고	도 → 농림수산부	6.30	별지 제2호서식 준용
4.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군 → 도	1.15	별지 제10, 10-1 호 서식
	도 → 농림수산부	1.25	
5. 관광농원지정취소 결과보고	도 → 농림수산부	지정취소 즉 시	
6. 평가결과보고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부	3.30	

○ 사업자, 시·군 및 농협에서 참고할 서식

구 분	작 성 자	제 출 처 (교 류 처)	양 식
1.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1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2호 서식
3.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추천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4호 서식
5. 각 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5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단위농협 (농협군지부)	시·군	별지 제6호 서식
7.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 농발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8.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 업 자	별지 제8호 서식
9.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9호 서식
10. 관광농원사업자지정신청서	사 업 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11. 관광농원사업자지정증서	시·군	사 업 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업자 (대표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지구 (농원) 명		
소 재 지		
조 성 면 적	㎡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기타)	
사 업 비	백만원(용자, 지방비, 자부담, 기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등의 조성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4.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5.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6. 농지관리위원회 3인(위원장 포함) 및 현지주민 5인이상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7. 각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관광농원 관리운영 계획서

1. 농원관리 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 기 별	운영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 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유치 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의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유치, 농원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 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 별지 제6호 서식 >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관광농원 대출현황 (19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대출누계액	
기 상환액	
대출잔액(A)	
금차대출 신청액(B)	
A + B	

대출제도 초과여부	

기 대 출 금 연 체 여 부	

차 주 별	차 주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 용 조 사 결 과		자기자금 조달능력	(충분. 적정. 부족)	(충분. 적정. 부족)	(충분. 적정. 부족)
		담보제공능력	(충분. 적정. 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가능 부여	(충분. 적정. 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가능 부여	(충분. 적정. 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가능 부여
		신용상태	(충분. 적정. 부족)	(충분. 적정. 부족)	(충분. 적정. 부족)
		* 종합의견	○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종합의견

확 인 자 ○ ○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인

< 별지 제7호 서식 >

지구 지정 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및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199 . . .

〇〇 시장·군수

인

< 별지 제9-1호 서식 >

사업별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 감	비고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 예 시 "				
○ 작목입식				
- 과 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축 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축 사	100평/1동	100평/1동	-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 및 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 10평	- 주방 5평, 식당 25평, 휴게소 10평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실적

1. 관광농원사업소득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정 년도	지구명 (농원)	사업자 (대표자)	참여 농가수	년간내방 객	수 입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차 례 무 자 내 역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	음식물 판매	숙박	기타	계 (A)	비용 (B)	순소득 (A-B)	계	용자	자부담	기타	
○○도																			
계																			

주)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지점투자내역은 작목임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순증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별지 제10-1호 서식 >

2.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 지정 일 개발사업기간		지구지정 면적	ha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운 영 현 황
			계획	실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수 가목 특용작물				
농업부대시설	양어장 축사 창고 하장 저장 판				
편의시설	민식휴 납운 화	박당 소터 시 등 시 장			
용 자 금 현 황 (백 만 원)					
용 자		상 환		용 자 금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상 환 잔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관광농원 관리카드 : 5주요사업내용대체 사용가능)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Ⅲ. 휴양단지개발사업

1. 목 적

농어촌휴양자원을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육성하므로써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추진방향

- 본 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림어업인단체(농·수·축·임협)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함.
- 휴양단지를 도시민에게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있게 개발
-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수립시 지역개발계획과 종합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개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어민 및 농림어업인단체등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등 농어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4까지	'95	'96
사 업 량		10	1	1
사업비	계	11,100	1,500	1,500
	국고용자	11,100	1,500	1,500

나. '96 지원계획 : 1지구 1,500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가) 휴양단지사업의 정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 체육·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어관업을 포함한다)·음식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개발내용

- 기반조성시설설치

-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 내방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용수개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중화장실등

- 농림어업생산 및 부대시설

- 지역특산품 생산시설과 생산물 수집·저장을 위한 집하장·저장고등

- 편의시설

- 지역농특산물판매를 위한 농특산물판매장등 판매시설
- 여관, 호텔등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편익시설
- 놀이시설,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야영장, 자동차 캠핑장 등 체육·휴양시설
- 농업전시관, 농기구전시관, 농업과학관, 영농체험학습관, 교양시설등

○ 개발유형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어촌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방객의 건강증진, 휴양, 자연 학습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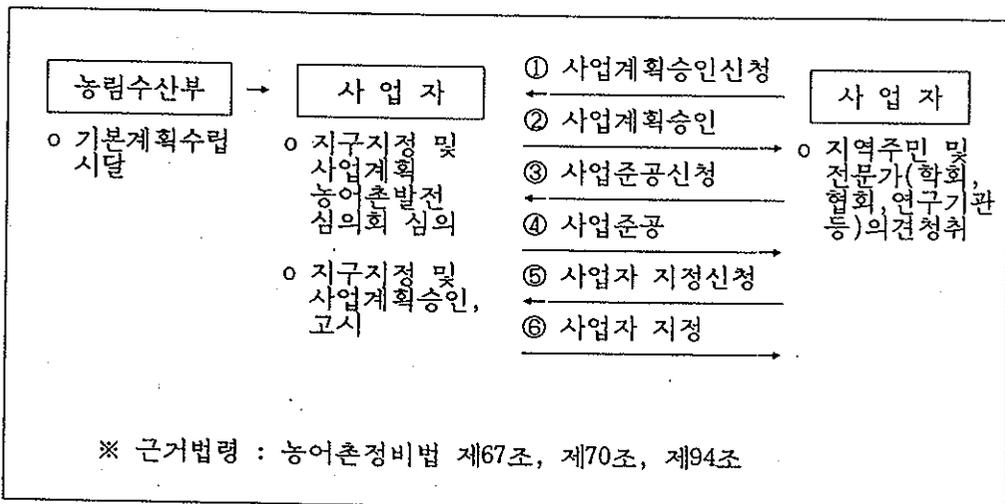
- 농어촌의 쾌적한 농원공간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농업관련 시설이 포함되도록 특색있게 설치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개발

(2) 지원대상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림어업인단체(농·수·축·임협)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대상사업 : 휴양단지내의 기반조성시설, 편의시설, 농업생산과 부대시설 설치등
- 용지지원한도액 : 단지당 20억원이내
- 용자조건 : 년 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 100%까지
- 대출방법 : 신용대출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림어업인단체(농·수·축·임협)
 - 해당 지역농림어업인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여 부지 또는 시설물을 현지 주민에게 우선 분양(임대포함)하는 조건으로 개발에 참여

(2) 신청절차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수립시달
- 사업자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림어업인단체)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3) 구비서류

- 휴양단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휴양단지시설의 조성계획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
 -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 휴양단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휴양단지 분양·운영계획
 -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등의 판매계획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지정대상지역

- 농어촌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써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이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품, 민예품등)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구로 시장.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기타 타 법령(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등)에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 문제가 없는 지역등

○ 단지당 지정규모

- 단지당 지정규모는 30,000㎡이상 100,000㎡미만
- 휴양단지 규모에는 기반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면적을 모두 포함

(2) 선정절차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

- 휴양단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의 농림수산부 지원계획범위내에서 휴양단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는 휴양단지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내용이 농어촌 소득증대, 자연경관의 보전등 농어촌휴양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 통보
 - 시장.군수는 지구를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고시

마. 사업시행

(1)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를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으로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 보상을 원칙으로 함

(2)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시행하되 필요시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 시행가능
- 조사설계 감독비는 실비정산으로 함

(3) 준공검사 및 지적 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공사완료후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준공보고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분양

- 분양방법
 - 휴양단지내의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농림어업인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분양(임대포함)
- 분양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자 및 당해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음
 - 지방비등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보조금은 공제함

(5) 사업효과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으로 농림어업인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용이
- 휴양단지내 현지 농림어업인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반조성 시설은 시장.군수가 책임관리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분양된 각종 시설물은 분양일로 부터 2년이내에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보 고

- 도지사는 '96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신규 휴양단지의 경우 기본계획서 포함 보고)
- 도지사는 12월말 현재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휴양단지의 지정 및 지구지정취소등은 농어촌정비법 관련 조항을 참조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군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96.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위치	지정년도	개발규모	사업시행지	사업내용				'96. 계획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민자
○ ○ ○	○○도			합 계										
	○○도		○○ (ha)	기반시설	도로	○○								
	○○군				하수정화시설	○○								
	○○면				전기.통신시설	1삭								
	○○리				농업전시관	○○								
					민속자료관	○○								
					농업전시관	○○								
					민속자료관	○○								
					평의시설(등)	○○								
					농장	○○								
					농장	○○								

[보원사업지구]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위치	지정 년도	개발 규모	사업 시행지	사업내용			'95까지 실적				'96 계획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민자	계		용자	지방 비
○○○	○○도 ○○군 ○○면 ○○리		㎡ (ha)		합계													
					기반시설	주차장	㎡											
					농수산업 부담시설	상수도	㎡											
						농업전시관	㎡											
					편의시설	숙박시설	㎡											
						식당	㎡											

< 별지 제3호 서식 >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지구(단지)명	지구 지정 일 개발사업기간			지구지정 면적		
소재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민자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사업내용				운영현황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획	실적		
기반시설	· ·					
농업부대시설	· ·					
편의시설	· ·					
보상비 및 용역비	· ·					
자금지원현황(백만원)						
지방비보조		용자		상환		용자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상환잔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주: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기준.
 2. 작성자는 시·군, 담당자, 확인자는 시장·군수.
 3.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일정 및 계획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4.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IV.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

1. 목 적

농어촌에 관광농원이 있는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증대 및 도.농교류 촉진에 기여

2. 추진방향

- 숙박위주의 민박마을 조성보다 지역명소 중심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
- 지역농산물판매등과 연계한 민박마을 조성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4까지	'95	'96	'97~'98	'99~2004
사업량		408	85	29	45	80	169
사업비	계	28,765	4,540	2,410	4,500	6,000	11,315
	국고용자	28,765	4,540	2,410	4,500	6,000	11,315

※ 추진목표('91~2004) : 군당 3개마을 기준하여 408개마을 조성지원

나. '96 지원계획 : 45개마을 4,500백만원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농림어업인
- 지원내용 : 민박용 농어가주택의 시설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
이나 자재구입비
- 사업기간 : 당해년도

(2) 지원대상 : 농림어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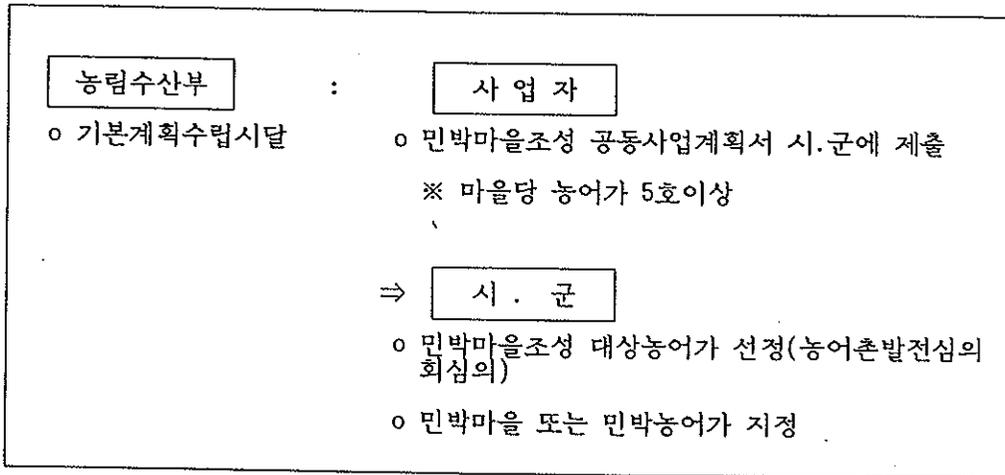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기준

- 재원 : 농특회계
- 용지지원한도액 : 마을당 2억원이내
 - 농가당 용자한도 : 10백만원이내
- 용자조건 : 년 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의 70%이내

○ 대출방법 : 용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
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가중 마을당 5호이상 농어가 민박을 목적으로 농어가주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어가

(2) 신청절차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수립시달
- 사업자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농림어업인 : 마을당 농어가 5호이상)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3) 구비서류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어를 우선선정
-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신축자금은 제외

(2) 선정절차

- 읍.면장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어가로부터 민박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조성 사업계획서(별지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다만, 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조합장이 농어가로부터 민박사업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사업계획서(별지제2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
- 도지사는 민박마을조성사업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마. 사업시행

○ 사업추진

- 사업추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 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거 보고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 및 방법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 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민박마을 조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여부 확인

나. 보 고

- 도지사는 민박마을조성사업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군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가 민박사업신청서

- 가. 신청인 주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가옥소재지
- 마.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민박가능 방 수	사업내용	소요자금			산 출 근 거
		계	용자	자부담	
○실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 보 수				
	계				

마. 경지면적 및 소득효과

경 지 면 적 (㎡)					소득효과추정(년간)		
계	전	답	과수원	기 타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천원	(천원)	

※ 농외소득란의 ()는 민박으로 인한 소득액을 표시

위와 같이 '96.농어촌 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1 9 9 . . .

신 청 인 (인)

< 별지 제2호 서식 >

민박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민박마을 소재지								참여농가수	호
참 여 농 가 주소·성명 (전화번호)		()						()	
		()						()	
		()						()	
		()						()	
		()						()	
사업 규모	민박 방수	실	수용 인원	명	사업 금액	천원	용자 신청	천원	

위와같이 '96 농어촌휴양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합니다.

1 9 9 . . .

ㅇ ㅇ 읍·면 장 (인)

- 붙임 : 1. '96민박마을 조성사업계획서 1부.
2. 농어가 민박사업신청서 1부.

시장(군수)

귀 하

9 6 .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계획서

지구명	소재·자주 소 (전화번호)	집·여 농가명	민박규모		수용 가능인원	년 간 주 이용객수	세부사항내용	자금조달계획				인근관광 자 원	
			실	평				합		본기별 용자금 소요			
								용자	자부담		계		2/4
					명	명		전원					
계		호											

(작성요령)

1. 민박규모는 농가별로 민박 제공가능한 병수와 총 평수, 수용가능 인원은 1회, 수용 가능인원 기재
2. 세부사항내용은 개보수(방수리, 화장실, 샤워장등) 등 계속으로 구분기재
3. 용자 신청액은 소요자금의 70%이내로 한다.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도 별	소 재 지	마을명	신청년도	참여 농가수	방수	연간이용 객 수	수 입		비용	순소득	자 금 부 자 내 역				
							민박수입	...			계	융자	자부담	기 타	



농어촌특산단지육성(자율)

1. 목 적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이하"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2. 추진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열이 담긴 지역특산품을 지정하여 육성
- 다수농어가의 농외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하여 육성
- 기존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판로 및 경영기술지도 강화
- 고부가가치제품 및 농어촌부존자원 활용 제품생산단지 우선지원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사업량		569	72	70	100	100	689	1,600
사업비	계	139,269	16,920	13,580	19,740	20,670	134,128	344,307
	국고	2,520	3,975	3,325	4,725	4,950	31,415	50,910
	지방비	2,520	3,975	3,325	4,725	4,950	31,415	50,910
	용자	134,229	8,970	6,930	10,290	10,770	71,298	242,487

나. '96 지원계획 : 10,255백만원 (국고보조 : 3,325, 국고용자 6,930)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농어민, 비농어민(단, 비농어민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민 참여)

○ 대표자 자격

- 사업지역(읍·면·동) 거주자로서 당해 사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자

○ 농어민 참여

- 농어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출자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호수 제한없이 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나, 비농어민만의 출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호 이상의 농어가가 임가공, 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하여야 단지 지정

. 농어민 사업장 : 농어민 1호 이상 참여

. 비농어민 사업장 : 농어민 3호 이상 참여

○ 공동출자, 공동생산(이상 협업형),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 대상품목

업종별	품목
민속공예품	죽세품,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폐각가공, 갈포가공, 완초가공등
농수산자재	싸리제품, 비닐제품, 지물제품, 어만, 인삼발등
일반공산품	롤크제품, 소독저, 옷걸이, 목재가공제품 등
섬유직물	모시, 마포, 자수 등
석재분야	조경석, 슷돌, 돌가공제품 등
기타	지역특산품으로 판단되는 제품

(2) 지원대상

○ 농어민, 비농어민(단, 비농어민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 이상의 농어민 참여)

(3)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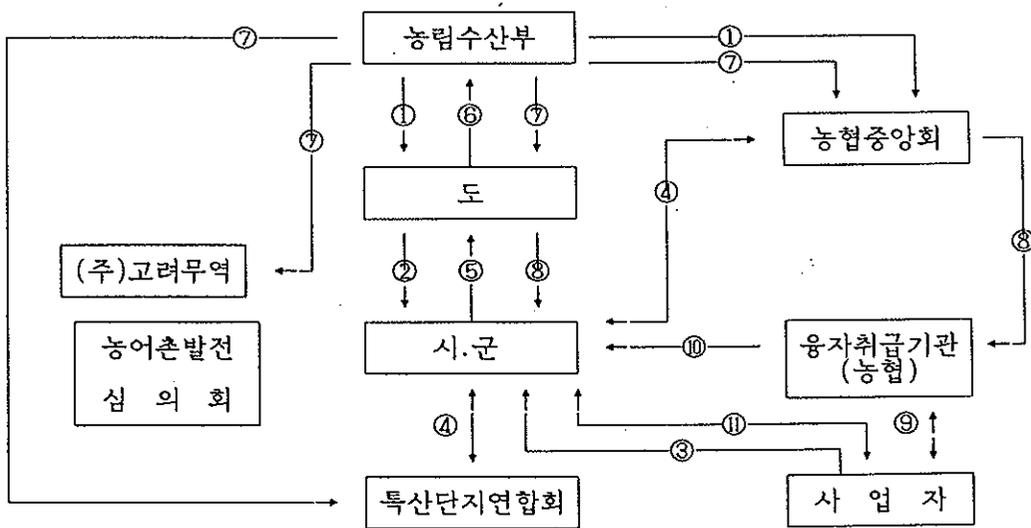
○ 단지당 지원한도

출원인원 또는 출자금액	자금지원한도
농어민 5호미만이 출자하거나 농어민 출자금의 합이 2억원 미만일 경우와 비농어민 사업장의 경우	2 억원
농어민 5호이상 출자하고, 농어민 출자금의 합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5억원
농어민 10호이상 출자하고, 농어민 출자금의 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 억원
집단화를 위해 개별사업체 3개 이상이 1개단지로 지정 경우	5 억원

○ 단지당 지원내역

	재원별내역	용자조건	비 고
시설 자금	국 고 25% 지방비 25% 용 자 3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시설자동화 및 사업장신축등 - 신상품개발을 위한 금형,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등
운영 자금	용 자 70% 자부담 3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년리 8%	- 원료구입등

(4) 사업시행체계



① 지원내시	⑤ 지원신청	⑨ 융자금신청 및
② 지원재내시	⑥ 육상계획서 제출	대출실행통지
③ 지정 또는 지원신청	⑦ 지원계획통지	대출실행통지
④ 사업성검토(의견청취)	⑧ 지원계획 재통지	⑩ 보조금신청 및 교부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농어민, 비농어민(단, 비농어민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민 참여)

(2) 신청절차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수립시달
- 사업자 : 지구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에 제출
[농어민, 비농어민(3호이상 농어민 참여)]
- 시.군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장기계획 사업량 및 예산범위내에서
농협 시.군지부의 사업성 검토 및 농발위심의후 사업계획확정
(시장.군수는 대상자선정시 당해 시.군의 특산단지연합회 의견 청취)

(3) 구비서류

- 특산단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신규지정 지원대상자 선정
 - 신규단지 지정시는 사업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되, 생산제품의 지역 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가치가 있는 향토색 짙은 지역특산품생산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정
 - 조성실적(수) 위주의 무분별한 단지지정 지양으로 사업부실화 방지
 - 전통민속공예품, 고부가가치제품, 농어촌부존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
- 기성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농의소득증대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시설현대화, 내실화에 집중 지원
 - 전통민속공예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농어촌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2) 선정절차

- 신규지정 및 기성단지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신규 : 별지 제1.2.3호 서식, 기성 : 별지 제2.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장기계획사업량 및 예산범위내에서 농협 시.군지부의 사업성검토 및 농발위 심의후 지원계획확정(별지 제4.5.6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당해 시.군의 특산단지연합회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다.

마. 사업시행

○ 담보문제

-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 하고 시설자금 용자시 최대한 후취담보 실시

○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개발과 농어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용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도 대출목적대로 사용하여야함.

○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도 통보
- 다만,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하는 시.도지원액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변경승인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특산단지사업자는 년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 자산, 자본, 부채, 손익상황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 지급상황등에 관한 농어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 (별지 제9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용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기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보조금반환, 지원자금(용자)회수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그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 지정받은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권자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토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지정서를 부착토록 하여야함(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함 (별표 1)

나. 보 고

- 농어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장.군수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한 반기말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지정취소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집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11.12호 서식)

-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계획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계획 (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특산단지 제품의 판매확대방안"(각종문화행사, 서울지역 특별판매 행사 (주)고려무역판매행사 참여)을 수립하여 매년 1.2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 군 : 산업과

< 별표 1 >

보 조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검정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날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계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시장·군수가 특산단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8. 보조사업자는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의 장부·서류·기타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처 리 기 간	
시.군(접수검토, 승인신청)	20일
도(검토, 승인)	7일
시.군(지정통보)	3일

특산단지 지정 신청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 사업계획서와 같이 특산단지를 조성하고자 지정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9

○○ 특산단지 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개황

- 명 칭 : ○ 사업장 구분 : (특산품 또는 부업)
- 사업장 소재지 : 도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업종은 민속공예품, 석재, 농수산물, 직물, 기타 중 하나를 기재
- 사업자(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인)	연령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학 력 및 경 력	기 간		학교 및 전공, 근무처 및 활동사항			

- 관리직원 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 참여형태 :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혼합 중 하나를 기재함. 다만 혼합의 경우 혼합된 형태를 ()안에 "/"으로 구분하여 함께 적되, 사업자 1가구 단독출자의 경우는 참여형태를 구분함에 있어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참여가구의 참여형태만으로 구분함.
 (예) 1) 사업자 1가구가 단독출자하고 3가구가 취업한 경우의 참여형태는 "취업"임.
 2) 사업자 1가구가 단독출자하고 1가구는 공동생산, 1가구는 임가공일 경우의 참여형태는 "혼합(공동생산/임가공)"임

○ 참여가구 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 등 출 자			공 등 생 산			취 업			임 가 공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 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 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 번호	가구주 명	주 소	경 작 면 적 (m ²)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 의관계	참여 형태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시기별 소요금액			
	합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	자부담	계	2/4	3/4	4/4
합계									
시설자금	소계								
	건물 기계.기구 생산부대시설 . . .								
개발자금	소계								
운영자금	소계								
	원료구입비 기 타								

-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하고 ()안에 신축, 증축, 개축, 매입 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을 토지와 일괄 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적음.

3. 제조공정

--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4.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 (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수입등으로 구분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차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여기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생산한 경우에 한함)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 3월-6월)로 구분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금액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19)			당년(19)			2년차(19)			3년차(19)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년 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전년 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전년 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전년 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제품명	수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매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기간 : 년도~ 년도(년간) ○ 제품명 : ○ 총판매금액 ○ 판매처
향후판매전망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 예) 판매기간 : '92~'94(최소한 3년간 이상)
 제품명 : 도자기
 판매처(상세히) : 서울 미도파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 천원)

		전 년 (19)	당 년 (19)	2년차 (19)	3년차 (19)
매출액 (7)					
제조원가 및 비용 계	원료구입비				
	노무비(취업)				
	노무비(임가공)				
	경비				
	(제조원가 계)	()	()	()	()
	판매비				
	일반관리비				
	지급이자(원금제외)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원가및비용 계(L)					
손△익 (7-L)					
소득 분석	참여형태별 가구수	공동출자 공동생 공공취 입가계	자 산 업 공		
	가구당 소득액	공동출자 공동생 공공취 입가계	자 산 업 공		

-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 형태의 참여가구 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여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개황"의 "참여가구 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 별지 제3호 서식 >

종합심사서

1. 명칭 및 사업장 구분 : (명칭) (사업장 구분)
2. 사업장 소재지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업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
5. 참여형태 :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19 . . .

○ ○ 시 장 (직인)
군 수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p>※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p>

○○년도 농어촌특산단지별 지정계회보고(총괄, 신규, 기성)

(단위 : 천원, 천점, 본, 백만원)

업종별	우선순위번호	사업명	사업형태	소채지	대표자성명	참여기구			제품생산 및 판매 계획			추정생산비			추정소득			사업비 조달계획					
						기타	농어	계	생산액	수량	내수(금액)	수출(금액)	원료	기타	비용	계	가구	당	소득	보조금	농특	융자	자부담
합계																							

- ※ 작성요령 1. 업종별 : 작성순위(①민속공예품, ② 농수산자재 ③ 일반공산품 ④ 섬유직물 ⑤ 석재 ⑥ 기타)대로 작성기계
2. 품 목 : 목공예, 석공예 등 주된 생산품목을 기재
3. 우선순위번호 : 업종별 구분없이 지원대상자 순위번호 기재
4. 사업명 : 세부적인 사업명(시설비 : ○○공장, ○○기계, ○개발비(금형, 디자인 등), ○○포장비 등, 원료비 : ○○원료구입비 등)으로 기재
5. 사업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입가공중 하나를 기입하되 혼합형 형태는 추가되는 것을 기입하고 말미에 (혼)을 기입함.
6. 소재지 : 사업장소의 주소
7. 참여기구 : 농어가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의한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가
8.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연간 총 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을 기입하되 판매계획은 내수, 수출 구분 작성
9. 추정생산비중 기타비용 : 제값비용, 세금등을 포함하되, 참여농어가의 임금은 제외
10. 추정소득(영수로산출)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가구당소득 = 총소득 ÷ 참여기구)
11. 추정소득총소득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소수점이하 생략)
- 가구당소득 : 총소득 ÷ 참여농어가 호수

< 별지 제5호 서식 >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명세표 (총괄, 신규, 기성)

(단위 : 백만원)

대표 자	사업비 조달 계획										분기별 자금소요액			사업내역 (요약하여요청만기입) ○ 시설통발자금필요시 작성		
	총계		시설자금			개발자금			운영자금		분기별 자금소요액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총 용 자	지 기 부 담	계	2/4		3/4	4/4
합계																

* 분기별 자금소요액은 시·군·별, 단지별로 입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

< 별지 제6호 서식 >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명세표 (총괄, 신규, 기성)

(단위 : 백만원)

업종 별	대 단 품 종 별	표 소 재 지	잠여가구 비 용 가 계	사업비 지원 계획										분기별 지원계획					
				총계			시설자금			개발자금			운영자금			분기별 지원계획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 부담	계	2/4	3/4	4/4
합계																			

* 1) 작성요령은 지적계획보고서 작성방법에 준영할 것.
2) 분기별 지원계획요구는 단지별로 입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

특산단지 관리 대장

1. 개 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 ○ 사업장 소재지 :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 사 업 자 : (성명) ○ 참여형태 : ○ 관리직원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 참여제한 읍.면의 명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번호 : ○ 지정연월일 : 19 (생산제품) (생년월일) ○ 사업장 구분 : |
|---|--|

2. 참여가구수 변동상황

(단위 : 가구)

점 기 준 일	참 여 가 구 수					점 년 월 일	점 적 · 성 명 · 날 인
	합 계	공 동 출 자	공 동 생 산	취 업	임 가 공		

3. 참여가구 및 참여자 변동상황

점 기 준 일	가 구 번 호	가 구 주 성 명	주 소	경 작 면 적(m ²)			참 여 자				점 년 월 일	점 적 · 성 명 · 날 인
				계	自 耕	임 차	성 명	생 년 월 일	가 구 주 와 관 계	참 여 형 태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재원별	용도	조달 년월일	조달금액	사 용 명 세	점검 년월일	점검 적.성명.날인

- (주) 1) 재원은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 중 하나를 적음
 2) 용도는 시설자금, 개발비, 운영자금 중 하나를 적음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생산 및 판매상황

(금액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검 년월일	점검 적.성명.날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6. 소득효과

점검 기준일	매출 액	제조사 원가 및 비용	손 익	소 득										점검 년월일	점검 적.성명.날인	
				총 소득 액	가 구 별 소 득								임가공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가			공
					가	금	가	금	가	금	가	금	구			액

< 별지 제12호 서식 >

각시·도별 농어촌특산단지 지정 및 취소현황

(단위 : 개소)

	조 성 단 지		지 정 취 소		운 영 단 지
	신규조성	누 계	당년취소	누 계	누 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공공)

1. 목 적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 및 판촉활동을 통한 판매확대와 기술경영 지도를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

2. 추진방향

- 특산단지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제공
- 특산단지제품의 시장정보제공 및 해외수출상담창구 역할
- 특산단지제품의 전시, 판매행사개최등 판촉 홍보
- 특산단지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단기간 공조활동 도모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사업량		8	3	1	3	2	9	26
사업비	계	5,710	1,450	775	1,500	1,000	4,500	14,935
	국고보조	5,710	1,450	775	1,500	1,000	4,500	14,935

나. '96 지원계획 : 775백만원 (계속 2, 신규 1)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시·군 포함)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판매장설치
- 전시장 규모 : 250평 내외
- 운영방식 :
 - 시·도지사 또는 도 특산단지연합회에서 관리. 운영
 - . 관내 특산단지 생산업체가 입주판매 또는 직영판매도 가능
(국내 또는 해외전시판매지역 창구의 역할 수행)

(2) 지원대상

- 시·도지사 (시·군 포함)

(3) 지원규모 및 조건

- 총사업비 10억원내외중 국고보조 지원액은 50%, 지방비부담 50%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비에서 추가소요액 부담)

(4) 사업시행체계

-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지원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시·도지사 (시·군 포함)

(2) 신청절차 :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사업시행 전년 12월말까지 농림수산부 신청

(3) 구비서류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 지역 특산단지제품의 전시판매가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제품의 시장정보제공등 홍보활동이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단기간 공조활동이 용이한 지역
-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2) 선정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에 따라 지원

마. 사업시행

○ 사업효과

- 특산단지 생산제품의 전시 및 판매확대로 특산단지 활성화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등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향상등에 기여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함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나. 보 고

- 추진실적보고 : 반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별지 제1호 서식)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추진실적

1. 사업추진실적

가. 사업계획

- 규 모 :
- 사업비 : (국고 , 지방비)

나. 추진실적

- 위 치 :
- 규 모 :
- 사업비 :
- 추진상황
 - 부지매입
 - 공사추진
 - 사업비 집행 등

2. 판매실적

(단위 : 천원)

업 종 별	금 액
합 계	
민속공예품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한계농지정비사업 (공공)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농외소득증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2. 추진방향

- 지역여건과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정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
- 개발혜택이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3. 추진체계

가. 정비지구 지정

- 예정지 조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 지구지정 심의 : 도지사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
- 지구지정 승인 : 농림수산부장관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나.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 토지 및 시설분양 : 실수요자

다. 지원조건 및 규모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용자지원(농진공), 지구당 4,000백만원 수준
 - 용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 2년상환

라. '96지원계획 : 5,618백만원

4.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가. 한계농지의 기준

- 농지개량조합 구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나. 한계농지 개발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

다. 한계농지 예정지조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필요한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음.
- 예정지조사 대상항목
 - 정비예정지구의 현황
 - 사업의 시행여건
 - 소요사업비 추정액
 - 사업시행의 효과
 -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
 - 토지소유자의 호응도

라.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1)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지나친 소규모 지정은 억제
 - 농림수산업적 이용의 경우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 제곱미터로 하고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예)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다목적이용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다목적 이용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개 시·군당 연면적을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함.

(2) 지구지정시 검토사항

(가) 한계농지 해당여부

(나) 지역주민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가 높은 지구

(다)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지매수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은 지구

(라) 발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구

(마)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구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등은 제외하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지구지정후 사업착수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역주민 개발의욕 저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구지정후 차년도까지 개발착수가 가능한 지구를 우선 지정

(3) 도지사 직권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가)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자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인 경우

-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함.
- 경유시 시장·군수는 정비지구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 농발심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견서를 첨부

(다)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토지소유자가 7인 이상인 경우)를 구성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을 시장·군수에 신청

- 한계농지정비사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 주요사업내용
 - 지구현황 (위치도 포함)
 - 정비하고자 하는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의견서
-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한계농지정비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구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시·군 농발심의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 서류

-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25,000) 및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① 예정지 조사 보고서
 - ② 정비사업의 내용
 - ③ 사업기간
 - ④ 사업비 추정액 및 부담(조달) 방안
 - ⑤ 정비지구 편입토지 조서
 - ⑥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 ⑦ 관련법상 제약요인 검토서
 - ⑧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다목적이용정비사업 중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첨부. 이 경우 예정지조사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마) 신청에 의한 정비지구 지정 고시

-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으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

(바) 지구지정에 필요한 조사 등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5)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 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정비사업 시행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및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추진

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진공사장에게 위탁 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비사업 참여 허용

※ 토지소유자의 참여방법

- 농어촌주택·택지 등 다목적 이용, 농어촌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농어촌휴양 자원이용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시행 신청을 받은 때나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선정한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함.

다만,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정비사업의 종류
- 대상정비지구의 범위
-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사업비 부담방법
-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방법
-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사업시행절차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정비유형별로 농어촌정비법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
- 농림수산업적이용 : 법 제5조, 제7조(제2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8조(제2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내지 제40조,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공업·문화·체육시설 등은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절차 준용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마.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능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 능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표 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사.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 사업비 내역서
 -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 시행전후 면적조서
 - 사업 중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수요자의 모집 및 분양

- 사업의 홍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한계농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된 토지의 분양, 임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 토지 분양, 임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요자 모집 : 사업시행자는 정비된 토지등의 수요자를 사전 확보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지구의 지정 및 사업착수와 동시에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분양·임대절차 등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주택·기타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65조 및 제73조를 준용
- 분양가격의 결정 : 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 분양시의 특례
 - 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어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 임대할 경우는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 정비법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민이 농어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취득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함

자. 선 수 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 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6. 한계농지정비 시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및 연관시설 설치 지원

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 등 다양한 개발모형을 정립하고 개발 및 정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 용자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진흥공사

○ 사업규모 : 1지구 10ha 기준, 사업비 40억원 수준

○ 사업비 지원 : 농지관리기금 + 자체자금

-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조건(대사업시행자) : 연리 3%, 2년거치 2년상환

- 지원내용 : 용지매입 및 준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나. 농어촌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등 기반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등 생활환경 기반시설, 발기반정비,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등 소득기반시설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

- 도지사, 시장·군수는 연관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

다.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관계법상 인허가 절차는 정비법 제87조에 따라 의제처리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원활화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이관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시설은 시장·군수가 관리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시공 전, 시공 중, 준공 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조성사업실시요령등을 참고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에 의한 오염방지그라우팅, 폐쇄 공공관정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 고

- (1) 시행계획승인결과 보고 : 시행계획승인시 보고
- (2)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4)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변경 승인시 보고
- (5) 준공검사 결과보고 : 준공검사 후 즉시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 시·군 : 건설과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199

승락자 주 소 :

성 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별도 협약에 의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 보상액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로 투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지	번	지	목	지적, 가 옥, 건물	편입예정 면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199

승락자 주 소 :

성 명(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계농지정비사업신청서

귀하

우리 토지소유자 일동은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시·군(귀사)의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하 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

- 지구현황(위치)
 - * 위치도 붙임과 같음

- 주요사업계획

-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의견

- 토지소유자 동의서 : 따로 붙임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 임 : 1. 위치도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1부

농공단지조성 (공공)

1. 목 적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2004년까지 400개소(23백만평) 조성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개정 고시 시행 : '94.9.9)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 사업량		269	7	6	12	12	91	400
사 업	계	9,401	393	532	912	912	6,853	19,013
	○국 비	4,688	172	200	479	479	3,509	9,527
	- 보조 - 용자	2,390 2,298	99 73	130 70	306 173	306 173	2,226 1,283	5,457 4,070
비	○지방비	4,713	221	332	433	433	3,354	9,486
	- 보조	579	21	20	51	51	368	1,090
	- 용자	4,134	200	312	382	382	2,986	8,396

나. '96지원계획

- 계속지구 7, 신규지정 6지구
- 사업비 : 20,040백만원(국비보조 12,990, 국비용자 7,050)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관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
- 건설교통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 환 경 부 자연보전국 평가제도과

○ 시·도 : 지역경제국 공업(상공)과

○ 시·군 : 지역경제(산업)과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농공단지부지조성사업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2) 지원대상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는 농공단지

(가)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지역의 시·읍지역과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원	원주군, 춘천군, 횡성군 홍천군 (4)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명주군 (5)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군 (9)
충북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 영동군, 증원군 (6)	옥천군, 제천군 (2)	보은군, 단양군 (2)
충남	온양시, 공주시,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천안군 아산군, 논산군 (8)	대천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태안군 (8)	부여군, 보령군, 청양군 (3)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전북	-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김제시, 임실군, 완주군, 임실군, 임실군 (8)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8)
전남	광양군, 여천군 (2)	나주시, 송주군, 장성군, 영암군, 화순군, 담양군 (1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10)
경북	영천시, 영천시, 달성군, 영경산군, 철곡군, 선산군 (6)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영천시, 문경군,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14)	의성군, 청송군,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9)
경남	창원군, 양산군, 김해군, 울산군, 거제군 (5)	삼천포시, 창원시, 밀양시, 통영시, 함안군 (10)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7)
제주	-	-	남제주군, 북제주군 (2)
합계	31(3시 28군)	57(15시 42군)	50(1시 49군)

※ 광역시, 통합시 이전의 시·군임

(나)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직할시와 인접된 읍·면
- 동광양시, 장승포시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다)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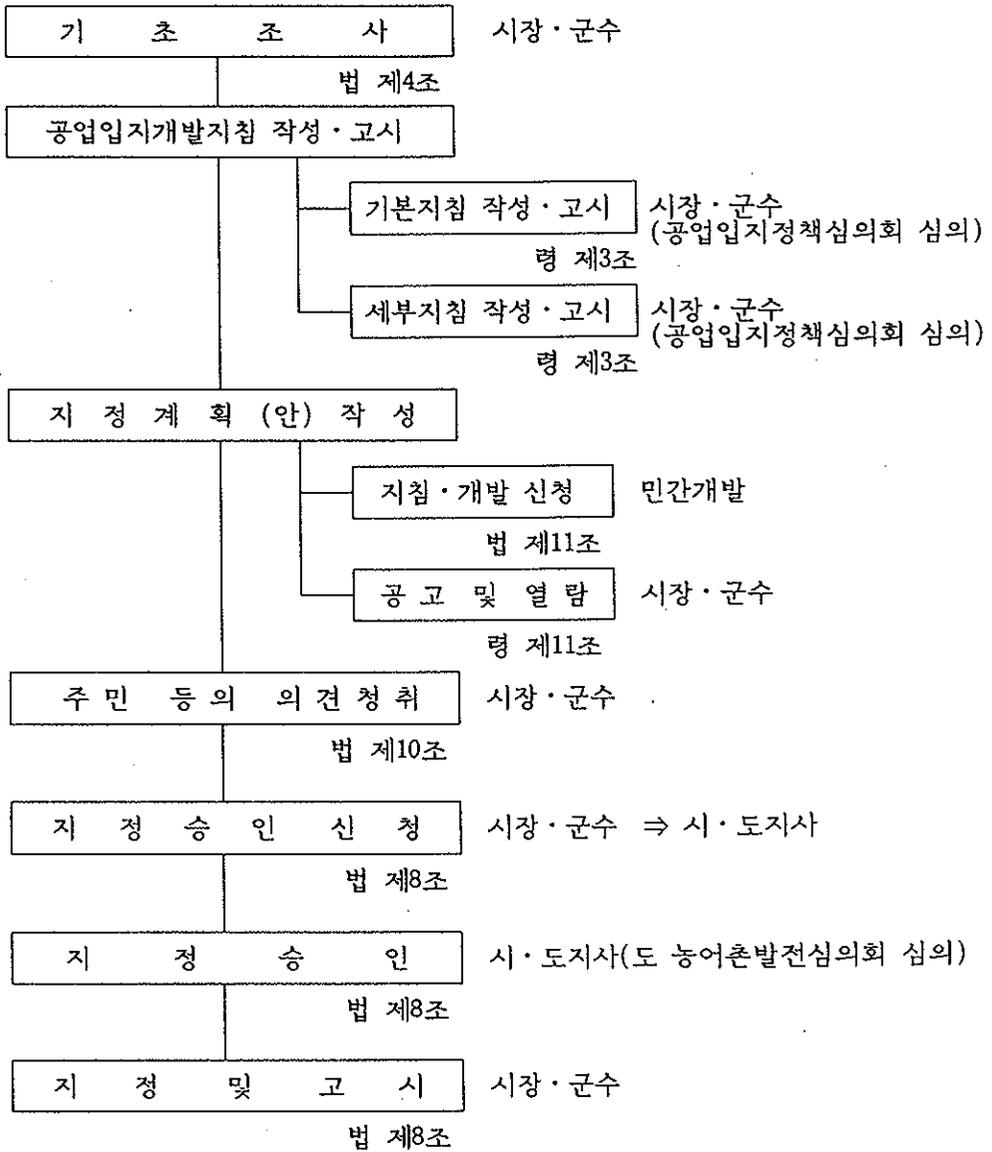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 이내
 - 실수요자 부담으로 조성하는 경우 330천㎡ 이내에서 추가지정 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65~330천㎡ 이내

(라)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군수
 -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지 정 : 시·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10%이하인 경우
 - 민간개발 농공단지 및 농어촌 부촌지원 활용 농공단지 지정시는 예외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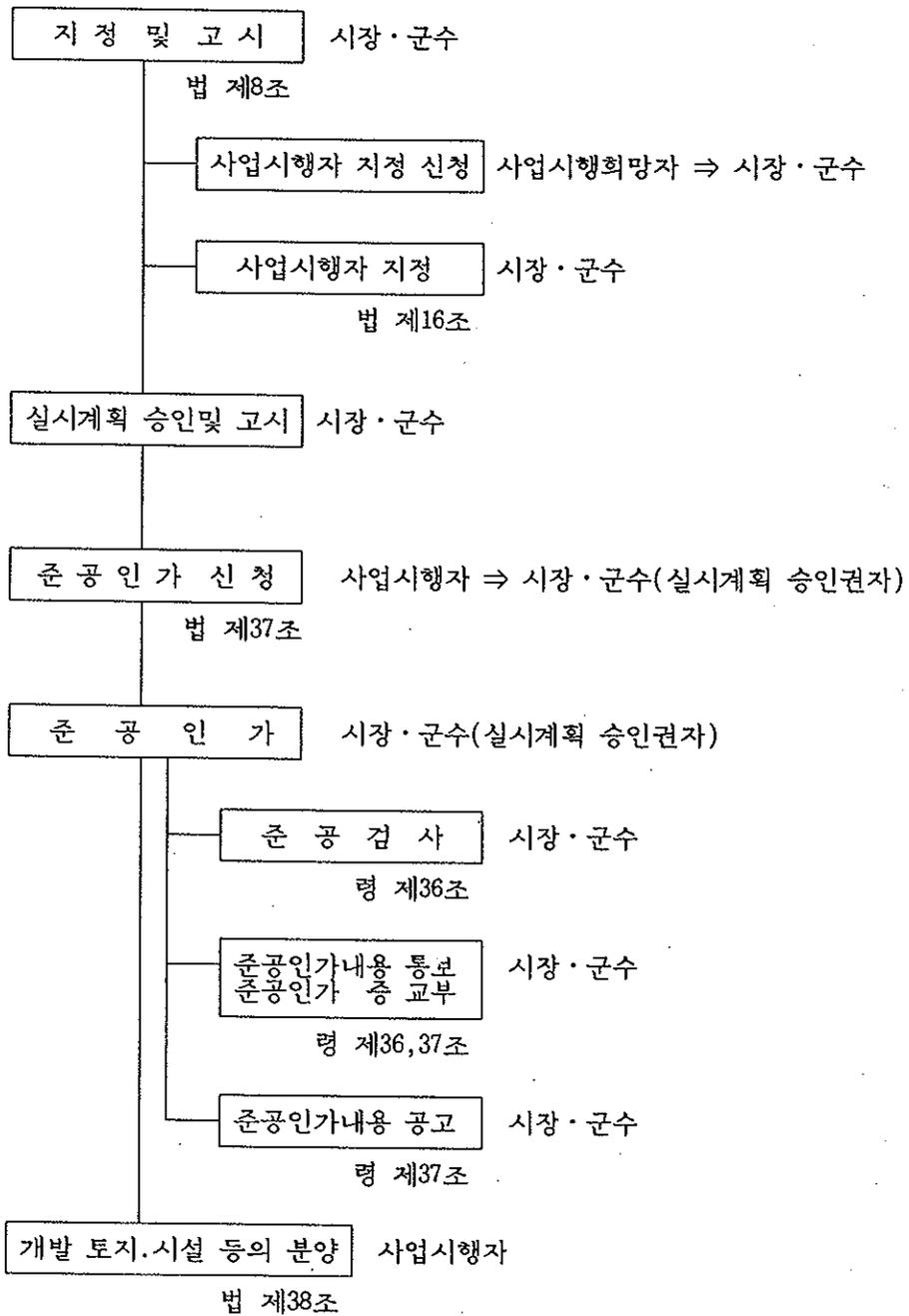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가. 지정절차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나. 개발절차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1) 입지선정 제외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직할시와 인접한 읍·면
- 농업진흥지역(농지·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 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하류측으로 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2)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 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동력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8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도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의 다른 공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공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가 없는 지역일 것
이 경우 동일생활권은 다른 공업단지와의 거리(도로기준10km이내), 관할행정구역,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국토건설 종합계획, 도·군 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나. 기본조사

- 시·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어촌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7. 사업시행

가.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나. 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토록 하고,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라. 설계 및 시공

-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이를 담당한다. 다만, 조성비 일체를 입주기업체가 부담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마. 기술지원 및 공사감리

- 경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한다.
- 공동이용건축물의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건축직 공무원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한다.

바. 검 사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비 지원

가. 부지조성사업비의 지원

○ 일반농공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반농어촌 (3시, 28군)		추가지원농어촌 (15시, 42군)		우선지원농어촌 (1시, 49군)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국비보조	10(-)	15(-)	20(10)	30(15)	30(10)	45(15)
국비용자	10(-)	10(-)	20(10)	20(10)	20(10)	20(10)
지방비보조	5(-)	5(-)	5(5)	5(5)	5(5)	5(5)

-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총당
- 2) 대기업은 ()와 같이 지원
- 3) 국비용자금 상환조건 : 년리 7%, 5년거치 5년균등상환
- 4) 개선은 '96년 지정분 부터 지원

○ 광산촌농공단지 및 농어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합 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보조
85	50	30	5

- ※ 1) 광산촌농공단지 국비보조는 통상산업부에서 지원
- 2) 농어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는 부존자원을 사용하는 업체가 2/3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
- 3) 잔사업비 및 국비용자금 상환조건은 일반농공단지와 같음

○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면제

- 논 : 평당 11,900원
- 밭 : 평당 7,140원
- 산 림 : 평당 1,920원
- ※ 전용부담금도 면제

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통상산업부)

구 분	금 용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7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7%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2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7%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계	9억원이내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환경부)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 가 지원 농 어 촌			우 선 지원 농 어 촌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100	30	70	100	50	50	100	70	30

- ※ 1)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2) 기금용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등으로 충당
- 3) 기금용자조건은 연 7.0%로써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임.

9.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
- 건설교통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 환 경 부 자연보전국 평가제도과

○ 시·도 : 지역경제국 공업(상공)과

○ 시·군 : 지역경제(산업)과

○ 유관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단지조성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농공지원실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심사지도과
- 환경관리공단 : 기술지원과

농업경영자금 지원(공공)

1. 목 적

-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민에게 농사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여 적기영농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미곡위주 지원 → 과수·채소·원예 등 특수작목 지원 강화
- 생산중심 지원 → 농산물의 가공·유통분야까지 지원 확대
- 소액분산 지원 →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 확대 (운전자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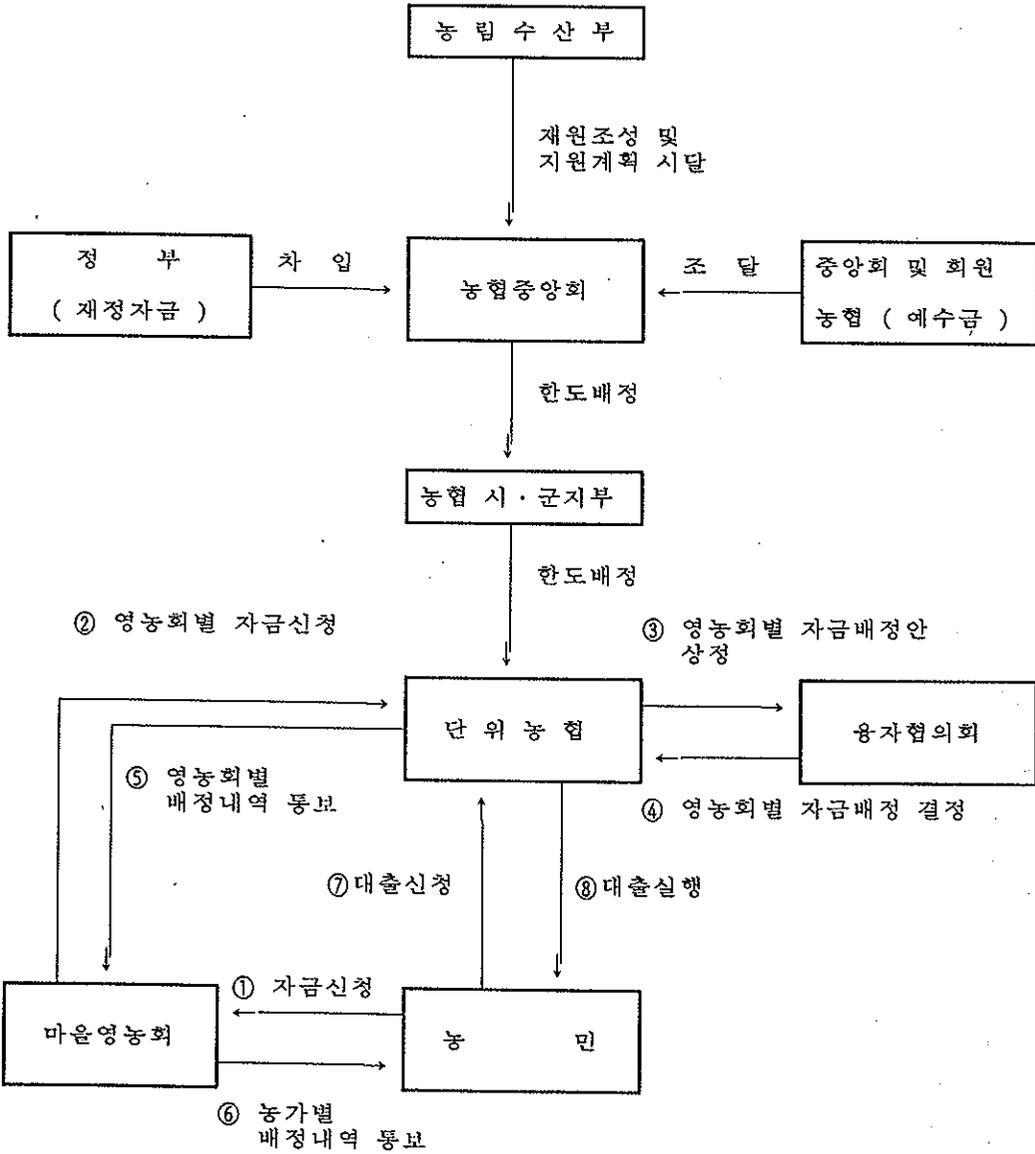
3.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및 농협중앙회

나. 지원 내용 :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재해지원등

다. 지원조건 : 연 5.0%, 1년 이내 상환

다. 사업추진체계도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 농림수산부
- 세부계획 :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지역별 경지면적, 농가호수 및 각종 영농여건

나. 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1) 자금신청

- 신청자격 :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농업경영체
- 신청 : 농민들이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단위농협에 신청
- 신청시기 : 사업종류별 자금 필요시기에 연중 신청
- 신청기관 : 지역농협, 전문농협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 융자협의회에서 농가별 경작면적, 기타 영농여건 등을 감안 선정하며, 재해농가는 우선지원

(3) 담보문제

- 개별농가 : 신용대출
- 농업경영체 : 농협 여신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경영자금 운용요령
 - 정책자금이 정책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 정책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는 회수

나. 보 고

- 농업경영자금 운용계획 세부지침 수립보고 (농협 → 농림수산부)
- 농업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 (농협 → 농림수산부)
- 농업경영자금 대출실적 보고 (농협 → 농림수산부)

다. 사업안내기관 : 전국 모든 단위농협 및 시·군지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금융과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 시·도 : 농협 지역본부 저축금융과
- 시·군 : 농협 시·군지부 및 단위농협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공공)

1. 사업목적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방침

- 지원대상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學曆認定)학교 학생으로 함.
단, 국가등에서 학자금을 수혜(惠澤)받는 자는 제외함.
- 통합시의 면지역도 포함 지원함.
- 읍지역중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군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자녀는 지원함.
- 농어민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거주지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제외(除外)지역으로 편입될 시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지원함.
- 학자금지원은 학교 급지별(級地別)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

3.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부모(부모사망등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 본인포함)가 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 규모 1.0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써 실업계고등학교(학력인정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단,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함.

1) 실업계고등학교의 종류와 범위

실업계고등학교라 함은 농림업·공업·상업·수산·해양·실업·종합의 고등학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농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농림계,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정계중 2개이상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과와 가정계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종합고등학교 : 실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계 학과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混合)된 학교(이중 실업계만 해당)

2)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

농 가	어 가	양 축 가	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 임차(賃借)농가 ○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에 연간 120일 이상 종사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어가 ○ 무동력선 사용어가 ○ 15M/T이하 동력선 어가 ○ 소규모 양식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산포(散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말: 18두 미만 ○ 젖소, 사슴: 12두 미만 ○ 돼지, 산양, 면양, 개: 130두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3,000마리미만 ○ 가금: 7,500수 미만 ○ 양봉: 90군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 26ha 미만

※ 양축가의 경우는 성축(成畜)기준임. 새끼·육성우는 2두를 1두로 봄.

< 제외대상 >

- 보건사회부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을 지원 및 면제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학교)에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 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나. 지원내용 : 수업료·입학금 전액지원

4. 학자금지원 신청 및 업무처리 요령

가. 농어가

농어가는 이장이 비치하고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제 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 회계년도 개시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이 장

이장은 농어민으로부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의 참고사항에 기재된 "지원대상농어가 기준표"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연대(連帶)서명 하여야 함.

다. 면 장

1) 지원신청서 교부 및 홍보

면장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를 이장이 비치하도록 하고, 동사업 내용을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漏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지원대상 여부 및 학적확인

면장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확인, "지원대상농어가 기준표"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학부모에 통지함과 동시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학생재학조회(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입생은 1월 10일까지, 재학생은 1월 15일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여야 함.

3) 지원대상자 확정 및 학자금지급

○ 면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학생재학조회"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분기별 국고보조신청서(별지제3호서식)를 1/4·2/4분기는 1월25일 까지, 3/4분기는 6.10일 까지, 4/4분기는 9.10일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학적확인 내용에 따라 학기 개시전에 학교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함.

- 학자금지원신청을 실기하여 누락된 추가신청자는 재학사실을 확인한 후 소급 지원하여야 함.

라.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업무를 반상회 회보 및 시·군지등에 게재 하여 홍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 분기별로 학자금 소요액을 1/4·2/4분기는 1.27까지, 3/4분기는 6.15까지, 4/4분기는 9.15까지 도에 보고하여야 함.

마. 도지사

- 도지사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도지사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을 반상회보 및 각종 화보·홍보물에 게재 하여 홍보하여야 함.
- 도지사는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보조신청(별지제3호서식)을 1/4·2/4분기는 1.30까지, 3/4분기는 6.20까지, 4/4분기는 9.2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함.
- 도지사는 학자금지원자금을 학기개시 30일 전까지 지원하여야 함.

바. 학교장

- 학교장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함. (대상학생은 납입고지하지 말 것)
- 학교장은 면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서식(별지제2호 서식)에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연초에는 1월 20일 까지, 1/4분기 부터는 분기 종료후 5일까지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면장으로 부터 의뢰받은 원안(별지제2호서식)에 확인하여 통보 】
- 학교장은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에게 본 사업의 취지(趣旨)를 설명하여 누락(漏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입학 안내서, 학년말 방학생할 지도등)
- 학교장은 시장·군수의 학자금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사. 도 교육감

도 교육감은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력인정 학교 현황, 급지별 학자금기준등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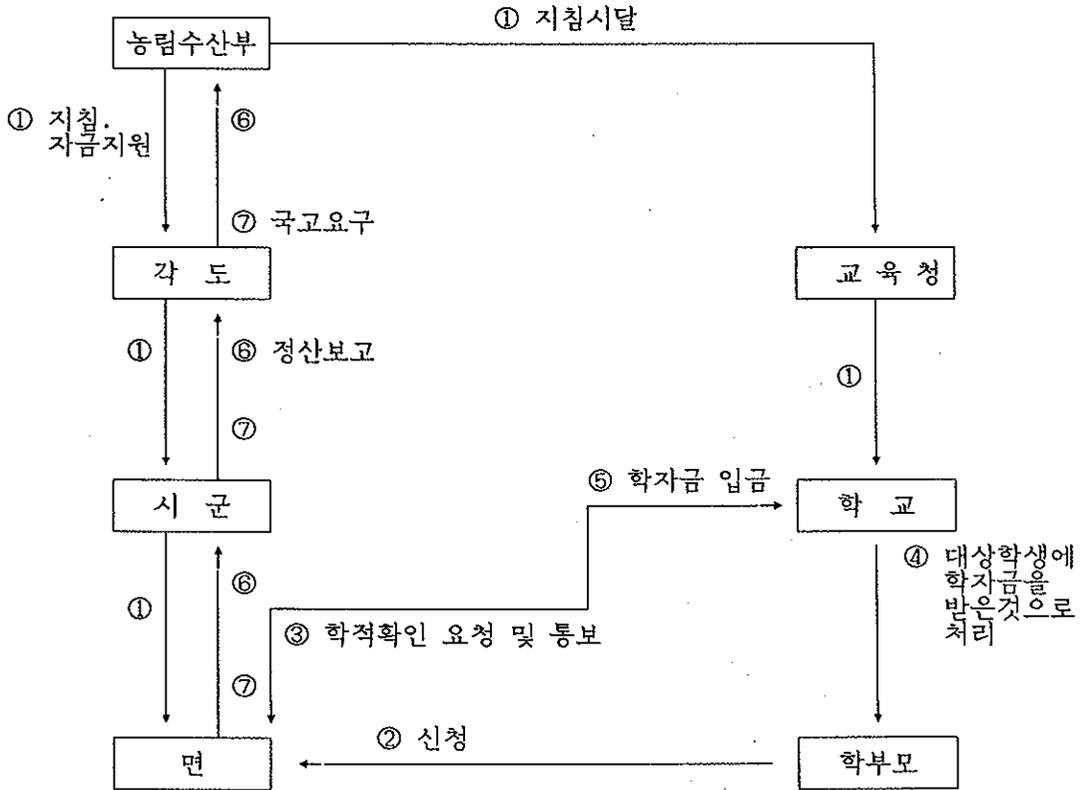
5. 학자금 지원중지 등

- 학교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등으로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입금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 (교육부령 제 624호 '94.8.30)등에 의거 처리하고 잔액은 정산하여야 함.
- 학교장은 학자금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원대상 학교로 전학한 경우 전학자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학교간 정산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함.
- 면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년도중 신규 발생한 경우 학자금 지원자격이 발생한 월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여야 함.

6. 학자금 정산

- 시장·군수는 학자금 지원사업 정산결과를 익년도 3.10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확정·정산하여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정산결과 보고서(별지제4호 서식)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정산잔액중 국고금은 농림수산부소관세입금【일반회계 농림수산부 각도별 세입 징수관 구좌 : 경상이전수입(관12) - 기타경상이전수입(항59) - 기타경상이전수입(목591) (00년도농어민자녀학자금 정산반납금)】으로 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7. 업무처리절차도



8. 보고 기일

(월 일)

보 고 명	최작성기관	학 교 장	면 장	시 군 장 수	도지사	농림수산부
○ 학자금지원신청서	학부모		12.30			
○ 학자금지원대상 통지	면장 → 학부모					
○ 년초 학적확인 완료	면장 → 입학생1.10 재학생1.15					
○ 년초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1.20			
- 1/4, 2/4분기 보조금 신청	면장	1/4학적확인 근거작성		1.25	1.27	1.30
○ 1/4 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6.5			
- 3/4분기 국고 보조금 신청	면장	1/4재학확인 근거작성		6.10	6.15	6.20
○ 2/4 재학 확인 결과 회신	학교장		9.5			
- 4/4분기 국고 보조금 신청	면장	2/4재학확인 근거작성		9.10	9.15	9.20
○ 3/4 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12.5			
○ 4/4 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2월말			
- 집행실적 보고	면장	재학확인 집계결과		3.2		
○ 학자금 정산보고	군 수				3.10	
○ 확정 정산	도지사					3.31
보조금 확정	장 관					

※ 정부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일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 별지 제 1호 서식 >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부모)주소

전화:

학 부 모 신 청 내 용	부모(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 관계		면 사 무 소 확 인 내 용	주민등록 확 인	담당확인	
	영 농 규 모 (소 유)					면 공부상	경지	㎡
	학 생 성 명		학 생 년월일			소유 확인	임야	㎡
	학 교 명		학 과 명			내용	가축	두
	학 교 주 소					(확인자)	어선	M/T
	학 년		학 교 우편번호			재학조회 발송일		
					학부모 통보일자			

199 년 월 일

신청인 : 학부모(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리 이장 성명 (인)

면 장 귀 하

분기 농어민저녀학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명, 천원)

구	분	전			분기까지 실적			당			분기 소요추정			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실업고	입학금															
	수업료															
실업고학력인정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참고사항 : 전분기분을 소급지원한 인원 및 금액은 지급분기 상단에() 내·외서로 표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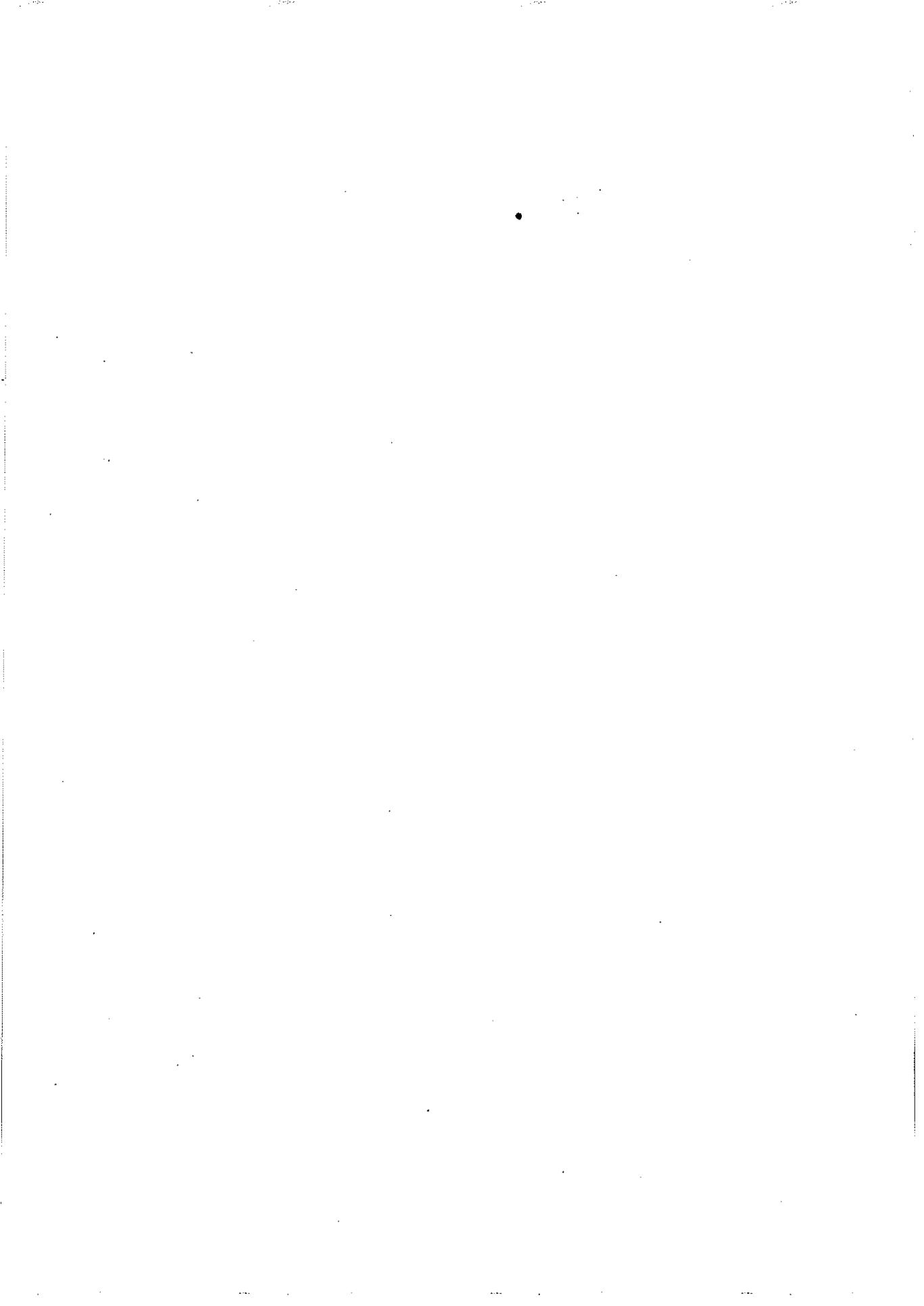
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정산결과 보고서

(단위: 명,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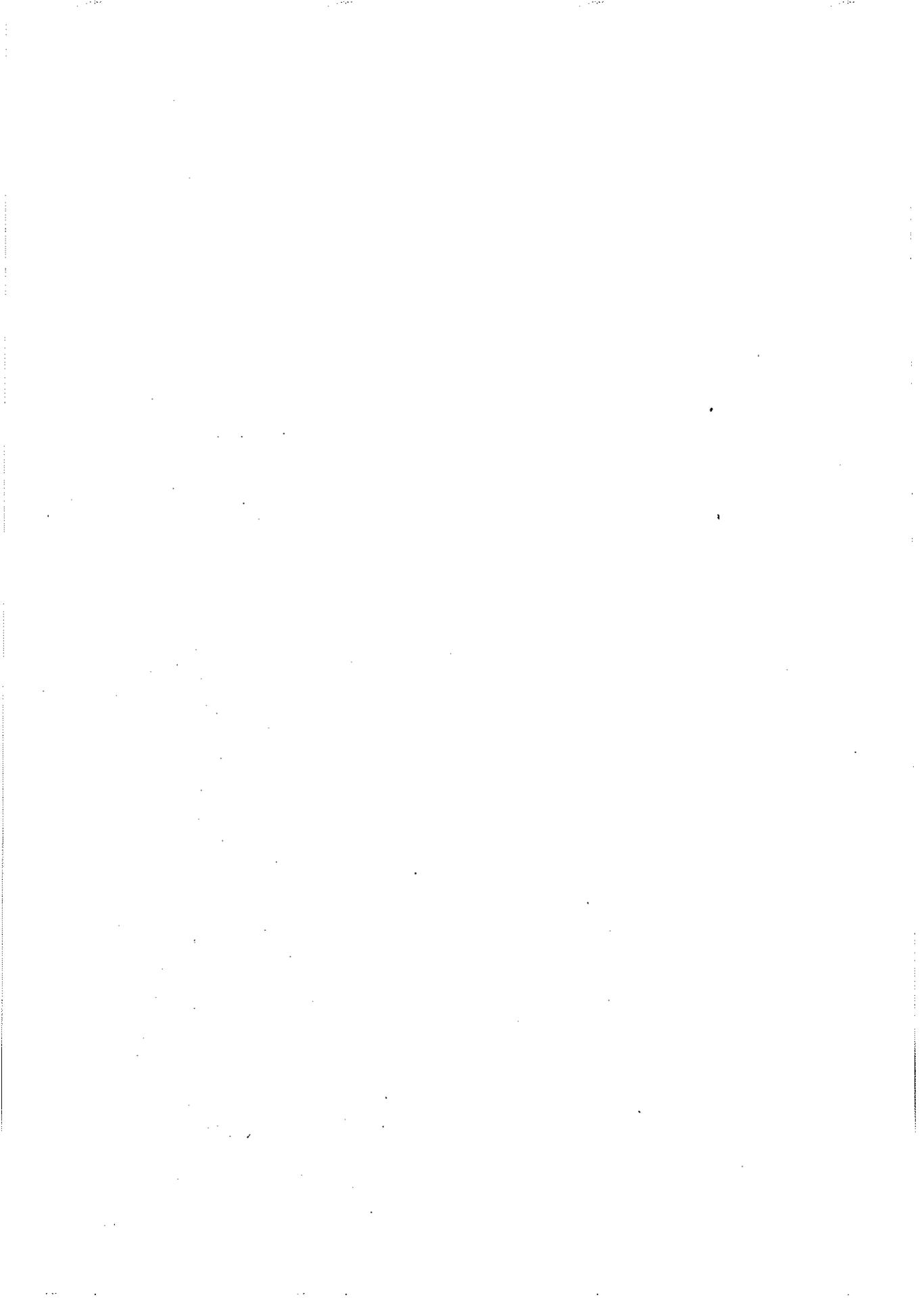
구	분	예산 배정액 (A)		시도 집행액 (B)		집행잔액 (C) (A-B)		정산액 (D)		정산잔액 (E) (B-D)		총잔액 (C+E)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실업고생	국												
	지												
	소												
합계	국												
	지												
	소												

(B4페이지로 작성)

- 주) 1. 학생수는 계단에만 표시할 것(정산시 학생수임)
 2. 입학금 및 입학금 지급학생수는 정산액은 "계" 상단에()내서할 것
 3. 집행잔액은 예산잔액(국고의 경우 지출한도 재배정액중 잔액)을 말함
 4. 정산잔액중 국비는 도에서 우리부에 반납할 금액임
 5. 정산잔액 및 총잔액 발생사유를 각각 분석하여 번지로 붙임것



7. 생활 환경 개선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

1. 목 적

-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도모
-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2. 추진방향

-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형별 설치지도
 - 『부엌개량+복욕실 설치』,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중 1개사업 선택
- 농가별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사업 연계추진
-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농촌 정주권개발 시범지역은 제외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합 계
사 업 량(호)		106,000	20,000	15,000	15,000	15,000	171,000
사 업 비	계	130,960	60,000	60,000	60,000	60,000	370,960
	국 고	-	-	-	-	-	-
	지방비	-	-	-	-	-	-
	용 자	91,670	42,000	42,000	42,000	42,000	259,670
	자부담	39,290	18,000	18,000	18,000	18,000	111,290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호)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부 담
계	15,000	60,000	-	-	42,000	18,000
인 천	50	200	-	-	140	60
광 주	50	200	-	-	140	60
대 전	130	520	-	-	364	156
경 기	500	2,000	-	-	1,400	600
강 원	1,200	4,800	-	-	3,360	1,440
충 북	760	3,040	-	-	2,128	912
충 남	3,520	14,080	-	-	9,856	4,224
전 북	2,830	11,320	-	-	7,924	3,396
전 남	4,150	16,600	-	-	11,620	4,980
경 북	740	2,960	-	-	2,072	888
경 남	1,070	4,280	-	-	2,996	1,284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I형 : 『부엌개량 + 목욕실 설치』

- 부엌개량 :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 인입, 입식 작업대 설비, 채광 및 환기시설 등

- 목욕실설치 : 상·하수도 시설, 욕조 또는 샤워기 설치, 채광시설 등

○ II형 :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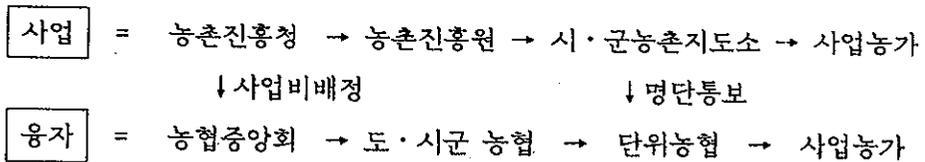
- 설치내용 : 집열판·축열탱크 설치, 온수배관시설 등

(2) 지원대상 : 생활개선시범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

(3) 지원규모 및 조건

- 용자규모 : 농가당 280만원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 사업비 부담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4) 사업시행 체계



※ 용자요령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용자취급기관(단위농협)에 통보
- 용자취급기관은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없이 용자금지급(선용자 후사업실시)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생활개선시범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

(2) 신청절차

- 시범마을 : 마을대표(이장, 생활개선회장 등)는 마을단위로 희망농가 명단을 작성, 시·군농촌지도소장(또는 읍면상담소장)에게 신청
- 일반마을 : 희망농가가 시·군농촌지도소장(또는 읍면상담소장)에게 신청

(3)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대상지역 선정

- 1순위 : 생활개선시범마을(읍면당 1개정도씩 선정, 3개년간 계속육성),

* 제5차 시범마을 : '95~'97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 2순위 : 일반마을

○ 대상농가 선정

- 1순위 : 시범마을내 농가

- 2순위 : 일반마을의 농어민후계자,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청소년회

회원 농가

- 3순위 : 기타 농가

※ 대상농가 순위보다 대상지역 순위가 우선함

예) 시범마을내의 일반농가가 일반마을의 농어민후계자보다 우선임

(2) 선정절차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희망농가의 가옥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용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

마. 사업시행

○ 시·군단위 농가교육 실시 : 개량농가는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기술교육을 받아야 함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사업평가서 작성 : 별지 제 2호 서식)

바. 기타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본 사업용으로 지원된 용자금이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 조치함

5. 행정사항

가. 보 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실적

(매 분기말)

시도별	사업내용	개 량 실 적(호)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용자액	자부담	기 타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태양열온수 급탕기설치							
	계							

※ 3/4분기 보고서는 사업실적 사진을 시도별로 6장(3×4)씩 제출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
- 시·도 : 농촌진흥원 지도국 생활개선과, 광역시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사회지도과) 생활개선계

[별지 제 1호 서식]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을구분 : 시범마을, 일반마을

마을명 : 읍면 리

사업명	농가대표			소요사업비			사업기 (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	용자	자부담	

위와 같이 199 년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시·군 농촌지도소장 귀하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공공)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농어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

나. 장기사업목표

2004년까지 전국 1,241개 면중 오지(401)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77개 정주권개발대상면 1차지원 완료

3. 투융자계획

가. 사업목표 및 증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면수)	(보 사 조 업)	76	39	57	58	60	487	777
사업비	계	648,240	178,087	229,494	225,560	234,000	1,518,539	3,033,920
	국 고 방 (지 양여금)	328,250	87,211	113,816	121,590	126,000	831,433	1,608,300
	지방비	155,877	37,376	48,778	52,110	54,000	341,159	689,300
	용 자	164,113	53,500	66,900	51,860	54,000	345,947	736,320
	자 담	-	-	-	-	-	-	-

※ 사업량은 완료기준임.

나. '96지원계획(추정)

구 분	사업량(면수)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신규	계속	완료		
계	-	-	-	229,490	
○ 보조사업	40	171	57	162,590	○ '96사업시행면 : 211개면
- 국 고 (지방양여금)	-	-	-	113,790	
- 지방비	-	-	-	48,800	
○ 용자사업	93	130	63	66,900	○ '96사업시행면 : 223개면
- 농특회계	-	-	-	66,900	

4. 정주생활권 면개발계획 수립

가. 목 적

- 농어촌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나. 연차별 계획수립

- 2001년까지 777개의 면개발계획 수립완료
 - 매년 시·군별 사업추진 진도를 참고하여 연간 계획수립 면수 결정

구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1	계
면수	393	80	55	55	55	139	777

- '96개발계획 수립대상면수 : 별도시달

다. 면개발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면당 계획수립비 : 39백만원(시·군의 지방양여금등 보조사업비에 계상)

2) 대상면 선정

- 농림수산부장관의 면개발계획 수립 방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 선정

3)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기 계약체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생활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어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중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분야

6)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변경과 인접지역과 연계된 사업계획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라.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42조원 농발계획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50억원 수준)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2단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소득원 개발등 (예 :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등)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 또는 타부처의 단위사업과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마.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어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5.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어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 등
- 농어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집하장, 공동작업장, 가공.저장시설등),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등

2) 지원대상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면당 39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융자 9억원)
 - 지원규모 초과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자체적 추진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해 배분
 - 융자사업 : 면당 9억원 범위내에서 주택신축자금등 지원

4) 사업시행체계

- 면개발계획 수립(시장.군수→시.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장.군수→시.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시장.군수)

5) 용자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비 지원방향
 - 농어촌주택정비, 농어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면과 연계 지원)
- 용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용자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용자 중복지급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 제공능력 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용자방법
 - 사업시행자가 농어민 또는 민간업체인 경우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사업시행자의 여신자금관리계좌에 입금후 사업실적확인(행정기관 또는 사업선정권자) 결과에 따라 용자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등인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없이 용자금 일시지급 가능
- 용자종결기한 : 매 회계년도말(12.31)
 -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별표 1》

다. 사업시행

1) 사업대상면 선정

- 선정기준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1~3개의 중심마을을 선정하고 개발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면지역내의 중심마을은 교통·산업·교육·문화의 중심이 되고, 발전잠재력이 큰 마을을 선정
- '95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거나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가능 (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3) 대상사업 선정

-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촌도로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타부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기 선정한 중심마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 개발계획과의 관계, 집중 시행여부등 타당성을 검토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

4)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지매수·공사준비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완공

5)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업자가 시행시 현지 여건상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6) 사업의 위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2》

7)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환지·교환·분합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름

8)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사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사시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6. 행정사항

가. 사업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용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 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예산반영,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요한 일반 관리비를 계상, 집행할 수 있음.

나.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참조

다. 사업의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중 및 사업완료후 농림수산사업평가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평가내용
 - 사업추진절차 준수여부, 사업의 집중투자등 평가
- 3) 평가항목
 - 보조사업 진행현황
 - 용자사업비 집행현황
 - 집중투자여부
 - 농어민 혜택 여부
 - 공사추진상황
 - 타사업과의 연계성
 - 민원발생 빈도

4) 평가자료의 활용

○ 농림수산부는 년 1회이상 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자료 등으로 활용함.

- 우수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량 및 사업비 확대지원등 혜택 부여

라. 보고등

1) 면개발계획 수립

○ 면 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추천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1호 서식)

2) 정주권개발사업 시행

○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 : 매년 3.10까지
(별지 제4~5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어촌정비과

○ 시·도 : 농정국 기반정비과

○ 시·군 : 건설과

《 별표 1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 조건

1.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 조성사업	○ 정주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농진공) ○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
○ 주택신축	○ 정주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사업을 추진 및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주택개량	○ "	"
○ 농어촌 용수시설 (상하수도 포함)	○ 정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시·도지사

2. 용자지원 조건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 용지매수	3%	4	2	2	○ 사업지구당 100억원 이내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임대주택	5	20	5	15	○ 지구당 5억원 이내	○ 전체사업비의 50% 이내
○ 주택신축 (문화마을)	5.5 (5)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주택개량	3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민편익 시설	5	5	2	3	○ 사업비자당 3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농어촌 용수시설 (상하수도 포함)	3	20	5	15	○ 지구당 3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 업 명	자 금 의 용 도	용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진공)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	"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 목욕탕, 화장실, 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 하는데 필요한 자금	"
○ 주민편익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 편익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어촌용수 (상·하수도 포함)	○ 농어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 별표 2 》

사업의 위탁

○ 목 적 : 정주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진공, 농협등
농림수산 관련단체를 참여토록 함.

○ 대상사업 예시

- 도로, 용수등 사회기간 시설 : 농진공, 농조연 등
- 유통·가공시설, 곡물건조보관시설, 농기계수리보관시설, 농산물집하장 등
- 공동영농어시설 : 농협, 수협, 축협 등
- 다목적 복지회관(도서실, 경로당, 체육시설, 탁아소, 목욕탕등) : 농협, 수협 등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시장·군수의 위탁사업	농림수산 관련단체의 자체사업
사업방법	시장·군수로 부터 위탁받아 시행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농림수산관련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관 시행
자금지원	전액보조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설비중 50% 보조 (시설부지는 자체확보)
관리운영	시장·군수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관리운영 위탁가능)	관련단체가 시설물의 소유·관리 운영

< 별지 제1호 서식 >

'96 면 개발계획 수립 대상면 추천

(시·도)

시·군명	대상면	사업시행(개소)			개발계획수립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면수 (95까지)	'96대상면추천	
							면수	면명

< 별지 제2호 서식 >

'96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용지사업 추진계획

(시 · 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대상 면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			일반정주권				비고	
		보조	용지	보조사업	용지사업		보조사업	용지사업				
					용지매입	주택신축		계	주택신축	주택개발		주민편익
						()			()	()	()	

※ 1. ()는 주택호수동 물량
2. 보조사업비는 지방임여금 및 지방비

< 별지 제3호 서식 >

'96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용지사업 추진실적

(시 · 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대상 면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			일반정주권				비고	
		보조	용지	보조사업	용지사업		보조사업	용지사업				
					용지매입	주택신축		계	주택신축	주택개발		주민편익
						()			()	()	()	

※ 1. ()는 주택호수동 물량
2. 보조사업비는 지방임여금 및 지방비

정주권개발대상사업 선정결과

(시.도 시.군)

(단위 : 백만원)

부 문 번	시 업 명	단위	중 개 회		'95 까 지		'96 계 회				'97 이 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양여금	지방비				용자	기타
합 계															
문화마을조성															
인민정주권개발	계														
마을기반정비	소 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km 개소 개소													
농촌도로정비	소 계														
	마을간도로 연접도로 민간도로 비닐하우스 공공주차장 인양포장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농어촌 산업 개발	소 계														
	농산물판매장 농산물보관정고 농산물신선화센터 농산물판매회전 농산물판매장 농산물수리센터 농산물자랑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생산기반정비	소 계														
	농도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개시설 영농시설	km ha 개소 개소 개소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명	단위	총 계 회		'95 가 지		'96 계 회				'97 이 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양역금	지방비			용저		기타
문화복지사업	소 계													
	복지회관	개소												
	미술회관	개소												
	공원이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합포문화시설 휴게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농어촌용수 및 배수시설	소 계													
	저수지	개소												
	관정 지역배수	개소 km												
환경보전사업	소 계													
	오수처리장	개소												
	쓰레기처리장	개소												
	문물막스 속산정화시설	개소 개소												
재해방지사건	소 계													
	하천정비	km												
	수방시설 기타안전시설	개소 개소												
농어촌주벽 정	소 계													
	주택신축 주택개량	동 동												
기 타	소 계													
	기타지역개민 원개민계획수립	개소 개민												

※ 1. 시·군·면 중관표를 작성하여 첨부

정주권개발대상사업 선정결과

부 문 범	중심마을	사 업 명	단 위	총 계 회		'95 까 지		'96 계 회				'97 이 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지법비			용자		기타
합 계															
문화마을조성															
정주권개발		계													
마을기민정비		소 계													
		-													
		-													
		-													
농촌도로정비		소 계													
		-													
		-													
생태촌신설		소 계													
		-													
		-													
문화복지시설		소 계													
		-													
		-													

(단위 : 백만원)

(시.군.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비	중심마을	사 업 명	단위	총 계 회		'96 계 회				'97 이 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계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암예금	지방비	용자			
농어촌 읍수 및 배수시설	소		계		사업량	사업비							
	-												
	-												
환경보전시설	소		계		사업량	사업비							
	-												
	-												
재해방재시설	소		계		사업량	사업비							
	-												
	-												
농어촌 주택	소		계		사업량	사업비							
	-												
	-												
기 타	소		계		사업량	사업비							
	-												
	-												

※ 1. 편단위 사업계획 작성

(단위 : 백만원)

부 문 비	시 업 명	단 위	총 계 회		'95 까지		'96 시 행						진 도 (%) 8/A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기타	사업비	기타	사업비	기타	사업비	기타	사업비	기타		사업비	기타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문화복지시설	소 계																	
	복지회관	개소																
	미용회관	개소																
	어린이놀이터	개소																
	항토문화시설 용계소	개소																
농어촌 용수 및 배수시설	소 계																	
	저수지	개소																
	지역배수	개소																
환경보전시설	소 계																	
	우수처리장	개소																
	쓰레기처리장 분봉믹스시설 축산정화시설	개소 개소 개소																
개발방지시설	소 계																	
	하천정비	km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개소 개소																
기 타	소 계																	
	기타지역개발 민개발계획수립	개소 개번																

※ 1. 시·군·면 시·도별 총괄표를 작성

문화마을조성사업(공공)

1. 목적

농어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마을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주택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어촌 마을 조성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발전가능성이 큰 정주생활권 면단위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농어촌주택단지, 상.하수도, 마을내 도로, 전기.통신시설등 생활 환경정비와 농업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과 병행. 연계 추진함.

나. 장기 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면에 777개의 문화마을을 조성함

3. 투융자계획

가. 사업목표 및 증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지구수)		32	20	21	26	34	644	777
사 업 비	계	99,880	69,963	98,859	173,250	235,500	3,188,033	3,865,485
	국고 (지방양여금)	28,640	16,424	30,316	48,510	51,540	906,855	1,082,285
	지방비	11,999	7,039	12,993	20,790	30,660	380,019	463,500
	용자 자담	59,241	46,500	55,550	103,950	153,300	1,901,159	2,319,700
	자담	-	-	-	-	-	-	-

※ 사업량은 신규착수 기준임('91착수2, '92착수13, '94착수17)

나. '96지원계획

- 총지원액 : 98,859백만원(보조사업비 43,309 , 용자사업비 55,550)
- '96착수 예정지구 : 21개지구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문화마을조성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2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단지조성과 병행하여 오폐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나. 사업내용

- 현대적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마을 조성과 기존마을 재정비
- 기반시설(택지조성, 단지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및 배수, 전기·통신 시설등)과 현대식주택의 신축 및 개량
- 복지회관, 공동주차장,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익시설
- 오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전시설
- 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작업장,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다. 지원규모 및 기준

- 지원규모 : 지구당 3년 내외에 50억 수준(보조 20, 용자 30) 지원
- 전체 소요사업비중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시·군(면)의 일반정주권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정주권사업에 지원함

- 당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 등)과 연계 지원
 - 농어촌 도로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상호 연계하여 종합지원되도록 추진
- 용자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용지분양자 등이 직접 건축시 용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상황(토지감정등)을 검토하여 용지매입등 용자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소요액 및 소요시기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용자 지원시 유의사항
 - 주택자금의 용자금 지급은 택지분양자가 택지를 분양받은 후 1년이내에 착공된 주택에 한함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용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용자대상 : 단독주택(상가점용주택포함), 공동주택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 정주권개발 용자사업의 《별표1》 참조

5. 사업 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을 지정하되 다음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추천
 - 기존마을의 정비와 분산된 농어촌마을의 집단화로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지역
 - 농업생산기반·산업기반정비사업등 농업진흥지역정비와 연계하여 농어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큰 마을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감정가격에 의하여 용지매수 및 보상이 가능한 지역
-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가등 사업의 추진 효율성이 높은 지역
-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서 면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을 선정

나.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사업시행자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조사대상 예정지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1개면에 1개지구.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을 개발중이거나 기 개발된
면은 제외)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신규착수 예정지중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
한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 시·도지사가 추천한 지구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예정지구 선정 통보

6. 사업계획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

가.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 예정지구가 선정되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계상된
지방양여금중 일부를 기본계획수립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
과목 설정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개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함.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
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기본계획수립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문화마을 단지조성, 오폐수 처리시설, 인근(인접) 기존마을 정비 계획, 주택건축 등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도로등)계획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서를 첨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 요청을 하여야함.
- 농림수산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생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승인함.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토록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나. 시행계획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농어촌정비법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농어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 계획 및 주택등 건축계획
 - 편익·복지시설, 환경정비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 농어촌의 부존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사항
 - 농어촌의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5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명칭의 변경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100범위안에서의 증감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택지의 용도변경, 필지규모의 변경, 조성부지면적의 증감, 도로계획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및 사업비 재원비율의 변경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결과보고

7. 사업시행

가.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자는 조사대상지구가 선정되면 해당주민들에게 감정가에 따라 용지매수 및 보상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 《별표 1》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구역이 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제반규정에 따름
- 농림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공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음. (농어촌정비법 93조) (단,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공정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추진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감리(농어촌정비법 제97조)

라. 설계감리등 요율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에 의함

마. 주택등의 건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주택등의 건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택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분준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등의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

- 사업시행자는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되, 단지 전체와 조화를 이뤄 건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택지 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바. 재원조달 및 사업비 정산

-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확보된 재원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용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 《별표 2》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투자된 용자금 및 민자를 택지등 분양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용지분양 및 주택건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로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획에 따라 계약금과 증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고, 주택 등의 건설을 직접시행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분양 대금을 수납하여 공사추진상황에 따라 주택시공자에게 지급함. 이경우 주택신축자금으로 지원되는 용자금은 증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총당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단지조성, 오폐수처리시설등 부분별로 준공검사 및 사업비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8. 행정사항

가. 분양 및 시설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 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수산부가 정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등의 분양지침"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수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분양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택자금등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는 사업시행 인가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시행함(농어촌정비법 제94조)
-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부분별 준공검사 포함)가 완료되면 공공시설물과 분양대상이 아닌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관리토록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조성용지 및 주택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 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수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되며, 이후의 분양방법 및 절차등은 농림수산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사업시행자가 차입한 융자금은 기한내에 상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당해지구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 당해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의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중 및 사업완료후 농림수산사업평가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평가내용
 - 사업지구 선정 및 공사진행의 적정성, 생활환경개선효과, 소득증대효과등 평가
- 3) 평가항목
 - 주민호응도
 - 공사 추진상황
 - 계획보완정도
 - 분양율
 - 분양자 분포
 - 분양자 직업
 - 생산기반정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연계추진 여부
 - 민원발생 빈도
- 4) 평가자료의 활용
 - 농림수산부는 년 1회이상 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자료 등으로 활용함.
 -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량 및 사업비 확대지원등 혜택 부여

다. 보 고

-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 계획수립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 추진현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 분양계획 및 결과보고 : 계획수립시

라. 사업추진일정

-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구 추천 (시·도 → 농림수산부) : 전년 3.15까지
- 사업예정지구 선정 시달 (농림수산부 → 시·도) : 전년 5월 말까지
- 기본계획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요청 (시·도 → 농림수산부) :
전년 11월 말까지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승인(농림수산부 → 시·도) : 당해년도 1.20까지
- 시행계획 수립 및 용지매수 보상 : 당해년도 7월 말까지

마.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 시설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95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중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함.
(주택신축등 용자사업비는 농특회계 예산에서 계속지원)
- 본 요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요령을 준용함.
- 기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바.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어촌정비과
- 시·도 : 기반조성과, 지역경제과
- 시·군 : 건설과

토지 및 지상물 매각동의서(안)

토지 및 지상물 매각동의서

_____군수(시장) 귀하

1. 귀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정주생활권개발 문화마을조성(오폐수처리시설)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의합니다.

(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첨언함)

위 치			지 번	지 목	지 가 건	적 옥 물	편 예 면	인 정 적	비 고
시 군	읍면동	리							

1 9 9 . . .

승락자 주소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인감증명서 (용도:사업동의용) 1부

《별표 2》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 %)

구 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등)	용 자 (농특회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 용지확보	-	100	○ 발생이자등 포함 ○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등 포함 ○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등 포함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 주택건축관리비, 국토이용계획 변경 경비, 시설물관리비, 일반관리비 포함
	○ 공사비	100	-	
	○ 잡지출	100	-	
	○ 사업관리비	100	-	
오 폐 수 처리시설	○ 용지확보및 제공사비	100	-	
기존마을 정비	○ 기반시설사업	100	-	○ 정주권개발비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 용지매수보상	100	-	

< 별지 제1호 서식 >

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 수지예산서

- 기본계획승인 : : :
 - 시행계획승인 : : :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공 - 국 - 고 - 지 - 방 - 지 - 방 양 ○ 용 자 ○ 기 타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부 지 조 - 도 상 수 도 - 하 수 도 - 전 기 통 - 기 경신타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이 자							
○ 사 업 관 리 비 - 출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일 반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천원(보조: , 용자: , 기타 :)
- 규 모 : 평 (단독주택: 필지, 공동주택: /, 근린시설: 필지)
- 단지조성착공(예정) : 년 월 일
- 단지조성준공(예정) : 년 월 일
- 택 지 분 양(예정) : 년 월 일

2. 추진계획 및 현황

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기정산액	당년계획 (A)	추진실적(누계)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계							
공 사 비							
- 부지조성							
- 도로							
- 상수도							
- 하수도							
- 조경							
- 전기통신							
- 기타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사업관리비							
예 비 비							
기 타							
자 금 진 행	계						
	보 조						
	용 자 기 타						

※ 당년 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에 당년 예산배정액을 합한 것임.

3. 사업시행부진사유(진도 70%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작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1. 목 적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면지역 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를 개발, 생활용수와 농업·축산용수 등 다목적용수 공급 도모
- 농어촌의 생활수준향상, 시설채소재배 수요 등을 사전예측하여 필요수량 확보
-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나. 사업목표

- 2004년까지 면단위 농어촌지역의 마을에 5,000개소의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어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증대 도모

3.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계 획
사 업 량		52	(999)	(100) <800>	212 <299>	320	3,317	5,000
사 업 비	계	130	800	800	800	800	8,670	12,000
	국 고	65	400	400	400	400	4,335	6,000
	지방교부세	65	400	400	400	400	4,335	6,000

※ () : 수원공시설, < > : 이용시설 설치 개소수임

나. '96지원계획

- '95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수원공만 확대 개발한 999개소 중 800개소의 이용 시설과 '96신규로 수원공 100개소를 개발할 계획임.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관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시·도 : 농어촌개발국 기반조성과(광역시의 경우 : 농정국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지하수조사 : 현지답사, 지표지질조사, 선구조추출물리탐사, 시추조사
(간이양수시험 포함), 지하수영향조사, 수질검사 등
※ 지구당 시추조사는 필요심도까지 1공을 시행한 후, 실패시는 추가로 1공을 시추조사할 수 있다.
- 수원공시설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육, 한전외선, 오염방지그라우팅, 폐공처리 등
※ -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수량 확보심도까지 착공하고, 우물 자재구경은 200mm, 1일채수량은 공당 150톤 이상으로 하며,
-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도지사 책임하에 공당 1일 채수량 100톤이상으로 하향 조정 가능
- 이용시설 : 송·배수관, 배수지(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용가 부담

(2) 지원대상

- 전국 면단위이하 농어촌지역 중 우물 및 하천수 이용마을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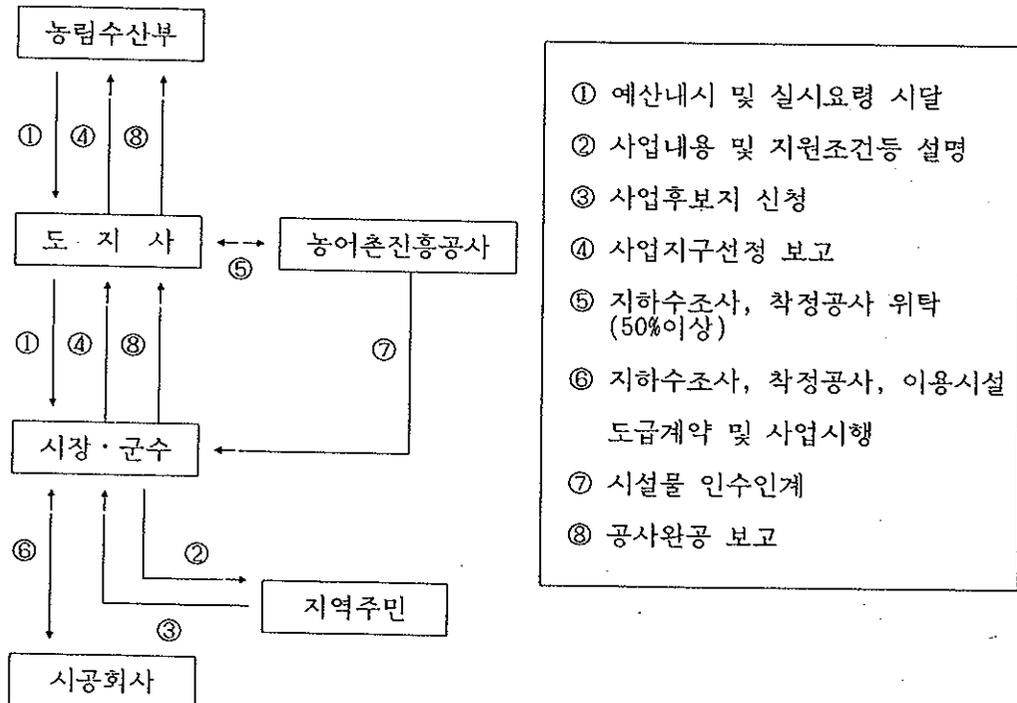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가. 선정절차

○ 희망마을 → 읍.면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부

기 관 명	추 진 내 용
농림수산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침 작성 ○ 대상지 검토 확정 ○ 사업홍보(사업내용, 지원조건등), 대상지 선정 ○ 사업 후보지 신청

나. 사업시행체계도



6.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전국 면단위이하 농어촌지역 중 우물 및 하천수 이용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마을
-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 특히 '96년 사업은 '95년도에 개발한 수원공시설에 대한 이용시설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2)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 설치비용 등 자부담능력, 주민호응도, 사후관리능력, 사업의 효율성, 개발시급성 등을 감안 선정
- 지역주민이 자발적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후관리 등에 적극적인 지역여부 등을 고려(정부에서 강요하는 사업이 아님을 주지 시킬 것)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제외
 - 상수도계획 수립예정이거나 수립된 지역
 - 자연수 이용마을이더라도 수질오염이 안 된 수량이 풍부한 지역
 - 인구감소로 앞으로 존속할 수 없는 지역
 - 수몰예정지 등 항구적 주거지로 부적합한 지역

나. 기본조사 : 사업시행자

다. 실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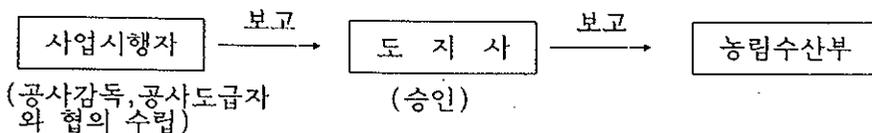
- 정주권개발사업과 동일 지구일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일괄계획하에 설계 실시
- 수원공의 확공 위치는 안정수위이하의 심도까지 적합하게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압정격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각종자재는 KS규격자재 등을 사용하되 소요강도 및 부식에 강한 제품 사용
 -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도모
 - 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설치하되 등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
 - 물탱크의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는 용수사용량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용수)을 고려하여 결정 (예 : 도시지역 1일 용수사용량 : 450ℓ/인)
 -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증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지하수착정 소요장비, 자재는 반드시 소독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확인
- ※ - 지표면에서 암반층까지 토사부분을 굴착하고, 케이싱을 삽입한 후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처리한 후 암반부분을 굴착
- 수원공개발시(착정)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등 마을 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등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가 날인
- 이용시설은 정비51370-246('95.7.21)호로 시달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 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

7. 사업시행

가. 공정계획수립

- 수립자 : 사업시행자
- 수립방법 : 당해년도 예산규모를 감안 수원공 및 이용시설로 구분 수립
- 수립절차



○ 효 과

- 사업시행자 공정계획 준수 의무
 - 공사진도가 공정계획에 미달시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나. 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 단, 지구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전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협의 보상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라. 설계 및 시공

- 지하수조사, 수원공설계 및 개발
 - 시·도지사가 시·군별 지하수 개발의 선도를 위하여 배정된 물량의 50%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에게 일괄 과업 지시토록 하되, 계약금액은 당해년도 시·군별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는 당해사업 낙찰율의 평균치로 하며, 동일 시·군내 전문건설 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당해 시·도 평균 낙찰율을 적용한다.
 - 50%는 당해 시장·군수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업무 대행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응용이학부문 : 응용지질, 지구물리)와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전문건설업체의 공동도급(면허조건보완)을 하도록 함.
- ※ '97년이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조사, 수원공설계 및 개발도급업무 위임계획.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사업 사업비 산정기준(수리51322-478, '94.10.12)을 참고하여 동일공종의 타공인 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및양수장비관리 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등 계규정 적용
- 수질검사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부합토록 시행
 - 수질기준 : <별표1>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
 - ※ 정수시설 필요시 정수시설 설치비는 최고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 등을 투입토록 함.

마.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바. 검 사

- 공사완료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검사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관정 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계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8. 사업비 지원

가. 지원규모 및 조건

- 1지구당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세 50%
- ※ '95, '96년은 '95가뭄과 관련 당초 물량의 수원공 확대개발로 인해 자재변경 등을 통한 기준단가 조정(250→170백만원 : 수원공80, 이용시설90)

나. 자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지구여건을 감안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구간 조정시행 가능

9. 행정사항

가. 보 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8.30까지
- 사업시행인가 결과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수립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월 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정비과
- 시·도 : 농어촌개발국 기반조성과(광역시의 경우 : 농정국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후관리 및 사업평가

1) 사후관리

- 관 리 자 : 시장·군수(공무원 1인, 수혜주민 대표자 1인)
-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
 - 수혜자들로 관리 조직을 구성 관리(자율적인 방법 유도)
- 관리비용등 : 시장·군수가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
적립 조치(지역주민의견 반영)
- 수질검사 : 관련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조치
 - 수질검사 횟수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수질검사횟수
의 규정에 따라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기타항목은 매년 1회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 실시,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
군수가 기술인력지원(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시설물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안내판 등 제작 설치
특히, 양수장·물탱크·염소소독기 관리 철저

2) 사업평가

- 평가내용 : 대상지 선정의 적합성, 시공의 적정성,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청결한 유지·관리 등
- 평가항목 :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여부,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실시여부, 이용가구수, 1인당 1일 급수량, 폐공관리 실태, 유지·관리조직의 구성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 실시
- 평가자료 활용 :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사업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자료 등으로 활용
 - 평가실적이 저조한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중단 또는 삭감

<별표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생물에 관한 기준(2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세균	100CFU/ml	하수오물, 폐기물,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수처리 효율의 지표로 이용되며,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의 판단자료
2 대장균군	불검출/50ml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에관한기준(10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납(Pb)	0.05mg/ℓ	안료, 도료, 활자제조업, 연관제조업, 인쇄공장, 유리제조공장 등의 폐수 및 납관에서 유출	0.5mg/day 이상 섭취시 축적성 만성중독 - 정신착란, 심근마비, 악성빈혈 급성중독 - 복통, 구토 소아 : 신경, 면역장애
4 불소(F)	1mg/ℓ	지하수중의 천연상태(불소인회석), 살충제, 방부제, 불소화합	1mg/ℓ 이하 - 충치예방효과 만성중독(1mg/ℓ 이상) - 반상치 신장 : 지방산산화효소활성저하 간 : 질소, 지방합량 감소
5 비소(As)	0.05mg/ℓ	광산제련공업, 의약품 및 비소계살충제제조공장폐수, 안료 및 도료공업유기, 무기상태(3,5가: 독성크다)	만성중독(0.21mg/ℓ 이상) - 수족지각장애, 수족가화증, 빈혈, 흑피증, 손톱, 모발의 위축, 급성중독(성인: 5-50mg 섭취) - 구토, 설사 100-150mg : 경구치사량
6 세레늄(Se)	0.01mg/ℓ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에 이용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성착색, 치아장애, 위장관으로 93%흡수, 알칼리병, 혈운증
7 수은(hg)	불검출	소다공업, 농약제조, 수은정제공장, 도료공장폐수, 폐건전지, 무기상태(1,2가염: 15%흡수), 유기수은(메틸수은: 미생물에 의해 생성, 100% 흡수되어 먹이사슬에 축적)	만성중독 - 언어장애, 지각이상, 신경쇠약, 난청유발, 생식선자극(물연변이) 급성중독 - 위장병, 구내염, 신장장애(단백뇨) 유기수은이 축적된 담수어의 섭취(일본 : 미나마타병)
8 시안(CN)	불검출	도금공장, 가스공업, 코크스공장, 정유공장등 폐수 염소처리에 의한 무해한 시안산염으로	세포호흡저해, 질식성경련, 의식장애, 뇌의 젖산합량증가로 인한 혼수상태와 뇌손상 50-60mg : 경구치사량 0.05mg/ℓ 이상 : 물고기에 유해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9 6가크롬(Cr)	0.05mg/ℓ	염색공업, 피혁제조, 석유화학공업, 도금공장폐수	만성중독 - 피부궤양, 폐암유발 급성중독 - 미각장애, 위장염 0.1mg/ℓ : 음용수로서 유해
10 암모니아성질소(NH ₄ -N)	0.5mg/ℓ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물분뇨, 배설물, 비료, 폐기물, 연소기 배출수, 자동차 및 연소기 배출물, 대기중의 낙진, 토양 내의 유기물질	
11 질산성질소(NO ₃ -N)	10mg/ℓ		유아 : 10mg/ℓ 이상의 물과 우유는 청색증(Blue Baby)유발(Methemoglobinemia: 혈액과 반응하여 호흡장애)
12 카드뮴(Cd)	0.01mg/ℓ	광산(강내수의 산성화에 의한 용출), 광재, 습식 제련 공정중 가용성 염의 용출, 도금공장폐수 및 급수설비에 의한 오염	간, 신장, 갑상선, 뼈에 축적 만성중독성 - 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애, 골연화증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섭취(일본 : 이따이 이따이병)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5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3 페놀(C H OH)	0.005mg/ℓ	석탄,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약, 페놀계 합성수지, 공장폐수, 살충제의 미생물 분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 생성(독성보다 약취가 문제) 만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14 총트리할로메탄(THM) CHCl ₃ & CHBrCl ₂ & CHBr ₂ Cl & CHBr ₃	0.1mg/ℓ	자연유기물(폴리산, 휴민산)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발암성물질(THM) 생성	발암성 물질 만성중독 - 불안, 불면, 흥분, 간위축, 신장장애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마비, 피부탈지
15 다이아지논	0.02mg/ℓ	유기인계농약물질, 살충제 합성제조, 석유제품 축매	맹독성, 발암성물질, 신경&뇌신경계 마비증상, 근육경련
16 파라티온	0.06mg/ℓ		
17 말라티온	0.25mg/ℓ		
18 페니트로티온	0.04mg/ℓ		
19 카바릴	0.07mg/ℓ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 감퇴, 혼수, 호흡곤란
20 1,1,1-트리클로로에탄 C H Cl ₃	0.1mg/ℓ		눈점막자극, 고농도 : 마취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 Cl ₂	0.01mg/ℓ	금속탈지공업, 드라이크리닝용매, 염소화탄산수소류생산공장	중추신경계억제, 불쾌감, 마취 고농도 : 의식불명, 반사기능저하, 간장장애, 다발성신경염, 간종양유발(새앙쥐)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2 트리카로로에틸렌(TCE) C HCl	0.03mg/ℓ	금속산업: 비윤활용매, 드라이크리닝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급성중독-중추신경계억제, 두통, 간장애, 관절이상, 간종양유발(새앙쥐)
23 디클로로메탄 CH Cl	0.02mg/ℓ		
24 벤젠 C H	0.01mg/ℓ	화학공장: 페놀, 사이크로헥산 생산의 중간물질	만성중독-빈혈, 백혈구감소, 면역기능저하
25 톨루엔 C H CH	0.7mg/ℓ	공업: 플라스틱, 페인트 제조의 용매, 기체	중추신경계기능저하, 기형, 발암, 변이성은 없음.
26 에틸벤젠 C H C H	0.3mg/ℓ	중간물질이나 용매, 기체	현기증, 호흡곤란
27 크실렌 CH ₄ (CH ₃) ₂	0.5mg/ℓ	크로코 생산의 부산물	메스꺼움, 구토, 의식불명유발, 신장 및 간장손상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15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8 경도	300mg/ℓ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 (Ca, Mg, Sr, Ba)	세탁, 보일러용수 장애 다량존재시 불쾌한 맛
2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폐기된 유기물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
30 냄새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이외는 무미무취	용수원의 수질변화, 물처리공정의 결함,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미생물 성장을 암시	
31 맛			
32 동(Cu)	1mg/ℓ	동재련공장, 금속표면(도금)업소, 수도용 동관	1mg/ℓ: 청색, 착색 1.5-3mg/ℓ: 금속성 맛 5mg/ℓ: 짙은맛, 80-170mg 섭취: 간장장애
33 색도	5도	미생물&플랑크톤의 번식 용해성물질, 오수등의 혼입	심미적 나쁜 영향
34 세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0.5mg/ℓ	합성세제	1.0-1.5mg/ℓ: 기름기있고, 생선냄새 규제이유: 맛, 거품
35 수소이온농도 (pH)	5.8-8.5	알칼리폐수 또는 산폐수	낮은pH: 수도시설의 부식 높은pH: 쓴맛, 미끈미끈한 느낌 pH8.0이하에서 염소소독이 효과적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6	아연(Zn)	1mg/ℓ	광산제련공업, 지하수중 천연유래	20-30mg/ℓ:금속맛, 짠맛 급성중독: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불균형
37	염소이온 (Cl ⁻)	150mg/ℓ	세균소독을 위해 투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38	중발잔류물	500mg/ℓ	맛,경도,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스템의 부식, 스케일 형성
39	철(Fe)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 중에서 천연유래 (Fe ²⁺ , Fe ³⁺)	0.3mg/ℓ:황갈색, 적갈색 0.5-1mg/ℓ:금속성맛 급성중독-설사, 구토, 혈색증
40	망간(Mn)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 중에서 천연유래	0.05mg/ℓ:흑색, 흑갈색 0.5-1mg/ℓ:금속성맛 56mg/ℓ:개의 치사량
41	탁도	2도	가정 및 산업용수의 일반적인 수질오염지표	살균소독방해, 유기체에 의한 질병감염 우려 부유물질의 함유 의미
42	황산이온 (SO ₄ ²⁻)	200mg/ℓ	산업폐수&대기방출, 화석 연료의 연소	1000mg/ℓ:설사유발, 알카리도 낮은 물에서 급수계금속 부식
43	알루미늄(Al)	0.2mg/ℓ	산업폐기물, 광물&토양 침출, 응집처리	0.1mg/ℓ 이상 : 변색(퇴색)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뼈 제외), 호흡기흡입시 허파와 입파선에 축적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과 목		증 인 액		○ ○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 기 빈 공 정 계 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													
○ 수 원 공			공										
○ 이 용 시 설			㎡										
- 양 수 경			㎡										
- 물 방 크			㎡										
- 송 배 수 관			㎡										
- 기 타			㎡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년 ○○면 ○○마을

사업시행인원 :

확공년월일 :

(금액단위 : 천원)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치 : 도 군 면 리 지번 : 관리자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작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³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교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³ - 양 수 장 : 평 - 송 · 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층)모타펌프 - 구경 ()m/m, 설치심도 ()m, - 마력 ()HP - 제품명 :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c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측정관 (○, ×)
	상부보호경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

1. 목 적

농어촌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함.

2. 사업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전국 면단위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문화마을조성사업등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수질오염이 극심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필요한 지역
-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 면단위지역에 777개소 설치

3. 투융자 계획

가. 사업목표 및 증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8	6	16	20	24	703	777
사업비	계	3,200	2,400	6,400	8,000	9,600	281,200	310,800
	국고	3,200	2,400	6,400	8,000	9,600	281,200	310,800

나. '96지원계획

- 총지원액 : 6,400백만원(국고 100%)
- 대상지구 : 16지구('94문화마을 착수지구 : 14, '95문화마을 착수지구 : 2)
-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4. 사업 추진개요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의 위탁등은 문화마을조성 사업과 동일
- 사업비 지원 : 지구당 4억원 수준(국고 100%)
- 사업내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기존마을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및 오폐수처리시설(장)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를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장 설치

5. 사업대상지구 선정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로 기선정된 지구와 하수체계상 병행처리가 가능한 인근마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가급적 마을규모가 50호 수준이상인 지역으로써
 - 기존마을의 하수체계,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마을
 - 환경오염이 심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

6. 사업계획

가. 기본계획

- 오폐수처리시설은 처리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계획

< 방류수 수질기준 >

(단위: mg/ℓ)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량 (SS)	비 고
30이하	50이하	70이하	○ '95.12.31까지 적용기준
30이하	40 "	30 "	○ '96.1.1부터 적용기준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지역의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
- 오폐수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은 배제구역, 하수도 기본시설의 배치.구조, 처리장의 위치 및 처리공법, 처리용량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기존마을의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불허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

다.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법 조항 동일)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사업의 시행

가. 용지매수 및 보상 :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준함.

나.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홍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

다. 재원조달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사업비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라. 설계감리등 요율

-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등의 요율은 농어촌 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 조례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유지 및 처리수질의 관리를 위하여 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처리수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나. 사업의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중 및 사업완료후 농림수산사업평가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평가내용

-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선택의 적정성, 설계, 시공의 완전성,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유지.관리여부등 평가

- 3) 평가항목

- 주민호응도
- 사업시행 기대효과
- 공사추진상황
- 문화마을과의 연계성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
- 부유물질량
- 사후관리

- 4) 평가자료의 활용

- 농림수산부는 년 1회이상 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자료 등으로 활용함.
 - 우수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량 및 사업비 확대지원등 혜택 부여

다. 보고

-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 계획수립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 추진현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어촌정비과
- 시·도 : 기반조성과, 지역경제과
- 시·군 : 건설과

< 별지 제1호 서식 >

지구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수지예산서

- 기본계획승인 : : : :
 - 시행계획승인 : : : :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년도별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 양 양 여 금							
○ 용 자 ○ 기 타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년도별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토 목 공 사 · 오 수 관 로 · 오 수 처 리 조 · 조 경 공 사 · 부 대 공 사 · 기 타 - 기 계 공 사 - 전 기 공 사 - 건 축 공 사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이 자							
○ 사 업 관 리 비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일 반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 별지 제3호 서식 >

지구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천원
- 규 모 : m²/일
- 공사착공(예정) : 년 월 일
- 공사준공(예정) : 년 월 일

2. 추진계획 및 현황

월말 현재

구 분	승인액	기정산액	당년계획 (A)	추진실적(누계)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오수관로							
· 오수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이자							
○ 사업관리비							
○ 예비비							
○ 기타							
자금진행	계						
	보조						
	용자 기타						

※ 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에 당년 예산배정액을 합한 것임.

3. 사업시행부진사유(진도 70%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작성)

